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체계 및 보호범위 연구

(Research for Scheme and Scope of Interior Designs)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체계 및 보호범위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년 9 월 8 일

- 주관연구기관명 : 유미특허법인
- 연 구 기 간 : 2011년3월8일~2011년9월8일
- 주관연구책임자 : 김창현
- 참여연구원
 - 연 구 원 : 김진희
 - 연 구 원 : 한경화
 - 연구보조원 : 강진호
 - 연구보조원 : 민수정
 - 보 조 원 : 빈스 데헤수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관 및 자의 명의로 함

요약문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을 로카르노 분류상의 물품으로 확대하는 법률의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른 보호대상의 확대에는, 로카르노 분류 상의 제 25-03 류에 해당하는 부동산, 그리고 제 32-00 류에 포함된 차림새[실내인테리어배치](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가 새로운 보호대상이 될 것인가의 논점이 제기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정으로 인하여, 특히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보호대상의 확대를 중심으로 하여, 업계, 실무, 특허청의 심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현행법상의 보호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하였고, 둘째로는,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등록을 허용하고 보호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에서의 제도와 실무를 심도 있게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건물/인테리어 디자인은 건축저작물 등 저작물로서도 보호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므로, 실제로 이러한 디자인이 저작권으로 등록되고 있는 실태와 저작권법 및 그 실무에 따라 이들 디자인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조사하였다.

앞서 살펴본 외국에서의 실무를 참고로 하여, 도면의 요건, 심사 실무 등 우리의 현행 디자인 출원/등록 실무에서 개선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디자인보호법 체계 하에서 이러한 새로운 물품의 보호를 체계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입법론에 관하여도 검토하였다.

인테리어 디자인이 보호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무상의 사전 조치들 중 상당 부분은 이미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과거 좁은 의미의 공산품을 염두에 두고 구성된 실무로부터 일부의 보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인테리어 디자인이 보호대상으로 새로이 포섭됨에 따른 혼란은 초래되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SUMMARY

A proposed amendment for the Design Protection Act is suggested to enlarge the scope of articles protected as objects of designs to the articles listed in the Locarno classification. Such an enlargement raises a question of whether to newly include immovable assets listed in the class 25-03 and the 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hereinafter, “interior design”) listed in the class 32-00.

Focusing on the enlargement to encompass the interior designs, the present research aims to study the effects of such an amendment on the practice of the design industry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to devise solutions if any problem induced thereby is expected. In this background, firstly, it is studied whether the interior design is possibly protected under the current practice of design protection law, and then legislation and practice of the U.S.A. and Europe where the interior design is protected by design or patent law are studied in depth.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designs for the buildings or their interiors are protected as architectural works in the copyright law. Thus, efforts have been made to study whether such designs are actually protected and how they are practically protected by the copyright law.

Referring to the practice of the foreign countries, many issues on further amendment of our practice to adopt protection of the interior designs have been studied, covering the requirements of drawings and the examination practice.

Many of prerequisite remedies involved in newly protecting the interior designs are found to have already been employed in our Design protection practice. With some additional amendment of provisions and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practical measures, the side effect of enlarging the scope of protected articles to cover the interior designs may be obviated or minimized.

목차

제 1 장 서론	3
제 1 절 서론	3
1. 현행 제도	3
(1) 디자인 보호법상 물품성	3
(2) 물품성의 변화	3
2. 제도 변화의 요구	4
(1) 디자인 업계의 상황에 맞는 디자인 보호법	4
(2) 디자인 산업의 확장과 인테리어 디자인	4
(3) 개정 추진 법령과 인테리어 디자인	5
제 2 절 보호대상으로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포함하는 내용	6
1. 해당 조문의 대비	6
2. 개정안에 따른 물품의 대상의 확대	7
(1) 로카르노 분류의 채용	7
(2) 건물(Building Units)	10
(3) 로카르노 분류 제 32 류의 채용 과정	10
(4) Get-up; 인테리어와 포장 디자인의 보호	11
제 3 절 연구의 방향	13
1. 인테리어 디자인 현황 및 현행법상의 보호	13
(1) 인테리어 업계의 현황	13
(2) 인테리어 디자인의 현행법 상의 보호실태	13
2. 주요국에서의 인테리어 디자인 실무 연구	13
3. 인테리어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법률구성	13
4.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출원/등록 특수 실무 필요성 검토	14
제 2 장 인테리어 디자인 현황 및 현행법상 보호	15
제 1 절 건축/인테리어 디자인 업계의 현황	17
1. 업계의 규모	17
(1) 시공 실적 규모	17
(2) 실내 건축 중 순수 인테리어 시공의 비중	18
(3) 실내 건축 대상별 실적 규모	19
(4) 정리	21
2. 인테리어 디자인의 예	21
(1) 주거 공간	22
(2) 상업 공간	23

(3) 업무 공간	24
(4) 숙박 공간	25
(5) 보건복지 공간	25
(6) 교육 연구 공간	26
(7) 체육 위락 공간	26
(8) 관람 집회 공간	27
(9) 전시 공간	27
(10) 운수 시설 공간	28
(11) 공간의 변화 - moving wall (주한 캐나다 대사관)	28
제 2 절 건축/인테리어 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의 취급	29
1. 법률의 규정	29
(1) 디자인보호법	29
(2)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30
2. 심사기준과 실무	32
(1) 심사기준	32
(2) 출원/등록 실무 원칙	33
(3) 최근의 경향	33
(4) 최근의 판례	37
(5) 실무와 판례에 대한 검토	38
 제 3 장 주요국에서의 입법례 및 실무 연구	41
제 1 절 미국 디자인 제도 및 실무	43
1. 미국의 디자인보호 법제의 개요	43
(1) 디자인을 특허의 일종으로 취급	43
(2) 디자인에 관한 특칙	44
2. 미국특허법상 디자인특허에 관한 물품성	45
(1) 제조물품성(article of manufacture)의 도입	45
(2) 제조물품성의 의미	45
3. 심사와 제조물품성	46
(1) 보호요건 - 신규성(novelty)과 비자명성(non-obviousness)	46
(2) 신규성(novelty) 심사와 물품	46
(3) 비자명성(non-obviousness) 심사와 물품	47
4. 미국특허법상 제조물품의 분류	48
(1) 분류의 종류	48
(2) 미국특허분류(USPC)	48
(3) 로카르노 국제분류(Locarno Classification)	48
(4) 미국특허분류(USPC)와 로카르노 분류	50

5. 건물/인테리어에 관한 미국 디자인특허 실무	50
(1) 검토의 범위	50
(2) 건물 등의 부동산의 전체 및 부분디자인	50
(3) 건물 등의 인테리어 디자인(trade dress)	51
6. 미국 실무상 디자인의 보호범위 판단 원리	53
(1) 청구항(claim)에 의한 확정	53
(2) 디자인특허 침해 판단의 개요	55
(3) 일반관찰자 테스트(ordinary observer test)	56
7. 디자인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	58
(1) 특허 침해 및 손해배상의 일반 원리	58
(2) 디자인특허에 특유한 배상의무	59
8. 미국 실무상 디자인특허와 물품과의 관계에 관한 정리	60
(1) 특이한 물품에 관한 미국 등록 실무	60
(2) 심사과정에서의 물품성	60
(3) 미국 특허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물품이 미치는 영향	61
제 2 절 유럽 공동체디자인 입법례 및 실무	63
1. 유럽 공동체디자인 법제의 개요	63
(1) 연혁	63
(2) 등록공동체디자인 및 미등록공동체디자인	64
(3) 공동체디자인 보호 법 체계 및 적용범위	65
2. 공동체디자인법상 제품성(product)	66
(1) “제품성”의 도입	66
(2) “제품”의 의미	66
(3) “제품”의 분류 - 유로로카르노	67
3. 특수 물품에 관한 공동체디자인 실무	70
(1) 건물 등 부동산	70
(2) 설계도면(architects' plans)	71
(3) get-up; 인테리어 디자인	72
4. 보호요건과 제품	73
(1) 보호요건은 무효에서 따짐	73
(2) 신규성과 제품	75
(3) 개성의 평가와 제품	78
(4) 기술적 기능 만에 의한 디자인인가의 판단과 제품	81
(5) 선행디자인과의 저촉과 제품	82
(6) 선행 저작권과의 충돌과 제품	85
5. 보호범위와 제품	86

(1) 보호범위 판단의 기본원리	86
(2) 보호범위 판단에서 제품의 영향 - 개성의 판단에서와 동일	87
(3) 부연: 보호범위 판단과 개성의 판단의 차이점	87
(4) 기술적 기능 만에 따른 디자인	89
6. 공동체디자인 제도 상의 기타 실무	89
(1) 제품의 표시와 관련된 출원/등록 실무	89
(2) 복수 제품의 표시와 관련된 출원/등록 실무	90
(3) 색채 도면의 해석	92
(4) 무효사유에 대하여 일부 포기를 통한 권리의 유지	93
(5) 3 차원 디자인과 2 차원 디자인과의 대비	96
(6) 도면에 기재된 범위와 보호범위	96
7. 정리	97
(1) 유럽에서의 디자인의 개념	97
(2) 공동체디자인의 보호범위	98
(3) 제품의 표시가 보호범위와 무효실무에 미치는 영향	98
(4) 제품의 표시의 중요성	98
제 4 장 주요국에서의 인테리어 디자인 등록례	101
제 1 절 서론	103
제 2 절 미국 디자인특허 조사	104
1. 검색 데이터베이스와 검색방법	104
(1) 활용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기준일자	104
(2) 명칭 검색	104
(3) 건물에 해당하는 세분류 전수 조사	105
2. 명칭에 “interior”를 포함한 디자인특허	106
(1) 설명	106
(2)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107
(3) 자동차/항공기 등의 내부 인테리어	111
(4) 기타 인테리어	112
3. 명칭에 “room”를 포함한 디자인특허	113
(1) 설명	113
(2) 명칭에 “room”를 포함한 미국 디자인특허 리스트	114
4. USPC D25/01~35, D25/58~59 의 디자인특허	120
(1) 서론	120
(2) 인테리어 관련 미국 디자인특허	122
(3) 건축물 관련 디자인특허	133
5. 미국 디자인특허 조사 결과의 시사점	136

(1) 건물 자체의 특허가 많다	136
(2) 건물 등 부동산이 정기적으로 보호된다	136
(3) 인테리어 디자인도 보호된다	136
(4) 명칭이 자유스럽다	138
(5) 여러 분류가 부여되기도 한다	139
(6) 도면의 실무	139
(7) 미국 건물/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유사성의 범위	142
(8) 일시적인 디자인도 보호되고 있다	146
제 3 절 유럽 등록공동체디자인 조사	147
1. 검색 데이터베이스와 검색방법	147
2. 로카르노 분류 제 32 류의 차림새[실내배치] 의 디자인 검색	148
(1) 설명	148
(2) 제 32 류 및 제 99 류의 인테리어 디자인 RCD 리스트	149
3. 로카르노 분류 제 25.03 류의 디자인 검색	169
(1) 설명	169
(2) 제 25.03 류의 인테리어 디자인 RCD 리스트	170
4. 유럽 등록공동체디자인 조사 결과의 시사점	180
(1) 건물 등 부동산,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이 정식으로 보호된다... ..	180
(2) 제품의 표시가 비교적 자유스럽다	180
(3) 여러 분류가 부여되기도 한다	180
(4) 동일자 시리즈 출원이 서로 다른 류에 분류되기도 한다	181
(5) 차림새(Get-up)은 제 32 류 이외로 분류되기도 한다	182
(6) 인테리어 관련 공동체디자인 도면의 실무	182
(7) 색체를 달리 하는 실시행위에 대한 보호방안	184
(8) 같은 실내라도 별개의 출원을 할 수 있다	185
제 4 절 헤이그 데이터베이스 조사	186
1. 검색 데이터베이스와 검색방법	186
2. 검색 데이터베이스와 검색결과의 시사점	186
3. 물품의 표시에 “interior”를 포함한 인테리어 디자인 국제등록	187
(1) 설명	187
(2) “interior”를 포함한 인테리어 디자인 국제등록 예	187
4. 물품의 표시에 “room”를 포함한 디자인국제등록	188
(1) 설명	188
(2) “room”를 포함한 인테리어 디자인 국제등록 예	188
5. 로카르노 분류 제 32-00 류의 인테리어 디자인 국제등록	188
6. 로카르노 분류 제 25-03 류의 건물/인테리어 디자인 국제등록	188

(1) 설명	188
(2) 로카르노 분류 제 25-03 류의 인테리어 디자인 국제등록 예	189
제 5 장 건축/인테리어 디자인과 저작권법의 조화	191
제 1 절 건축/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법상의 취급	193
1. 우리 저작권법상의 규정과 해석	193
(1) 저작권	193
(2) 저작인격권	194
(3) 저작재산권	196
(4)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197
2. 저작권 등록 사례 분석	198
(1) 건축저작물 등록/분쟁 현황	198
(2) 건축/인테리어 관련 저작물 통계 분석	200
3. 건축/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 관련 판단 사례	205
(1) 서론	205
(2) 대법원 2000.6.13.자 99 마 7466 결정	205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7.12 선고 2006 가합 14405 판결	208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29 선고 2007 가합 77724 판결	213
(5) 서울지방법원 1995.8.18 선고 95 가합 52463 판결	218
(6) 서울고등법원 2004.9.22. 선고 2004 라 312 판결	220
(7)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 도 29 결정	222
(8) 건축설계경기 약관 사건 - 공정거래위원회	224
제 2 절 건축/인테리어의 디자인권 보호와 저작권과의 충돌 여부	230
1. 저작권 보호에 의한 건축/인테리어의 디자인권	230
(1) 저작권으로서의 보호의 불충분	230
(2) 업계에서의 인식	231
2. 건축/인테리어의 저작권과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호	232
(1) 보호대상의 차이	232
(2) 보호법익의 차이	234
(3) 순수 인테리어 디자인(응용미술저작물)과 디자인보호법	235
(4) 건축저작물과 디자인보호법	236
3. 건축/인테리어에 대한 보호 태도의 문제	237
(1) 미국의 저작권법에 의한 건축물/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	237
(2) 독일의 저작권법에 의한 건축물/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	239
(3) 일본의 저작권법에 의한 건축물/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	239
(4) 의견 - 충돌보다는 국가별 입법/사법적 태도의 문제	239
4. 저작권과의 이용저촉과의 관계	240

(1) 법률의 규정	240
(2) 이용과 저촉의 의의	240
(3) 이용저촉관계	240
(4) 이용저촉의 예	240
(5) 현행규정의 타당성	242
제 6 장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	243
제 1 절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한 입법론	245
1. 개정안의 검토	245
(1) 개정안의 입법론	245
(2) 제기되는 문제	245
(3) 문제에 대한 검토	246
(4) 인테리어 디자인과 로카르노 분류	247
2. 가능한 입법론의 검토	248
(1) 디자인의 정의에 인테리어 디자인을 추가하는 방안	248
(2) 물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248
(3) 디자인의 정의는 그대로 두고 물품 구분에서 포섭하는 방안	249
제 2 절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가 물품의 개념에 미치는 영향	250
1. 현재의 실무	250
(1) 법과 심사기준	250
(2) 판례	250
(3) 정리	250
2. 동산성	253
(1) 동산성의 폐기 여부	253
(2) 건물의 외부와 내부	253
(3) 건물과 인테리어	254
(4) 건물의 디자인과 인테리어 디자인	254
(5) 건물 등 부동산의 장식적 특징 보호	255
(6) 정리	255
3. 독립성	255
(1) 현행 심사기준	255
(2) 문제의 제기	255
(3) 다른 나라의 입법례	256
(4) 검토	257
4. 유체물성	257
(1) 현행의 규정	257
(2) 인테리어 디자인과의 관계	257

5. 시각성	258
(1) 우리 실무에 따른 시각성의 정의	258
(2) 실무상 규정에 대한 검토	258
6. 정리	259
(1) 새로운 정의의 필요	259
(2) 새로운 정의 형태	259
(3) 건물 등 부동산과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오해	259
7. 토론 - 디자인과 물품과의 관계	260
(1) 우리 실무에 따른 물품과 디자인	260
(2) 미국 실무에 따른 물품과 디자인	261
(3) 물품성과 디자인	262
(4) 우리 실무의 물품의 표시와 미국 실무의 디자인의 명칭	262
(5) 유럽 실무상 제품의 표시	262
(6) 정리	263
제 3 절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방안	264
1. 분류	264
(1) 서론	264
(2) 미국의 실무	264
(3) 유럽의 실무	264
(4) 검토	265
2.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267
(1) 서론	267
(2) 무심사등록하는 경우	267
(3) 심사를 하는 경우	268
(4) 무심사와 심사의 혼용	268
(5) 업계의 의견	269
(6) 검토의견	269
3. 인테리어 디자인의 성격 - 구성물품과의 관계	271
(1) 서론	271
(2) 1 디자인 1 출원주의와의 관계	271
(3) 한 별의 물품과 구성물품 vs. 완성품과 부품	273
(4) 인테리어 디자인과 구성물품과의 신규성 관계	274
(5) 인테리어 디자인과 신규성 상실의 예외	276
(6) 인테리어 디자인과 구성물품과의 선원 관계	277
(7) 인테리어 디자인과 구성물품과의 확대된 선원 관계	278
제 4 절 인테리어 디자인의 표현 - 도면	280

1. 현행 도면 실무	280
(1) 전통적인 도면 실무	280
(2) 개정된 도면 실무	281
(3) 개정된 도면 실무의 중요성	282
2. 업계에서의 인테리어 디자인의 실무에 대한 검토	284
(1) 서론	284
(2) 업계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특정하기 위한 도면의 예	284
(3) 검토	288
3. 인테리어 디자인 출원용 도면에 관한 검토	289
(1) 출원에 필요한 도면의 수	289
(2) 선도와 사진	291
(3) 흑백 사진과 컬러 사진	292
(4)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의 특정	293
(5) 설계도와 인테리어 디자인	294
(6) 축척의 문제	295
제 5 절 인테리어 디자인의 유사판단	298
1. 서론	298
(1) 유사판단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298
(2) 유사판단의 기본적인 원칙 - 물품의 동일·유사	298
(3) 유사판단의 기본적인 원칙 - 외관의 동일·유사	299
2. 인테리어 디자인의 유사판단의 주관적 기준	299
3. 인테리어 디자인의 유사판단의 물품에 관한 기준	300
4. 인테리어 디자인의 유사판단의 디자인에 관한 기준	301
(1) 서론	301
(2) 검토	301
(3) 인테리어 디자인과 구성물품과의 유사여부 판단	303
5. 인테리어 디자인의 유사판단에서의 참고자료	303
(1) 서론	303
(2) 실내디자인 스타일 유형별 정리	304
제 6 절 기타의 검토 문제	312
1. 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의 번역	312
(1) 사전상의 의미	312
(2) 로카르노 분류 영한 대역본 상의 번역	312
(3) 유럽에서의 설명	312
(4) 이 연구보고서에서의 번역	313
2. 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의 범위	313

(1) 문언상의 의미	313
(2) 기원에 따른 해석	313
3. 비교정물의 배치문제	314
(1) 우리 실무의 규정	314
(2) 외국의 사례	315
(3) 검토	315
4. 조명에 의하여 달라지는 인테리어 디자인	316
(1) 문제되는 경우	316
(2) 검토	316
5. 투명한 요소의 처리	317
(1) 투명한 구성물품을 통해 비쳐지는 부분의 해석	317
(2) 해석의 원칙	318
(3) 실무상 가능한 조치	318
6. 예상 출원 빈도	318
(1) 미국의 사례	318
(2) 유럽의 사례	319
(3) 우리 실무상 예상	319
제 7 장 맺는 말	321
(1) 연구의 목적	323
(2) 외국의 제도 연구	323
(3) 외국의 등록 사례 조사	323
(4) 저작권법과의 관계 연구	324
(5)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	324
(6) 소결	325
<참고자료>	327

표 목차

[표 1] 보호대상 확대 개정 관련 조문	6
[표 2] 로카르노 분류(Locarno Classification) 현행 제 9 판(9th edition)	9
[표 3] 인테리어 업계의 규모(단위: 억원)	17
[표 4] 국내 전자산업 생산 현황(단위: 백만원)	18
[표 5] 실내 건축 중 주 특기공정별 실적 분석	18
[표 6] 실내 건축 대상 공간별 비율(단위: 백만원)	20
[표 7] 주거 공간 디자인의 예	22
[표 8] 상업 공간 디자인의 예	23
[표 9] 업무 공간 디자인의 예	24
[표 10] 숙박 공간 디자인의 예	25
[표 11] 보건 복지 공간 디자인의 예 (제주대학병원)	25
[표 12] 교육 연구 공간 디자인의 예	26
[표 13] 체육 위락 공간 디자인의 예	26
[표 14] 관람 집회 공간 디자인의 예	27
[표 15] 전시 공간 디자인의 예	27
[표 16] 운수 시설 공간 디자인의 예	28
[표 17] moving wall 에 의하여 변화하는 디자인	28
[표 18]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물품) 관련 규정	29
[표 19] 법과 시행규칙 상의 보호대상 관련 규정	30
[표 20] 현행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상의 물품의 구분[별표 4]	31
[표 21] 현행 심사기준 상의 물품성	32
[표 22] 아파트 정착물 관련 디자인 등록 예	34
[표 23] 교량 관련 디자인 등록 예	35
[표 24] 한증막 관련 디자인등록 예	36
[표 25] 특허법원에서 물품성 결여로 무효로 된 한증막 디자인 등록	37
[표 26] 미국특허법(35 U.S.C.)상 디자인 관련 특별규정	44
[표 27] USPC 중 디자인 분류	49
[표 28] 건물 등 부동산의 전체 및 부분디자인에 관한 디자인특허	51
[표 29] 건물 등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특허	52
[표 30] 디자인특허 침해의 특유한 배상의무	59
[표 31] 유로로카르노 분류 현행 제 9 판 (2009.01.)	69
[표 32]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등록공동체디자인	70
[표 33] 설계도면(Architects' plan)에 관한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	71
[표 34]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	72

[표 35] CDR 제 25 조(1)에 따른 무효사유	74
[표 36] 채색 여부에 따른 전체적인 인상에 관한 OHIM 심판 사례	92
[표 37] 보호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특징만을 강조하는 예	93
[표 38] 일부포기를 통해 권리가 유지되거나 힘들 것으로 보이는 예	95
[표 39] USPC D25 의 주요분류	105
[표 40] 건물관련 주요 미국디자인특허분류에서의 검색건수	121
[표 41] 건축물 관련 미국 디자인특허 예시	133
[표 42] 다양한 분류와 명칭의 인테리어 디자인	137
[표 43] 서로 다른 복수 대분류에 분류된 디자인의 예	139
[표 44] 유로로카르노 제 32 류와 제 99 류에 포함된 인테리어 디자인들	149
[표 45] 연도별 유로로카르노 분류 제 25.03 류에 등록된 디자인 수	169
[표 46] 유로로카르노 제 25.03 류에 포함된 인테리어 디자인들	170
[표 47] 헤이그 시스템 기초검색 결과	186
[표 48] 연도별 저작물 종류별 등록건수 (2009 년 12 월 31 일 현재)	198
[표 49] 연도별 분야별 조정 건수(2009 년 7 월 22 일 이전)	199
[표 50] 저작물 종류별 분쟁율(2009.12.31)	200
[표 51] Shine '99 사건에서의 건축저작물과 Freedom Tower	238
[표 52] 이면이 무모양인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관한 판례	281
[표 53] 보호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특징만을 강조하는 예	294
[표 54] 현행법상 디자인의 유사판단	298

그림 목차

[그림 1] 인테리어 업계의 규모(단위: 억원)	17
[그림 2] 실적 액수 기준 시공분야별 실적	19
[그림 3] 실적 건수 기준 시공분야별 실적	19
[그림 4] 실내 건축 대상 공간별 비율	20
[그림 5] 소노펠리체 객실	22
[그림 6] 가정용 멀티미디어 룸	22
[그림 7] 욕실(해비치 호텔)	22
[그림 8] 타워팰리스 주방	22
[그림 9] 타워팰리스 거실	22
[그림 10] 타워팰리스 거실	22
[그림 11] 타워 팰리스 식당	22
[그림 12] 타워 팰리스 거실	22
[그림 13] 소노펠리체 피트니스 센터	23
[그림 14] 프라자 호텔 부페식당	23
[그림 15] 서울스퀘어 1층 로비	23
[그림 16] 씨랄라(sealala) 푸드코트	23
[그림 17] 프라자 호텔 중식당	23
[그림 18] 프라자 호텔 일식당	23
[그림 19] 반얀트리 연회홀	23
[그림 20] 셰라톤 워커힐 일식당	23
[그림 21] 사무실 리셉션	24
[그림 22] 사무실 레이아웃	24
[그림 23] 회의실	24
[그림 24] 프라자 호텔 리셉션	24
[그림 25] 프라자 호텔 1층 출입구	24
[그림 26] 프라자 호텔 라운지	24
[그림 27] 반얀트리 엘리베이터 홀	24
[그림 28] 서울 아난티 클럽 지하1층	24
[그림 29] 시애틀 도서관의 서고/열람실	26
[그림 30] 시애틀 도서관의 서고/열람실	26
[그림 31] 그룹 연수원 “경주 드림센터”	26
[그림 32] 그룹 연수원 “경주 드림센터”	26
[그림 33] 어린이 놀이터 baroque	26
[그림 34] 씨랄라(sealala) 비데 폴	26

[그림 35] 반얀트리 수영장	26
[그림 36] 웨라톤 워커힐 실내 수영장	26
[그림 37] 신세계 센텀시티 문화홀	27
[그림 38] 고양 아람누리 공연장	27
[그림 39] 국립중앙박물관	27
[그림 40] 국립중앙박물관	27
[그림 41] 상하이 엑스포 Theme Pavilion	27
[그림 42] 센텀시티 아트리움	27
[그림 43] 인천국제공항	28
[그림 44] 인천국제공항	28
[그림 45] moving wall 설치상태	28
[그림 46] moving wall 제거 상태	28
[그림 47] 반대편	28
[그림 48] 사설 통계에 따른 건축/인테리어 관련 저작물 등록경향	200
[그림 49] 건축저작물의 권리자 분석	202
[그림 50] 공동주거물의 건축저작권 소유	202
[그림 51] 기타 건축물의 건축저작권 소유	203
[그림 52] 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 등록형태	204
[그림 53] 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 소유 형태	204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서론

1. 현행 제도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은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 951호로 새로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발전해왔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¹을 가지고 있다.

(1) 디자인 보호법상 물품성

이를 위하여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물품[물품의 부분(제 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²을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이 정의에 합당한 디자인으로서, 신규성과 창작 비용이성을 가지는 것을 등록하여 보호하고 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³고 하여, 도면 등에 기재된 외관과 함께, 출원서에 기재된 물품에 한정된 범위로 보호된다. 즉, 디자인의 보호범위에는 물품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2) 물품성의 변화

디자인보호법 제정 이후, 디자인의 보호범위가 되는 물품의 범위는 업계의 필요성에 따라 확대 변화되어왔다.

1997년법⁴까지는 물품은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만이

¹ 디자인보호법 제1조

²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

³ 디자인보호법 제43조

⁴ 1997.8.22 개정 법률 제5354호

보호되어왔다. 2001 년법⁵에서는 물품전체의 디자인이 아닌 부분의 디자인도 보호되도록, 물품의 부분도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물품의 정의가 개정되었다.

이에 더하여, 2004 년법⁶에서는, 글자체도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물품의 정의가 개정되었다. 글자체 자체는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으로 볼 수는 없으나,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달리 보호범위에 포함시킬 방도가 없어 글자체 자체를 물품으로 의제하여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이 물품의 정의를 개정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품의 정의 내에서 심사기준을 개정함으로써, 2003 년 7 월 1 일부터 화상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 화상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이에 표현되는 화상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서 출원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제도 변화의 요구

(1) 디자인 업계의 상황에 맞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이 이와 같이 확대되어 온 것은,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이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업계의 현실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즉, 디자인의 창작이라는 지적 노력이 투입되는 대상이 시대에 따라 변화됨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 또한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2) 디자인 산업의 확장과 인테리어 디자인

과거 전통적인 제조산업에서의 디자인은, “공산품”으로 표현되는 제품에 대한 디자인, 특히 그 외부에서 보여지는 외형의 디자인만이 주된 관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디자인의 창작이라는 지적 노고는 반드시 이러한 공산품에 한정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정형화된 외형을 벗어나 독창적인 미적 창작의 결과물인

⁵ 2001.2.3 개정 법률 제6413호

⁶ 2004.12.31 개정 법률 제7289호

건축물이 탄생되고 있고, 그 건물의 실내에 있어서도 미적 가치를 느끼게 하는 창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3) 개정 추진 법령과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물 등의 부동산, 특히 그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대상의 영역에 포섭할 것인가의 문제는, 디자인에 대한 국제분류인 로카르노 분류를 채택하는 로카르노 협정에의 가입과 궤를 같이 하여 검토되고 있다.

제2절 보호대상으로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포함하는 내용

1. 해당 조문의 대비

[표 1] 보호대상 확대 개정 관련 조문

현행법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글자체 및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생략>
제9조(디자인등록출원) ①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생략>	제9조(디자인등록출원) ①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류의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류의 구분(이하 “그 물품류의 구분”이라 한다)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생략>	②제1항에 따른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물품류의 구분 <생략>

이러한 개정안 제 2 조에서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에서 정하는 것 또한 물품으로 볼 것으로 하고 있다. 즉,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물품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한다는 것이다.

출원서의 형식에 관하여 개정안에서는, 출원시에 출원서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아울러 그 물품류의 구분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행법

하에서는 출원인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기재⁷하면 그 물품류구분에 따라 출원된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의 분류를 정하여 공고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물품류구분의 선정과 기재를 출원인의 권리/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⁸이다.

2. 개정안에 따른 물품의 대상의 확대

(1) 로카르노 분류의 채용

개정안⁹에서는, 우리 법의 시행규칙에 따른 물품분류 외에도,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¹⁰」¹¹에서 정하는 것이면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로카르노 협정은 1968 년 체결되었으며 1979 년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0.01.01. 현재 로카르노 협정에 가입된 국가는 51 개국¹²이고, 5 개의 국제기관¹³에서 로카르노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로카르노 협정에 따라 제정된 산업디자인의 분류를 국제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또는 로카르노 분류(Locarno classification)라 한다. 디자인을 구현하는 상품이 속하는 로카르노 분류의 대분류(class)와 소분류(subclass)의

⁷ 현행법 제9조제1항제4호

⁸ 개정안 제2조에서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에서 정하는 것 또한 물품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물품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하고 그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물품류구분을 기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⁹ 개정안 제2조제1호

¹⁰ 원문은 <http://www.wipo.int/treaties/en/classification/locarno/> 참고

¹¹ 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

¹² Argentina, Armenia, Austria, Azerbaijan, Belarus, Belgium, Bosnia and Herzegovina, Bulgaria, China, Croatia, Cuba, Czech Republic,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Guinea,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Kazakhstan, Kyrgyzstan, Latvia, Malawi, Mexico, Moldova, Mongolia, Montenegro, Netherlands, Norway, Romania, Russian Federation, Serb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ajikista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rinidad and Tobago, Turkey, Turkmenistan, Ukraine, United Kingdom, Uruguay, Uzbekistan

¹³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the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 the 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RIPO), the Benelux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BOIP) and the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Trade Marks and Designs) (OHIM)

분류번호를 그 기탁 또는 등록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¹⁴이 로카르노 협정의 요지이다.

로카르노 분류는 행정적인 특징만을 가지며, 체약국으로 하여금 산업디자인에 부여되는 보호의 속성과 범위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각 체약국은 이 분류에 적당한 법률적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¹⁵. 즉,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물품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체약국의 자유에 따른다¹⁶.

로카르노 분류는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며, 5 년마다 개정판이 공표된다¹⁷. 현재 로카르노 분류는 제 9 판이 2009.01.01.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 9 판에서는 32 류의 대분류와 219 개의 소분류로 하여 7,024 개의 물품을 표시하고 있다.

아래에, 현행 로카르노 분류(제 9 판)의 대분류를 표로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분류에서는 전통적인 공산품의 분류로 파악¹⁸ 될 수 있는데, 이 중 특히 인테리어 디자인과 관련된 분류는 제 25 류(Building Units and Construction Elements)와 제 32 류(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에 관련된다.

¹⁴ 로카르노 협정 제2조(3) The Offices of the countries of the Special Union[주: 체약국] shall include in the official documents for the deposit or registration of designs, and, if they are officially published, in the publications in question, the numbers of the classes and subclasses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into which the goods incorporating the designs belong.

¹⁵ 로카르노 협정 제2조(1) Subject to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is Agreement,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hall be solely of an administrative character. Nevertheless, each country may attribute to it the legal scope which it considers appropriate.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hall not bind the countries of the Special Union as regards the nature and scope of the protection afforded to the design in those countries.

¹⁶ 호주는 로카르노 협정의 체약국이지만 글자체를 보호하지 않는다.

¹⁷ 이 개정은 로카르노 협정에서 정한 전문가 협의회(Committee of Experts)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체약국은 전문가 협의회에 참가한다.

¹⁸ 제1류 식료품 (Class 1 Foodstuffs) 내에는 “과일과 야채(fruits and vegetables)”(subclass 01-02)라는 이색적인 물품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과일과 야채를 자연물인 상태의 형태로 보호받는다라는 뜻이라기 보다는, 공업적으로 가공된 상태의 과일과 야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표 2] 로카르노 분류(Locarno Classification) 현행 제9판(9th edition)

Classes	INDICATION OF GOODS	
Class 1	FOODSTUFFS	
Class 2	ARTICLES OF CLOTHING AND HABERDASHERY	
Class 3	TRAVEL GOODS, CASES, PARASOLS AND PERSONAL BELONGINGS, NOT ELSEWHERE SPECIFIED	
Class 4	BRUSHWARE	
Class 5	TEXTILE PIECEGOODS, ARTIFICIAL AND NATURAL SHEET MATERIAL	
Class 6	FURNISHING	
Class 7	HOUSEHOLD GOODS, NOT ELSEWHERE SPECIFIED	
Class 8	TOOLS AND HARDWARE	
Class 9	PACKAGES AND CONTAINERS FOR THE TRANSPORT OR HANDLING OF GOODS	
Class 10	CLOCKS AND WATCHES AND OTHER MEASURING INSTRUMENTS, CHECKING AND SIGNALLING INSTRUMENTS	
Class 11	ARTICLES OF ADORNMENT	
Class 12	MEANS OF TRANSPORT OR HOISTING	
Class 13	EQUIPMENT FOR PRODUCTION, DISTRIBUTION OR TRANSFORMATION OF ELECTRICITY	
Class 14	RECORDING, COMMUNICATION OR INFORMATION RETRIEVAL EQUIPMENT	
Class 15	MACHINES, NOT ELSEWHERE SPECIFIED	
Class 16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AND OPTICAL APPARATUS	
Class 17	MUSICAL INSTRUMENTS	
Class 18	PRINTING AND OFFICE MACHINERY	
Class 19	STATIONERY AND OFFICE EQUIPMENT, ARTISTS' AND TEACHING MATERIALS	
Class 20	SALES AND ADVERTISING EQUIPMENT, SIGNS	
Class 21	GAMES, TOYS, TENTS AND SPORTS GOODS	
Class 22	ARMS, PYROTECHNIC ARTICLES, ARTICLES FOR HUNTING, FISHING AND PEST KILLING	
Class 23	FLUID DISTRIBUTION EQUIPMENT, SANITARY, HEATING, VENTILATION AND AIR-CONDITIONING EQUIPMENT, SOLID FUEL	
Class 24	MEDICAL AND LABORATORY EQUIPMENT	
Class 25	BUILDING UNITS AND CONSTRUCTION ELEMENTS	
Class 26	LIGHTING APPARATUS	
Class 27	TOBACCO AND SMOKERS' SUPPLIES	
Class 28	PHARMACEUTICAL AND COSMETIC PRODUCTS, TOILET ARTICLES AND APPARATUS	
Class 29	DEVICES AND EQUIPMENT AGAINST FIRE HAZARDS, FOR ACCIDENT PREVENTION AND FOR RESCUE	
Class 30	ARTICLES FOR THE CARE AND HANDLING OF ANIMALS	
Class 31	MACHINES AND APPLIANCES FOR PREPARING FOOD OR DRINK, NOT ELSEWHERE SPECIFIED	
Class 32	GRAPHIC SYMBOLS AND LOGOS, SURFACE PATTERNS, ORNAMENTATION	
	32-00	Get-up / Get-up [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 / Graphic designs [two-dimensional] / Graphic symbols / Graphic symbols [comic figures] / Logos / Ornamentation / Surface patterns
Class 99	Miscellaneous	

(2) 건물(Building Units)

로카르노 분류 제 25 류¹⁹는, 건축자재(25-01)²⁰, 조립식 건물부분(25-02)²¹, 집/창고/기타 건물(25-03)²², 계단 등(25-04)²³, 기타(25-99)²⁴ 등의 5 개의 소분류(subclass)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특히, 집이나 창고와 같은 건물 자체가 물품에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우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의 속성으로 동산이어야 할 것을 심사기준에서 요구하고 있었고, 따라서, 동산으로 볼 수 없는 건물의 외관은 부분이건 전체 디자인이건 보호되지 못하였다²⁵. 그러나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물품을 적법한 물품으로 인정하게 되면 건물 등 부동산의 외관도 등록 받아 보호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그 건물의 내부로서 인테리어도 보호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3) 로카르노 분류 제 32 류의 채용 과정

그래픽 심볼, 로고, 표면문양, 장식 등을 정의하는 로카르노 분류 제 32 류는 제 8 판 이후 제 9 판의 개정과정에서 도입된 것이다. 이 제 32 류의 도입에는 덴마크와 영국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덴마크는 제 99 류(Miscellaneous)에 차림새(Get-up), 인테리어 디자인(Interior design) (또는 실내, 매점, 기차 등의 내부 배열²⁶), 장식(Ornamentation), 그래픽 심볼과 로고(graphic symbols and logos)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²⁷. 로카르노 협정에 가입하여 로카르노 분류를 포함한 유럽식의 로카르노 분류(Eurolocarno classification)를 분류체계로 구성한 유럽연합의 분류 상에 이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로카르노 분류 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하고 있다.

¹⁹ Class 25: Building Units and Construction Elements

²⁰ 25-01 Building materials

²¹ 25-02 Prefabricated or pre-assembled building parts

²² 25-03 Houses, garages and other buildings

²³ 25-04 Steps, ladders and scaffolds

²⁴ 25-99 Miscellaneous

²⁵ 다만, 부동산이라도 다량생산이 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예: 방갈로, 공중전화박스, 이동판매대, 방법초소, 승차대, 이동화장실, 조립가옥 등) - 2010.01.01. 시행 디자인심사기준 제2조제1항제1호"가"목

²⁶ arrangement of a room, shop, train etc.

²⁷ 2005.11.14.~18. 전문가 협의회 제9차 회기 회의록 Annex II 참고
http://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47120

이와 유사한 제안은 영국에 의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제안되었다²⁸. 영국은, 로고, (2 차원) 그래픽 디자인, 포장용 그래픽 디자인, 의류에 적용되는 로고, 표면에 적용되는 장식, 표면문양(surface patterns)등 다양한 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2차원 디자인을 로카르노 분류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98/71/EC²⁹는 유럽동맹국은 “디자인”의 개념에 장식(ornamentation)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산업디자인을 위한 로카르노 분류에는 적당한 분류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제 99 류에 넣을 수 없으면 새로운 대분류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고, 이들 2차원 디자인은 제 8 판의 제 99 류(기타)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별도의 제 32 류로 하여 분류하게 된 것이다.

(4) Get-up; 인테리어와 포장 디자인의 보호

이러한 과정을 통해 로카르노 분류에 채택된 제 32 류에는, 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이하, “인테리어 디자인”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Get-up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옷차림 등 어떠한 대상의 차림새를 말한다³⁰. 그런데, 이러한 get-up이라는 표현은, 유럽의 공동체디자인 규정(CDR)³¹ 제 3 조(b)에서 유래되어 로카르노 분류에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get-up의 정확한 의미는 유럽에서의 실무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다.

공동체디자인 규정(CDR) 제 3 조(b)³²는 「“제품”이란 여하한 산업적 또는 수공업적 물품을 말하며, 특히 복합제품에 조립되는 제품, 포장, 차림새(get-up), 그래픽 심볼, 및 글자체를 포함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포함하지 않는다」³³라고 하고 있다.

²⁸ 2005.11.14.~18. 전문가 협의회 제9차 회기 회의록 Annex VI 참고
http://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47120

²⁹ Directive 98/7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designs;

³⁰ Get-up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옷차림 등 어떠한 대상의 차림새를 말한다.

³¹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n Community designs (흔히, Community Design Regulation이라고 하고, 줄여서 CDR이라고 한다)

³² CDR Article 3(b) “product” means any industrial or handcraft item, including inter alia parts intended to be assembled into a complex product, packaging, get-up, graphic symbols and typographic typefaces, but excluding computer programs;

³³ 이러한 CDR 제3조(b)의 규정은, 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98/71/EC의 규정 제1조(b)를 그대로 따온 것이다.

OHIM 디자인부서 책임자³⁴의 설명에 따르면, 유럽 실무에서 *get-up* 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³⁵. 첫째로는 미국식 표현인 *trade-dress* 를 유럽식으로 표현한 것이 *get-up* 이라는 것이다. 즉, 건물의 인테리어, 버스나 비행기의 좌석 배치나 인테리어, 영업점의 내·외부 인테리어 등이 *get-up* 에 해당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비닐 포장(*plastic wrapping*)³⁶으로 덮인 제품의 전체적인 외관(*appearance*)³⁷을 말하는 것이다. 즉, 아이스크림 용기의 외관, 우유팩의 외관 등이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것³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로카르노 분류 제 32 류에 포함된 “*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은 건물이나 영업점의 내·외부 인테리어를 특히 가리키고, 그 외 “*get-up*”은, 서비스에 사용되는 물건의 집합이나 거래대상이 되는 제품의 포장(*packaging*) 등에서 타인의 것과 구분되는 시각적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³⁹.

³⁴ Christophe GIMENEZ, Legal adviser, Examination coordination; OHIM Designs department

³⁵ 유럽 디자인실무자 전체에서 통일적으로 정의를 규정하기는 힘들다고 한다.

³⁶ 제품을 담는 용이 등이 주로 비닐 커버가 코팅된 것에 비유하는 것으로, 반드시 비닐로 된 포장재에 담겨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³⁷ 형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나 색채가 결합된 것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³⁸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거래대상이 되는 제품의 포장 등에서

³⁹ 그 물건 집합이나 제품 포장의 외관 전체가 아닌 부분을 디자인등록 받을 수 있으므로, 포장의 외관에 사용되는 아이콘 등의 형태로 등록되는 경우도 많다.

제3절 연구의 방향

1. 인테리어 디자인 현황 및 현행법상의 보호

(1) 인테리어 업계의 현황

먼저 인테리어 업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으로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포섭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검토해보기로 한다.

(2) 인테리어 디자인의 현행법 상의 보호실태

건축물과 인테리어에 관하여는, 이들은 저작권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거나 또는 보호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생긴다. 현행 저작권법 및 그 실무상 건축물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디자인보호법상 인테리어 디자인이 보호대상에 포섭되는 경우 충돌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현행 디자인보호법상 건물과 인테리어 디자인의 취급에 관하여 살펴보고, 관련된 판례를 살펴본다.

2. 주요국에서의 인테리어 디자인 실무 연구

건물 등의 인테리어를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것이 유래가 없는 것이 아닌지가 염려된다. 이에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의 디자인특허와 유럽의 등록공동체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등록실태를 조사하고, 출원/등록 실무에 관하여 검토한다.

3. 인테리어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법률구성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포섭하는 법률 구성,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의 다양한 양태와 보호방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개정안에서는, 로카르노 분류를 도입하여 디자인을 정의함으로써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포섭하는 것에 관하여, 입법론상 가장 바람직한 입법인지 혹은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새로이 포섭될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그 디자인의 대상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즉, 인테리어 디자인을 무엇⁴⁰의 내부설계로 볼 것인지, 건물의 임의의 내부로 할 것인지 또는 특정한 분류의 공간⁴¹으로 할 것인지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인테리어 디자인의 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검토한다.

한편, 로카르노 분류상 건물도 보호대상이므로 건물도 우리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 인테리어는 건물의 부분디자인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가능성과 취급에 관하여 검토한다.

4.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출원/등록 특수 실무 필요성 검토

현행법은 공산품의 외관을 엄두에 두고 설계되었다⁴². 이에 대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은, 건물이라는 객체의 내부를 보호하게 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실무상의 변화가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검토한다. 예를 들어 도면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또한, 각종 등록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상 정비할 사항은 없는지 검토한다. 특히, 유사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새로이 규정할 사항은 없는지 검토한다. 한편, 설계도는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 디자인보호법상 설계도와 건축인테리어 디자인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아울러, 대량생산되는 공산품의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모델을 컴퓨터 등으로 모의 제작하는 등 제품의 출시에 앞서 디자인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건축/인테리어 업계의 경우 시공 중 설계의 변경 등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즉, 최종 시공이 완성되어야 구체적으로 그 인테리어가 확정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를 위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⁴⁰ 전통적인 의미의 건물로만 한정할 것인지, 풍력발전기 등 기타의 대형 축조물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볼 것인지 등

⁴¹ 예를 들어, 로카르노 분류상 interior of a “room”에 따라 우리 개념상 “방”, “실”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닫힌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등

⁴² 예를 들어, 2010년 개정 전 시행규칙 상의 정투상도법상의 6면도를 도면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제2장 인테리어 디자인의 현황 및 현행법상의 보호

제2장 인테리어 디자인 현황 및 현행법상 보호

제1절 건축/인테리어 디자인 업계의 현황

1. 업계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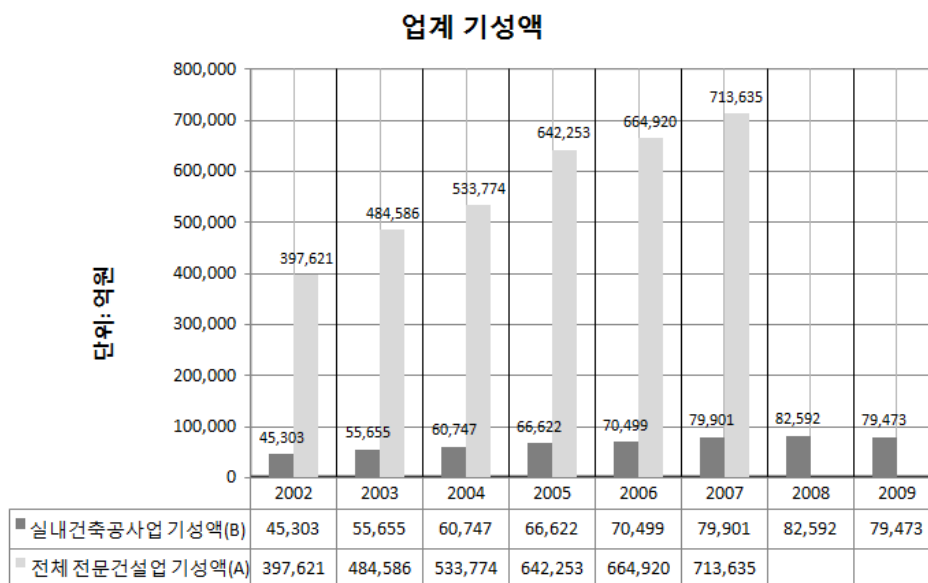
(1) 시공 실적 규모

아래에 최근 수년간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의 시공실적을 조사하였다⁴³.

[표 3] 인테리어 업계의 규모(단위: 억원)

년도	전체 전문건설업 기성액(A)	실내건축공사업 기성액(B)	B/A(%)	실내건축공사업 업체수(C)	평균 기성실적 (B/C)
2002	397,621	45,303	11.4	2,873	15.8
2003	484,586	55,655	11.5	2,969	18.7
2004	533,774	60,747	11.4	3,149	19.3
2005	642,253	66,622	10.4	3,374	19.70
2006	664,920	70,499	10.6	3,526	20.00
2007	713,635	79,901	11.2	3,750	21.30
2008		82,592			
2009		79,473			

[그림 1] 인테리어 업계의 규모(단위: 억원)



⁴³ 실내건축공사업협회, 2009.09.30자 “실내 건축공사업계의 현황과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및 2006.04.01자 “실내건축공사업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서 발췌 정리.

전문건설업 전체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각각 최근 8년간 사업액이 약 2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의 규모는 70조를 상회하고 있으며, 실내건축공사의 비중은 10%를 상회하는 약 8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자부품 생산액(2003년 기준 40조원)의 10%를 상회하는 금액이다. 단순한 수치로 비교하자면, 전문건설업 분야의 규모는 전자부품 분야와 대등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표 4] 국내 전자산업 생산 현황(단위: 백만원)⁴⁴

구분	2000	2001	2002	2003(추정)
산업용 기기	34,879,922	42,899,877	47,396,102	56,022,000
전자부품	56,130,859	30,172,833	37,880,988	40,987,000
가정용 기기	17,626,521	20,215,135	22,003,939	23,412,000
전체	108,637,302	93,287,845	107,281,029	120,422,000

자료 : 2003 디지털 전자정보산업 통계, 한국전자산업진흥회, 2004.3.

(2) 실내 건축 중 순수 인테리어 시공의 비중

아래는 2007년과 2009년에 실내 건축 시공 실적 중 특기 공정별 실적을 분석한 것이다. 목공사 및 목재창호 공사, 칸막이 공사, 및 기타 공사를 제외한 순수 인테리어 공사는 전체 실내 건축 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실내 건축 중 주 특기공정별 실적 분석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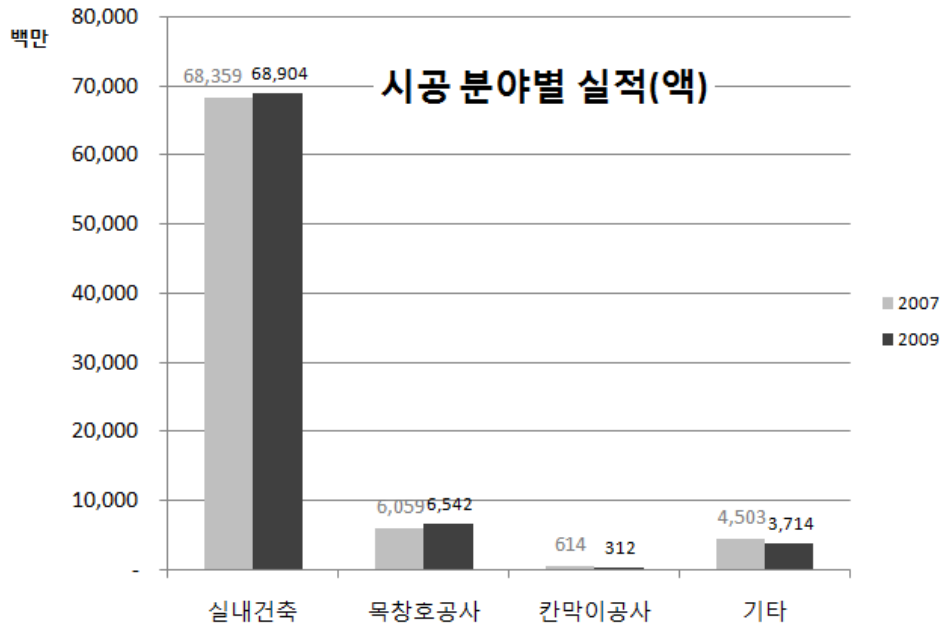
	실내건축		목창호공사		칸막이공사		기타		기타	
년도	건수	액수	건수	액수	건수	액수	건수	액수	건수	액수
2007	66,246	68,359	3,057	6,059	1,604	614	6,206	4,503	77,113	79,534
2009	75,807	68,904	3,009	6,542	951	312	5,960	3,714	83,481	79,473

아래에, 실적 액수와 실적 건수를 기준으로 특기공정별 실적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어느 기준으로 보거나, 순수 실내건축에 해당하는 실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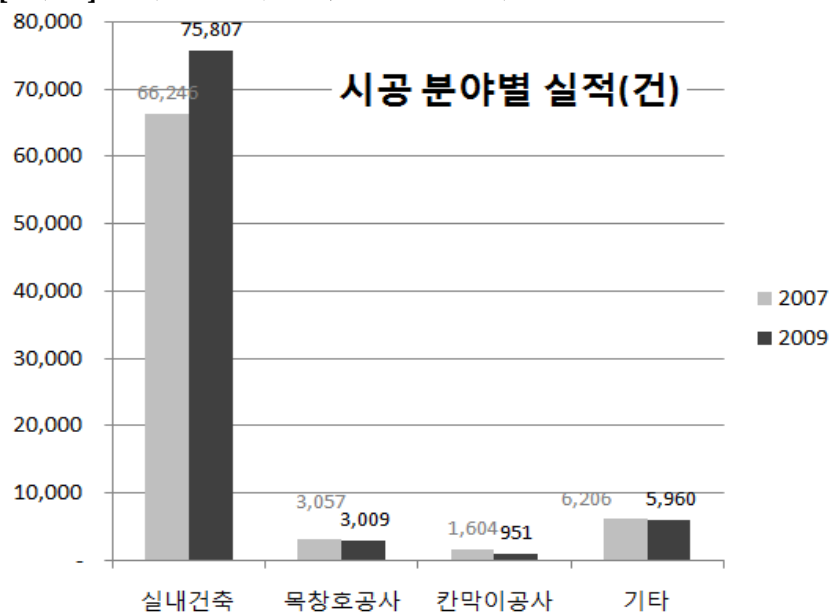
⁴⁴ 특별리포트 “IT839 성장동력별 하드웨어 체계 및 핵심부품” 제; 시스템-반도체 포럼; <http://www.ssforum.org/business/file/itmagazine03Special%20Report.pdf>

⁴⁵ 실내건축공사협회, 2009.09.30자 “실내 건축공사업계의 현황과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제15면

[그림 2] 실적 액수 기준 시공분야별 실적



[그림 3] 실적 건수 기준 시공분야별 실적



(3) 실내 건축 대상별 실적 규모

실내 건축 업계에서 주로 시공하게 되는 대상 공간은,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거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시공이 30% 이상으로서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오피스 등 업무공간(약 17%)과 쇼핑몰 등 상업공간(약 11%)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3 공간에 대한 비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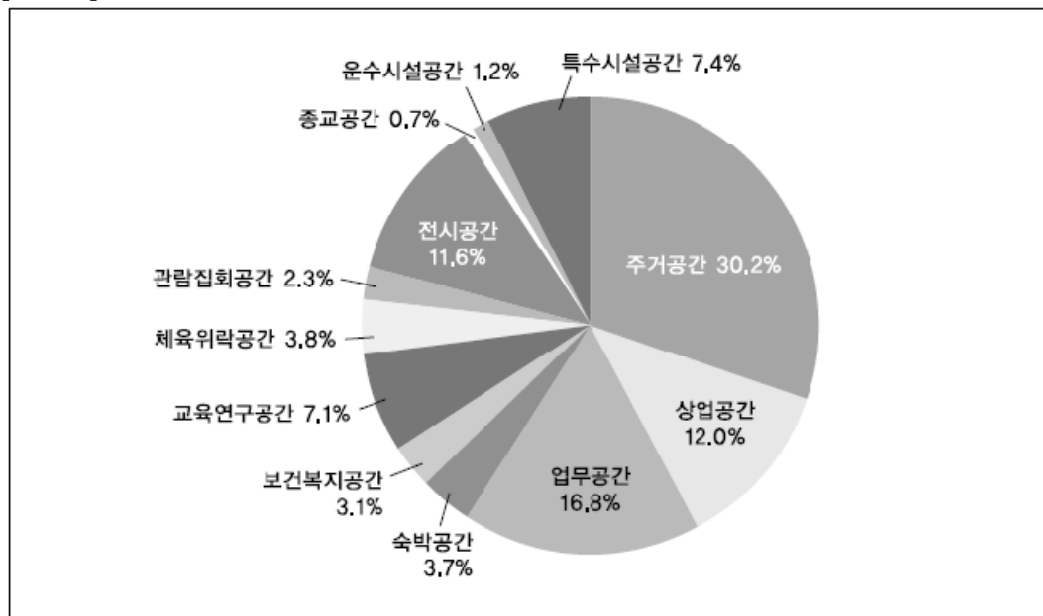
합하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실내 건축 대상 공간별 비율(단위: 백만원)⁴⁶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증감률	금액	구성비	증감률
주거공간	2,332,497	35.3	2,227,364	31.8	-4.5	2,412,663	30.2	8.3
상업공간	738,314	11.2	800,676	11.4	8.4	959,440	12.0	19.8
업무공간	1,126,402	17.0	1,191,419	17.0	5.8	1,336,837	16.8	12.2
숙박공간	165,361	2.5	224,832	3.2	36.0	295,893	3.7	31.6
보건복지공간	165,156	2.5	179,612	2.6	8.8	246,967	3.1	37.5
교육연구공간	408,249	6.2	470,686	6.7	15.3	559,263	7.1	20.9
체육위락공간	211,120	3.2	262,575	3.7	24.4	304,924	3.8	16.1
관람집회공간	172,462	2.6	191,443	2.7	11.0	180,330	2.3	-5.8
전시공간	620,321	9.4	800,729	11.4	29.1	928,143	11.6	15.9
종교공간	45,803	0.7	48,769	0.7	6.5	56,308	0.7	15.5
운수시설공간	81,204	1.2	70,949	1.0	-12.6	96,324	1.2	35.8
특수시설공간	540,466	8.2	535,939	7.7	-0.8	591,982	7.4	10.5
합계	6,607,355	100.0	7,004,993	100.0	6.0	7,979,074	100.0	13.9

주 : 증감률은 전년대비임. 이하 동일

[그림 4] 실내 건축 대상 공간별 비율



⁴⁶ 실내건축공사협회, 2009.09.30자 “실내 건축공사업체의 현황과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제25면

이러한 점유율은, 인테리어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될 경우에, 분쟁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비율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4) 정리

위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기초로 볼 때, 전문건설업 분야 전체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산업 분야의 규모도 매우 커서⁴⁷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 정도로 판단된다. 이러한 규모를 고려하여, 2008 년 2 월, 통계청은 실내건축업을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정,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기준에 포함시켰다⁴⁸.

한편, 인테리어 산업에서의 주된 시공은 목공사나 칸막이 공사 등 “디자인”의 속성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 시공적인 사업보다는, 인테리어 시공 자체에 대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는 인테리어 산업에 지엽적인 영향이 아닌 중요하고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기대된다.

2. 인테리어 디자인의 예

아래에서는, 업계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취급되는 예⁴⁹를 사진으로 도시하였다. 아래의 디자인은 현행 디자인보호법상으로는 보호되지 못하나, 인테리어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편입되는 경우 보호의 객체가 될 자격을 갖춘 대상들이다.

⁴⁷ 최근 10년 정도 동안 실내 건축 공사업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⁴⁸ 실내건축공사협회, 2009.09.30자 “실내 건축공사업계의 현황과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서문

⁴⁹ 이 예들은, 실내건축공사협회 협회지에 수록된 자료들에서 발췌한 것들이다.

(1) 주거 공간

[표 7] 주거 공간 디자인의 예

[그림 5] 소노펠리체 객실 	[그림 6] 가정용 멀티미디어 룸 
[그림 7] 욕실(해비치 호텔) 	[그림 8] 타워팰리스 주방 
[그림 9] 타워팰리스 거실 	[그림 10] 타워팰리스 거실 
[그림 11] 타워 팰리스 식당 	[그림 12] 타워 팰리스 거실 

(2) 상업 공간

[표 8] 상업 공간 디자인의 예

[그림 13] 소노펠리체 피트니스 센터 	[그림 14] 프라자 호텔 부페식당 
[그림 15] 서울스퀘어 1층 로비 	[그림 16] 씨랄라(sealala) 푸드코트 
[그림 17] 프라자 호텔 중식당 	[그림 18] 프라자 호텔 일식당 
[그림 19] 반얀트리 연회홀 	[그림 20] 셰라톤 위커힐 일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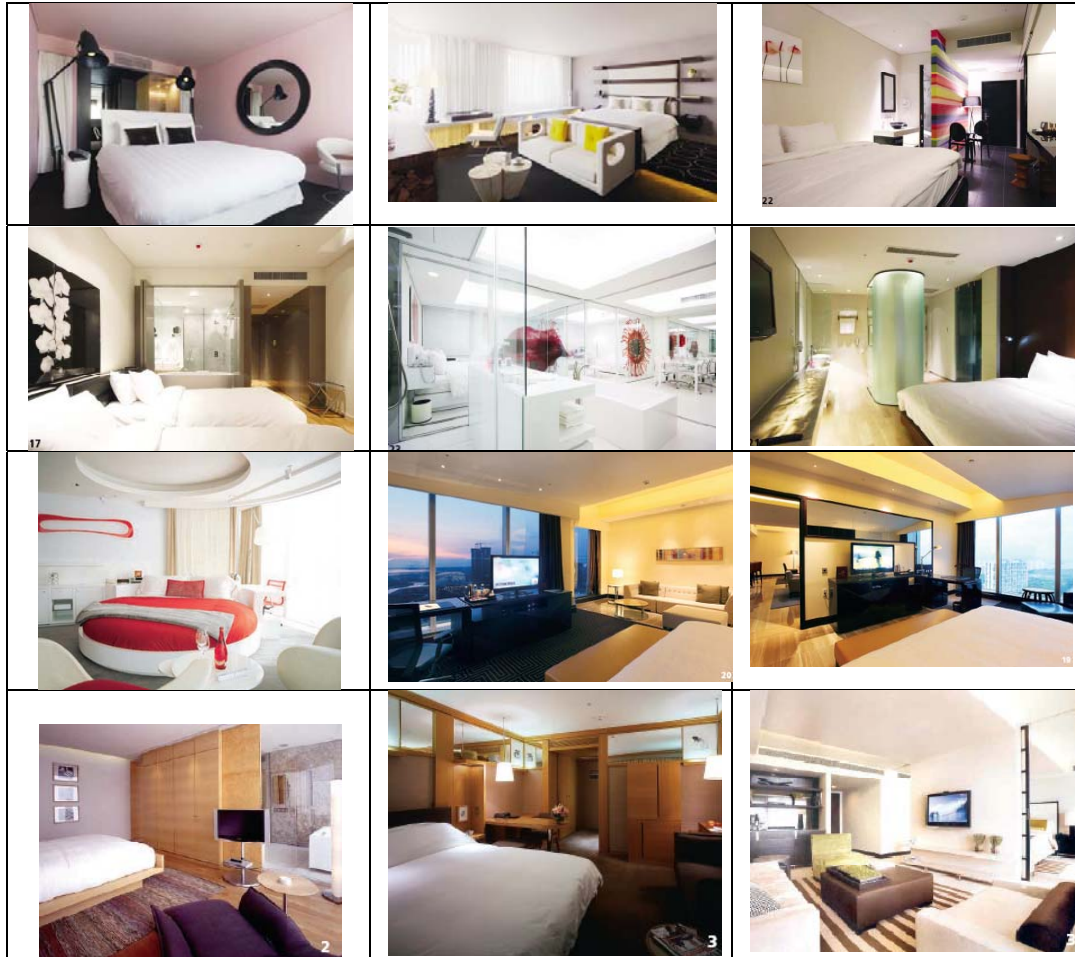
(3) 업무 공간

[표 9] 업무 공간 디자인의 예

[그림 21] 사무실 리셉션 	[그림 22] 사무실 레이아웃 
[그림 23] 회의실 	[그림 24] 프라자 호텔 리셉션 
[그림 25] 프라자 호텔 1층 출입구 	[그림 26] 프라자 호텔 라운지 
[그림 27] 반얀트리 엘리베이터 홀 	[그림 28] 서울 아난티 클럽 지하1층 

(4) 숙박 공간

[표 10] 숙박 공간 디자인의 예



(5) 보건복지 공간

[표 11] 보건 복지 공간 디자인의 예 (제주대학병원)



(6) 교육 연구 공간

[표 12] 교육 연구 공간 디자인의 예



(7) 체육 위락 공간

[표 13] 체육 위락 공간 디자인의 예



(8) 관람 집회 공간

[표 14] 관람 집회 공간 디자인의 예



(9) 전시 공간

[표 15] 전시 공간 디자인의 예



(10) 운수 시설 공간

[표 16] 운수 시설 공간 디자인의 예



(11) 공간의 변화 - moving wall (주한 캐나다 대사관)

[표 17] moving wall에 의하여 변화하는 디자인



제2절 건축/인테리어 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의 취급

1. 법률의 규정

여기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 특히 건축물 등의 인테리어에 관한 디자인에 대하여 현행 디자인보호법상의 법률적 규정을 정리하고, 실무상의 취급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디자인보호법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 2 조에서는, 『물품[물품의 부분(제 12 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디자인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물품”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시각성과 심미성을 갖출 것이 도출된다.

[표 18]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물품) 관련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의2.~6. <생략>

제9조(디자인등록출원) ①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생략>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②~⑤<생략>

⑥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한한다. 이 경우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 ⑦<생략>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①<생략> ②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2(복수디자인등록출원) ①<생략> ②복수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상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③<생략> ④<생략>

제1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2)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현행 디자인보호법 상으로는 위와 같이 디자인의 정의 규정은 있으나, 물품의 정의 규정을 직접 도입하고 있지는 않다⁵⁰.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⁵¹하고, 출원시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기재하도록 함⁵²으로써,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상에 정의하고 있다⁵³. 즉,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과 심사기준에서 보충되고 있는 것이다.

보호되는 물품의 구분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로 정의되어 있고, 출원이 가능한 한벌의 물품은 [별표 5]로 규정되어 있다. 별표 4 로 규정된 물품의 구분은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의 일관성 유지와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디자인 물품 상호 간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⁵⁴.

[표 19] 법과 시행규칙 상의 보호대상 관련 규정

제9조(물품의 구분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구분은 별표 4의 범위에서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물품의 구분은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의 일관성 유지와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디자인 물품 상호 간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 2009.12.30>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③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09.12.30, 2011.3.31> 1. 별표 4의 물품의 범위 중 A1류·B1류·B2류·B3류·B4류·B5류·B9류·C1류·C4류·C7류·D1류·F1류·F2류·F3류·F4류·F5류·H5류 및 M1류에 속하는 물품 2.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물품 ④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 4의 물품의 구분상 분류가 동일한 물품으로 한다. <신설 1998.2.23, 2001.6.30, 2005.7.1, 2009.12.30> [제목개정 2011.3.31] [별표 4] 물품의 범위(제9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별표 5] 한 벌 물품의 구분(제9조제2항 관련)

⁵⁰ 개정안에서는,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글자체 및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함으로써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을 보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⁵¹ 디자인보호법 제11조(1디자인1디자인등록출원)제2항

⁵² 디자인보호법 제9조(디자인등록출원)제1항제4호

⁵³ 이와 같이 시행규칙 상에 정의된 물품의 구분에 따라, 무심사디자인등록출원 및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가능한 범위 및 한벌의 물품의 가능한 범위가 정해지고 있다.

⁵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표 20] 현행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상의 물품의 구분[별표 4]

	군	분류[범위]
A	제조식품및기호품	1[제조식품 및 기호품 (무심사)]
B	의복및신변용품	1[의복 (무심사)], 2[복식품 (무심사)], 3[신변용품 (무심사)], 4[가방 또는 휴대용지갑 등 (무심사)], 5[신발 (무심사)], 6[깍연용구 및 점화기], 7[화장용구 또는 이용용구], 9[의복 및 신변용품, 범용부품 및 부속품 (무심사)]
C	생활용품	0[그 밖의 생활용품], 1[침구, 마루 깔개, 커튼 등 (무심사)], 2[실내장식품], 3[청소용구 및 세탁용구 등], 4[가정용 보건위생용품 (무심사)], 5[음식용 용기 및 조리용 용기], 6[음식용구 및 조리용 기구], 7[경조용품 (무심사)]
D	주택설비용품	0[그 밖의 주택설비용품], 1[실내소형정리용구 (무심사)], 2[가구], 3[전구 및 조명기구], 4[냉난방기기 또는 공조환기 기기], 5[주방설비용품 및 위생설비용품]
E	취미오락용품및운동경기용품	0[그 밖의 취미 오락용품 및 운동경기용품], 1[완구], 2[유희오락용품], 3[운동경기용품], 4[악기]
F	사무용품및판매용품	0[그 밖의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 1[교습구, 서화용품 등 (무심사)], 2[필기구, 사무용구 등 (무심사)], 3[사무용지제품, 인쇄물 등 (무심사)], 4[포장지, 포장용 용기 등 (무심사)], 5[광고용구, 표시용구 및 상품진열용구 (무심사)]
G	운수또는운반기계	1[운반, 승강 또는 화물취급용 기계기구], 2[차량], 3[선박], 4[항공기]
H	전기전자기계기구 및통신기계기구	0[그 밖의 전기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 1[기본적 전기소자], 2[회전전기기계, 배전 또는 제어기계기구 등], 3[통신기계기구], 4[음성주파 및 영상주파 기계기구], 5[전자계산기 등 (무심사)]
J	일반기계기구	0[그 밖의 일반기계기구], 1[계량기, 측정 및 측량 기계기구], 2[시계], 3[광학용 기계기구], 4[사무용 기계기구], 5[자동판매기 및 자동서비스기], 6[보안기계기구 등], 7[의료용 기계기구]
K	산업용기계기구	0[그 밖의 산업용 기계기구], 1[공구], 2[어업용 기계기구], 3[농축산용 기계기구, 광산 및 건설기계기구 등], 4[식료가공기계 등], 5[섬유기계 및 재봉기], 6[화학기계기구], 7[금속 및 목재 가공기계 등], 8[동력기계기구, 펌프, 압축기, 송풍기 등], 9[산업용 기계기구 범용부품 및 부속품]
L	토목건축용품	0[그 밖의 토목건축용품], 1[가설공사용품], 2[토목구조물 및 토목용품], 3[조립가옥, 옥외 장비품 등], 4[건축용 구성부재], 5[건구 및 건축용 개구부재], 6[건축용 내외장재]
M	그밖의기초제품	0[그 밖의 기초제품], 1[직물지, 판, 끈 등 (무심사)], 2[배관용 관이음매, 밸브 등], 3[나사, 못, 개폐금속물 등]
N	다른군및 N1 에 속하지 않는 그밖의 물품	0[다른군및 N1 에 속하지 않는 그밖의 물품], 1[글자체]
※ 화상디자인 (무심사)		

2. 심사기준과 실무

(1) 심사기준

앞서 본 바와 같이 “물품”의 속성이나 정의에 관하여 법률에서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나, 이는 심사기준에 의하여 보충되어 왔다. 즉, 현행 심사기준 제 2 조는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라 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⁵⁵고 하여,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대상에서 부동산을 제외하여 왔다.

[표 21] 현행 심사기준 상의 물품성

제2조(디자인의 성립요건) ①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의 정의에 저촉되는 것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디자인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의 정의에 저촉되는 것으로 본다. 1. 디자인의 물품성 :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라 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가. 부동산. 다만, 부동산이라도 다량생산이 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 방갈로, 공중전화박스, 이동판매대, 방법초소, 승차대, 이동화장실, 조립가옥 등 나.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 (예) 기체, 액체, 전기, 광, 열 및 음향 등 다. 粉狀物 또는 粒狀物의 집합으로 된 것 (예) 시멘트, 설탕 등 라. 합성물의 構成各片. 다만, 조립완구의 構成各片과 같이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마.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 (예) 양말의 뒷굽모양, 병주둥이 등 바. 물품자체의 형태가 아닌 것 (예) 손수건 또는 타월을 접어서 이루어진 꽃모양과 같이 상업적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디자인으로서 그 물품 자체의 형태로 볼 수 없는 것 <이하 생략>
--

이러한 심사기준을 정리하면, 토지에 정착되는가의 일반원칙에 따라 부동산 여부를 판단하되, 이러한 기준에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다량생산의 가능성과 이동가능성을 기초로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⁵⁵ 현행 디자인 심사기준 제2조제2항제1호

(2) 출원/등록 실무 원칙

따라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딩과 같은 건물, 교량과 같은 건축물 등은 현행 실무상 등록될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심사기준에 따르면,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물의 외관은 물론, 그 내부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서 등록되거나 보호되고 있지 않다.

다만, 건물 등 부동산의 건축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들은 그 자체가 물품으로서 등록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토지에 정착하게 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다량생산⁵⁶이 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한 경우⁵⁷는 이를 물품으로 인정하여 등록과 보호를 허용하고 있다.

(3) 최근의 경향

최근에는 이러한 기준 상에 비추어 모호한 영역에서 디자인등록이 발견되고 있다. 즉, 다량생산이나 운반가능성에 의심이 가는 등록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주로 아파트, 교량 등에서 발견된다.

㉠ 아파트 정착물 관련 디자인 등록

아파트 건축에 필요한 각종 부자재들⁵⁸은 그 자체를 물품으로 하여 등록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아파트 자체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 외관은 전체이건 부분이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아파트의 외관을 구성하면서도 등록되는 예가 최근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옥상 구조물⁵⁹이 2007년에 등록⁶⁰되었고, 2010년에는 아파트

⁵⁶ “다량생산”의 의미에 관해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심사기준(제3조제1호)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함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이 양산가능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그 생산방법이 기계에 의한 생산은 물론 수공업적 생산도 포함한다”고 하여, 기계적인 다량생산뿐만 아니라 수공업적인 반복생산도 보호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부동산의 “다량생산”도 반복생산이 가능한 정도이면 다량생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부동산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정해진 외형에 따라 현장시공이 되는 대상도 보호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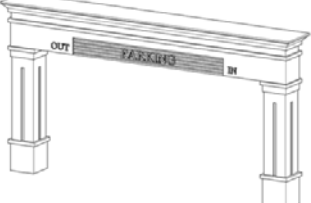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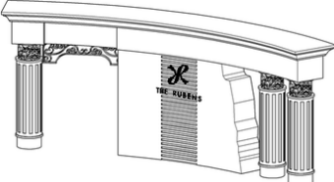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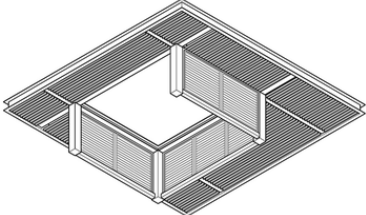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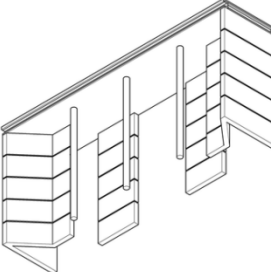
⁵⁷ 심사기준에서는, 방갈로, 공중전화박스, 이동판매대, 방법초소, 승차대, 이동화장실, 조립가옥 등을 예로 들고 있다.

⁵⁸ 창틀, 벽지, 문짝 등

⁵⁹ 아파트 옥상 구조물이 현실상 이동설치되고 있는지 또는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입구용 문주⁶¹가 등록되었다.

[표 22] 아파트 정작물 관련 디자인 등록 예

	디자인의 명칭: 아파트 주차장 입구용 문주 출원번호(출원일): 30-2008-0039941 (2008.09.12) 등록번호(등록일): 30-0550609 (2010.01.12) 권리자: 진흥기업주식회사
	디자인의 명칭: 아파트 입구용 문주 출원번호(출원일): 30-2008-0039941 (2008.09.12) 등록번호(등록일): 30-0550609 (2010.01.12) 권리자: 진흥기업주식회사
	디자인의 명칭: 아파트 입구용 문주 출원번호(출원일): 3020080039940 (2008.09.12) 등록번호(등록일): 3005506080000 (2010.01.12) 권리자: 진흥기업주식회사
	디자인의 명칭: 아파트 입구용 문주 출원번호(출원일): 3020080039939 (2008.09.12) 등록번호(등록일): 3005506070000 (2010.01.12) 권리자: 진흥기업주식회사
	디자인의 명칭: 아파트 옥탑용 구조물 출원번호(출원일): 3020070012370 (2007.03.21) 등록번호(등록일): 3004710010000 (2007.11.26) 권리자: 대림산업 주식회사
	디자인의 명칭: 아파트 옥상용 구조물 출원번호(출원일): 3020070012365 (2007.03.21) 등록번호(등록일): 3004710020000 (2007.11.26) 권리자: 대림산업 주식회사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⁶⁰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디자인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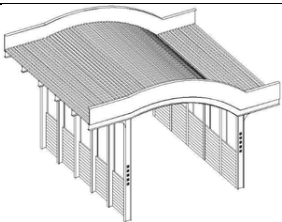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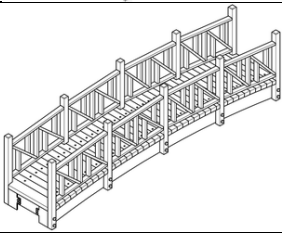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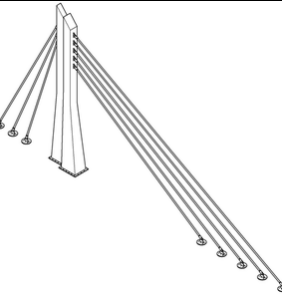
⁶¹ 진흥기업주식회사의 디자인등록; 2008.09.12 출원 2010.01.12 등록

㉞ 교량 관련 디자인등록의 예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교량 건설에 필요한 각종 부자재들⁶²은 그 자체를 물품으로 하여 등록될 수 있다. 교량 자체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 외관은 전체인건 부분이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교량의 외관을 구성하면서도, 등록되는 예가 최근 발견되고 있다. 교량의 일부분이 “조형물”의 형식을 빌어 등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09년에는 교량 자체가 등록된 것이 발견되고 있다. 명칭은 “동물이동통로”이나 현실상 교량과 같은 형식을 갖춘 디자인등록⁶³도 발견된다.

[표 23] 교량 관련 디자인 등록 예

	디자인의 명칭: 교량용 조형물 출원번호(출원일): 3020090028441 (2009.06.29) 등록번호(등록일): 3005547240000 (2010.02.26) 권리자: (주) 브릿지스틸
	디자인의 명칭: 강재 교량형 동물이동통로 출원번호(출원일): 3020080044093 (2008.10.14) 등록번호(등록일): 3005493750003 (2010.02.26) 권리자: 신광에코로드이엔씨 주식회사
	디자인의 명칭: 인도용 교량 출원번호(출원일): 3020080040050 (2008.09.16) 등록번호(등록일): 3005496300000 (2009.12.29) 권리자: 주식회사자연과기술
	디자인의 명칭: 교량용 조형물 출원번호(출원일): 3020090007562 (2009.02.23) 등록번호(등록일): 3005615170000 (2010.05.12) 권리자: 정상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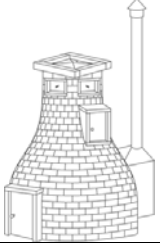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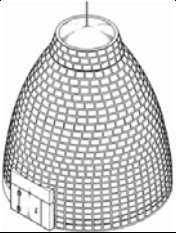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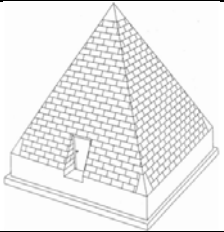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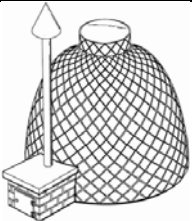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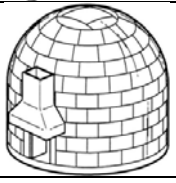
⁶² 난간, 울타리, 교량 연결 브라켓 등

⁶³ 강재 교량형 동물이동통로(등록제549375호)

㉔ 한증막 관련 디자인 등록 예

한증막은 일반적으로 담을 둘러막아 굴처럼 만들고 밑에서 불을 때어 한증을 하기 위하여 갖춘 시설을 말한다. 통상 사우나 시설 등의 내부에 설비되거나, 별도 시설물로 완성되게 되는데, 이러한 한증막에 관하여는 1998 년부터 등록된 예가 발견된다⁶⁴.

[표 24] 한증막 관련 디자인등록 예

	디자인의 명칭: 한증막 출원번호(출원일): 3020100034912 (2010.08.11) 등록번호(등록일): 3005750610000 (2010.10.04) 권리자: 여형구
	디자인의 명칭: 한증막 출원번호(출원일): 3019980004520 (1998.03.24) 등록번호(등록일): 3002336300000 (1998.12.08) 권리자: 윤춘복
	디자인의 명칭: 한증막 출원번호(출원일): 3020030004685 (2003.02.24) 등록번호(등록일): 3003410850000 (2003.12.09) 권리자: 엄동일
	디자인의 명칭: 조립식 한증막 출원번호(출원일): 3020010036165 (2001.12.24) 등록번호(등록일): 3003194150000 (2003.02.25) 권리자: 조경철
	디자인의 명칭: 한증막 출원번호(출원일): 3019980020458 (1998.11.25) 등록번호(등록일): 3002432520000 (1999.06.14) 권리자: 김정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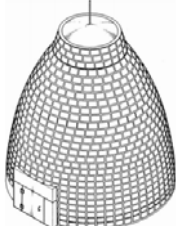
⁶⁴ 디자인의 명칭에서 “한증막”으로 검색하면 그 전의 등록예도 발견되나, 이들은 “휴대용”, “조립식” 등 현행 심사기준 상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 분명한 것들이라는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4) 최근의 판례

㉠ 판단의 대상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성에 관하여 판례는 많지 않고, 특히 동산/부동산 여부에 관하여는 특허법원에서 하나의 판례⁶⁵가 발견된다. 이 판례는, 아래 등록된 디자인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이다.

[표 25] 특허법원에서 물품성 결여로 무효로 된 한증막 디자인 등록

	디자인의 명칭: 한증막 출원번호(출원일): 3019980004520 (1998.03.24) 등록번호(등록일): 3002336300000 (1998.12.08) 권리자: 윤춘복
---	--

㉡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토지 위에 석재와 황토를 적층하여 건축하는 부동산인 한증막의 형상과 모양을 결합한 것으로서,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 641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 조 제 1 항의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 68 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의 판단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한증막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될 수 있고 운반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특허법원의 판단

⁶⁵ 2007.10.4.자 특허법원 2007허5260 판결(2007.5.18.자 2006당69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판결로서, 이에 대한 상고는 2008.2.14.자 2007후4311 대법원 판결로서 기각되었다)

특허법원은, “그 재질은 석재와 황토이고, 내부층은 축열 및 원적외선 방사성이 우수한 석재와 황토를 적층하며, 외부층은 화강암으로 적층 구성하여, ..., 외부층에는 축대를 쌓는 돌과 유사한 화강암을 27 단의 높이로 종(鐘)과 같이 적층하되 그 하부 양측의 대향된 위치에 화강암 4 단의 높이로 2 개의 출입문을 설치하며, 내부층에는 황토와 석판을 교대로 적층하되 전체적으로 상당한 두께의 벽체를 형성하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한증막은 그 재질과 구조 및 형상과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5) 실무와 판례에 대한 검토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부동산을 포함할 것인가 배제할 것인가의 여부는 정책적 판단이라 논외로 하기로 한다. 다만, 현행 실무와 판례에서 보이는 논점에 관하여 검토한다.

㉠ 다량생산의 의미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심사기준(제 3 조제 1 호)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함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이 양산가능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그 생산방법이 기계에 의한 생산은 물론 수공업적 생산도 포함한다”고 하여, 기계적인 다량생산뿐만 아니라 수공업적인 반복생산도 보호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으로서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다량생산”의 요건도 반복생산이 가능한 정도이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운반가능성

과거 건설은 시멘트와 벽돌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현장 시공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현대식 건설방식으로는, 고층 아파트라 하더라도 단위 블록화된 블록을 적층하는 방식으로 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교량이라고

하더라도 교량의 부분을 미리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에서는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되기도 한다. 따라서, 운반 가능성 여부는 출원서와 도면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업계의 기술수준과 현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㉟ 현실의 관행인가 가능성인가

아파트 입구용 문주, 교량의 조형물, 인도용 교량 자체, 한증막 등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허용한 심사사례를 참고하면, 특허청 심사에서는 운반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보호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한증막은 그 재질과 구조 및 형상과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⁶⁶ 하고 있어, 물품 자체의 속성에 비추어 운반여부/현장시공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등록의 보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대상이 실제로 제작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 대상이 실제 현실에서 다량생산되고 있는지나 현실로 운반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검토대상이 아닐 것이다. 다만, 다량생산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이동이 가능한지의 여부 등 그 가능성 만이 검토대상이 될 것이고, 운반이 “가능”한 것이라면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㊱ 운반여부/현장시공여부에 따른 판단에 대한 문제

관행상 현장시공되는 것이라 하여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제외된다면, 그 대상이 실지로 다른 장소에서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되어 이동설치되는 경우에 대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디자인 창작에 대한 보호의 대상이 좁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⁶⁷.

한편, 관행상 현장 시공되는 것이라도 단지 그 운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를 허용하게 되면, 이는 관행에 따라 현장 시공된 대상에 대하여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과다보호의 측면이

⁶⁶ 2007.10.4.자 특허법원 2007허5260 판결; 다만, 구체적으로 운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았는지 아니면 관행상 운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⁶⁷ 건축공법 등 기술의 변화로 인하여, 최근에는 건물이나 교량, 선박 등 대형 건축물/구조물 등이 그 부분부분 제작되어 이동하여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존재한다. 한편, 현장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침해여부의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면, 이는 같은 디자인에 대하여 그 공법이나 설치경과를 따지게 되는 것이므로, 공법이나 제조방법과는 무관하게 물품의 외관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디자인보호법상의 취지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㉔ 정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서 부동산을 배제하고, 그 예외로서 공업적으로 생산되어 운반/설치되는 경우에는 보호를 허용하는 원칙을 심사기준상의 실무⁶⁸로 취하여왔다.

부동산의 배제에 관하여 판례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⁶⁹ 이라 하면서,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은 의장법 제 5 조 제 1 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⁷⁰고 함으로써 부동산이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부동산과 동산의 경계에 해당하는 운반/이동 설치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심사 동향과 판례의 동향이 정리될 정도로 축적된 것은 아니나, 현재의 심사와 판례 상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사례의 축적을 통하여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견하여 부동산의 영역으로 보이는 아파트, 교량, 등의 분야에서 디자인등록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 등록된 예들이 발견된다는 사실은, 건설 등의 분야에서도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⁶⁸ 법률상 부동산을 배제할 것이라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다만 현행 시행규칙 별표 4에서 부동산이 분류되어 있지 않을 뿐이고, 심사기준 상에서 “동산”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⁶⁹ 대법원 2001.4.27. 선고 98후2900 판결; 대법원 2004.7.9. 선고 2003후274 판결;

⁷⁰ 대법원 2004.7.9. 선고 2003후274 판결

제3장 주요국에서의 입법례 및 실무 연구

제3장 주요국에서의 입법례 및 실무 연구

제1절 미국 디자인 제도 및 실무

1. 미국의 디자인보호 법제의 개요

(1) 디자인을 특허의 일종으로 취급

디자인을 특허/실용신안 등의 기술에 관한 권리와는 별개의 권리로 인정하고 법제화하는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디자인권을 특허권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법제화하고 있다. 미국법에 따른 특허는 기술특허(utility patent), 식물특허(plant patent), 디자인특허(design patent)의 크게 3 가지로 나뉜다. 즉, 미국법상 디자인권은, 특허권의 일종으로서 특허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르게 된다⁷¹.

미국의 법률(U.S.C.; Unites States Codes) 중 특허를 규율하는 법⁷²은, 35 번째 법률(35 U.S.C.)이며, 흔히 미국특허법⁷³이라 칭한다. 미국특허법의 하위 규정으로는 37 번째 연방규정(37 C.F.R.; 37 Code of Federal Regulation)이 존재하고, 흔히 미국특허규칙⁷⁴이라 칭한다. 따라서, 미국법상 디자인은 이 미국특허법(35 U.S.C.)와 미국특허규칙의 지배를 받는다.

미국특허법 및 미국특허규칙에 따라 미국 특허상표청 내의 업무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서, 특허심사절차 매뉴얼⁷⁵(MPEP;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이 있다. 미국 특허심사관들은 이 MPEP 규정에 따라 디자인을 포함한 특허심사를 진행한다.

⁷¹ 디자인의 창작도 발명(invention)이라고 한다.

⁷² 미국법상 상표는 15 U.S.C. Commerce and Trade 중 Chapter 22 에 규정된다.

⁷³ 원문은 아래 사이트 참조

PDF: http://www.uspto.gov/web/offices/pac/mpep/consolidated_laws.pdf

HTML: <http://www.uspto.gov/web/offices/pac/mpep/documents/appxl.htm>

⁷⁴ 원문은 아래 사이트 참조

PDF: http://www.uspto.gov/web/offices/pac/mpep/consolidated_rules.pdf

HTML: <http://www.uspto.gov/web/offices/pac/mpep/documents/appxr.htm>

⁷⁵ 원문은 아래 사이트 참조

HTML: <http://www.uspto.gov/web/offices/pac/mpep/mpep.htm>

(2) 디자인에 관한 특칙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디자인특허는, 출원, 등록, 및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절차적 및 실체적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기술발명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다만, 디자인의 특유한 면을 고려하여 미국특허법에 아래와 같은 일부 특칙을 두고 있다.

[표 26] 미국특허법(35 U.S.C.)상 디자인 관련 특별규정

제171조 디자인에 대한 특허

제조 물품을 위한 신규, 독창적이고 장식적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본법의 조건 및 요건에 따라, 그에 대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발명에 대한 특허에 관한 본법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에 대한 특허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172조 우선권

제119조(a)로부터(d)까지 규정되고 있는 우선권⁷⁶ 및 제102조(d)에 지정한 기간은, 디자인의 경우는 6월로 한다. 제119조(e)에 의해서 정해진 우선권⁷⁷은, 디자인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73조 디자인 특허의 존속 기간

디자인에 대한 특허의 존속기간은, 특허일부터 14년으로 한다.

제289조 디자인특허 침해에 대한 추가적인 배상

디자인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1) 특허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디자인을 판매를 위하여 여하한 물품에 적용하거나, (2) 특허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디자인을 적용한 여하한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최소한 250불 및 그가 받은 총 이익의 한도에서 특허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이는 당사자에 대하여 관할을 가지는 여하한 미국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는, 침해된 특허권자가 이 법에 따라 가지는 다른 배상 받을 권리를 부인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나, 다만, 특허권자는 침해로 인하여 중복해서 배상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미국특허법상의 디자인 출원 및 심사절차에 적용되는 미국특허규칙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① 37 CFR §1.151 적용규정⁷⁸
- ② 37 CFR §1.152 디자인도면⁷⁹
- ③ 37 CFR §1.153 명칭, 설명 및 클레임, 선서서 또는 선언서⁸⁰

⁷⁶ 소위 조약우선권에 관한 규정이다.

⁷⁷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에 관한 우선권

⁷⁸ 특허규칙은 디자인출원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⁷⁹ 디자인은 충분한 수의 도면/그림으로 도시될 것, 충분한 표면 음영이 사용될 것, 등 디자인도면의 특칙을 정하고 있다.

⁸⁰ 디자인출원의 명칭에 물품을 지정할 것; 도시된 대로를 청구하는 전형적인 청구항

- ④ 37 CFR §1.154 디자인 출원에 있어서의 출원 요소의 배치⁸¹
- ⑤ 37 CFR §1.155 디자인 출원의 조기심사
- ⑥ 37 CFR §1.84 도면에 관한 기준⁸²

2. 미국특허법상 디자인특허에 관한 물품성

(1) 제조물품성(article of manufacture)의 도입

미국특허법 제 171 조는, “제조 물품을 위한 신규, 독창적이고 장식적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본법의 조건 및 요건에 따라, 그에 대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⁸³”라고 하여, 특허법상 보호될 수 있는 디자인을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에 필요한 성격으로서, 제조물품성(article of manufacture)과 장식성(ornamentality)을 요한다⁸⁴.

(2) 제조물품성의 의미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표현되는 물품과는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다. 따라서, 디자인특허 출원시에는 디자인에 관한 물품이 정해져야 한다. 이러한 제 171 조에서 말하는 제조 물품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만질 수 있는 대상(man-made tangible object)이어야 한다. 물품과는 동떨어진 디자인 그 자체나 그림/도안 자체로는 특허 받을 수 없으며, 특허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에 표현될 것이 필요하다.

미국특허법상 물품은 매우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물품이기만 하면 그 것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리지 아니하며, 고정적으로 표현되거나 일시적으로 표현되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물품이면 그 물품의 전체의 디자인이거나 부분의 디자인이거나를 따지지 않는다.

하나만 필요하고 복수청구항은 허용되지 않음.

⁸¹ 명세서에 포함될 사항 및 형식

⁸² 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⁸³ Whoever invents any new, original, and ornamental design for an **article of manufacture**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⁸⁴ 35 U.S.C. 제171조에는 신규성(novelty)과 독창성(originality)도 내포되어 있으나, 이는 35 U.S.C. 제103조의 비자명성(non-obviousness)와 함께 디자인특허의 특허요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컴퓨터 화면에 보여지는 아이콘 또한 물품으로 취급된다. 아이콘 자체는 특허될 수 없지만, 컴퓨터 화면, 모니터, 또는 다른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아이콘은 물품성이 구비된 것이다. 미국 법원은, 분수의 물 분사 패턴(pattern of water for a water fountain)은 물품성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⁸⁵하였다.

미국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에는 물품성이 필요하나, 이러한 물품성은 매우 넓게 해석되는 결과,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물품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해 아래 사람이 만든 무엇이든지(anything under the sun that is made by man) 특허가 될 수 있다”고 한 미국 대법원의 언급⁸⁶은 디자인특허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3. 심사와 제조물품성

(1) 보호요건 - 신규성(novelty)과 비자명성(non-obviousness)

미국 디자인특허는 모든 출원에 대하여 심사하여 등록하고 있다. 심사에서는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심사하는데, 실체적인 요건으로서, ① 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일 것, ② 출원된 디자인이 독창적일 것, ③ 출원된 디자인이 신규성(novelty)이 있을 것, ④ 출원된 디자인이 공지디자인에 비해 자명하지 않을 것(non-obviousness)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신규성과 비자명성 판단에서 물품의 표시가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미국 실무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신규성(novelty) 심사와 물품

미국 심사기준⁸⁷에 따르면, 디자인특허도 미국특허법 제 102 조에 따른 신규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성을 가지기 위하여 공지디자인에 대비한 차이점의 정도는, 평균관찰자가 보았을 때 이미 존재하는 디자인과는 다르게 변형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⁸⁸.

⁸⁵ In re Hruby, 373 F.2d 997, 153 USPQ 61 (CCPA 1967)

⁸⁶ Diamond v. Chakrabarty, 447 U.S. 303 (1980);
<http://caselaw.lp.findlaw.com/scripts/getcase.pl?court=us&vol=447&invol=303>

⁸⁷ M.P.E.P. 1504.02 Novelty - 1500 Design Patents

⁸⁸ “The degree of difference [from the prior art] required to establish novelty occurs when the average observer takes the new design for a different, and not a modified, already-existing design.” 300 F.2d at 943, 133 USPQ at 205

신규성 판단을 위해 평균관찰자 테스트를 적용할 때 출원된 디자인과 공지디자인이 유사한 분야일 필요가 없다⁸⁹. 신규성에 관한 한 평균관찰자란 여하한 분야에 관한 지식도 없는 자이므로, 공지디자인 분야의 유사성은 제기될 여지가 없다⁹⁰. 이러한 점에서, 신규성은 당업자에게 자명한가를 따지는 진보성과 구별된다.

즉, 출원된 디자인의 공지여부는, 물품이나 그 물품의 분야에 무관하게 모든 분야에 대하여 공지디자인과 출원된 디자인을 대비하게 되는 것이다. 출원된 디자인이 신규성이 있으려면, 여하한 분야에서의 공지디자인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형⁹¹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3) 비자명성(non-obviousness) 심사와 물품

미국 심사기준⁹²에 따르면, 비자명성 심사에는 물품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지디자인에 그대로 공지된 것은 아니라도, 그 차이의 정도가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출원된 디자인을 당업자(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가 용이하게 발명⁹³할 수 있는 것이면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가의 판단에 당업자의 개념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비자명성 심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 ① 공지디자인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 ② 출원된 디자인과 공지디자인의 차이점을 확정하며,
- ③ 당업자의 수준을 분석하고,
- ④ 비자명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즉, 소위 2차적 증거⁹⁴)를 평가한다

물품의 분야를 따지지 않는 신규성을 따질 때와는 달리, 비자명성을 따지기 위한 공지디자인은 모든 유사한 분야⁹⁵를 포함한다. 유사한 분야란, 한 분야의 장식적 특징이 다른 분야에서의 적용을 암시하는가를 여부로 따진다. 표면

⁸⁹ MPEP 1504.02(Novelty): The "average observer" test does not require that the claimed design and the prior art be from analogous arts when evaluating novelty. In re Glavas, 230 F.2d 447, 450, 109 USPQ 50, 52 (CCPA 1956)

⁹⁰ MPEP 1504.02(Novelty): Insofar as the "average observer" under 35 U.S.C. 102 is not charged with knowledge of any art, the issue of analogousness of prior art need not be raised.

⁹¹ 우리 현행법에 대비할 때, 공지디자인과 "유사"에 대응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물품을 고려하지 않고 폭넓게 적용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⁹² MPEP 1504.03 Nonobviousness- 1500 Design Patents

⁹³ 우리 법제하의 "창작 비용이성"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⁹⁴ 상업적 성공과 같은 secondary consideration을 말한다

⁹⁵ 유사한 분야를 판단하기 위하여 물품의 속성이 고려된다.

장식의 경우에는 벽지인지, 오븐의 문인지, 등을 따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표면 장식만이 달라진 경우에는 여하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식이 있는 경우라도 유사한 분야로 취급된다⁹⁶. 다만, 형상의 차이에 관해서는, 물품의 속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미국특허법상 제조물품의 분류

(1) 분류의 종류

미국특허청에서 디자인특허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품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미국특허분류(USPC; U.S. Patent Classification)이고, 둘째로는 로카르노 분류(Locarno classification)이다.

(2) 미국특허분류(USPC)

미국특허분류상 디자인분류는 총 33 개의 대분류(class)로 나뉘고, 각 대분류는 소분류(subclasses)⁹⁷로 나뉘어 검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특허분류 내에서 발명특허분류와 디자인특허분류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 디자인분류의 명칭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하여는 특별한 정의가 없으며,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것으로 족하다.

(3) 로카르노 국제분류(Locarno Classification)

미국은 비록 로카르노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지만, 1997 년 5 월 6 일 이후에 등록된 디자인특허에는 미국특허분류(USPC)에 더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로카르노 국제분류⁹⁸가 지정되고, 공보에 표시된다. 로카르노 분류를 바탕으로 한 검색보고서에서 미국 디자인특허들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⁹⁶ 이러한 점에서, 우리 디자인보호 실무에 따른 물품의 유사보다는 매우 넓은 개념이다. 형상과 모양의 결합 디자인에 관해, 형상은 우리 심사기준에 따른 유사물품 중에서 유사한 형상이 발견되고, 모양은 여하한 분야에서라도 발견된다면 자명한 디자인으로 결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

⁹⁷ 소분류는 기능, 기능적 특징, 독특한 장식적 외관 등으로 나뉜다.

⁹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관장한다

[표 27] USPC 중 디자인 분류⁹⁹

코드	명칭
D01	Edible products
D02	Apparel and haberdashery
D03	Travel goods and personal belongings
D04	Brushware
D05	Textile or paper yard goods; sheet material
D06	Furnishings
D07	Equipment for preparing or serving food or drink not elsewhere specified
D08	Tools and hardware
D09	Packages and containers for goods
D10	Measuring, testing, or signaling instruments
D11	Jewelry, symbolic insignia, and ornaments
D12	Transportation
D13	Equipment for production, distribution, or transformation of energy
D14	Recording, communication, or information retrieval equipment
D15	Machines not elsewhere specified
D16	Photography and optical equipment
D17	Musical instruments
D18	Printing and office machinery
D19	Office supplies; artists' and teachers' materials
D20	Sales and advertising equipment
D21	Games, toys, and sports goods
D22	Arms, pyrotechnics, hunting and fishing equipment
D23	Environmental heating and cooling; fluid handling and sanitary equipment
D24	Medical and laboratory equipment
D25	Building units and construction elements
D26	Lighting
D27	Tobacco and smokers' supplies
D28	Cosmetic products and toilet articles
D29	Equipment for safety, protection, and rescue
D30	Animal husbandry
D32	Washing, cleaning, or drying machine
D34	Material or article handling equipment
D99	Miscellaneous
계	33류(class)

⁹⁹ 세분류는, <http://www.uspto.gov/go/classification/>
또는 <http://www.uspto.gov/go/classification/selectnumwithtitle.htm> 참고

(4) 미국특허분류(USPC)와 로카르노 분류

미국특허분류는 로카르노 분류는 실질적으로 평행선상에 있다¹⁰⁰. 로카르노 분류의 대분류와 미국특허분류의 대분류는 그 순서까지 거의 일치한다¹⁰¹. 예를 들어, 미국분류 D01, D02 등에 해당하는 주제들은 로카르노 분류 01, 02 등과 거의 동일하다.

예외가 있다면, 로카르노 분류의 31-00 분류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음식물/음료를 준비하기 위한 기계/기구)¹⁰²와 제 32 류(Graphic symbols and Logos, Surface Patterns, Ornamentation)¹⁰³를 들 수 있다.

5. 건물/인테리어에 관한 미국 디자인특허 실무

(1) 검토의 범위

미국 디자인특허분류가 로카르노 분류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음은, 유럽 공동체디자인에서 허용되는 대부분의 물품이 미국에서도 디자인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됨을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건물과 인테리어에 관한 미국 실무가 어떠한지 간략히 정리하였다. 건물과 인테리어에 관한 미국 디자인특허 조사는 별도의 장으로 자세히 다루었다.

(2) 건물 등의 부동산의 전체 및 부분디자인

먼저, 건물¹⁰⁴과 같은 부동산은 어떻게 취급되고 등록되는지 조사하여, 아래에 예시하였다. 미국특허분류에는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는 자재뿐만 아니라, 건물(building), 집(house), 창고(garage) 등과 같은 부동산 자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자체로 등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분에 관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¹⁰⁰ 로카르노 분류는 디자인을 물품의 기능에 따라 33가지로 분류하는데, 이는 미국디자인특허분류와 거의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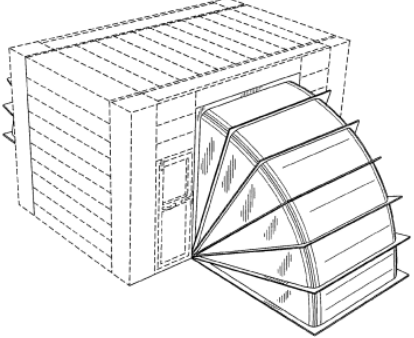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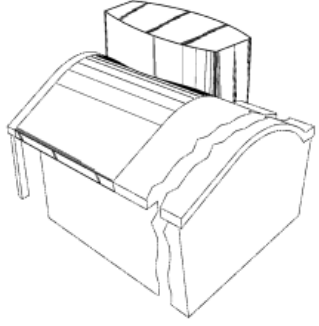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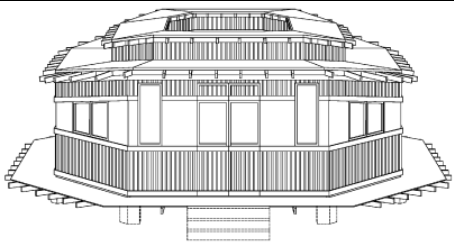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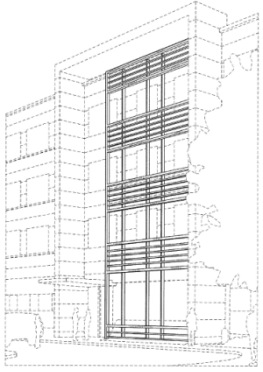
¹⁰¹ 다만, USPC 체계는 로카르노 체계보다 훨씬 많은 하위분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D21분류에는 540개의 하위분류가 있다. 로카르노 21분류에는 5개의 하위분류만 있을 뿐이다.

¹⁰² 이 로카르노 분류 31-00에 포함된 모든 물품들은 미국분류 D7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음식물/음료를 만들거나 제공하기 위한 장비)에 포함되어 있다.

¹⁰³ 로카르노 분류 제9판에서 도입되어 2009.01.01. 시행된 것이다.

¹⁰⁴ 건물(Building)은 미국특허분류 D25/04에 해당한다.

[표 28] 건물 등 부동산의 전체 및 부분디자인에 관한 디자인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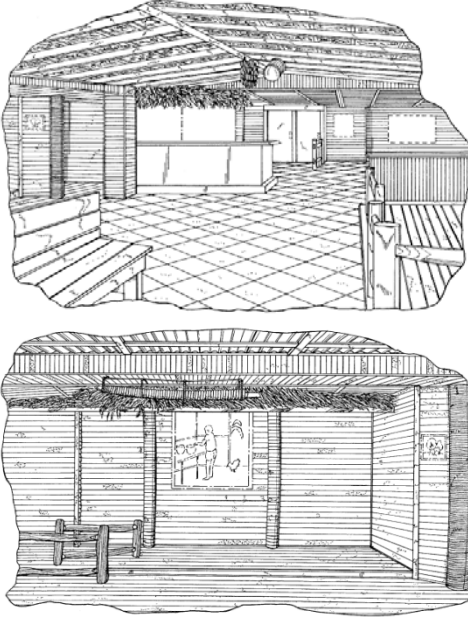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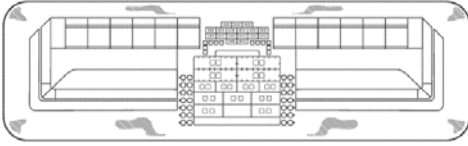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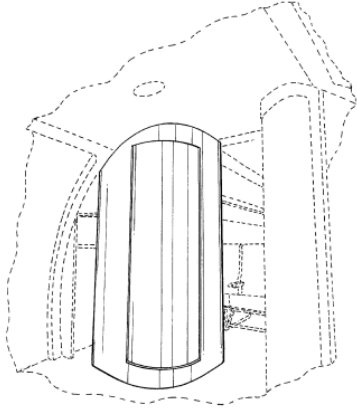
서지사항	대표도면
발명의 명칭: Building 특허번호: D598,568 발행일: August 18, 2009 미국특허분류: D25/33 (*) 건물의 일부에 관한 부분디자인	
발명의 명칭: Building exterior 특허번호: D616,565 발행일: May 25, 2010 미국특허분류: D25/17	
발명의 명칭: Octagonal building 특허번호: D607,119 발행일: December 29, 2009 미국특허분류: D25/32 (*) 건물 자체에 관한 디자인	
발명의 명칭: Building 특허번호: D583,482 발행일: December 23, 2008 미국특허분류: D25/5 (*) 건물의 한쪽 벽면에 관한 부분디자인	

(3) 건물 등의 인테리어 디자인(trade dress)

건물 등의 인테리어 디자인도 등록된 예가 발견된다. 식당의 실내 인테리어(D475,467; 2003.06.03. 등록), 테이블 배치 레이아웃(D561,270; 2008.02.05. 등록) 등이 등록된 예를 아래에 표로 나타내었다. 건물 외에도,

비행기 내부의 인테리어 디자인(D455,391; 2002.04.09. 등록)도 등록된 예가 발견된다. Trade dress 도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표 29] 건물 등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특허

서지사항	대표도면
발명의 명칭: Restaurant building interior 특허번호: D475,467 발행일: June 3, 2003 미국특허분류: D25/35	
발명의 명칭: Craps table layout 특허번호: D561,270 발행일: February 5, 2008 미국특허분류: D21/397; D21/369	
발명의 명칭: Surface configuration of an interior room for an airplane 특허번호: D455,391 발행일: April 9, 2002 미국특허분류: D12/345	

6. 미국 실무상 디자인의 보호범위 판단 원리

(1) 청구항(claim)에 의한 확정

㉠ 청구항 기준의 원칙

미국특허법상 디자인 역시 특허의 일종이므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정하기 위한 동일한 원리가 디자인특허의 보호범위를 정하는데 적용된다. 즉, 특허로 보호되는 권리범위는 명세서에 포함된 청구항(claim)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는 특허법상의 원리가 그대로 디자인특허에 적용되는 것이다.

미국특허법에서 특허의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는 제 271 조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고, 미국특허법 제 271 조를 디자인특허에 적용하면, “특허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디자인을 채용하는 물품을 허가 받지 않고 생산,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은 디자인특허를 침해하는 것”¹⁰⁵으로 새길 수 있다

㉡ 청구항에 포함되는 내용

미국 디자인특허 출원에서는 하나의 청구항만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청구항은 대개 “The ornamental design for TITLE, as shown and described.”와 같이 정형화된 문구로 작성된다. 여기서 shown 이란 도면에 도시된 것을 말하고, described 란 명세서에 포함된 도면의 설명 및 다른 설명 부분에 기재된 사항¹⁰⁶을 말한다¹⁰⁷.

㉢ 물품의 명칭의 작용

물품의 명칭은 청구항에 “TITLE”의 일부로 포함되어 기재된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의 명칭은 디자인특허의 보호범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¹⁰⁵ Goodyear Tire & Rubber Co. v. Hercules Tire & Rubber Co., 162 F.3d 1113, 1116-17 (Fed. Cir. 1998)

(http://www.patenthawk.com/blog/2007/09/ordinary_observer.html 참고)

¹⁰⁶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보호범위가 아니라는 등의 원론적인 설명이 부가되는 경우 이러한 설명, 또는 재질이나 용도 등이 설명된 경우 그러한 설명도 참조하여 보호범위가 판단된다.

¹⁰⁷ 이와 같이, 명세서 내의 도면과 설명부분은 출원에 포함된 자료로서 내적 증거(intrinsic evidence)로 보호범위 판단에 참고되나, 반드시 이러한 내적 증거만을 기초로 보호범위가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항이나 설명에 포함된 용어의 해석을 위한 사전적 의미 등 명세서 외부로부터 채용되는 외적 증거(extrinsic evidence)도 보호범위 판단에 참고된다.

원칙이다. 미국특허의 직접침해에 관한 35 U.S.C. 제 271 조에 따르면, 도시되고 설명된 특허디자인이 적용된 제조물품을 생산,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은 디자인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다¹⁰⁸. 이 때 청구항에 기재된 TITLE 이 참고가 되므로, 직접적인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물품이 동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국법상 물품이 동일한 한도내에서만 침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하한 물품에 특허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라도 침해로 보고, 이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⁰⁹.

따라서, 디자인특허는 청구항에 있는 물품의 명칭에 따라서 권리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미국특허법상 디자인특허에서 물품의 표시는, 직접침해로 볼 것인가 아니면 특별배상규정에 따른 침해로 볼 것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¹¹⁰, 물품이 달라진다고 하여 침해라 아니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㉔ 분류의 무영향

디자인특허 등록증에 표시된 분류는 디자인특허의 보호범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디자인특허의 청구항은 미국특허분류(USPC)와는 무관하고, 미국특허분류(USPC)의 디자인분류는 등록된 산업디자인의 효율적인 접근을 위한 것¹¹¹이기 때문이다¹¹².

¹⁰⁸ 미국특허법 제271조(35 U.S.C. 271)(특허침해에 관한 규정)의 디자인특허에 대하여 적용한 해석

¹⁰⁹ 미국특허법 제289조(35 U.S.C. 289)(디자인특허 침해에 대한 추가적인 배상)

¹¹⁰ http://www.ipmall.info/hosted_resources/commissioner_decisions/cd_83.htm
A clear and definite statement of the article is important so that others may determine if the use of the design would directly infringe under 35 U.S.C. § 271 or infringe only under the additional remedy of 35 U.S.C. § 289.

¹¹¹ 미국특허청 특허분류에 관한 심사관 핸드북 제7장;

<http://www.uspto.gov/patents/resources/classification/handbook/seven.jsp>

¹¹² 더욱이 분류는 출원인이 정하는 것도 아니며 심사관에 의하여 설명과 도면을 참고로 적절한 분류가 부여되는 것이다.

(2) 디자인특허 침해¹¹³ 판단의 개요

㉠ 직접 침해

타인의 실시디자인이 등록된 디자인특허를 침해하는가의 판단에서는, 위와 같은 원리로 먼저 디자인특허의 권리범위를 확정¹¹⁴한 후, 확정된 권리범위와 실시디자인을 비교하여 실시디자인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실시디자인이 특허디자인과 “동일”(identical)한 경우에 침해¹¹⁵를 구성함은 물론이다.

㉡ 균등범위의 침해

그런데, 실시디자인과 침해디자인이 완전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기술특허에서 적용되는 소위 균등론은 디자인특허에도 변형된 형태이지만 동일한 정신으로 적용된다¹¹⁶. 관련 디자인이 밀집된 분야에서는 균등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게 된다¹¹⁷.

㉢ 균등범위 판단방법 - 일반관찰자 테스트(ordinary observer test)

균등범위에서의 침해 판단을 위한 두 디자인의 대비에서는 종래에는 일반관찰자 테스트(ordinary observer test)와 신규성 항목 테스트(points of novelty test)¹¹⁸라는 두 가지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2008 년 미국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 판결¹¹⁹에서 신규성 항목 테스트는 폐기됨에 따라,

¹¹³ <http://www.patentlyo.com/patent/2007/09/design-patent-1.html> 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268,000건의 디자인특허가 발생되었는데 이들 중 약 1%만이 소송에 관련되고, 그 중 상당수는 신발(7%)과 램프(5%)에 관한 것이라 한다.

¹¹⁴ Claim construction이라고 하며, 이를 위한 심리(hearing)는 Markman hearing이라고 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전의 사전심리로 진행된다.

¹¹⁵ 특허에서의 문언침해(literal infringement)에 해당한다.

¹¹⁶ 기술특허(utility patent)에서의 균등론에 의한 침해(infringement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술특허에서 균등론은 function/way/result의 기준으로 판단되나, 디자인특허에서는 “substantial similarity in ornamental overall resemblance”의 의미로 적용된다. 35 U.S.C. 289에 표현된 colorable imitation(혼동되는 모방)의 표현도 균등범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¹¹⁷ Litton Systems, Inc. v. Whirlpool Corp., 728 F.2d 1423, 221 USPQ 97 (Fed. Cir. 1984)

¹¹⁸ 디자인특허의 디자인에서 종래의 디자인으로부터 발견되지 못하는 차이점(즉, 신규 특징)을 정하고, 이러한 신규 특징들 모두가 실시 디자인에서 발견된다면, 이는 실시디자인은 디자인특허의 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비교대상발명에 존재한다면 침해로 보는 특허실무의 침해판단방법과 매우 유사하다. 디자인을 특허의 일종으로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¹¹⁹ Egyptian Goddess, Inc. v. Swisa, Inc. 543 F.3d 665, 671, 676 (Fed. Cir. 2008); 이 판례에

현재로는 일반관찰자 테스트만을 사용하게 되었다¹²⁰.

④ 출원경과 금반언(prosecution history estoppel)

기술특허와 마찬가지로, 출원경과 금반언(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의 원칙은 디자인특허의 보호범위 판단에서도 적용된다¹²¹. 따라서, 출원과정에서 주장된 사항과 반대되는 주장을 권리행사에서 주장할 수 없다.

⑤ 공지기술제외

또한, 기술특허와 마찬가지로 공지기술 제외이론이 적용되어, 공지디자인¹²²으로부터 자명한 디자인은 특허디자인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고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¹²³.

(3) 일반관찰자 테스트(ordinary observer test)

① 기본적인 의미

구매의사를 가진 일반관찰자가 두 디자인을 눈으로 대비하였을 때, 하나가 다른 하나와 같은 것으로 오해하여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면, 두 디자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디자인특허가 침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¹²⁴는 것이다.

② 일반관찰자

서는, 이러한 신규성 항목 테스트는 일반관찰자 테스트와 별개의 테스트로서 이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 이들 두 방식을 채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면서, 신규성 항목 테스트를 폐기하는 것으로 전원합의체로(en banc) 판결하였다.

International Seaway Trading Corp. v. Walgreens Corp (CAFC 2009.12.17.) 판결

¹²⁰ <http://inventivestep.net/2009/12/21/federal-circuit-finishes-off-point-of-novelty-test/>

¹²¹ Victus Ltd. Collezione Europa USA Inc., 48 USPQ 2d 1145, 1148 (M.D. N.C. 1998)

¹²² 즉, 특허디자인의 심사에서 공지디자인으로 인용될 수 있는 디자인

¹²³ In re Certain Luggage Products, 200 U.S.P.Q. 2d (BNA) 810 (Ct. Int'l Trade 1978)

¹²⁴ Gorham v. White, 81 U.S. 511, 528 (1871):

A design patent is infringed if: two designs are substantially the same in the eye of **an ordinary observer** with an **attention of a purchaser**, so as to **deceive** the observer, inducing him **to purchase** one, supposing it to be the other.

(<http://supreme.justia.com/us/81/511/case.html> 참고)

두 디자인의 대비(comparison)는 그 물품에 관한 일반관찰자¹²⁵의 입장에서 대비하여야 한다. 일반관찰자란, 해당 제품에 관한 종래의 디자인에 익숙한 추상적인 관찰자를 말한다¹²⁶. 특허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보지 못한 자가 아니며,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그러한 대상에 익숙한 자로서 두 디자인을 비교해 특이점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 자여야 한다¹²⁷. 특허청구항에 표기된 물품의 명칭은,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으로 권리범위가 해석되는 것은 아니나, 일반관찰자 테스트에서 일반관찰자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㉔ 판단의 요소

청구항에 있는 물품의 명칭에 별로 상관이 없고, 도면과 설명¹²⁸을 기초로 디자인을 파악하게 된다. 실선으로 나타낸 부분만이 디자인특허의 보호범위로 판단하며, 점선으로 나타내거나 나타내지 않은 부분은 디자인특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¹²⁹.

㉕ 기능적 요소의 배제

침해여부의 판단과정에서, 기능적 요소(functional elements)는 대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¹³⁰. 기능적인 특징은 설명 주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디자인의 대비에서 무시되어야 한다¹³¹. 축척이나 크기는 이들이 특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한 보호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¹³².

㉖ 물품의 기능에 무관

도면에 별도의 축척 표시가 없으면, 물품의 기능(function)에 상관없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즉, 실제 자동차의 디자인특허를 기초로 장난감 차에

¹²⁵ 그 물품의 전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같은 경험적 조사결과가 있다면 이 결과도 참고될 수 있다.

¹²⁶ Crocs, Inc. v. ITC (CAFC, 2010.02.24) 판례 등
(<http://inventivestep.files.wordpress.com/2010/02/08-15961.pdf>)

¹²⁷ Applied Arts Corp. v. Grand Rapids Metal Craft Corp., 67 F.2d 428, 430 (6th Cir. 1933)

¹²⁸ 부연된 설명이 없다면 도면만을 기초로 하게 된다

¹²⁹ Braun Inc. v. Dynamics Corp. of Ameica, 975 F.2d 815, 24 U.S.P.Q.2d(BNA) 1121 (Fed. Cir. 1992)

¹³⁰ Oddzon Products, inc. v. Just Toys (Fed. Cir. 1996) 판례; “The scope of the claim must be construed to identify the non-functional aspects of the design”.

¹³¹ 기능적인 특징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대비하여야 한다는 우리 판례의 입장과는 반대된다.

¹³² Sun Hill Industries Inc. v. Easter unlimited Inc., 33 USPQ2d 1295, 1297 (Fed. Cir. 1995)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¹³³. 디자인특허 침해판단에 있어서 기능은 판단하지 않으므로, 볼펜에 관한 디자인특허로 연필에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이다¹³⁴.

㉑ 대비 방법

두 디자인의 대비는 전체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두 디자인의 외관이 동일하여야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지 않으면 유사한 특징이 있다고 하여 그 특징의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¹³⁵.

㉒ 공지디자인의 입증책임

디자인특허의 보호범위를 정하기 위하여는, 그 특허 당시의 공지디자인을 참고하여야 한다¹³⁶. 일반관찰자 테스트에서는, 공지디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침해주장을 당하는 쪽에 있다¹³⁷. 즉, 침해주장을 당하는 쪽에서 공지디자인을 제시하고¹³⁸, 이렇게 제시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디자인특허의 보호범위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7. 디자인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

(1) 특허 침해 및 손해배상의 일반 원리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는 미국특허법 제 284 조¹³⁹에

¹³³ 이러한 구체적인 판례는 없으나, Lexyoume Law Firm을 통한 자문에 의한 예측임.

¹³⁴ 필기구로서, 볼펜과 연필은 기능이 다르며 용도가 같은 것이다.

¹³⁵ Oddzon Products, inc. v. Just Toys (Fed. Cir. 1996).

¹³⁶ 해당 물품의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디자인 트렌드를 알 수 있고, 그를 참고로 하여야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디자인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¹³⁷ 신규성 항목 테스트(points of novelty test)에서는 신규성이 있는 특징을 보이기 위하여 권리자가 공지디자인을 제시하여야 하였다.

¹³⁸ 이는 디자인특허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하여, 또는 디자인특허의 범위가 좁은 것을 밝히기 위하여 침해주장을 받는 자에게 유리한 행위이므로, 이러한 입증책임의 분배가 매우 자연스럽다.

¹³⁹ 35 U.S.C. 284 Damages.

Upon finding for the claimant the court shall award the claimant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fringement but in no event less than a reasonable royalty for the use made of the invention by the infringer, together with interest and costs as fixed by

규정되어 있다. 디자인권 역시 특허의 일종이므로, 특허의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미국특허법 제 271 조)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규정(미국특허법 제 284 조)은, 디자인특허에도 적용된다.

미국특허법 제 271 조를 디자인특허에 적용하면, “특허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디자인을 채용하는 물품을 허가받지 않고 생산,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은 디자인특허를 침해하는 것”¹⁴⁰으로 새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침해에 관하여 디자인특허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로열티 상당액(Reasonable Royalty)으로 결정된다.

(2) 디자인특허에 특유한 배상의무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특허침해 및 배상원리를 벗어나, 미국특허법 디자인특허에 관하여는 특유한 배상의무 규정(즉, 미국특허법 제 289 조; 35 U.S.C. § 289)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미국특허법 제 289 조는, 여하한 물품이든지 특허된 디자인을 모방한 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표 30] 디자인특허 침해의 특유한 배상의무

미국특허법 제289조 (디자인특허 침해에 대한 추가적인 배상) 디자인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1) 특허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디자인을 판매를 위하여 여하한 물품에 적용하거나, (2) 특허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디자인을 적용한 여하한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최소한 250불 및 그가 받은 총 이익의 한도에서 특허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이는 당사자에 대하여 관할을 가지는 여하한 미국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는, 침해된 특허권자가 이 법에 따라 가지는 배상 받을 다른 권리를 부인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나, 다만, 특허권자는 침해로 인하여 중복해서 배상받을 수는 없다.
35 U.S.C. § 289 (Additional remedy for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 Whoever during the term of a patent for a design, without license of the owner, (1) applies the patented design, or any colorable imitation thereof, to <u>any article of manufacture</u> for the purpose of sale, or (2) sells or exposes for sale <u>any article of</u>

the court.

When the damages are not found by a jury, the court shall assess them. In either event the court may increase the damages up to three times the amount found or assessed. Increased damages under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provisional rights under section 154(d) of this title.

The court may receive expert testimony as an aid to the determination of damages or of what royalty would b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¹⁴⁰ Goodyear Tire & Rubber Co. v. Hercules Tire & Rubber Co., 162 F.3d 1113, 1116-17 (Fed. Cir. 1998)

(http://www.patenthawk.com/blog/2007/09/ordinary_observer.html 참고)

manufacture to which such design or colorable imitation has been applied shall be liable to the owner to the extent of hi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 recoverable in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parties.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vent, lessen, or impeach any other remedy which an owner of an infringed patent ha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but he shall not twice recover the profit made from the infringement.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설령 물품이 달라서 미국특허법 제 271 조에 따른 디자인특허의 직접침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정도로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여하한 물품에 적용하는 것도 디자인특허의 침해로 보아 침해자가 얻은 수익을 특허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하게 된다¹⁴¹. 따라서, 특허디자인과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디자인을 다른 물품에 적용한다고 하여도 디자인특허의 침해와 배상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8. 미국 실무상 디자인특허와 물품과의 관계에 관한 정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에서 보호범위 확대의 면은, 첫째로 로카르노 분류 도입을 통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의 확대, 둘째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물품의 범위의 확대로 이해될 수 있다. 이들 두 가지 측면에 대하여, 미국의 실무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특이한 물품에 관한 미국 등록 실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특허분류(USPC)의 디자인분류는 로카르노 분류의 제 32 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로카르노 분류와 거의 모든 대분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 등 우리 현행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지 않은 것도 현실적으로 미국 디자인특허로 보호되고 있다. 로카르노 분류 제 32 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테리어 디자인(즉, get-up) 역시 여러 형태로 미국 디자인특허로 등록되고 있다.

(2) 심사과정에서의 물품성

디자인특허출원 심사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물품이 보호대상이 되는 범주인가(man-made tangible object)를 판단하게 된다. 제 3 자의 디자인이 미국특허법 제 271 조에 따른 직접 침해를 구성하는가 아니면 미국특허법 제 289 조에 따른 추가적인 배상에 관한 침해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¹⁴¹ 따라서, 미국디자인특허에서 물품의 영향은 직접침해로 볼 것인가 아니면 특별배상규정에 따른 침해로 볼 것인가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

디자인특허에 표시된 물품이 기준이 되므로, 명세서에서 물품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¹⁴²

미국특허 심사기준 중 특히 디자인심사기준에 따르면, 신규성 심사에서는 모든 분야의 공지디자인과 동일하거나 변형된 것인가를 판단하므로, 출원된 디자인의 물품은 고려되지 않는다¹⁴³.

비자명성 심사에서는, 출원된 물품의 분야와 모든 유사한 분야¹⁴⁴에서의 공지디자인을 따진다. 물품의 “당업자”¹⁴⁵의 수준을 정함에서도 물품이 영향을 미친다. 다만, 물품의 분야를 따지는 것은 디자인의 차이가 형상(shape)이나 외형(form)에 차이가 있을 때이고, 형상에 차이 없이 표면장식만의 차이에 관해서는 여하한 분야든지 공지디자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¹⁴⁶.

(3) 미국 특허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물품이 미치는 영향

디자인특허의 보호범위 판단은 청구항을 기초로 정하여지는데, 이는 물품의 명칭, 그리고 도면과 설명을 기초로 정하여짐을 말한다. 물품의 분류는 보호범위 판단에 영향이 없다.

특허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의 대비는, 특허디자인의 공지디자인에 익숙한 일반관찰자¹⁴⁷의 관점에서 구매의사에 혼동¹⁴⁸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특허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청구항에 기재된 물품 그 자체로 보호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항에 기재된 물품은, 단지 직접침해 또는 문언침해인가, 아니면

¹⁴² 이러한 이유로 물품의 명칭이 명확하여야 하므로, 물품의 명칭에 “및 이와 같은 것(and the like)”이라는 불명료한 표현으로 인하여 거절할 수 있다는 것에, http://www.ipmall.info/hosted_resources/commissioner_decisions/cd_83.htm

¹⁴³ http://www.uspto.gov/web/offices/pac/mpep/documents/1500_1504_02.htm#sect1504.02

¹⁴⁴ 기술특허와 마찬가지로, 출원인이 정한 호칭에 무관하게 그 기능이나 용도가 유사한 것이면 유사한 분야로 볼 수 있다. (예: 벽돌 절단기와 과자 절단기)

http://www.uspto.gov/web/offices/pac/mpep/documents/0900_904_01_c.htm#sect904.01c

또한, 구조나 기능이 유사하면 유사한 분야로 이해될 수 있다.

http://www.uspto.gov/web/offices/pac/mpep/documents/2100_2141_01_a.htm#sect2141.01a

¹⁴⁵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¹⁴⁶ MPEP 1504.03

http://www.uspto.gov/web/offices/pac/mpep/documents/1500_1504_03.htm#sect1504.03

¹⁴⁷ 유럽 공동체디자인의 보호범위 판단에 관한 주체적 기준으로 informed user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¹⁴⁸ 유럽 공동체디자인의 보호범위 판단에는 “구매의사”의 혼동 여부는 판단요소가 되지 아니하고, 단지 전체적인 인상의 동일성 여부만이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디자인특허침해에 대한 특별배상 규정에 따른 침해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뿐으로서, 배상액을 정하는 방식의 차이만을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즉, 청구항에 기재된 물품 그대로 디자인을 침해한 경우에는 미국특허법 제 284 조에 따른 로열티 상당액(reasonable royalty)과 미국특허법 제 289 조에 따른 침해자의 수익반환 중 유리한 것을 배상액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여하한 물품에 특허디자인을 적용한 경우에는 미국특허법 제 289 조에 따라 해당 물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¹⁴⁹.

¹⁴⁹ 다만, 이러한 법률상의 차이는 있으므로, 미국심사실무에서는 디자인특허출원의 청구항에서 물품의 명칭을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기재불비로 거절된다.

(http://www.ipmall.info/hosted_resources/commissioner_decisions/cd_83.htm 참고)

제2절 유럽 공동체디자인 입법례 및 실무

1. 유럽 공동체디자인 법제의 개요

(1) 연혁

㉠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그린페이퍼¹⁵⁰

유럽연합(EU)은 EU 영역 내에서의 상품, 인력, 자본, 기술,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써 EU 회원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여왔다. EU 는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1991 년 6 월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그린페이퍼를 발표하였다.

㉡ 디자인 보호지침¹⁵¹과 공동체디자인법¹⁵²

그리고, 이에 대한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에서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여 1993 년 7 월 28 일 EU 각국 의 디자인 보호제도의 통일화와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 과 EU 전역에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EU 공동체 디자인 보호제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 디자인에 관한 유럽 각료 이사회 규정” (이하 “공동체디자인법” 또는 “CDR”¹⁵³라 함)을 발표하였다.

디자인 보호지침은 1998 년 10 월 28 일 유럽회의의 각료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됨에 따라 동 지침에 의거하여 EU 회원국들은 2001 년 10 월 28 일까지 동 지침상의 강행규정들을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동체디자인법(CDR)은 2001 년 12 월 12 일 유럽 각료 이사회에서

¹⁵⁰ Green paper on the legal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 원문은 아래 링크 참조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indprop/docs/design/green-paper-design_en.pdf

¹⁵¹ Directive 98/71/EC on the legal protection of designs; 원문은 아래 링크 참조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8L0071:EN:NOT>

¹⁵² COUNCIL REGULATION (EC) on Community designs; 원문은 아래 링크 참조
http://oami.europa.eu/ows/rw/resource/documents/RCD/regulations/62002_en_cv.pdf

¹⁵³ Community Design Regulation (공동체디자인법)

통과되었고, 이 규정에서의 미등록디자인에 관한 규정은 2002년 3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디자인법은 유럽공동체의 제네바협정 가입에 따라 2006년 개정¹⁵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등록공동체디자인 및 미등록공동체디자인

㉠ 등록디자인과 미등록디자인

공동체디자인법은 등록디자인과 미등록디자인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출원 등록절차를 취하는 것에 의해 출원일로부터 최대 25년간 보호되는 “등록공동체디자인¹⁵⁵”과 등록에 의하지 않더라도 디자인이 최초로 유럽지역 내에서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3년간 보호되는 “미등록공동체디자인¹⁵⁶”으로 되어 있다¹⁵⁷.

㉡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의 보호

무방식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은 2002년 3월 6일 위 규정이 발효되는 즉시 시행되었다. 미등록공동체디자인에 대해서는 악의의 모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지며, 등록디자인에 대해서는 소위 차단효를 부여하고 있다.

㉢ 등록공동체디자인의 보호

출원, 등록을 필요로 하는 등록공동체디자인에 대해서는 2003년 4월 1일부터 EU 상표디자인청(OHIM¹⁵⁸)에서 공동체디자인등록을 받도록 시행되었다. 등록디자인의 경우 그 보호요건은 그 전체적인 인상으로 보아 신규하고 개성(individual character)이 있으면 된다¹⁵⁹. 그러나 디자인의 요건에 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할 뿐 실체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신규성과 개성은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권리행사 시에도 추정되므로, 등록공동체디자인 권리자는 등록권리를 기초로 즉시 권리행사 할 수 있고, 이를 부정하는

¹⁵⁴ Council Regulation (EC) No 1891/2006 of 18 December 2006; 원문은 아래 링크 참조 http://oami.europa.eu/ows/rw/resource/documents/RCD/regulations/62002_en_cv.pdf

¹⁵⁵ registered Community Design

¹⁵⁶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¹⁵⁷ CDR 제1조(2)

¹⁵⁸ The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¹⁵⁹ CDR 제4조(1)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 입증해야 한다¹⁶⁰.

(3) 공동체디자인 보호 법 체계 및 적용범위

㉠ 공동체디자인시행규칙과 OHIM 비용규정

공동체디자인법(CDR)의 부속 규정으로, 공동체디자인시행규칙¹⁶¹(CDIR¹⁶²)이 제정되었다. 미등록공동체 디자인의 보호 방식과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출원/등록/보호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다. 또한, 비용에 관한 규정으로 공동체디자인의 등록에 관한 OHIM 비용규정¹⁶³이 공표되어 시행되고 있다.

㉡ 공동체법에 의한 광역적 권리

유럽의 공동체디자인제도는 각 나라별로 권리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효율화/집중화한 취지를 넘어서서, 하나의 권리로 동맹국 전역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디자인법(CDR)에 따라 OHIM에 등록된 공동체디자인은, 각 나라의 디자인법에 의한 디자인으로서 취급되는 것이 아니며, 공동체디자인법(CDR)에 의해 해석되는 디자인권으로서 동맹국 전역에 미친다.

㉢ 공동체디자인법원

따라서, 각 나라별로 공동체디자인법에 따라 공동체디자인관련 소송을 처리하는 공동체디자인법원(Community designs courts)를 여러 국가에 걸쳐 두고 있으며¹⁶⁴, 공동체디자인 법원에서는 등록 공동체디자인뿐만 아니라,

¹⁶⁰ CDR 제85조

¹⁶¹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245/2002 of 21 October 22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n Community designs

¹⁶² Community Design Implementing Regulation; 원문은 아래 사이트 참고
http://oami.europa.eu/ows/rw/resource/documents/RCD/regulations/22452002_cv_en.pdf

¹⁶³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246/2002 of 16 December 2002 on the fees payable to the OHIM in respect of registration of Community designs; 원문은 아래 사이트 참고
http://oami.europa.eu/ows/rw/resource/documents/RCD/regulations/22462002_cv_en.pdf

¹⁶⁴ 공동체디자인 법원은 각 동맹국의 법원들 중에서 지정된 것이며, 공동체디자인 법원 목록은 <http://oami.europa.eu/pdf/design/cdcourts.pdf> 참고

미등록 공동체디자인의 침해관련 소송도 판단한다¹⁶⁵.

2. 공동체디자인법상 제품성(product)¹⁶⁶

(1) “제품성”의 도입

CDR 제 3 조는 “디자인”이란 “제품 자체 및/또는 그 장식의 선, 윤곽, 색상, 형상, 조직 및/또는 재질의 특징에서 얻어지는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의 외관을 말한다¹⁶⁷”라고 하여, 공동체디자인으로서 보호될 수 있는 디자인을 정의하고 있다.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제품에 관련하여서만 정의된다¹⁶⁸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동체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는 디자인이기 위해서는, 제품에 화체/적용될 수 있을 것(제품성), 외관을 형성할 것(외관성), 장식적일 것(장식성)이 필요하다.

(2) “제품”의 의미

㉠ 보호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제품성

공동체디자인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제품에 화체(incorporate)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제품에 화체될 수 있기만 하면 제품성은 만족된 것으로 본다. 제품에 화체될 수 있기만 하면 되고, 보호범위가 그 제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¹⁶⁹.

¹⁶⁵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침해소송 및 침해주장에 관한 소송; 비침해 확인 소송;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의 무효 확인 소송; 침해소송에서 제기된 공동체디자인의 무효확인 반소;에 관하여는 공동체디자인 법원의 전속관할이다(CDR 제81조)

¹⁶⁶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과 미국특허법에서는 디자인에 관하여 “물품”(article of manufactur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공동체디자인법에서는 “product”(제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¹⁶⁷ CDR 제3조(a): “design” means the appearance of the whole or a part of a product resulting from the features of, in particular, the lines, contours, colours, shape, texture and/or materials of the product itself and/or its ornamentation

¹⁶⁸ 그러나, 이는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디자인만 보호하고 제품과 무관하게 독립한 디자인은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제품이 디자인의 구성요소라는 뜻은 아니다.

¹⁶⁹ CDR 제36조(6): 이 조의 제(2)항[주: 제품의 표시] 및 제(3)항(a)[주: 도면의 설명]와 (d)[제품의 분류]에 언급된 요소에 포함된 정보는 그 자체로는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㉞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제품의 범위

“제품”이란 여하한 산업적 또는 수공업적 물품을 말하고, 특히 복합제품(complex product)¹⁷⁰에 조립되는 부품¹⁷¹, 포장(packaging), 차림새(get-up), 그래픽 심볼(graphic symbols) 및 글자체(typographic typefaces)¹⁷²를 포함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은 포함하지 않는다¹⁷³.

(3) “제품”의 분류 - 유로로카르노

㉠ 제품의 분류 - 유로로카르노(Eurolocarno)

공동체디자인이 화체되거나 적용될 제품은 유로로카르노 분류(Eurolocarno classification)에 의하여 분류된다. 유로로카르노는 공동체디자인의 출원과 등록에서 표시된 제품의 분류의 목적으로 OHIM이 로카르노 분류(Locarno classification)에 바탕을 두고 제정한 것이다.

㉡ 유로로카르노상 독특한 제품들

유로로카르노 분류에서는, “집, 창고, 그 밖의 건물들(Houses, Garages and other Buildings)”(25-03 류), “설계도면(Architects’ plans)”(19-08 류)¹⁷⁴, “화면표시 및 아이콘(Screen Displays and Icons)”(14-04) 등이 제품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그래픽 심볼, 로고, 표면 패턴, 장식”¹⁷⁵ 등이 제 32 류¹⁷⁶로 분류되어 있다.

¹⁷⁰ “복합제품”이란 분해와 재조립이 가능하도록 복수의 구성품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

¹⁷¹ 최종소비자(end user)의 관점에서는 제품의 일부일 뿐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것도 정규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취지이다.

¹⁷² 포장, get-up, 그래픽 심볼, 글자체 등은 전통적인 “제품”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제품으로 의제함으로써 그러한 대상 자체의 디자인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¹⁷³ CDR 제3조(b): “product” means any industrial or handicraft item, including inter alia parts intended to be assembled into a complex product, packaging, get-up, graphic symbols and typographic typefaces, but excluding computer programs;

¹⁷⁴ 설계도면 자체를 물품으로 취급하여 보호하는 것이며, 설계의 대상이 되는 물품(예: 건물)의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물품의 실제적인 표현물을 제출하고 그 물품을 지정하여야 한다; 디자인부 실무노트(Designs department Examination practice note 2/2005) 참고; <http://oami.europa.eu/en/design/pdf/practicenote2-2005.pdf>

¹⁷⁵ Graphic symbols and logos, surface patterns, ornamentation

¹⁷⁶ 로카르노 협약에 가입된 유럽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2005년 11월에 개최된 로카르노 동맹 전문 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f the Locarno Union)에서는, 그래픽 심

따라서, 아이콘, 그래픽 심볼, 표면 패턴 등은 별도의 제품을 지정하지 아니하고도 그 자체를 제품으로 하여 출원할 수 있다.

㉔ 유로로카르노와 로카르노 분류와의 관계

이러한 연유에서, 유로로카르노는 로카르노 분류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i) 유럽연합의 여러 동맹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동맹국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ii) 과거 로카르노 분류에서는 장식(ornamentation)을 분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는데,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에 따르면 “디자인”의 개념에 장식(ornamentation)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유로로카르노에서는 제 32 류로 포함하고 있었던 점 등 외에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㉕ 실무상 유로로카르노에서 제품명 선택의 필요성

유로로카르노에 포함된 제품명들은 각 동맹국 언어로 이미 번역되어 있는 점에서, 공동체디자인 출원에서 제품의 표시는 유로로카르노 분류에서 선택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

출원시 표시된 제품은 유럽연합의 여러 동맹국 언어로 번역하여 공고하게 되는데, 이 때 정형화된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면, 기계적으로 번역할 수 있어, 등록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시간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자명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기재한 명칭을 유로로카르노에 맞도록 심사관이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¹⁷⁷. 다만, 명칭의 수정으로 인하여 제품의 범위가 좁아지게 되는 것은 삼가야 한다¹⁷⁸.

로카르노 분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출원인의 편의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권장되는 사항일 뿐이고, 유로로카르노 분류 내의 제품명을 선택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¹⁷⁹.

불이나 로고 등의 디자인에 관한 새로운 클래스, Class 32(Graphic Symbols, Logos, Surface Patterns and Ornamentations)를 로카르노 분류에도 도입하여 2009.01.01.자로 발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http://www.wipo.int/edocs/mdocs/govbody/en/a_42/a_42_2.doc 참고)

¹⁷⁷ OHIM Examination Guidelines Community Design, section 6.1

¹⁷⁸ OHIM Examination Guidelines Community Design, section 6.1

¹⁷⁹ Cash Register case; OHIM 항고심판부 심결 R 1421/2006-3 (2007.07.05.)

[표 31] 유로로카르노 분류(Eurolocarno Classification) 현행 제9판 (200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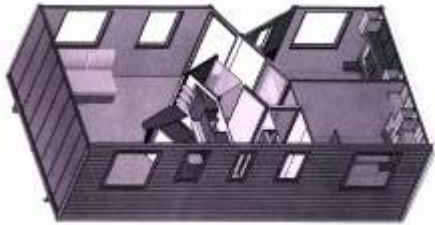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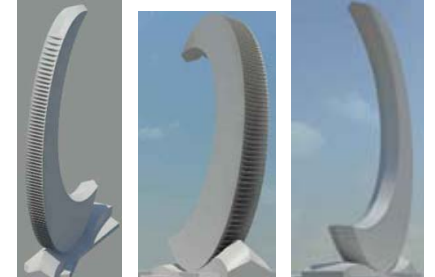
Classes	INDICATION OF GOODS
Class 1	FOODSTUFFS
Class 2	ARTICLES OF CLOTHING AND HABERDASHERY
Class 3	TRAVEL GOODS, CASES, PARASOLS AND PERSONAL BELONGINGS, NOT ELSEWHERE SPECIFIED
Class 4	BRUSHWARE
Class 5	TEXTILE PIECEGOODS, ARTIFICIAL AND NATURAL SHEET MATERIAL
Class 6	FURNISHING
Class 7	HOUSEHOLD GOODS, NOT ELSEWHERE SPECIFIED
Class 8	TOOLS AND HARDWARE
Class 9	PACKAGES AND CONTAINERS FOR THE TRANSPORT OR HANDLING OF GOODS
Class 10	CLOCKS AND WATCHES AND OTHER MEASURING INSTRUMENTS, CHECKING AND SIGNALLING INSTRUMENTS
Class 11	ARTICLES OF ADORNMENT
Class 12	MEANS OF TRANSPORT OR HOISTING
Class 13	EQUIPMENT FOR PRODUCTION, DISTRIBUTION OR TRANSFORMATION OF ELECTRICITY
Class 14	RECORDING, COMMUNICATION OR INFORMATION RETRIEVAL EQUIPMENT
Class 15	MACHINES, NOT ELSEWHERE SPECIFIED
Class 16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AND OPTICAL APPARATUS
Class 17	MUSICAL INSTRUMENTS
Class 18	PRINTING AND OFFICE MACHINERY
Class 19	STATIONERY AND OFFICE EQUIPMENT, ARTISTS' AND TEACHING MATERIALS
Class 20	SALES AND ADVERTISING EQUIPMENT, SIGNS
Class 21	GAMES, TOYS, TENTS AND SPORTS GOODS
Class 22	ARMS, PYROTECHNIC ARTICLES, ARTICLES FOR HUNTING, FISHING AND PEST KILLING
Class 23	FLUID DISTRIBUTION EQUIPMENT, SANITARY, HEATING, VENTILATION AND AIR-CONDITIONING EQUIPMENT, SOLID FUEL
Class 24	MEDICAL AND LABORATORY EQUIPMENT
Class 25	BUILDING UNITS AND CONSTRUCTION ELEMENTS
Class 26	LIGHTING APPARATUS
Class 27	TOBACCO AND SMOKERS' SUPPLIES
Class 28	PHARMACEUTICAL AND COSMETIC PRODUCTS, TOILET ARTICLES AND APPARATUS
Class 29	DEVICES AND EQUIPMENT AGAINST FIRE HAZARDS, FOR ACCIDENT PREVENTION AND FOR RESCUE
Class 30	ARTICLES FOR THE CARE AND HANDLING OF ANIMALS
Class 31	MACHINES AND APPLIANCES FOR PREPARING FOOD OR DRINK, NOT ELSEWHERE SPECIFIED
Class 32	GRAPHIC SYMBOLS AND LOGOS, SURFACE PATTERNS, ORNAMENTATION
Class 99	MISCELLANEOUS

3. 특수 물품에 관한 공동체디자인 실무

(1) 건물 등 부동산

유로로카르노 분류상 건물 등 부동산은 제 25 류 “Building units and construction elements”로 분류된다. 제 25 류는 부동산에 사용되는 부품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부동산 전체에 관한 세분류는 25.03 류에 해당된다. 아래에, 부동산에 관한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를 조사하여 담았다.

[표 32]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등록공동체디자인

서지사항	대표도면
제 품의 표시: Bungalows 등록번호: 6879-0002 출원일: 2003.04.01 분류: 25.03 권리자: DENIAU SAS	
제 품의 표시: Buildings 등록번호: 23049-0001 출원일: 2003.05.20 분류: 25.03 권리자: Reuss, Marcus	
제 품의 표시: Buildings, Bungalows, Houses, 등 등록번호: 1773383-0001 출원일: 2010.10.26. 분류: 25.03 권리자: Innerhofer, Josef	
제 품의 표시: Buildings, houses 등록번호: 1015424-0001 출원일: 2008.10.07 분류: 25.03 권리자: JAMES & FRANCESCA, S.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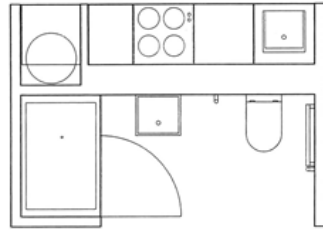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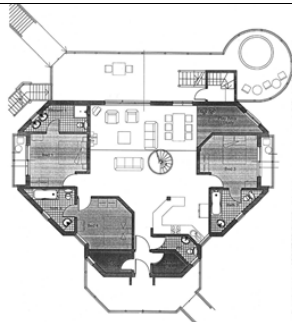
디자인의 대상이 건물 등의 부동산이라면, 도면은 그 제품의 외관 즉 건물 등 부동산의 외관을 도시하여야 하고,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서는 안된다¹⁸⁰. 설계도면은 설계도면 그 자체로 별도의 디자인으로서 보호대상이기 때문이다.

(2) 설계도면(architects' plans)

건물 등 부동산과는 별도로, 설계도면도 별도로 보호된다. 로카르노 제 19 류는 “Stationery and office equipment, artists' and teaching material”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제 19.08 류에 architects' plans 이 포함된다. 아래에 설계도면으로 등록된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를 도시하였다.

[표 33] 설계도면(Architects' plan)에 관한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

서지사항	대표도면
제 품의 표시: Architects' plans, 등 등록번호: 590781-0003 출원일: 2006.09.14. 분류: 19.08 권리자: Co-Labarchitects Ltd	
제 품의 표시: Architects' plans 등록번호: 593983-0001 출원일: 2006.11.25. 분류: 19.08 권리자: GARDNER INDUSTRIES LIMITED	
제 품의 표시: Architects' plans 등록번호: 641444-0001 출원일: 2006.12.20. 분류: 19.08 권리자: Center Parcs Limited	

설계도면(architect's plans)에 관한 등록디자인으로 보호되는 것은, 그 표현된 그대로의 설계도가 보호되는 것이지, 그 설계도에 따른 건물 기타 다른 물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¹⁸⁰ Examination Practice Note 2/2005, section 6

(3) get-up; 인테리어 디자인

건물 등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유로로카르노 분류 제 32 류로 등록된다. 제품의 표시에는 “get-up”이라는 표시가 사용된다. 부동산의 내부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기차 내의 좌석배치, 테이블 위의 음식물 배치 등 다양한 인테리어 디자인이 공동체디자인으로 등록되고 있다.

[표 34]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예

서지사항	대표도면
제 품의 표시: Get-up 등록번호: 1064588-0001 출원일: 2008.12.31. 분류: 32.00 권리자: Raquin, Régis	
제 품의 표시: Get-up 등록번호: 1133243-0001 출원일: 2009.05.01. 분류: 32.00 권리자: Rust	
제 품의 표시: Get-up, ornamentation 등록번호: 1138317-0001 출원일: 2009.05.18. 분류: 32.00 권리자: NUOVA R2S S.p.A.	
제 품의 표시: Rail vehicles 등록번호: 77615-0001 출원일: 2003.09.17 분류: 12-03 권리자: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건물 등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디자인의 대상이 건물 등의 인테리어라면, 도면은 그 인테리어를 도시하여야 하고, 인테리어에 관한 설계도면을 도면으로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4. 보호요건과 제품

(1) 보호요건은 무효에서 따짐

㉠ 법률상 보호요건

공동체디자인으로서의 보호의 요건은 CDR 제 4 조 내지 제 9 조에 규정되어 있다¹⁸¹. 먼저, CDR 제 4 조(1)에서는 “디자인은 신규하고 개성을 가지는 한 공동체디자인으로 보호된다”고 하고 있다. 이 때 신규성(novelty)이란,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동일한 디자인이 없는 것”을 말하고¹⁸², 개성(individual character)이란, informed user 에게 형성되는 전체적인 인상(overall impression)이 여타의 공지디자인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과 다른 경우를 말한다¹⁸³.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이란, “출원일(또는 우선일) 전에 등록 또는 다른 것에 의해 공개·전시·거래에서 사용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공표된 경우”를 말하는데, 다만 “공동체 내에서 관련된 부분의 전문적인 집단에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공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¹⁸⁴.

신규성과 개성의 요건을 만족하는 디자인이라도, 기술적 기능 만에 따른 제품의 외형적 특징은 공동체디자인으로 보호되지 않으며¹⁸⁵, 공공정책에 반하거나 공인된 도덕성 원칙에 반하는 디자인은 공동체디자인으로 보호되지 않는다¹⁸⁶.

㉡ 무심사 주의

그런데, 공동체디자인 제도는 무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i) 제출된

¹⁸¹ 등록된 공동체디자인과 미등록 공동체디자인을 모두 보호하는 공동체디자인제도의 특성상 CDR에는 미등록공동체디자인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는데, 미등록공동체디자인에 관한 특징은 본 연구의 주요 주제와는 동떨어진 것이라, 이하의 연구에서는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등록”공동체디자인에 관하여만 기술한다.

¹⁸² CDR 제5조(1)(b): 등록공동체디자인의 경우 출원일(또는 우선일) 전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동일한 디자인이 없으면 디자인은 신규한 것으로 본다.

¹⁸³ CDR 제6조(1)(b): informed user에게 형성되는 전체적인 인상(overall impression)이 등록공동체디자인의 경우 출원일(또는 우선일) 전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동일한 디자인에 의하여 형성되는 전체적인 인상과 다른 경우에는 그 디자인은 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¹⁸⁴ CDR 제7조(1)

¹⁸⁵ CDR 제8조(1)

¹⁸⁶ CDR 제9조

서류의 형식적 흠결의 여부, (ii) CDR 제 3 조(1)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iii) CDR 제 9 조에서 정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만을 심사한다. 따라서, 등록된 공동체디자인이 보호요건을 갖추었는가의 여부는 무효사유로 다루어지게 된다.

㉞ 무효요건

무효사유는 CDR 제 25 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표 35] CDR 제25조(1)에 따른 무효사유

제25조 무효사유 (1) 공동체디자인은 다음의 경우에 무효로 선언될 수 있다: (a) 디자인이 제 3 조(a)에 따른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b) 제 4 조 내지 제 9 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c) 법원 결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제 14 조에 따라 공동체디자인의 자격이 없는 경우; (d) 공동체디자인이 출원일(또는,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 공동체디자인의 우선일) 후에 공중에 이용가능하게 되고 다음에 의하여 그 출원일(우선일) 이전의 날로부터 보호되는 <u>선행디자인과</u> 저촉되는 경우 (i) 등록공동체디자인 또는 그 디자인 출원, 또는 (ii) 동맹국의 등록 디자인권, 또는 그 권리를 위한 출원, 또는 (iii) 1999 년 7 월 2 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이사회 결정 954/2006 에 의해 승인되어 공동체 내에서 발효된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법(이하 “제네바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그 권리를 위한 출원; (e) <u>식별력 있는 표지</u>가 후행 디자인에 사용되고, 그 표지에 관한 공동체법 또는 동맹국 법령이 표지의 권리자에게 그 사용을 금지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f) 그 디자인이 동맹국의 <u>저작권</u>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의 권한 없는 사용을 구성하는 경우; (g) 그 디자인이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이하 “파리조약”이라 한다)의 제 6 조의 3 에 열거된 항목이나 제 6 조의 3 에 포함되지 않고 동맹국에서 특정한 공공의 이익을 가지는 뱃지(badge), 엠블럼(emblem), 방패(escutcheon) 중 어느 하나의 부당한 사용을 구성하는 경우.

이러한 무효 사유 중, 제품과 관련되거나, 다른 권리와는 저촉에 관한 규정은, 제 25 조(1)(b), 제 25 조(1)(d), 제 25 조(1)(e), 제 25 조(1)(f)에 해당한다.

제 25 조(1)(b)는 신규성과 개성, 기술적 기능에 관련된 것으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표시”가 주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제 25 조(1)(d)¹⁸⁷는 선행디자인과의 대비 과정에서 “제품”을 고려하게 된다. 제 25 조(1)(e)와 제 25 조(1)(f)는 다른 권리와의 저촉에 관련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무효사유의 판단에서 “제품”이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되는지, 공동체디자인 실무, 특히 심결과 판결 예를 참고하여 정리한다.

(2) 신규성과 제품

㉠ 신규성의 요건

등록공동체디자인이 신규성이 부정되려면, “출원일(우선일) 전에 공동체 내에서¹⁸⁸ 관련된 부문의 전문적인 집단¹⁸⁹에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알려진 것”¹⁹⁰이어야 한다. 즉, 신규성을 상실케 하는 공지디자인의 범위는 출원일 전에 “관련된 부문에서 알려진 디자인”인 것이다.

공지여부를 따질 때 “관련된 부문”(sector concerned)에서 알려졌는가를 판단하게 되고, 이 “관련된 부문”의 판단에는 “제품”(product)가 영향을 끼치게 된다.

㉡ 공지의 의미와 공지디자인의 범위

공동체디자인에서의 공지는, 특허법적인 개념인 절대적 신규성(absolute novelty)¹⁹¹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¹⁹². 공지의 지역적 제한을 두었기 때문이다. 한편, CDR 제 7 조의 규정은 공지행위가 일어난 지역을 한정하는 국지적 신규성(local novelty)의 개념과도 다르다. 공동체 내의 관련된 부문에 알려지는 것이 요구될 뿐 공지행위가 공동체 내에서 일어날 것을 요건을 하고

¹⁸⁷ 우리 디자인보호법 상의 소위 “확대된 선원”에 대응되는 규정이다.

¹⁸⁸ 공동체 내에서 알려지기만 하면 될 뿐으로서, 공지행위가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CROC 사건 항고심결 R 9/2008-3 (2010.03.26.) 참고)

¹⁸⁹ 전문적인 집단(circles specialized)에 관하여, Green Paper는 “the circles would comprise 전문가(specialists), 디자이너(designers), 상인(merchants), 및 생산자(manufacturers) operating in the sector concerned”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어(Green Paper para. 5.5.5.2), 최종 소비자(end user)가 아닌 디자이너나 제품 공급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기고 있다.

¹⁹⁰ CDR 제7조에 의한 CDR 제5조(1)의 해석

¹⁹¹ 즉, 세계 어디에서든 도서관의 책에서라도 누군가 읽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도 공지로 보는 것

¹⁹² 이러한 절대적 신규성에 관하여, 유럽의회는 “이러한 절대적 신규성이 디자인에 적용되면 침해자의 입장에서 디자인을 무효화시킬 지나치게 강력한 무기를 주는 것이 되고, 이를 막기 위해서 상식적인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The Design Directive (David C. Musker), page 44, para 6.5).

있지 않기 때문이다¹⁹³.

㉔ 등록디자인의 제품과 공지디자인의 제품과의 관계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공지디자인이 되기 위하여 두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크랭크축의 디자인은 전기퓨즈에 의해 공지될 수 있고¹⁹⁴, 만화 캐릭터(“디자인”)이 만화나 잡지(“제품”)에 인쇄되면, 그 디자인은 여하한 다른 제품으로 등록 받을 수 없게 된다¹⁹⁵.

㉕ 관련된 부문(sector concerned)의 의미

공지디자인의 범위에 “관련된 부문”에서 알려질 것이 요구되므로, “관련된 부문”의 해석이 문제된다. 등록공동체디자인에 표시된 제품과 대비되는 공지디자인에 관한 제품이 서로 다른 경우에 문제가 된다¹⁹⁶. 예를 들어, 등록공동체디자인이 제품 A에 관한 것이고, 대비되는 공지디자인이 제품 B에 관한 것일 때, B의 공지디자인이 B 부문에서 알려져야 하는가 A 부문에서 알려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¹⁹⁷.

OHIM의 실무에 따르면, “관련된 부문”은 등록공동체디자인에 표시된 제품에 관련된 부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등록공동체디자인이 가구의 손잡이에 관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가구 전문가들의 지식만이 관련된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 업계에서만 알려진 자동차 손잡이는 공지디자인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¹⁹⁸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¹⁹³ 따라서, (1) 공동체 내에서 공지된 것이라도 하여도 관련업계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은 공표로 보지 않는다(The Design Directive (David C. Musker), page 44, para 6.12). (2) 공동체 외부에서 공지된 것이라도 유럽 내에 관련업계에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공표로 본다. 예를 들어, 미국 가구박람회에서도 있었던 공표는 유럽내의 전문가에게도 알려진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The Design Directive (David C. Musker), page 44, para 6.13).

¹⁹⁴ Paragraph 4.3., Page 30 of The Design Directive (David C. Musker): a design of, for example, a crankshaft could be anticipated by that of an electrical fuse

¹⁹⁵ Paragraph 4.4., Pages 30-31 of The Design Directive (David C. Musker): if a cartoon character picture (“design”) has been printed on a comic or magazine (“product”), it could not subsequently be registered as a design for any (other) product

¹⁹⁶ 등록공동체디자인에서 표시된 제품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도 문제의 소지는 있을 것이다.

¹⁹⁷ 예를 들면, 등록공동체디자인이 마우스의 형태를 띤 지우개에 관한 것이고 공지디자인이 미국에서 실시된 마우스에 관한 것일 때, 그 마우스가 공동체 내의 마우스 관련 부문에 알려지면 되는지 아니면 지우개 부문에서 알려져야 하는지이다.

¹⁹⁸ Manual on the European Community Design; page 9, D.2

그런데, 이와는 반대되는 견해¹⁹⁹도 있으며,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제품을 기준으로 관련된 부분을 정한다면, 다른 부문에서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하여 역으로 권리행사를 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스파크 플러그의 디자인이 자동차업계에서만 공지되고 목걸이나 귀걸이 등의 장신구업계에서는 공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스파크 플러그의 디자인은 귀걸이를 제품으로 하여 등록될 수 있는데²⁰⁰, 이렇게 등록된 스파크 플러그 외관을 가지는 귀걸이 디자인은, 공지된 스파크 플러그에도 미치게 된다²⁰¹. 이 경우, 만약 공지된 스파크 플러그를 이미 실시하고 있던 자는 선사용권²⁰²을 기초로 그 실시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실시상의 제약이 따르고²⁰³, 만약 그 스파크 플러그의 공지가 문서로서만 이루어지고 실제 제품은 실시되지 않은 상태라면, 자동차 업계는 이미 알고 있던 디자인을 후발 등록공동체디자인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영국 항소법원²⁰⁴도, 이러한 모순을 근거로, 공지디자인을 결정하기 위한 관련 부문은, 등록공동체디자인에 관련된 부문으로 보기보다는, 그 공지디자인에 관한 부문으로 보는 것²⁰⁵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²⁰⁶.

이와 같이, 등록된 공동체디자인에 표시된 제품과는 다른 제품의 선행디자인에 관하여 공지디자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OHIM의 실무와 법원의 태도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추후 공동체대법원에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¹⁹⁹ The Design Directive (David C. Musker), page 45, para 6.15

²⁰⁰ 자동차 업계에서만 알려진 스파크 플러그의 외관은 귀걸이의 등록디자인의 공지디자인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²⁰¹ 귀걸이를 제품으로 하여 등록된 스파크 플러그와 자동차에 사용된 스파크 플러그를 대비할 때, 물품이라는 속성을 제외한 두 디자인이 동일하다면,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할 수 밖에 없으며, 신규성과 개성을 판단하기 위한 공표의 지역적 범위에 관한 규정이 침해를 판단하기 위한 전체적인 인상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²⁰² CDR 제22조

²⁰³ 타인에게 위탁생산 하기도 힘들어지고, 실시권 설정도 곤란해진다.

²⁰⁴ The Royal Court of Justice; 대법원에 해당함

²⁰⁵ 따라서, 특정 제품의 공지디자인이 공동체 내의 그 제품에 관한 부문에 알려진 것이라면, 다른 제품을 표시하여 등록받아도 무효사유가 존재하게 되어, 공지디자인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²⁰⁶ Laundry ball v Massage ball 사건([2008] EWCA Civ 358 (2008.04.23.))

(3) 개성의 평가와 제품

㉠ 법률상 개성 구비의 요건

등록된 공동체디자인이 개성이 있다는 것은, *informed user* 가 보았을 때 공지된 디자인과 대비하여 전체적인 인상(*overall impression*)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²⁰⁷. 그리고, 개성을 평가할 때에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창작자의 자유도가 고려되어야 한다²⁰⁸.

㉡ 개성의 평가에 사용되는 공지디자인의 범위

등록공동체디자인에 대한 공지디자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앞서 신규성과 물품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다. 등록공동체디자인은 여하한 선행디자인과 전체적인 인상이 다를 것이 요구된다. 즉, 선행디자인은 같은 제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업계(*industrial sector*)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공지디자인과 대비하여 전체적인 인상을 기초로 개성의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 개성의 평가 방식

CDR 제 6 조는 둘 이상의 디자인의 결합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비되는 대상은 등록공동체디자인과 각각의 공지디자인을 말한다²⁰⁹. 전체적인 인상(*overall impression*)이란, 차이점을 분해해서 대비하여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전체로 대비할 것을 말한다²¹⁰.

㉣ *Informed user* 의 특정

등록디자인과 공지디자인과 대비하는 주체적 기준인 *informed user* 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제품”이 영향을 미치는 분명하다.

²⁰⁷ CDR 제6조(1)의 해석

²⁰⁸ CDR 제6조(2)

²⁰⁹ 따라서, 주전자의 손잡이가 어떤 디자인에 의하여 공지되어 있고 주전자의 몸통이 다른 디자인에 의하여 공지된 경우, (몸통을 포함한 주전자의 전체디자인은 손잡이 디자인과도 전체적인 인상이 다르고, 손잡이를 포함한 주전자의 전체디자인은 몸통에 관한 디자인과도 전체적인 인상이 다르기 때문에) 둘을 결합한 주전자의 전체 디자인은 등록이 가능하다는 견해에 *The Design Directive (David C. Musker)*, page 39, para 5.19; 다만, 이러한 공동체디자인제도의 모순은 미국특허법상의 비자명성, 우리 디자인보호법상의 창작 비용이성의 요건에 의하여 해소될 것이다.

²¹⁰ *Green Paper* para 5.5.8.2

Informed user 란, 수리공이나 디자인 창작자를 의미하기 보다는, 잠정적으로 최종소비자(end user)를 말한다²¹¹. 그러나, 단순한 최종소비자는 아니며²¹², 디자이너나 제품 디자인 전문가도 아니고²¹³, 생산자, 거리의 문외한, 당업자²¹⁴도 아니며, 상표에서 말하는 평균 소비자(average consumer)²¹⁵도 아닌 것이다²¹⁶. 판례²¹⁷에 따르면, 기존의 디자인(existing design corpus)을 알고, 디자인에 관해 민감하며, 상표의 평균 소비자보다 더욱 분석적이고, 상표의 평균소비자보다 불완전한 회상(imperfect recollection)에 덜 의지하여 등록디자인과 침해품을 서로 대비할 수 있는 자이다.

이러한 informed user 는 특정 제품에 관하여 결정되는데,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공지디자인의 제품이 동일한 경우 그 제품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임은 물론이다.

양 디자인의 제품이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해 어느 제품을 기준으로 informed user 를 정할지에 관한 명확한 판례는 없으나²¹⁸, 법원과 OHIM 의 심판부는 등록디자인에 표시된 제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따조(Tazo) 사건²¹⁹에서 법원은, “promotional item(s) for games”라는 넓은 범위로 표시한 등록공동체디자인에서의 제품의 표시를 기준으로 하되, 디자인 그 자체를 참고함으로써 등록시의 표시된 제품의 넓은 범위 내의 제품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informed user 및 디자이너의 자유도를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따조(Tazo)라는 좁은 제품의

²¹¹ The Design Directive (David C. Musker), page 40, para 5.20

²¹² The Procter & Gamble Company v Reckitt Benckiser Austria GmbH Case 4 Ob 43/07p, Oberster Gerichtshof Österreich, para 1.3

²¹³ The Procter Gamble Company v Reckitt Benchiser (UK) Limited [2006] EWHC 3154 (Ch), para 30; Karen Millen Limited v Dunnes Stores [2007] IEHC 449, p.38

²¹⁴ Woodhouse UK Plc v Architectural Lighting Systems [2005] EWPCC (Designs) 25, para 50;

Grupo Promer v. PepsiCo Inc. 공동체디자인법원 판결 T-9/07 (2010.03.18)

²¹⁵ Reckitt Benchiser (UK) Limited v The Procter & Gamble Company [2007] EWCA Civ 936, para 24

²¹⁶ An Introduction to EU Designs Law; April 2010; David Stone (Simmons & Simmons) <http://author.acc.com/chapters/israel/loader.cfm?csModule=security/getfile&pageid=943731>

²¹⁷ Procter & Gamble v. Reckitt Benchiser [2007] EWCA Civ 936

²¹⁸ Laundry ball v Massage ball 사건([2008] EWCA Civ 358 (2008.04.23.)) 판례에서는 선행디자인이 공지디자인에 해당하는지를 정하기 위한 주체적 기준으로서 선행디자인의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그 공지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을 대비하는 주체적 기준으로서의 informed user에 관한 기준은 판시하지 않았다.

²¹⁹ 공동체디자인법원 판결 T-9/07 (2010.03.18. 판결)

범위에서 디자인의 자유도는 크게 구속된다고 하였다.

또한, 페라리(Ferrari) 사건²²⁰에서 OHIM 의 항고심판부는, 완구를 제품의 표시로 하여 등록된 공동체디자인에서 informed user 는 완구를 사용하는 아이들로 파악하여, 아이의 눈에는 공지된 F1 레이싱카와의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등록공동체디자인을 무효로 선언하였다. 디자인이 한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디자인이 전용되고 변형된 경우, 개성의 판단에 기준이 되는 informed user 는 공지디자인 부문을 기초로 할 것이 아니라 등록디자인에 관한 부문이 타당할 것이다²²¹.

㉠ 디자인을 개발하는 창작자의 자유도

등록디자인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그 디자인을 개발하는 창작자의 자유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때 디자인의 자유도란 제품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²²². 따라서, 창작자의 자유도를 고려할 때에도 제품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디자인의 자유도를 제한하는 것은 그 제품이나 구성요소의 기술적 기능에 의한 제한이나 그 제품에 부과되는 법률적 요건에 의해서 발생된다²²³.

디자인의 자유도를 고려한다는 것은, “차이가 생길 여지가 적은 경우에는 개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선행디자인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로도 충분하고, 반대로 디자인 자유도가 큰 경우에는 큰 차이가 필요함을 말한다”²²⁴.

예를 들어, 등록디자인과 공지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기능적인 제품의 속성상 디자인의 자유도의 폭이 좁은 경우 작은 차이에 의하여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적인 제품을 표시한 등록디자인은

²²⁰ OHIM 항고심판부 심결 R 84/2007-3 (2008.01.25. 심결)

²²¹ 이러한 견해로, <http://design-law.wikispaces.com/Green+Lane+v+PMS>

²²² 즉, 기능적인 제품의 경우 기능에 의하여 디자인의 자유도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가능한 디자인의 폭도 좁은 것이 되어, 디자인 상의 작은 차이도 전체적인 인상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

²²³ 공동체디자인법원 T-9/07 판결 (2010.03.18) paragraph 67: In that connection, it must be noted that the designer's degree of freedom in developing his design is established, inter alia, by the constraints of the features imposed by the technical function of the product or an element thereof, or by statutory requirements applicable to the product. Those constraints result in a standardisation of certain features, which will thus be common to the designs applied to the product concerned.

²²⁴ The Design Directive (David C. Musker), page 41, para 5.26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반면, 디자인의 자유도가 매우 넓은 제품이라고 가정할 때에는 작은 차이에 의하여는 전체적인 인상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²²⁵.

(4) 기술적 기능 만에 의한 디자인인가의 판단과 제품

㉠ 기술적 기능 만에 따른 디자인의 보호 불가

CDR 제 8 조(1)은, “공동체디자인은 기술적 기능 만에 따른 제품의 외형적 특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²²⁶ 고 하고 있다. 기술적 기능 만에 따른 제품의 외형을 디자인으로 보호한다면, 이는 기술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기 때문이다.

㉡ 제품과의 관련성

기술적 기능 만에 의한 디자인인가의 판단에는 제품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어떠한 형상이 특정 제품에 대하여는 기술적 기능 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다른 제품에 대하여는 기술적 기능과는 무관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프링 형태의 외관은 스프링에 관하여는 기술적 기능 만에 의한 외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과자나 초콜릿에 관하여는 기술적 기능과는 무관한 외관이 될 것이다.

㉢ “기술적 기능 만에 따른”(solely dictated by its technical function)의 의미

기술적 기능 만에 따른 것인가의 여부에 관해 전통적으로 “형태가 기능에 따라 형성된 것(form follows function)”, 즉, 동일한 기능이 다른 형태에 의하여 구현될 수 있는가의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²²⁷.

²²⁵ 공동체디자인법원 T-9/07 판결 (2010.03.18) paragraph 72: In the specific assessment of the overall impression of the designs at issue on the informed user, who has some awareness of the state of the prior art, the designer's degree of freedom in developing the contested design must be taken into account. ... In addition, the more the designer's freedom in developing the contested design is restricted, the more likely minor differences between the designs at issue will be sufficient to produce a different overall impression on the informed user.

²²⁶ “A Community design shall not subsist in features of appearance of a product which are solely dictated by its technical function.”

²²⁷ Philips v Remington 사건 참고

[http://design-law.wikispaces.com/Philips+ v+ Remington+ %28AGO%29](http://design-law.wikispaces.com/Philips+v+Remington+%28AGO%29)

그러나, OHIM 항고심판부의 입장은 “기술적 기능 만에 의한 특징이란, 그 특징이 제품의 기술적 기능이 구현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수단이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그 특징이 도입된 이유가 제품의 기술적 기능이 구현될 필요에 의한 것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²²⁸.

㉔ 등록된 디자인의 보호범위 해석

등록권리의 보호범위 해석에 관해 후에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기능적이지 않은 제품을 대상으로 등록된 디자인이라도, 그 형태가 기능적이 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²²⁹.

(5) 선행디자인과의 저촉과 제품

㉕ 무효사유

CDR 제 25 조(1)(d)는, “공동체디자인이 출원일(또는,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 공동체디자인의 우선일) 후에 공중에 이용가능하게 되고 다음에 의하여 그 출원일(우선일) 이전의 날로부터 보호되는 선행디자인과 저촉되는 경우”²³⁰에 등록공동체디자인이 무효로 선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㉖ 무효요건 분석

CDR 제 25 조(1)(d)를 근거로 등록디자인이 무효로 선언되기 위하여는, (i) 선행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출원되고 출원일 후에 공표되어야 하고, (ii) 등록디자인은 이러한 선행디자인과 “저촉”(conflict)되어야 한다.

㉗ 저촉(conflict)의 의미

저촉(conflict)란, informed user 에 대하여 두 디자인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할 때를 말한다. 즉, 후출원 디자인의 출원일(또는 우선일) 이전에 공개되었을 때 후 출원의 개성(individual character)을 상실하게 하는

²²⁸ 작두(Chaff cutter) 사건 참고: R 690/2007-3 (2009.10.22.)

²²⁹ CDR 제9조(1)

²³⁰ “if the Community design is in conflict with a prior design which has been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after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or, if priority is claimed, the date of priority of the Community design, and which is protected from a date prior to the said date”

선행디자인이라면, 두 디자인은 저촉되는 것²³¹이다. 즉, 개성을 상실하게 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표된 것이라면 CDR 제 25 조(1)(b)를 근거로 무효되고, 출원일 후에 공표된 것이라면 CDR 제 25 조(1)(d)를 근거로 무효된다²³².

④ 제품과의 관계

따라서,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과의 대비에는 개성의 존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에 “informed user”의 주체적 기준이 개입되고 “디자이너의 자유도”가 개입되므로, 이에 제품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6) 선행 상표권과의 충돌과 제품

① 무효사유

CDR 제 25 조(1)(e)는, “식별력 있는 표지가 후행 디자인에 사용되고, 그 표지에 관한 공동체법 또는 동맹국 법령이 표지의 권리자에게 그 사용을 금지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²³³에 등록공동체디자인이 무효로 선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② 무효요건 분석

CDR 제 25 조(1)(e)를 근거로 등록디자인이 무효로 선언되기 위하여는, (i) 식별력 있는 표지(distinctive sign)여야 하며, (ii) 후행 등록디자인에서 이러한 표지를 사용하여야 하고, (iii) 그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표지의 권리자에게

²³¹ 따조(Tazos) 사건 OHIM 항고심판부의 심결문(R1001/2005-3; 2006.10.27. 결정) 판시사항: “The term ‘in conflict with’ in Article 25(1)(d) is not defined in the legislation. The Invalidity Division took the view that a conflict arises when the two designs produce the same overall impression on the informed user. In other words a conflict exists when the earlier design would, if it had been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before the filing date (or priority date) of the later design, have deprived the later design of individual character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6 CDR. That interpretation has been accepted by both the parties and is clearly correct. It may in addition be noted that a conflict would also exist, for the purposes of Article 25(1)(d), if the two designs were identical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 CDR.”

²³² 이러한 이유로, CDR 제25조(1)(d)는 우리 디자인보호법에서의 확대된 선원(현행법 제5조제3항)에 대응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²³³ “if a distinctive sign is used in a subsequent design, and Community law or the law of the Member State governing that sign confers on the right holder of the sign the right to prohibit such use”

있어야 한다.

“식별력 있는 표지”란, 단지 상표(trademark)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나²³⁴, 편의상 이하의 설명에서는 “상표”를 전제로 설명한다.

㉔ 사용

상표가 후행 디자인에서 사용되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결과적인 디자인이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거나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²³⁵, 선행상표의 특징적인 점이 후행 등록디자인에서 인식되어 출처의 혼동이 생기는 경우 사용에 해당한다²³⁶. 따라서, 선행상표가 후행 디자인에서 사용되고 있는가의 여부의 판단에서 전체적인 인상을 대비하지 않으므로, 디자인의 대상이 된 제품의 표시는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상품의 출처의 혼동을 판단하기 위하여 상표법상의 평균소비자(average consumer)의 관점에서 판단되게 된다.

㉕ 금지할 권리

선행상표에 관하여는, 실제로 동맹국에서 금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단지 상표등록이 유지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독일에서 상표권의 행사를 위해 권리행사 전 5 년 내의 실질적인 사용이 전제되는 경우, 등록디자인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²³⁷.

㉖ 선행상표의 상품과 등록디자인의 제품의 동일성

선행 상표의 지정상품과 등록디자인의 제품과는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²³⁸. 따라서, 등록디자인의 제품의 표시가 넓은 경우, 이에 해당되는 선행상표의

²³⁴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s (PDOs),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s) 등도 이러한 조항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²³⁵ MIDAS 사건(Honeywell Analytics Limited v. Hee Jung Kim); OHIM 항고심판부 심결 R 609/2006-3(2007.05.03.)

²³⁶ 필기구(Instruments for writing) 사건; 공동체디자인법원 판례 T-148/08(2010.05.12.)

²³⁷ 필기구(Instruments for writing) 사건; 공동체디자인법원 판례 T-148/08(2010.05.12.)

²³⁸ OHIM의 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서, 상표의 지정상품과 등록디자인의 제품의 동일성이 전제된다고 명시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모든 심결에서 상표의 지정상품과 등록디자인에서 표시된 제품의 일치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는 당연한 선결문제로 취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범위가 넓게 된다²³⁹.

로고의 경우 선행상표의 지정상품이 무엇이든 CDR 제 25(1)(e)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로고를 대상으로 하여 등록된 등록공동체디자인과 선행상표와의 저촉여부는 선행상표의 지정상품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OHIM 항고심판소 심결²⁴⁰은, 로고는 상표등록에 관한 제품을 포함하여 무한한 범위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공중은 그 디자인을 순수한 로고로서가 아닌 상표로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하면서, 다툼이 있는 등록공동체디자인은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²⁴¹.

(6) 선행 저작권과의 충돌과 제품

㉠ 무효사유

CDR 제 25 조(1)(f)²⁴²는, “동맹국의 저작권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의 권한 없는 사용을 구성하는 경우”에 등록공동체디자인이 무효로 선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무효요건

CDR 제 25 조(1)(f)를 근거로 등록디자인이 무효로 선언되기 위하여는, (i) 동맹국 법령에 의하여 저작권(copyright)으로 보호되는 것이어야 하고, (ii) 권한 없는 사용(unauthorized use)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디자인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1 조(2)를 그대로 공동체디자인법에 채용한 것이다.

CDR 제 25 조(1)(f)를 근거로 등록디자인의 무효를 주장한 예는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거나 인용한 판례나 심결례는 많지 않다. OHIM 무효심판부는 인용된 저작물 등록디자인을 대비할 때 차이점이 있는 경우 저작물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하였다²⁴³.

²³⁹ Cash Register 사건; OHIM 항고심판부 심결 R1421/2006-3 (2007.07.05.)

²⁴⁰ MIDAS 사건(Honeywell Analytics Limited v. Hee Jung Kim); OHIM 항고심판부 심결 R 609/2006-3(2007.05.03.)

²⁴¹ EU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policy(Catherine Seville저; Edward Elgar Pub), page 199

²⁴² “if the design constitutes an unauthorised use of a work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law of a Member State”

²⁴³ Röder v. Audi; OHIM 무효심판부 ICD 1014 심결(2006.06.01.)

㉔ 사용

식별력 있는 표지의 사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에 상표의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처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의 사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저작권의 법리에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모나리자의 그림을 컵에 인쇄하는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모나리자 그림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할 것이다²⁴⁴. 이러한 판단에서, 등록디자인의 제품이 영향을 미칠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보호범위와 제품

(1) 보호범위 판단의 기본원리

㉕ 보호범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CDR 제 10 조(1)은, “공동체디자인으로 부여되는 보호범위에는, informed user 에게 전체적으로 다른 인상을 형성하지 않는 여하한 디자인도 포함된다”²⁴⁵고 하고 있으며, CDR 제 10 조(2)는, “보호범위를 평가할 때에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창작자의 자유도가 고려되어야 한다”²⁴⁶고 하고 있다. CDR 제 36 조(6)은, “제(2)항[주: 제품의 표시] 및 제(3)항(a)[주: 도면의 설명]와 (d)[주: 제품의 분류]에 언급된 요소에 포함된 정보는 그 자체로는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²⁴⁷고 하고 있다.

㉖ 해석의 원칙

따라서, 등록공동체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해당되는 디자인은, (i) informed user 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ii)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한 모든 디자인이 포함되고, (iii) 제품의 표시에 보호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iv) 디자인을 개발하는 창작자의 자유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²⁴⁴ The Design Directive (David C. Musker), page 78, para 11.13

²⁴⁵ “The scope of the protection conferred by a Community design shall include any design which does not produce on the informed user a different overall impression.”

²⁴⁶ “In assessing the scope of protection, the degree of freedom of the designer in developing his design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²⁴⁷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ments mentioned in paragraph 2 and in paragraph 3(a) and (d) shall not affect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design as such.”

(2) 보호범위 판단에서 제품의 영향 - 개성의 판단에서와 동일

이러한 해석의 원칙에 따르면,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informed user*²⁴⁸를 정하고,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디자이너의 자유도를 참고하게 되며, 그러한 디자이너의 자유도를 참고하여 등록디자인과 대비대상 디자인을 대비하여 전체적인 인상을 대비하게 된다.

따라서, 보호범위 판단에서 제품이 미치는 영향은, 개성의 판단에서와 마찬가지로, *informed user*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디자이너의 자유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²⁴⁹.

(3) 부연: 보호범위 판단과 개성의 판단의 차이점

㉠ 차이점의 존재

보호범위에 관한 CDR 제 10 조(1) 및 (2)의 규정은, 그 표현에서 개성을 보호의 요건으로 규정한 CDR 제 6 조(1) 및 (2)의 규정과 문언적으로 닮음을 이루고 있다. 보호의 범위와 개성을 정의하면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공동체디자인법은 적절한 균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개성이 강한 것은 넓은 보호범위를 누리게 되고, 역으로, 개성이 약한 것은 좁은 보호범위를 가지게 된다²⁵⁰.

그러나, 등록디자인의 개성을 상실케 하는 디자인의 범위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디자인의 범위는 완전 동일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법률상 규정된 구조가 다르고, 판례 또한 달리 해석한 예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²⁴⁸ 보호범위 판단 주체로서의 *informed user*의 속성은 개성의 판단 주체로서의 *informed user*와 동일하다

²⁴⁹ 다만,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의 제품이 다른 경우 *informed user*를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지에 관하여는 정립된 판례가 없다. 예를 들어, 등록디자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i) 자동차디자인 등록으로 완구에 행사할 때, 완구에 비해 자동차 사용자의 식견이 높으므로 거의 비슷하게 모방한 것에 대하여만 행사 가능하고, 승용차 소비자들이 보기에 조잡하거나 약간 다르게 모방한 것에는 행사 불가능하게 되고(권리행사 폭 감소), (ii) 완구디자인 등록으로 자동차에 행사할 때에는 완구소비자(아이들)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완구와 유사한 범위가 넓어져 완구디자인을 침해하는 자동차디자인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²⁵⁰ Manual on the European Community Design, page 15, para F.1

㉞ 공지를 구성하는 디자인의 범위 - sector concerned

공동체 내에서 관련된 부문(sector concerned)의 전문적인 집단에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없는 디자인은 공지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디자인은 비록 세계 어디서인가 공지되었거나 다른 부문에서 공지된 것이라고 하여도, 등록디자인의 무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보호범위에 관하여는, 특정 분야에서만 알려지도록 이루어지는 실시가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식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같은 디자인을 전혀 다르고 서로 알려지지 않는 부문에서 실시하더라도 이는 등록디자인의 침해가 되게 된다²⁵¹.

㉟ Clearly different v. different

공동체디자인법(CDR)은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의 규정을 서두에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문 제(14)항은 “디자인이 개성을 가지는가에 관한 평가는, ... 전체적인 인상이, ... 기존의 디자인들과 분명히 달라지는가(clearly different)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²⁵²고 하고 있다. 이는 “개성”의 평가에 관한 지침으로서, 보호범위의 판단에서는 규정된 표현대로 전체적인 인상이 “다른” 디자인은 보호범위가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보호범위를 판단할 때의 전체적인 인상이 다른 정도와, 보호요건으로서의 개성을 평가할 때의 전체적인 인상이 다른 정도가 다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영국 항소법원²⁵³은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유효성을 따질 때와 침해를 따질 때의 전체적인 인상을 평가하는 테스트 방식이 다른 것으로 보았다²⁵⁴. 즉, 등록공동체디자인이 공지디자인에 대하여 개성을 가지는가의

²⁵¹ 이러한 원리로, 다른 부문에서만 공지된 디자인을 제품을 달리하여 공동체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등록된 공동체디자인으로 그 다른 부문에서의 공지된 디자인에 역으로 권리행사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가 있으므로, 공지디자인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된 부문은 공지디자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영국 항소법원 판례(Laundry ball v. massage ball; [2007] EWCA Civ 358)가 있다.

²⁵² “The assessment as to whether a design has individual character should be based on whether the overall impression ... clearly differs from ...”

²⁵³ The Procter & Gamble v. Reckitt Benckiser; [2007] EWCA Civ 936

²⁵⁴ (Hammonds, Alert, December 2007)

<http://www.hammonds.com/FileServer.aspx?oID=22215>

여부는 CDR 서두의 인용문단(14)를 참조로 공지디자인에 비하여 “분명히 달라지는가(plainly different)”의 여부로 판단하고, 보호범위는 법문에 기재된 대로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지는가(different)”의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⁵⁵.

(4) 기술적 기능 만에 따른 디자인

기술적 기능 만에 따른 디자인의 경우, 출원시의 제품을 참고로 기술적 기능 만에 따른 것인가 판단하여 등록디자인의 무효여부를 따지게 됨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특정 제품에 관하여는 기술적 기능 만에 따른 외형인 디자인을 다른 제품을 대상으로 하여 등록 받은 후 그 특정제품에 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이 경우, CDR 제 8 조(1)을 적용하여 그러한 제품의 외형적 특징에는 공동체디자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권리 행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²⁵⁶.

6. 공동체디자인 제도 상의 기타 실무

(1) 제품의 표시와 관련된 출원/등록 실무

㉠ 출원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출원서에는 디자인이 화체되거나 적용될 제품을 특정하는 정보²⁵⁷가 포함되어야 한다²⁵⁸. 이 정보는 등록공동체디자인의 보호범위에 그 자체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²⁵⁹.

²⁵⁵ CDR 서두의 인용문단(14)에서는 “개성을 가지는가에 관한 평가는, ... 전체적인 인상이 ... 분명히 달라지는가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보호범위에 관한 제10조는 “전체적인 인상이 다르지 않은 여하한 디자인”을 포함하는 것을 정의되어 있다.

²⁵⁶ 예를 들어, 기술적 기능만에 따른 스프링의 형상을 초콜릿을 대상으로 등록받은 후 그 등록디자인 권리를 스프링에 대하여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 그 형상은 스프링에 관한 한 기술적 기능만에 의한 것이므로 공동체디자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²⁵⁷ 즉, 제품의 표시(indication of product)

²⁵⁸ CDR 제36조(2)

²⁵⁹ CDR 제36조(6)

㉞ 제품의 표현 방식

제품은 제품의 속성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각 제품이 로카르노 분류 중 하나의 분류만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바람직하게는 로카르노 또는 유로로카르노 분류의 목록에 나타나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²⁶⁰. 로카르노 분류의 목록에 나타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유럽동맹국 각국 언어로의 공보발행이 편리해지기 때문이다²⁶¹.

㉟ 심사관에 의한 직권변경

심사기준에 따르면, 심사관은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출원인이 사용한 표현을 로카르노 분류에 속하는 동등한 표현으로 변경한다²⁶². 명백한 경우의 예로는, 미국식 영어와 유럽식 영어 사이의 변경²⁶³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심사관은 출원인의 표현을 더욱 구체적인 용어로 변경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²⁶⁴.

㊱ 제품의 표시의 흠결과 보정

제품의 표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OHIM 은 2 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령한다. 이 기간 내에 흠결이 보정되지 않은 경우 OHIM 은 출원을 거절한다²⁶⁵.

(2) 복수 제품의 표시와 관련된 출원/등록 실무

㉠ 복수 제품의 표시

출원시 제품의 표시는 복수 개 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출원에서 표시할 수

²⁶⁰ CDIR 제3조(3)

²⁶¹ 로카르노 분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출원인의 편의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권장되는 사항일 뿐이고, 유로로카르노 분류 내의 제품명을 선택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심결로는, Cash Register case; OHIM 항고심판부 심결 R 1421/2006-3 (2007.07.05.)

²⁶² RCD 97944: "Graphic symbol particularly for animation characters, dolls and ornamentation of objects in general"의 긴 표현을 "graphic symbols"로 직권으로 변경하였다.

²⁶³ jewelry - jewellery; trunk - boot; sidewalk - pavement; nightshift - nightshirts; garbage - rubbish; 등

²⁶⁴ Examination Guidelines 6.1

²⁶⁵ Examination Guidelines 6.3

있는 제품의 수는 5 개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복수로 표시되는 제품이 반드시 하나의 로카르노 분류 내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㉞ 복수디자인 출원과 복수 제품의 표시

공동체디자인에서 복수디자인출원을 통하여 하나의 출원으로 출원될 수 있는 디자인들은 로카르노 분류상 하나의 분류에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디자인 출원에 표시된 복수의 제품이 서로 다른 로카르노 분류에 관한 것인 경우, 이 출원은 다른 디자인과 복수디자인출원으로 출원될 수 없다.

다만, 장식(ornamentation)의 경우 하나의 분류에 포함되는가를 따지지 않으므로²⁶⁶, 하나의 분류 내에 포함되는 복수의 제품과 장식을 제품으로 표시한 디자인은 같은 분류 내의 다른 디자인과 복수디자인으로 출원이 가능하다.

㉟ 복수 제품의 표시와 관련된 문제 - 공지디자인의 범위

공지디자인인가의 여부는 제품에 관련된 부문의 전문가 집단에 알려졌는가의 여부를 기초로 정하여진다. 따라서, 복수 제품이 표시된 디자인의 경우, 어느 제품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이나, 이에 관하여 명확한 실무나 판례가 발견되지 않는다²⁶⁷.

㊱ 복수 제품의 표시와 관련된 문제 - informed user, 디자인의 자유도 판단

개성의 평가와 보호범위의 판단에서 informed user 와 디자인의 자유도는 제품에 관련되어 정하여지는데, 이에 관하여 어느 제품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표시된 제품 모두의 평균적인 사용자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해 문제가 있으나, 이에 관하여 명확한 실무나 판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²⁶⁶ OHIM의 정의에 따르면, CDR 제37조(1)과 Examination Guidelines에 따르면 “표면 장식”(ornamentation)이란 윤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여러 제품의 표면에 추가되는 장식적 요소이다(OHIM Newsletter 5-2005). 따라서 표면 장식은 다양한 여러 형상의 제품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품과 분류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Jenkins “Design Features” summer 2007).

²⁶⁷ 공지디자인에 관한 제품을 기준으로 관련된 부문(sector concerned)을 정해야 한다고 한 영국 항소법원의 판결(Laundry ball v. Massage ball; [2008] EWCA Civ 358 (2008.04.23.))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㉔ 기술적 기능 만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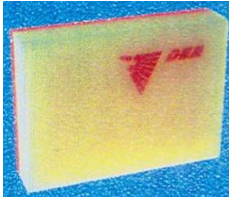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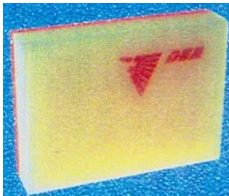
디자인 중 어떠한 부분에 관해, 표시된 제품들 중 특정 제품에 관하여는 기술적 기능 만에 따른 것이고 다른 제품에 관하여는 기술적 기능과는 무관한 것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디자인을 기술적 기능 만에 따른 것으로 볼 것인지²⁶⁸가 문제되나, 이에 관하여 명확한 실무나 판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하나의 제품을 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리로, 복수의 제품을 표시한 디자인의 경우 표시된 각 제품에 대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²⁶⁹.

(3) 색채 도면의 해석

㉕ 원칙

채색된 도면은 그 채색된 색상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채색되지 않은 도면에서 흰색, 회색 등 색채가 가해지지 않은 부분은 도시된 대로 흰색이나 회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색채의 한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흑백 도면으로 된 디자인의 경우 채색된 디자인에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표 36] 채색 여부에 따른 전체적인 인상에 관한 OHIM 심판 사례

전체적인 인상	RCD	공지디자인	
전체적인 인상 동일(회색얇면) (ICD 1758; 2006.05.15.)			
전체적인 인상 다름(황색얇면) (ICD 1741; 2006.05.15)			

²⁶⁸ 이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을 무효로 할 것인지

²⁶⁹ 디자인의 일부 부분이 기술적 기능에 관련되고 이를 제거하여도 디자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라면 그 부분에 관해 일부 포기를 선언하여 등록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제품의 표시를 삭제하는 일부 포기는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등록디자인은 무효로 선언되게 될 것이다.

㉞ 무채색을 그 자체의 무채색으로 보는 경우

도면 전체가 무채색으로 된 경우가 아니라 일부가 착색된 경우에는, 도면을 색채도면으로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채색되지 않은 여백은 흰색으로 파악되고, 회색 부분은 도시된 대로의 회색으로 파악하게 된다.

㉟ 무채색으로 한정하려는 경우

도면 전체를 무채색으로 제출하면서 도시된 대로의 무채색인 것으로 보호범위를 정하려면, 배경에 색채를 가하면 된다. 예를 들어, 푸른 배경의 무채색 선도의 여백은 흰색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㊱ 사진 도면에서 부분디자인의 표시

사진 도면을 제출하면서 부분디자인을 청구하려는 경우, 보호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특징만을 강조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흑백도면에 채색하거나, 색채에 음영을 주거나, 흐리게 할 수 있다.

[표 37] 보호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특징만을 강조하는 예

 RCD 229752 (흑백도면에 채색)	 RCD 220405-0003 (색채에 음영을 가함)	 RCD 222120-0002 (보호대상이 아닌 부분을 흐리게 함)
--	---	---

(4) 무효사유에 대하여 일부 포기(partial disclaimer)를 통한 권리의 유지

㉠ 법률의 규정

CDR 제 25 조(6)에 따르면, CDR 제 25 조(1)(b)²⁷⁰, (e)²⁷¹, (f)²⁷² 또는 (g)²⁷³에 따라 무효로 선언된 등록공동체디자인은, 보호의 요건을 만족하고 디자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보정된 형식으로 유지될 수 있다²⁷⁴. 권리자에 의한 일부 포기나 OHIM 사무국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한 일부 무효 선언을 등록함으로써, 등록권리를 보정된 형식으로 유지하는 것이다²⁷⁵.

㉞ 일부 포기의 요건 - 무효사유

모든 무효사유에 대하여 일부 포기를 통한 권리의 유지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등록디자인에 공서양속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 선행 상표·저작권·배지 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디자인의 보호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조건을 등록디자인을 존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㉟ 일부 포기의 요건 - 디자인의 객체적 요건

이러한 무효사유에 대하여 모든 경우에 일부 포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i) 보정된 형태가 보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²⁷⁶, (ii) 디자인의 동일성²⁷⁷이 유지되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²⁷⁸.

㊱ 일부 포기의 요건 - 포기선언의 요건

일부 포기는 100 단어를 초과할 수 없다²⁷⁹. 일부 포기가 성립되면, 이를

²⁷⁰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 이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등록이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규성·개성·기술적 기능에 관하여는 일부 포기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²⁷¹ 선행 상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²⁷² 선행 저작권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²⁷³ 공공의 배지, 엠블럼 등을 사용하는 경우

²⁷⁴ A registered Community design which has been declared invalid pursuant to paragraph (1)(b), (e), (f) or (g) may be maintained in an amended form, if in that form i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for protection and the identity of the design is retained.

²⁷⁵ CDR 제25조(6) 두번째 문장

²⁷⁶ 따라서, 특정 부분이 보호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신규성이나 개성이 상실되게 된다면 일부 포기로서 유지될 수 없다.

²⁷⁷ 특정부분이 보호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원래의 등록디자인과 동일성이 상실된다면 일부 포기로서 유지될 수 없다. 즉, 디자인의 지엽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포기가 가능하다.

²⁷⁸ CDR 제51조(3)

²⁷⁹ CDIR 제18조(2)

등록부에 등록한다²⁸⁰.

CDR 제 25 조(6)에서 말하는 partial disclaimer 는 디자인 자체의 일부를 권리에서 제외하는 것에 한하고, 전체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한 채 특정한 제품을 제외하는 취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²⁸¹ . 따라서, 이미 등록된 공동체디자인에서 특정 제품의 표시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²⁸².

따라서, 등록공동체디자인이 그 표시된 제품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기능 만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무효로 선언될 때, 기술적 기능에 해당하는 제품의 표시를 삭제하는 일부 포기는 있을 수 없으며,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공지디자인을 형성하는 제품을 등록디자인의 제품의 표시에서 삭제하는 일부 포기도 있을 수 없다.

㉔ 일부 포기를 통해 권리의 유지가 가능하거나 힘들 것으로 보이는 예

[표 38] 일부포기를 통해 권리가 유지되거나 힘들 것으로 보이는 예²⁸³

일부포기 가능여부	선행 상표	등록디자인
일부 포기로 유지되기 힘든 예 (ICD 5080; 2008.12.16.)	 (CTM3783073; class 25)	 RCD 794870-0004
일부 포기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예 (ICD 5098; 2008.12.16.)	 (CTM3783073; class 25)	 RCD 794870-0003

²⁸⁰ CDIR 제69조(3)(e)

²⁸¹ Laundry ball v. massage ball 사건([2008] EWCA Civ 358; 2008.04.23. 판결)에서 영국 항소법원은, CDR 제25조(6)에서 말하는 일부 포기는 디자인 자체의 일부를 권리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지, 특정한 제품 류를 제외하고 전체디자인이 유효하게 유지될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한 고등법원의 판시를 정당하다고 하였다.

²⁸² 다만, 이에 대하여 OHIM의 실무자는, 이는 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 마련하지 아니한 것일 뿐으로 제품의 표시에 대한 포기를 금지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²⁸³ 실제로 일부 포기에 의하여 권리가 유지되었거나 일부 포기가 거절되었던 예는 아니며, 2010.06.11. OHIM에서의 실무자 미팅에서 OHIM 실무자의 예시이다.

(5) 3 차원 디자인과 2 차원 디자인과의 대비

㉠ 문제의 제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물품의 표시에 의하여 한정되지 않고 모든 물품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데, 그래픽 심볼, 로고, 글자체와 같은 2 차원 디자인은 제품으로 의제되고 있으므로 3 차원 디자인에 관한 등록디자인에 기초하여 이러한 2 차원 디자인에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 문제되는 예

예를 들어, 건물에 관한 등록디자인을 기초로 사진, 인터넷 화면 등에 권리행사를 하거나, 휴대폰에 관한 등록디자인을 기초로 인터넷 SMS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 공동체디자인 실무

이에 대하여, OHIM 실무자²⁸⁴는 등록디자인이 3 차원이거나 2 차원이거나, 대비대상 디자인이 3 차원이거나 2 차원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하다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논리적 근거

생각건대, 3 차원적 제품에 관해 출원에서 제출되는 도면들도 2 차원적으로 도시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3 차원적 형태를 인식하게 될 뿐이므로, 이러한 2 차원적 도면을 통해 인식되는 형태와 대비대상 2 차원 디자인을 통해 인식되는 형태에서 동일한 전체적인 인상이 발생된다면 이는 침해로 보는 것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²⁸⁵.

(6) 도면에 기재된 범위와 보호범위

㉠ 문제의 제기

공동체디자인 실무에 따르면, 제출 가능한 도면의 수는 7 도로 제한되고, 하나

²⁸⁴ 2010.06.11. OHIM에서 실무자 미팅 결과

²⁸⁵ 다만, 이와 같이 3차원 물품과 2차원 물품 사이에 침해를 인정함으로써 디자인의 과다한 보호,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이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이상의 도면이 제출된다면 그 최소한의 도면 수에는 제한이 없다. 즉, 사시도만을 제출함으로써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²⁸⁶. 이 경우, 도면에 도시된 부분 및 도시되지 아니한 부분과 대비대상 디자인의 전체적인 인상의 대비가 문제된다.

㉞ 문제되는 예

예를 들어 등록디자인에는 저면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대비대상 디자인은 다른 면은 등록디자인과 같으나 저면에 주요 특징이 있는 경우, 둘 사이의 전체적인 인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㉟ 공동체디자인 실무

이에 대하여, OHIM 실무자²⁸⁷는, 디자인의 보호범위 판단은 특허에서 청구범위 판단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도면에 도시된 사항이 모두 대비대상에서 발견되어야²⁸⁸ 침해이고, 따라서 저면도가 생략된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에 도시된 사항을 관하여는 동일한 외관을 가진다면 이는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less views larger scope”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7. 정리

(1) 유럽에서의 디자인의 개념

공동체디자인법(CDR)의 디자인의 정의에서 제품이 도입되는 등, 공동체디자인의 등록과 보호 면에서 제품성은 필수적인 것이다. 하지만, 디자인의 개념 자체에 제품이 포함된 것은 아니며 디자인은 물품과는 별개의 단지 외형적 특징만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된다²⁸⁹. 즉, 공동체디자인은

²⁸⁶ 과거 우리 디자인보호법 실무에서는 사시도와 육면도등 총 7도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10년 시행된 법률개정을 통해 하나 이상의 도면이 제출되면 되는 것으로 하였다.

²⁸⁷ 2010.06.11. OHIM에서 실무자 미팅 결과

²⁸⁸ 미국에서 폐기된 *points of novelty test*와 유사하나, 미국에서는 신규성 사항의 각 각을 분해하여 대비대상 디자인과 대비한 반면, 공동체디자인에서는 이들 사항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²⁸⁹ 이러한 연유에서, CDR 및 CDIR의 규정에는 물품을 표현하면서 “디자인이 적용되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지 제품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²⁹⁰, 단지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제품화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것이다.

(2) 공동체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공동체디자인에 기재된 제품의 표시(indication of product)는 그 자체로는 보호범위에 영향이 없다²⁹¹. 따라서, 공동체디자인으로 보호되는 대상은 지정된 제품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디자인이 적용되는 여하한 물품에 대하여도 보호된다²⁹².

(3) 제품의 표시가 보호범위와 무효실무에 미치는 영향

다만, 제품의 표시가 보호범위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간접적으로 매우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을 판단하기 위한 공지디자인의 범위를 정할 때, “관련된 부문”에서 알려졌는가를 판단하는데 이 “관련된 부문”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²⁹³. 개성을 평가할 때 주체적 기준이자 보호범위를 평가하기 위한 주체적 기준인 informed user 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개성과 보호범위를 평가하는데 참고되는 디자이너의 자유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제출된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²⁹⁴. 식별력 있는 표지와 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²⁹⁵. 기술적 기능 만에 따른 디자인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4) 제품의 표시의 중요성

출원서에 기재된 제품의 표시가 그 자체로는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여, 어떤 유럽 실무자는 임의의 명칭으로 출원하여도

는”이나 “디자인이 화체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읽을 수 있다.

²⁹⁰ http://www.charlesrussell.co.uk/UserFiles/file/pdf/Intellectual%20Property/IP_BulletinApril2010Trademarks.pdf, page 5

²⁹¹ CDR 제36조(6)

²⁹² The Community Designs Handbook 4-065/1

²⁹³ 이에 반하여, 공지디자인의 제품에 관련된 부문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에, 영국 항소법원 판례 [2008] EWCA Civ 358 (2008.04.23. 판결)

²⁹⁴ 예를 들어, 자동차 사시도가 제출된 경우, “자동차”에 관한 디자인인지, 벽지 문양 등 2차원 디자인인지에 관한 판단은 제품의 표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게 된다.

²⁹⁵ 선행 표지의 지정상품과 등록디자인의 제품의 표시가 일치하여야 CDR 제25(1)(e)가 적용된다.

무방하다는 출원전략²⁹⁶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은 타당하지 않다. 제품의 표시가 보호범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informed user**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등 보호범위 판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출원인은 출원에서 제품의 표시에 신경을 써야 한다²⁹⁷. 상표와의 충돌에서도 제품의 표시가 영향이 있고, 신규성·개성을 상실하게 하는 공지디자인의 범위에도 제품의 표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실질적으로 제품의 표시는 보호범위의 해석에 함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²⁹⁶ 유럽의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하나의 출원에 포함된 디자인의 수에 따라 출원료의 감면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통해 출원비용의 절약을 얻으려는 생각이다.

²⁹⁷ Cash register case; OHIM 항고심판부 심결 R 1421/2006-3

제4장 주요국에서의 인테리어 디자인 등록례

제4장 주요국에서의 인테리어 디자인 등록례

제1절 서론

우리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을 동산에 한정하고 있어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물은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건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로카르노 분류를 채용하면서 제 32-00 류에 포함된 “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 즉, “차림새[실내배치]”를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또한 부동산인 제 25-03 류의 건물의 일부로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내부 인테리어도 보호되고 있고 등록된 예가 발견됨은 앞의 장에서 살펴보았다. 다만 한두가지의 예로는 실제로 해당 국가에서 어느 정도로 그러한 건물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이 출원되고 등록되고 있는지 체감하기 힘들어 더욱 깊이있고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부동산과 인테리어를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미국과 유럽에서 법률의 규정에서 이들을 특수하게 취급하는 규정은 찾을 수 없고, 이들은 단지 다양한 디자인 중 하나로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출원되고 등록된다. 아울러, 부동산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권리행사한 심판 사례나 법원의 판례도 찾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의 디자인특허/등록디자인을 깊이있게 조사하는 것은, 이들 나라에서의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 실무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장에서의 조사의 범위는, 미국의 디자인특허와 유럽의 등록공동체디자인, 그리고 WIPO 의 디자인국제등록을 조사하였다. 초벌 검색 결과 검색수가 많지 않은 분류에 대하여는 모든 등록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전수조사를 하였다.

제2절 미국 디자인특허 조사

1. 검색 데이터베이스와 검색방법

(1) 활용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기준일자

미국 디자인특허의 조사에는, 미국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를 미국특허청의 검색서비스²⁹⁸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조사의 기준일자는 2011.08.15 이다.

미국의 경우 디자인특허분류로 정하고 있는 USPC(United States Patent Classification)에는 로카르노 분류 제 32 류의 “차림새[실내배치]”²⁹⁹와 같은 항목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의 디자인특허 중 건물이나 인테리어의 등록을 조사하기 위하여는 명칭을 검색하거나, 건물에 해당하는 분류의 디자인특허를 조사하여야 한다.

(2) 명칭 검색

먼저, 검색의 대상을 디자인으로 한정³⁰⁰ 하여, 명칭(Title)에 “interior”를 포함하거나, “room”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디자인특허³⁰¹를 전수조사하였다. 명칭에 “interior”를 포함하는 디자인특허는 모두 288 건으로 조사되고, 명칭에 “room”을 포함하는 디자인특허는 모두 198 건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명칭을 모두 검토하여,

- ① 인테리어 디자인과 관련이 없는 것³⁰²은 모두 제거하고,
- ② 대상의 내부 공간(room)에 관한 것들³⁰³일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남긴 후,
- ③ 일일이 해당 디자인 특허를 열어보아 실제 디자인을 확인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을 추출하였다.

²⁹⁸ <http://www.uspto.gov/patft/index.html>

²⁹⁹ 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

³⁰⁰ 디자인을 특허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는 미국 제도에서는, 디자인을 구분하여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지 않고, 단지 특허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만 출원의 종류(Application Type)로서, 기술특허(Utility Patent), 식물특허(Plant patent), 디자인특허(Design patent), 재발행특허(Reissue Patent),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출원의 종류를 “디자인”으로 하여 디자인만을 검색할 수 있다.

³⁰¹ 2011.08.15 현재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특허는 약40만4천건에 달한다.

³⁰² Multi-room audio system, room air cleaner, living room chair, toilet room flush valve, 등이 보였다.

³⁰³ Hotel room, SUV tent screen room,

한편, 미국의 디자인도면 실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확인된 모든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특허공보를 다운로드 하여 포함된 도면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확인된 도면을 해당 항목 아래에 옮겨 붙임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건물에 해당하는 세분류 전수 조사

미국에서의 건물은 어떻게 등록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또한 인테리어 디자인이 건물의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되고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미국디자인특허에서 “건물(building)”이 등록될 분류인 USPC D25 류를 전수조사하였다.

미국 디자인특허분류는, 유형을 정하는 대분류 아래에, 디자인의 대상과 형상 등을 기초로 세분류를 정하고 있다.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하여는 D25 류(Building Units and Construction Elements)로 분류되는데, 이에는 건물과 함께 그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는 물품들이 함께 분류되어 있다. USPC D25 류는 일차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조 자체에 관한 것, 미리 생산된 유닛, 계단 등, 건축 자재 등으로 분류되고, 중분류 아래에는 형상과 특징에 따라 세분류로 나뉘어 총 199 개의 세분류가 형성되어 있다.

[표 39] USPC D25의 주요분류³⁰⁴

세분류	내용
<u>1</u>	STRUCTURE
<u>35</u>	PREFABRICATED UNIT
<u>62</u>	STAIR, LADDER, SCAFFOLD, OR SIMILAR SUPPORT
<u>100</u>	TRELLIS OR TREILLAGE UNIT
<u>102</u>	ARCHITECTURAL STOCK MATERIAL
<u>199</u>	MISCELLANEOUS

이 중에서 이번 연구의 관심이 되는 건물 자체나 인테리어에 관하여 등록되었을 소지가 있는 D25/01 분류 내지 D25/35 분류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였다. 아울러, 명칭에 interior 나 room 을 포함한 디자인특허의 검색결과, D25/58 및 D25/59 에 포함된 특허들이 조사되었으므로, 이들 두 세분류도 포함하여 검색하였다.

³⁰⁴ 구체적인 세분류에 대하여는

<http://www.uspto.gov/web/patents/classification/uspcd25/schedd25.htm> 참고

2. 명칭에 “interior”를 포함한 디자인특허

(1) 설명

㉠ 기본조사

2011.08.15. 현재 명칭에 “interior”를 포함하는 디자인특허는 총 288 건이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건물이나 자동차 자체의 인테리어, 또는 이들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나뉘어진다.

㉡ 분석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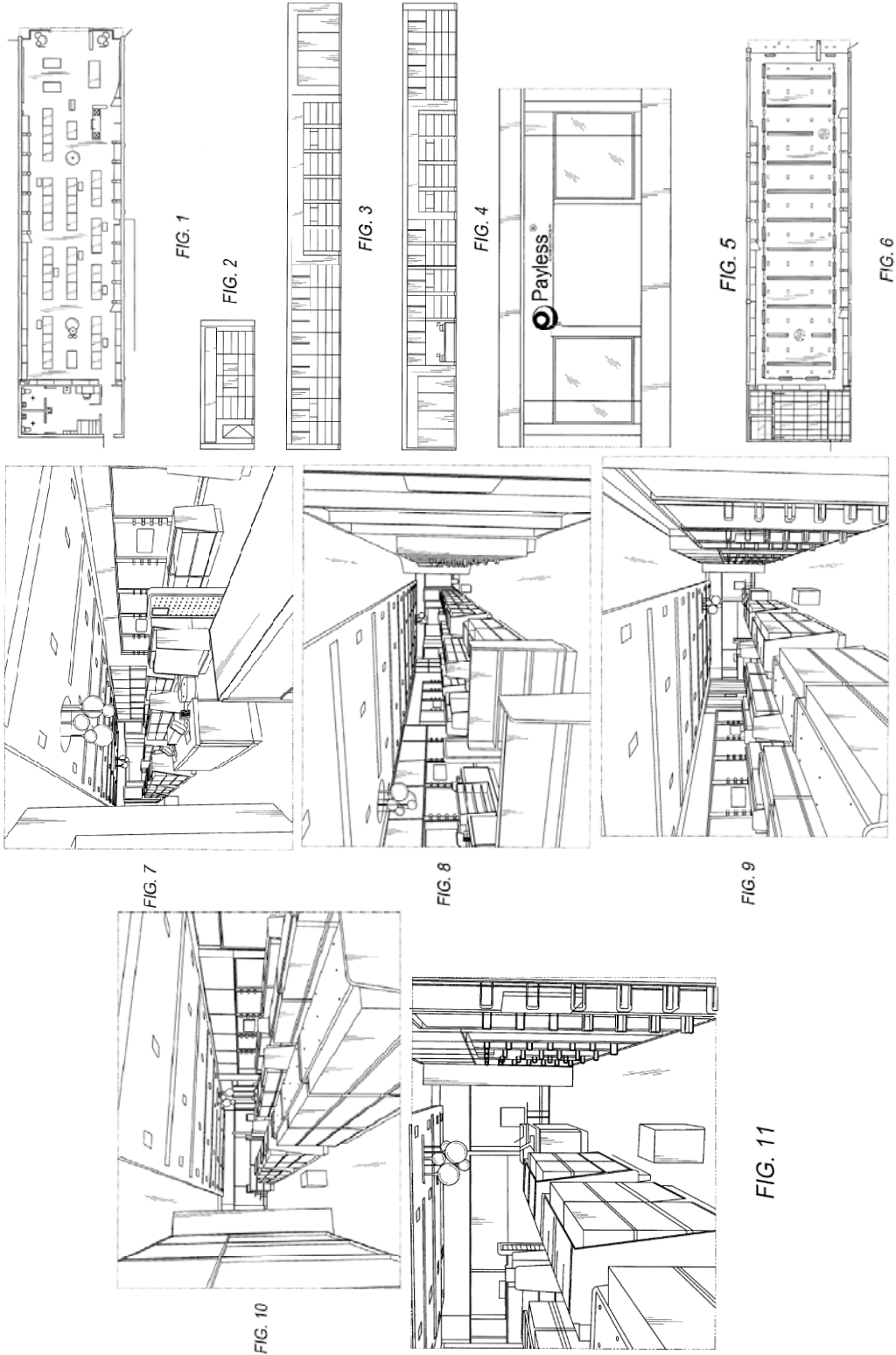
부품들에 관하여는 우리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도 보호되고 있으므로 생략하고, 건물이나 자동차 자체의 인테리어에 해당하는 것들만 조사하였다.

㉢ 정리되는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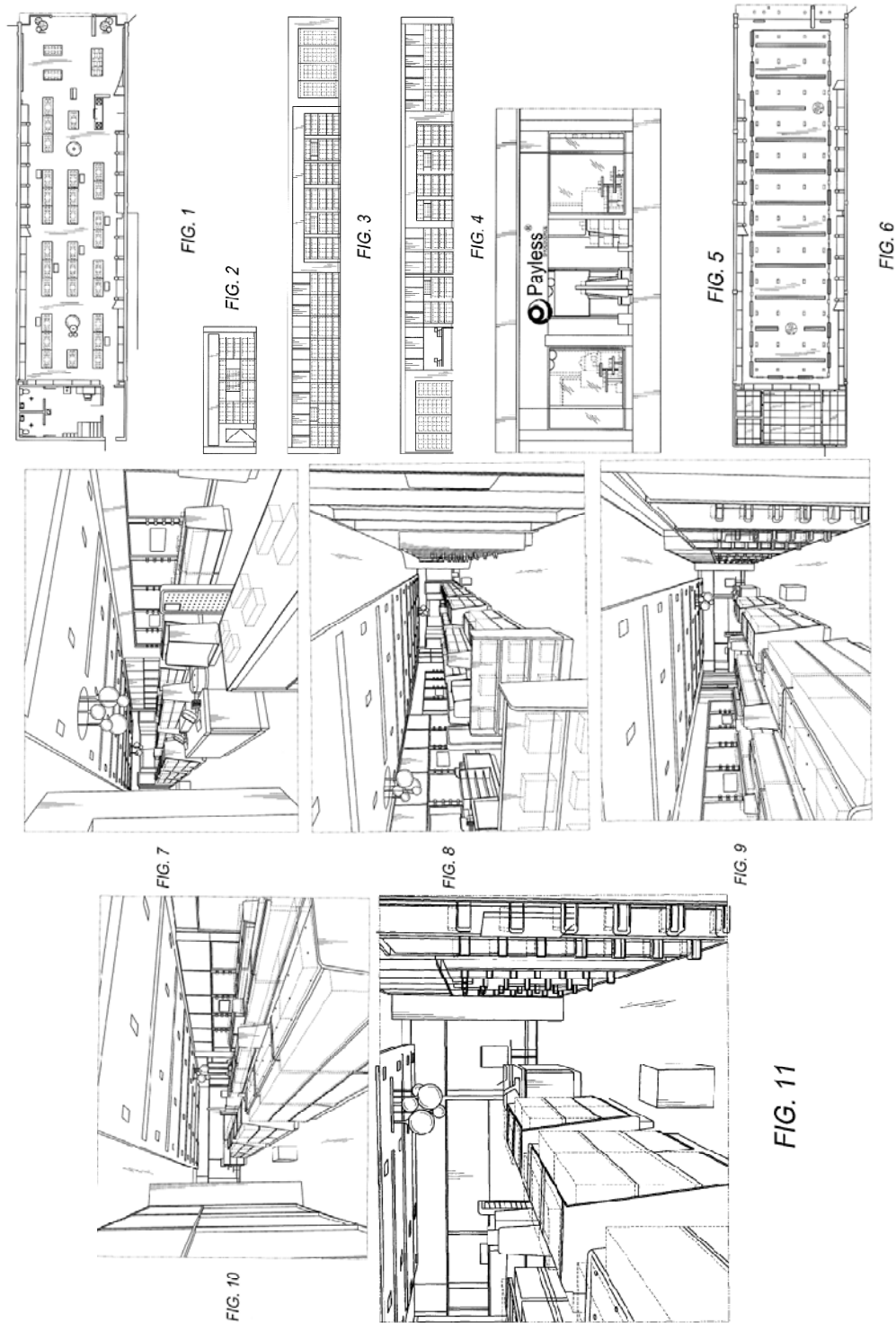
아래에는, 건물의 인테리어에 대하여는 조사된 특허의 구체적인 도면을 나열하고, 자동차의 내부 인테리어나 기타 인테리어에 대하여는 예시적인 몇 건만 나열하였다.

(2)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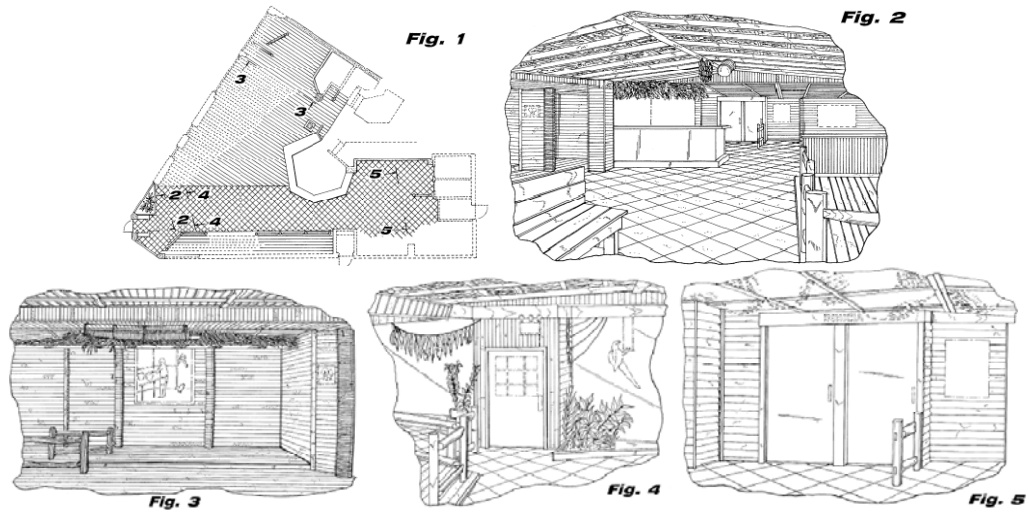
D639,453 Store interior with a storefront (D2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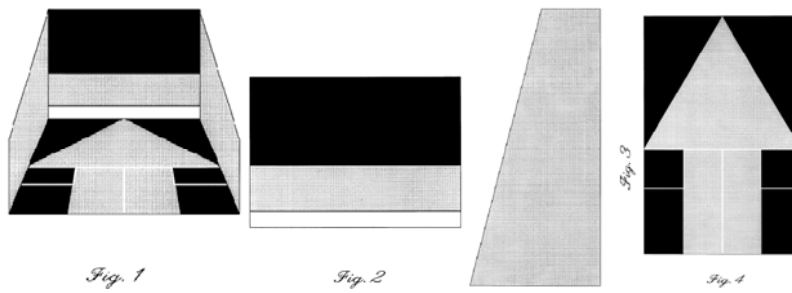
D638,139 Store interior with a storefront (D2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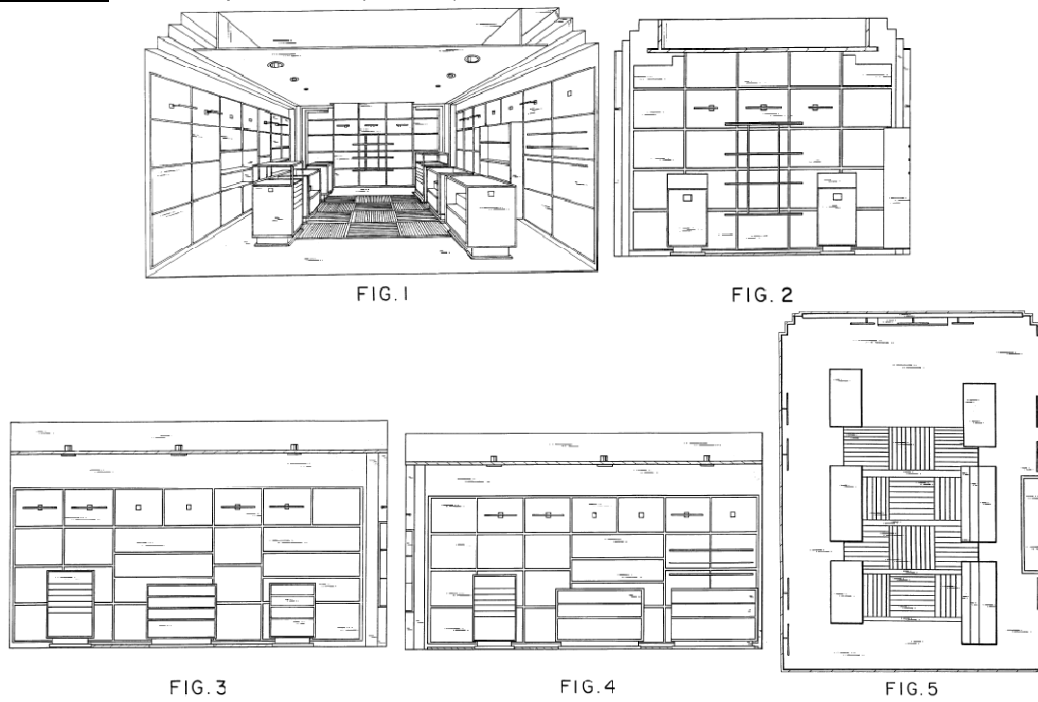
D475,467 Restaurant building interior (D2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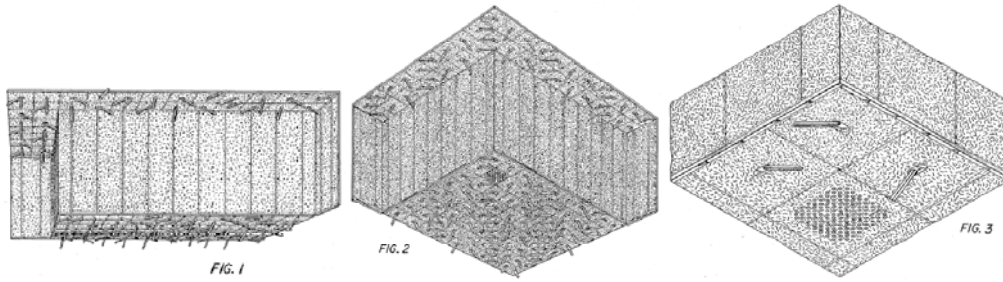
D395,688 Interior surface for a squash court (D21/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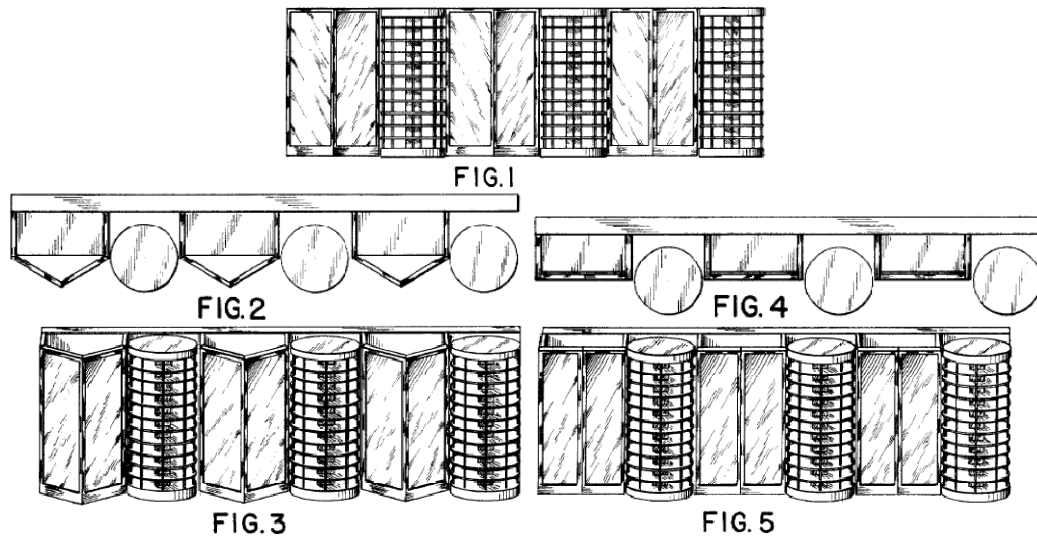
D395,521 Boutique interior (D25/58)



D307,185 Dual-level ceiling store interior (D25/58; D25/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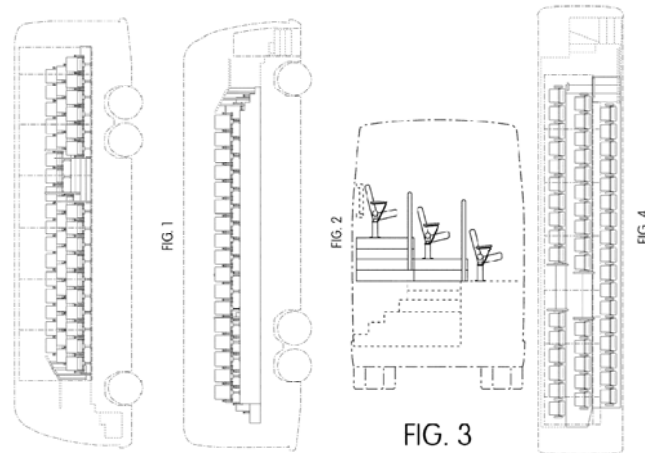


D262,998 Interior wall for a store (D2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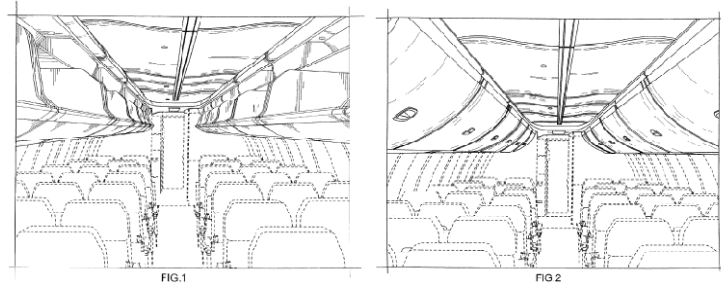


(3) 자동차/항공기 등의 내부 인테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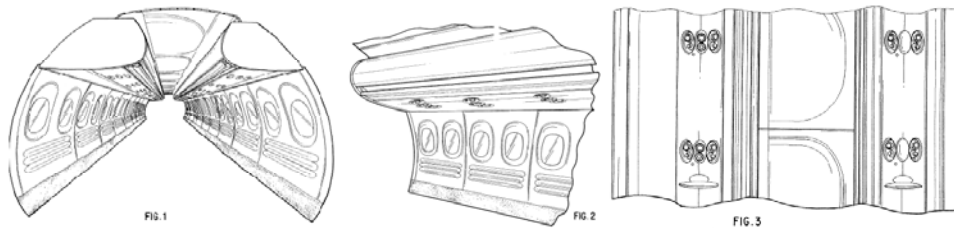
D628,133 Bus in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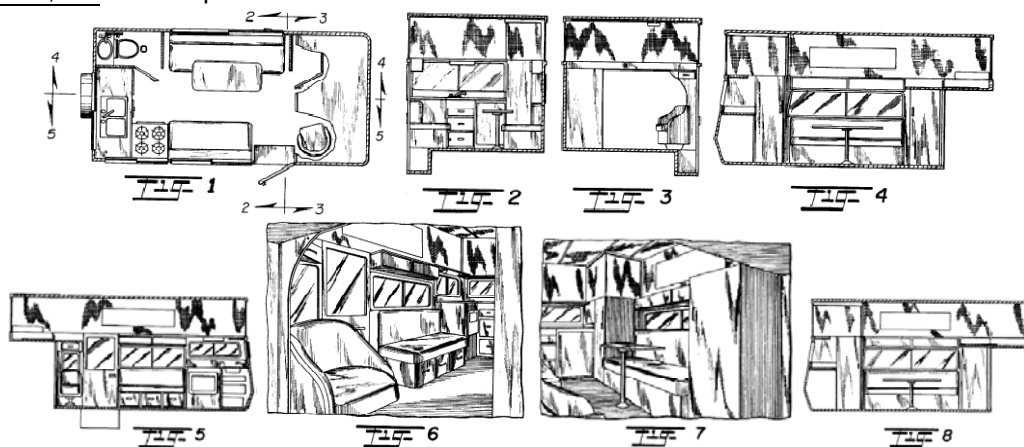
D610,521 Interior of a passenger cabin of an aircraft



D463,357 Surface configuration of the interior passenger cabin of an airpla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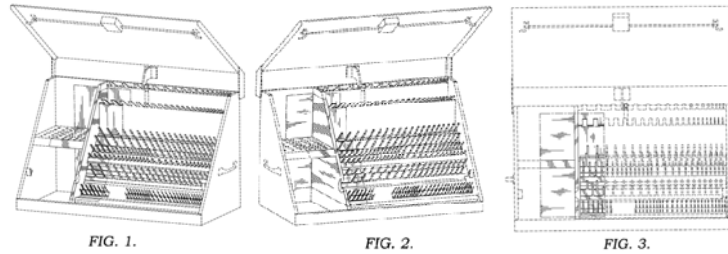


D264,070 Camper in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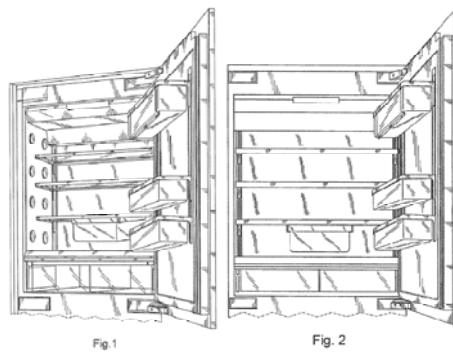


(4) 기타 인테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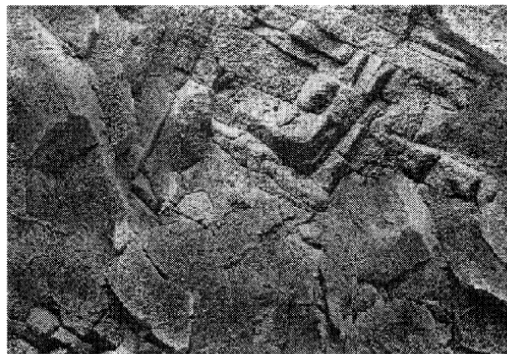
D633,719 Toolbox in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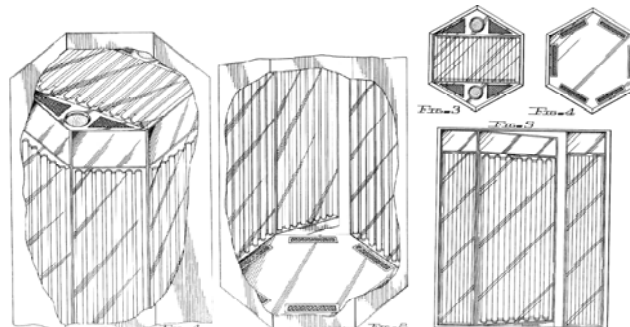
D629,819 Portion of a refrigerator interior



D561,400 Interior rear wall panel for use in an aquarium



D272,093 Hexagonal suntanning booth interior



3. 명칭에 “room”를 포함한 디자인특허

(1) 설명

㉠ 기본조사

2011.08.15. 현재 명칭에 “room”를 포함하는 디자인특허는 총 198 건이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건물 등의 내부에 형성되는 방의 구조, 자동차 기타 장치에 형성되는 작은 공간, 또는 공간을 가지는 다른 대상³⁰⁵으로 구분된다.

㉡ 분석 범위

다른 대상들에 대하여는 우리의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도 보호되고 있으므로 생략하고, 건물의 방에 해당하는 것들만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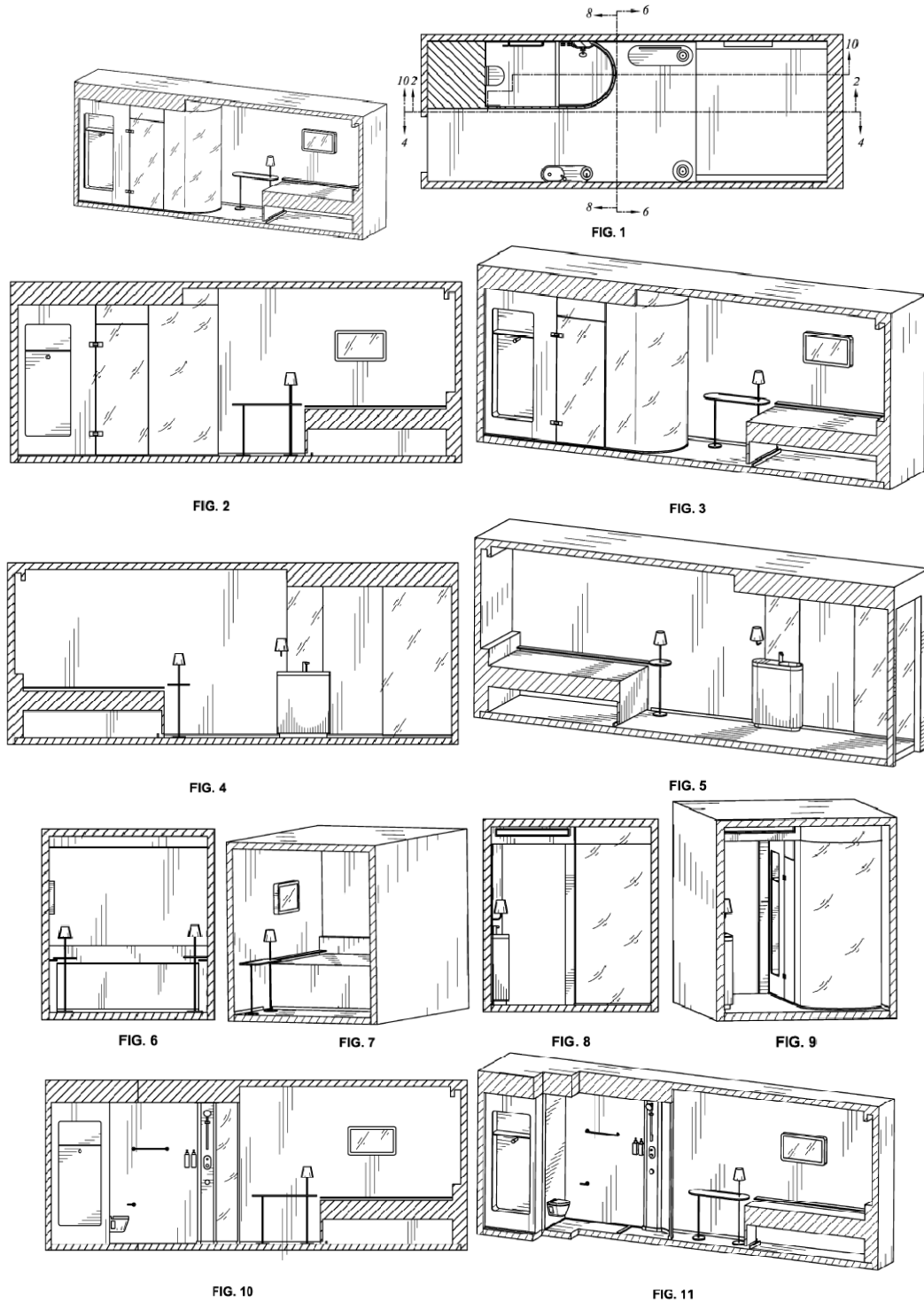
㉢ 정리되는 데이터

대부분 호텔룸 등 방 자체에 대한 등록이나, toy room display 등록은 장난감을 배열하는 디스플레이에 관한 등록이다. 아래에는, 이러한 건물의 내부 공간에 대하여는 조사된 전 건의 구체적인 도면을 나열하였다.

³⁰⁵ Multi-room tent 등

(2) 명칭에 “room”를 포함한 미국 디자인특허 리스트

D641,494 Hotel room (D25/1)



D561,910 Hotel room (D2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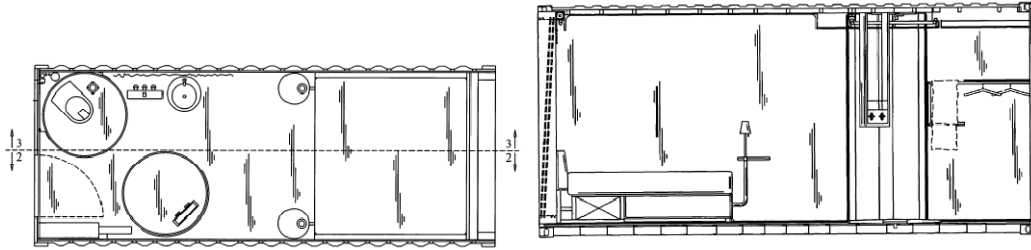


FIG. 1

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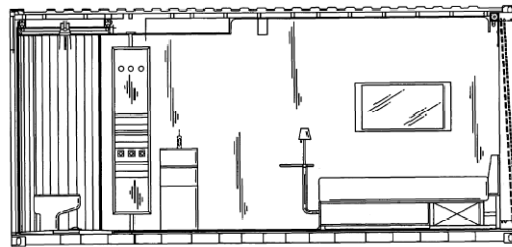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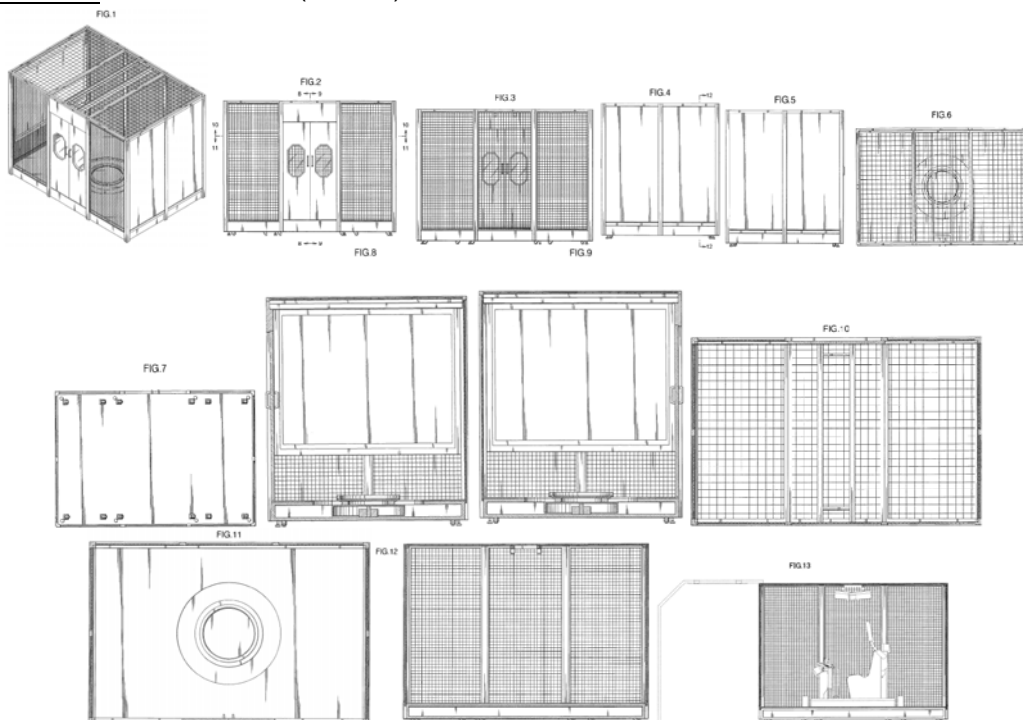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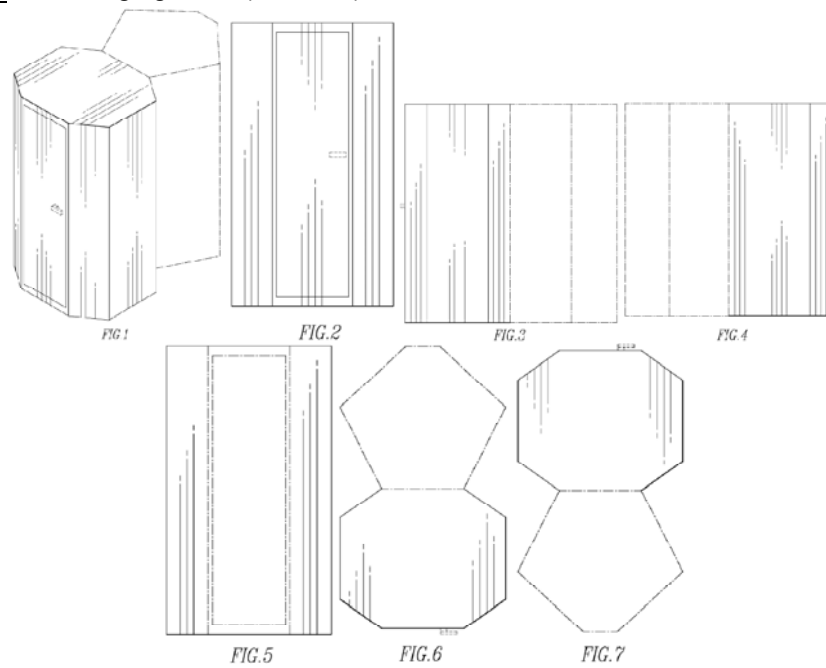


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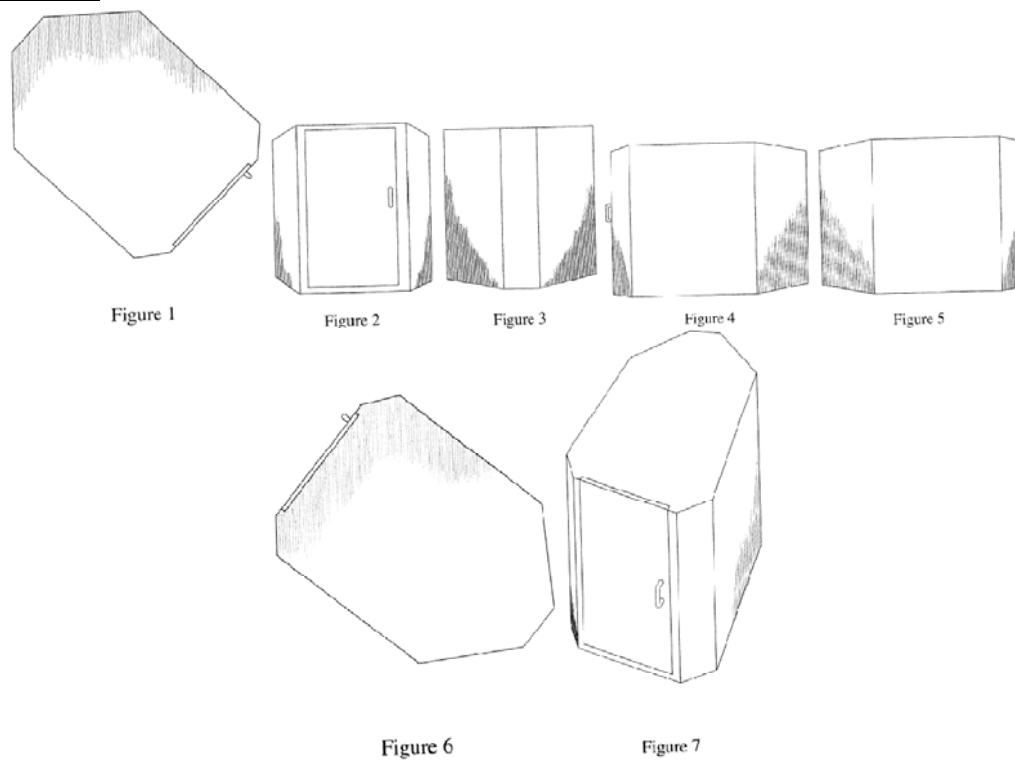
D559,997 Indoor room (D2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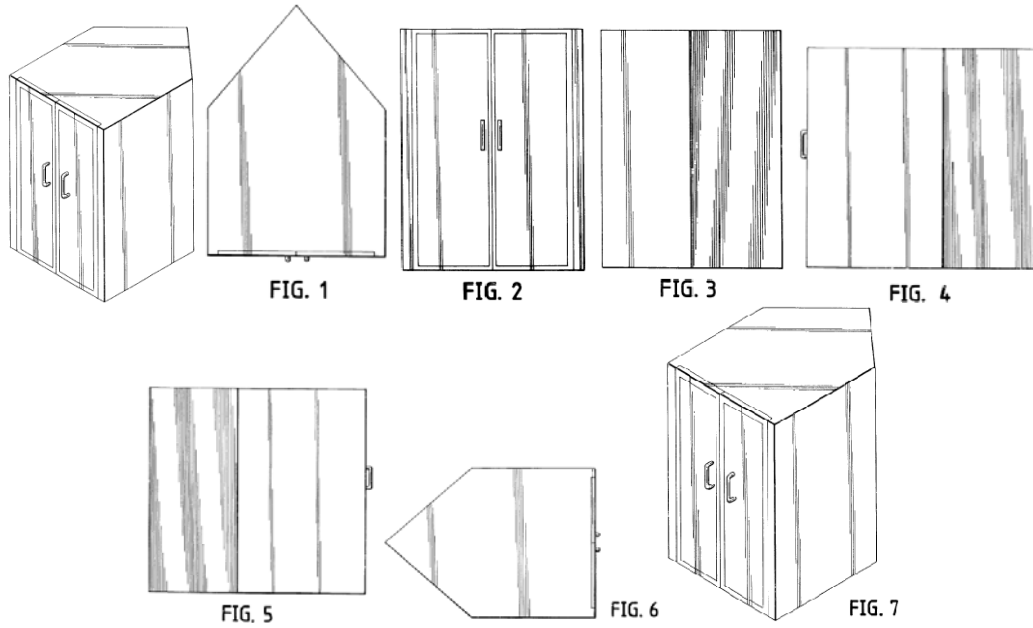
D557,813 Changing room (D24/209)



D496,109 Combined tanning module and dressing room (D24/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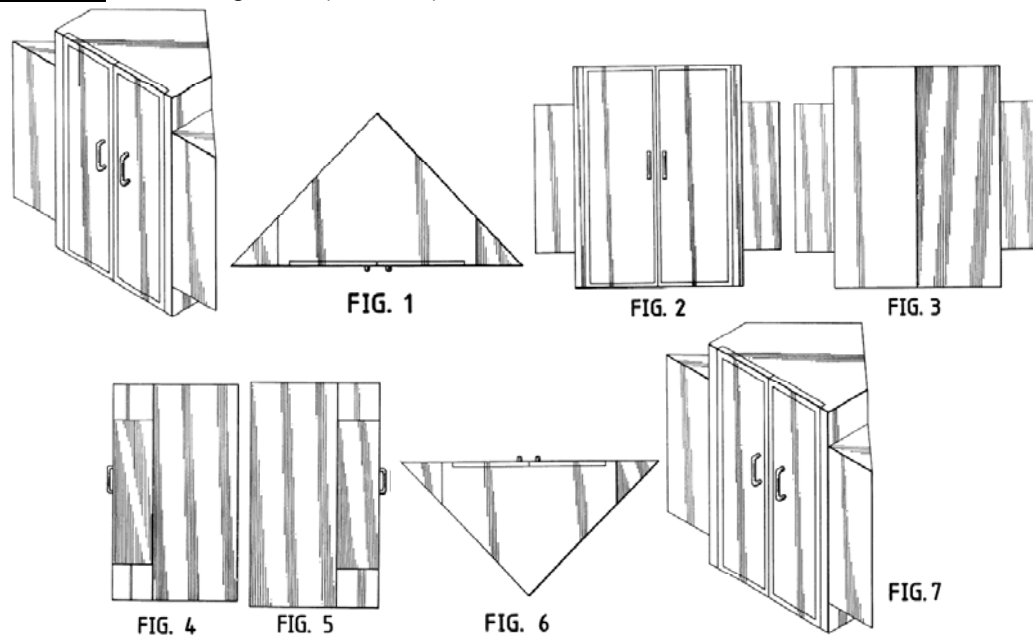


D492,790 Tanning room and connecting dressing room (D24/210; D25/16; D2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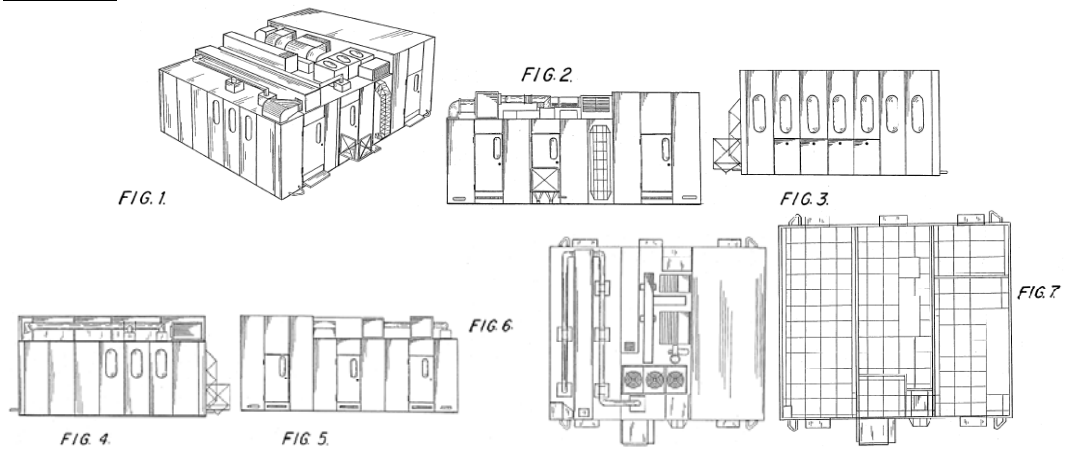
D484,247 Tanning room and connecting dressing room (D492,790와 시리즈 출원)

D480,813 Tanning room (D24/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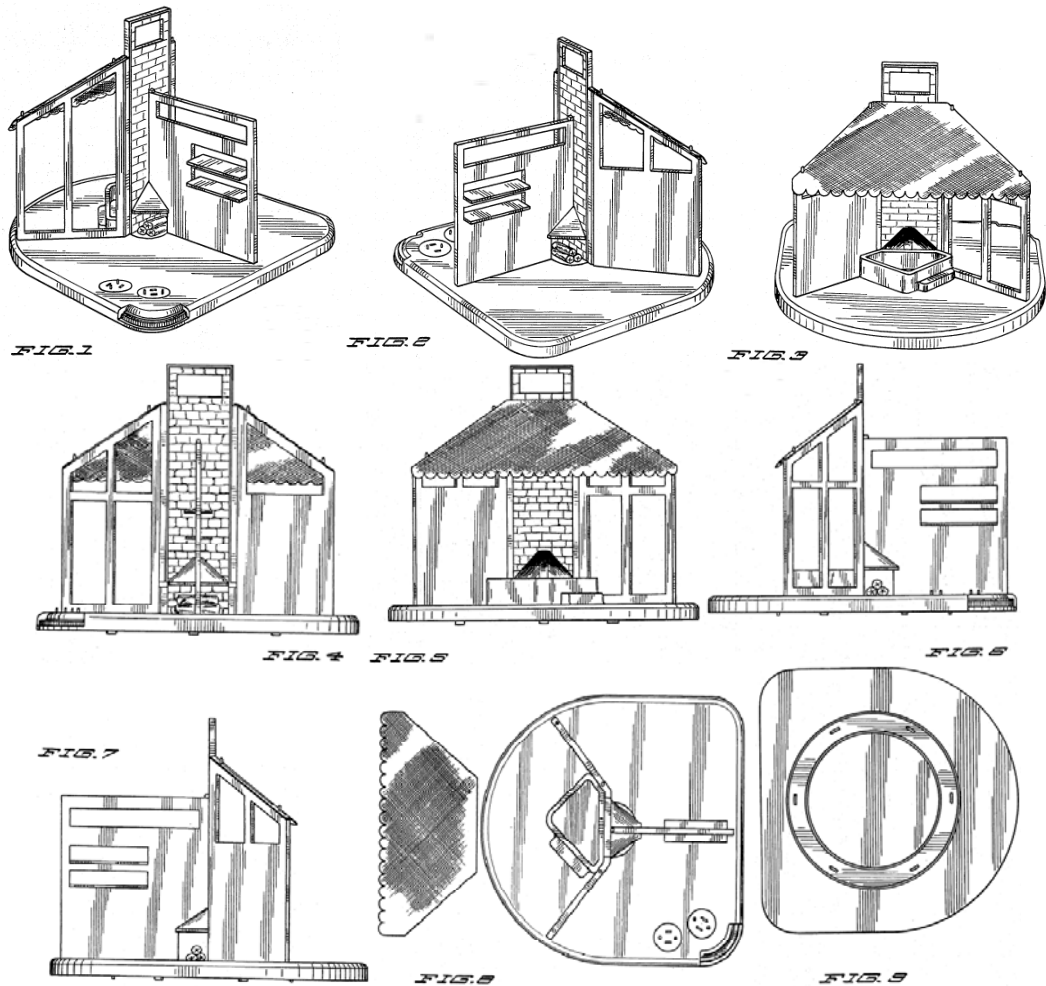


D480,481 Tanning room (D480,813와 시리즈 출원)

<u>D300,859</u>	Clean room module or similar article (D25/33)
-----------------	---



D274,343 Toy room display (D21/506)



D272,469 Clean room (D25/1; D25/16; D25/33)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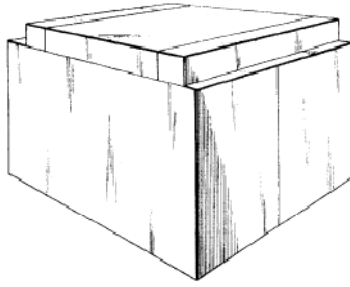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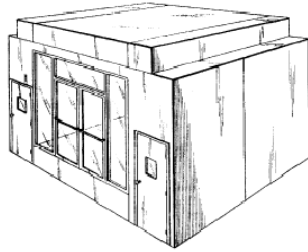


Fig. 2

4. USPC D25/01~35, D25/58~59의 디자인특허

(1) 서론

㉠ 미국 디자인특허분류

미국 디자인특허분류 D25/01 분류 내지 D25/35 분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의 표에 기재된 등록수는 2011.08.27. 기준이다.

㉡ 분류별 등록건수 및 조사의 범위

위 각 세분류에 등록된 디자인특허의 수는 2,280 건³⁰⁶으로서, 이들을 모두 다운로드하여 도면을 확인하고, 건물자체의 내외부나 인테리어 디자인에 해당하는 특허들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아울러, 명칭에 interior 나 room 을 포함한 디자인특허의 검색결과, D25/58 및 D25/59 에 포함된 특허들이 조사되었으므로, 이들 두 세분류도 포함하여 검색하였다^{307, 308}.

㉢ 정리되는 데이터

아래에는, 명칭에 interior 나 room 을 포함하여 위에서 조사한 것들은 디자인특허번호와 명칭만 표시하였고, 각 세분류 내에서 발견되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나열하였다.

㉣ 건물에 관한 정리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외형을 디자인특허로 등록된 예는 매우 많고, 실상 위 2,280 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³⁰⁹. 따라서, “건물”에 관하여는 모든 디자인을 나열할 수는 없고, 독특한 외관을 가지거나, 통상적인 건물과는 달리 건물로 취급되는 대표적인 것들만 예시적으로 별도로

³⁰⁶ 미국 디자인특허분류 D25 내의 전체 디자인특허는 9,545건이므로, 건물 및 그 부속품으로 분류되는 전체디자인의 약20%를 조사한 셈이다.

³⁰⁷ D25/58로 분류되는 디자인특허는 147건, 그리고 D25/58로 분류되는 디자인특허는 91건으로 조사되었다.

³⁰⁸ 디자인특허 D395,688(Interior surface for a squash court)가 (D21/199)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면, D25류를 전수검사 하였다고 해서 모든 인테리어 디자인을 다 조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³⁰⁹ 물론 이들 중에는 전화 booth 등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되고 “이동가능”하여 우리 법으로도 보호대상이 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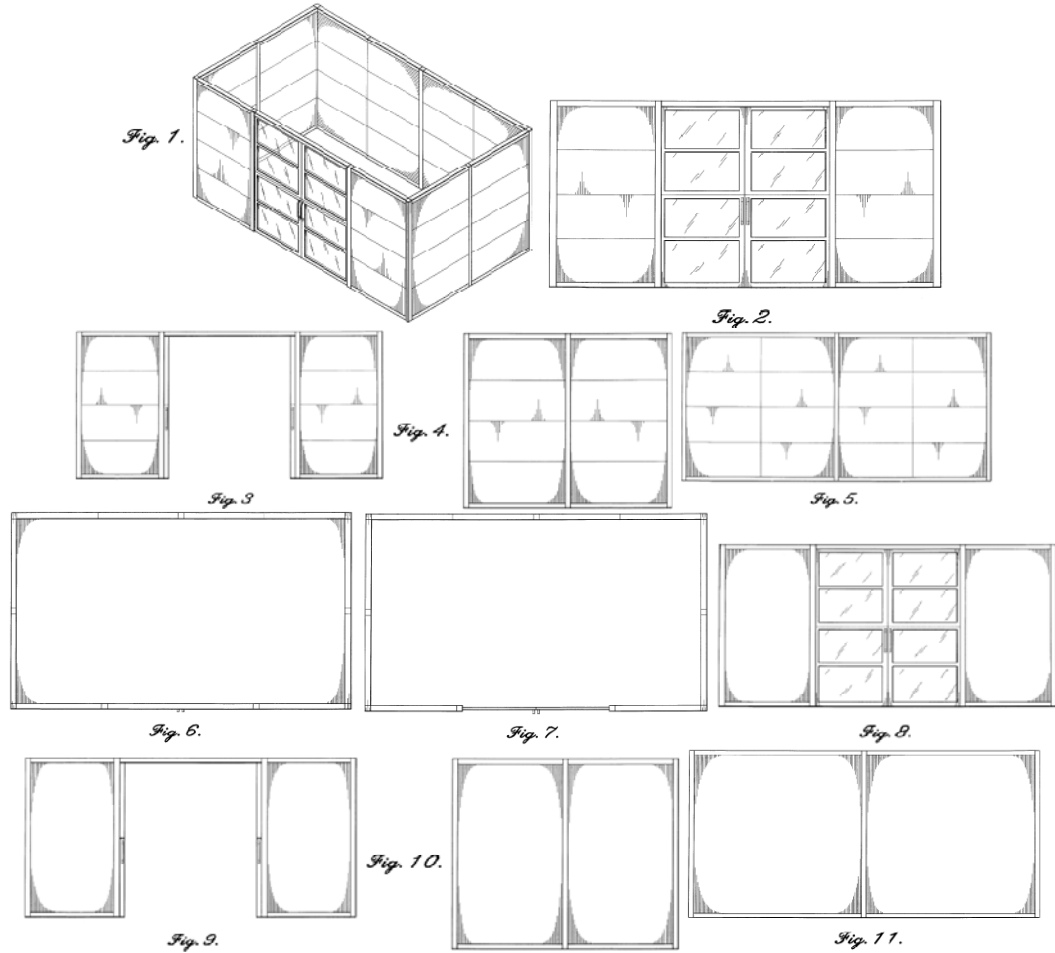
[표 40] 건물관련 주요 미국디자인특허분류에서의 검색건수

세 분 류	내 용	등 록 수
<u>1</u>	STRUCTURE	298
<u>2</u>	· Swimming pool	210
<u>3</u>	· Combined with diverse article, e.g., airport complex, etc.	29
<u>4</u>	· Clustered identical units	29
<u>5</u>	· Four or more levels	21
<u>6</u>	· Tower	35
<u>7</u>	· Simulative	43
<u>8</u>	· Animate	9
<u>9</u>	· Humanoid	8
<u>10</u>	· Edible article or container therefor	33
<u>11</u>	· Vehicle	31
<u>12</u>	· Arena or stadium	7
<u>13</u>	· Geodesic dome (1)	19
<u>14</u>	· Grain storage	7
<u>15</u>	· Greenhouse	32
<u>16</u>	· Single occupant type, i.e., telephone booth, privy, ticket booth, etc. (2)	392
<u>17</u>	· Having intersecting angular or curved roofs (3)	84
<u>18</u>	· Having curved or vaulted roof	76
<u>19</u>	· Dome	66
<u>20</u>	· Sinuous	11
<u>21</u>	· Concave, catenary or flexibly suspended	47
<u>22</u>	· Having angular roof	179
<u>23</u>	· Trapezoidal or triangular surface	46
<u>24</u>	· Gambrel type	9
<u>25</u>	· Mansard type	39
<u>26</u>	· Pyramidal	27
<u>27</u>	· Zig-zag type, i.e., sawtooth	10
<u>28</u>	· Inverted	0
<u>29</u>	· A-frame type	10
<u>30</u>	· Isolated slanted surface	26
<u>31</u>	· Circular or oval in plan	61
<u>32</u>	· Polygonal in plan	47
<u>33</u>	· Fully enclosed	242
<u>34</u>	· Having carport or garage	40
<u>35</u>	PREFABRICATED UNIT	57
<u>58</u>	· Partition, wall or ceiling (12)	147
<u>59</u>	· Exterior, e.g., storefront	91

(2) 인테리어 관련 미국 디자인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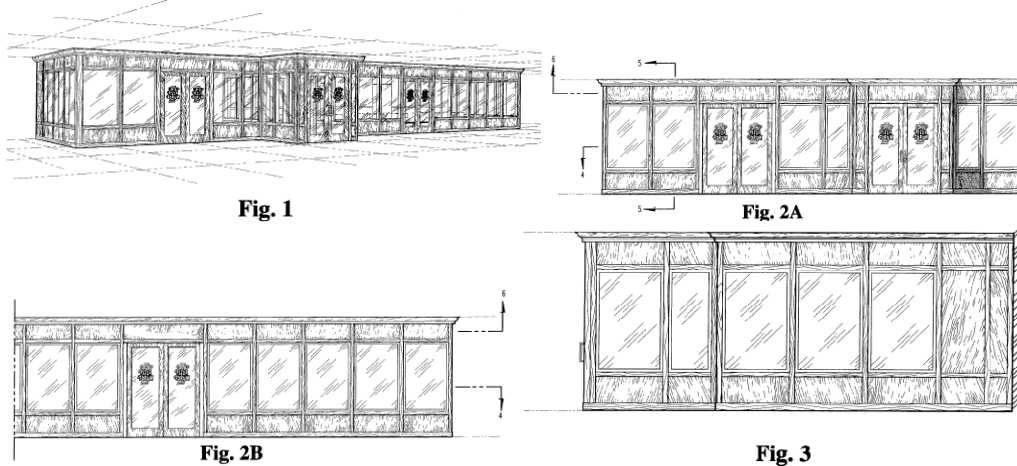
D433,151 Office workspace (D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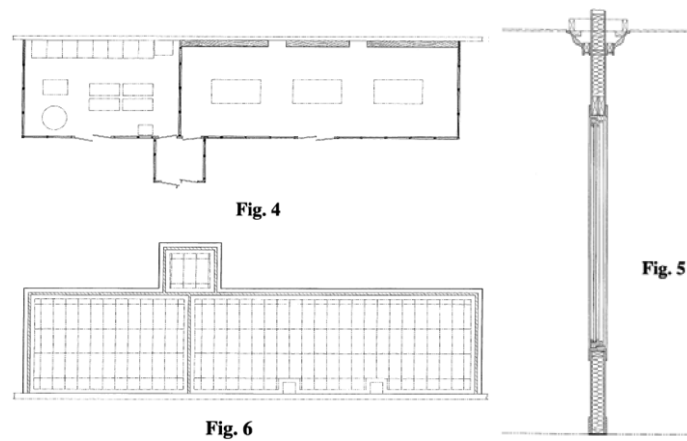
사무실 공간을 파티션으로 구분하는 스타일; 파티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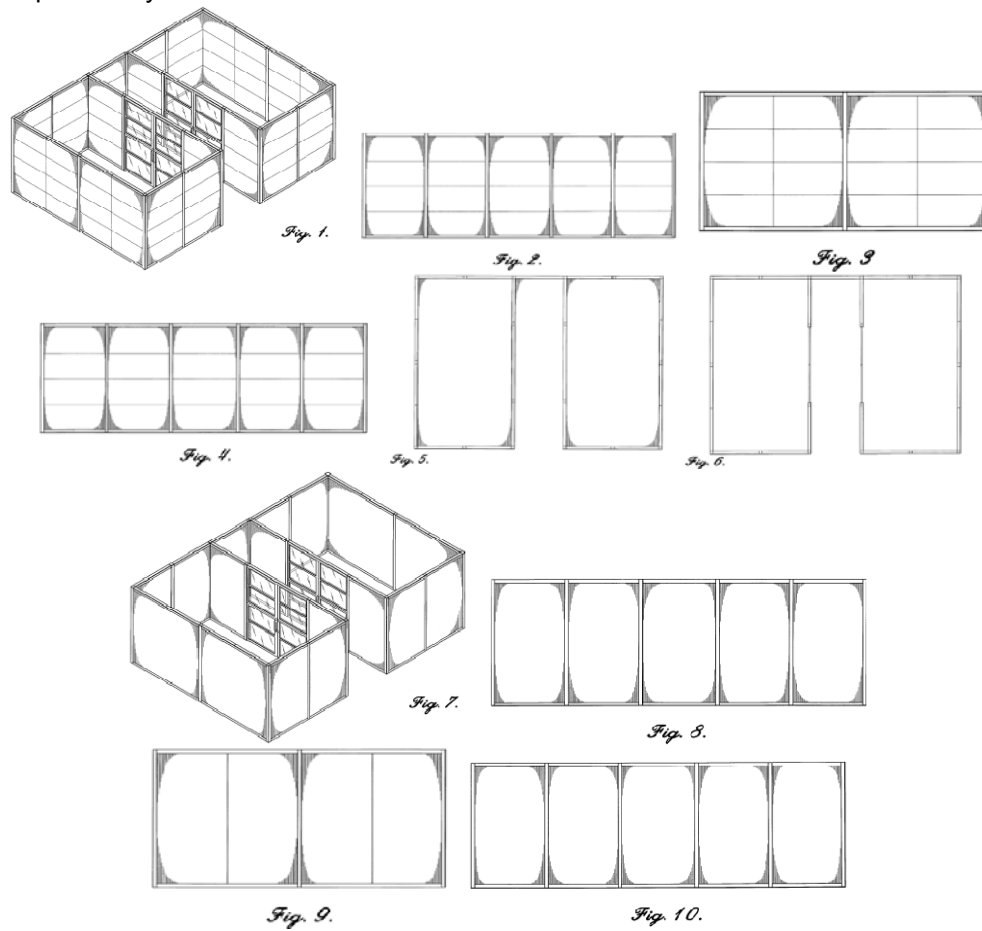
D370,535 Game rooms enclosure (D25/1; D25/33)

건물 내의 게임방 외관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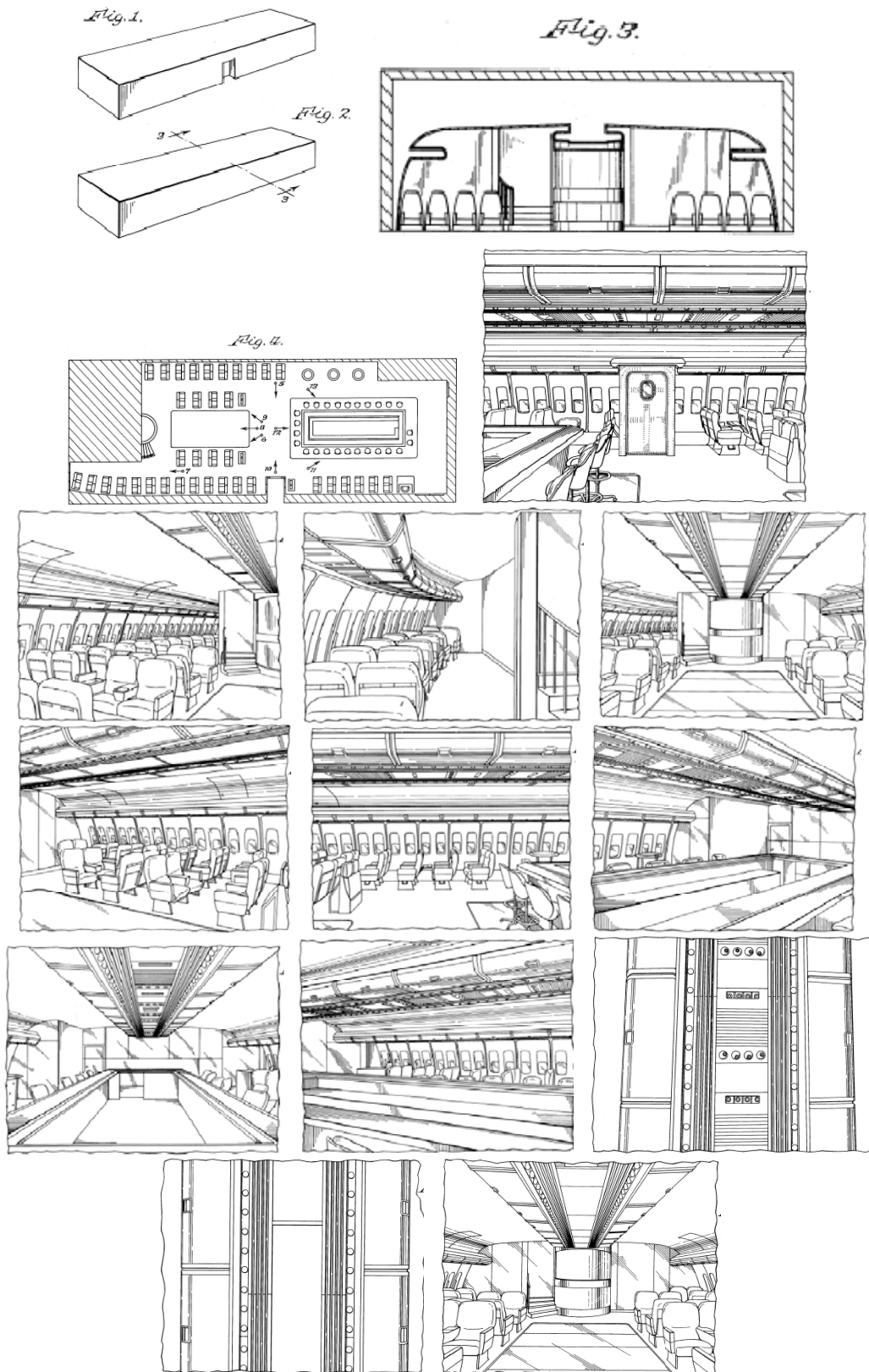


D426,644 Office workspace with shared corridor (D25/4) (실시예 1 및 2)
 파티션의 배열은 같되 파티션의 형태가 유사하다; 이 정도의 차이로는 미국디자인특허의 **patentably distinct** 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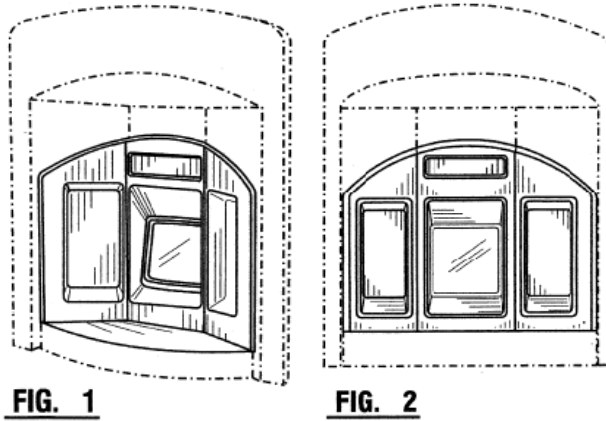
D247,183 Discotheque building (D25/11)

디스코텍 빌딩을 청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외관은 독특하지 않고, 내부의 의자 배열 등 인테리어에 관한 특징이 위주다. 매우 세밀하게 인테리어를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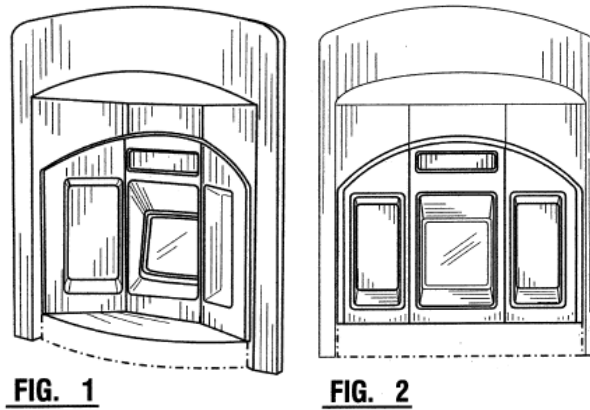


D407,183 Customer interface panel for a transaction terminal(D99/28; D25/33; D99/43)
 고객과의 대화창구에 대한 디자인이다. 인테리어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인테리어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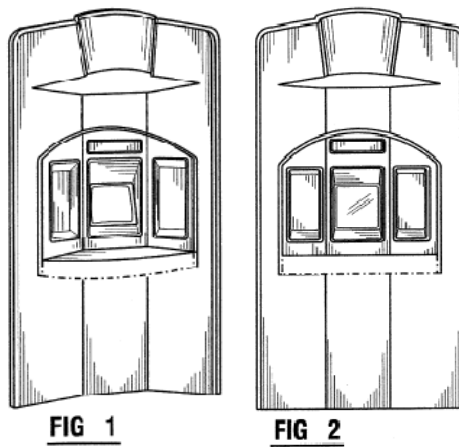
출원일: 1998.01.07; 등록일: 1999.03.23



D405,934 Customer interface panel for a transaction terminal(D99/28; D25/33; D99/43)
 출원일:1998.01.07; 등록일: 1999.0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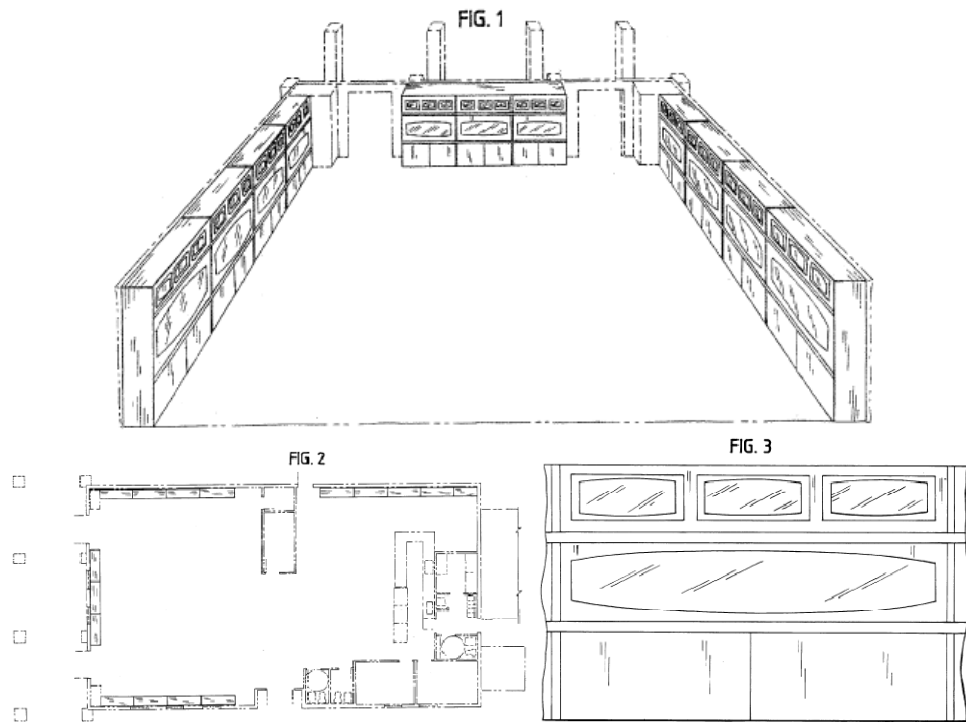


D405,584 Customer interface panel for a transaction terminal(D99/28; D20/1; D25/33)
 출원일: 1998.01.07; 등록일: 1999.0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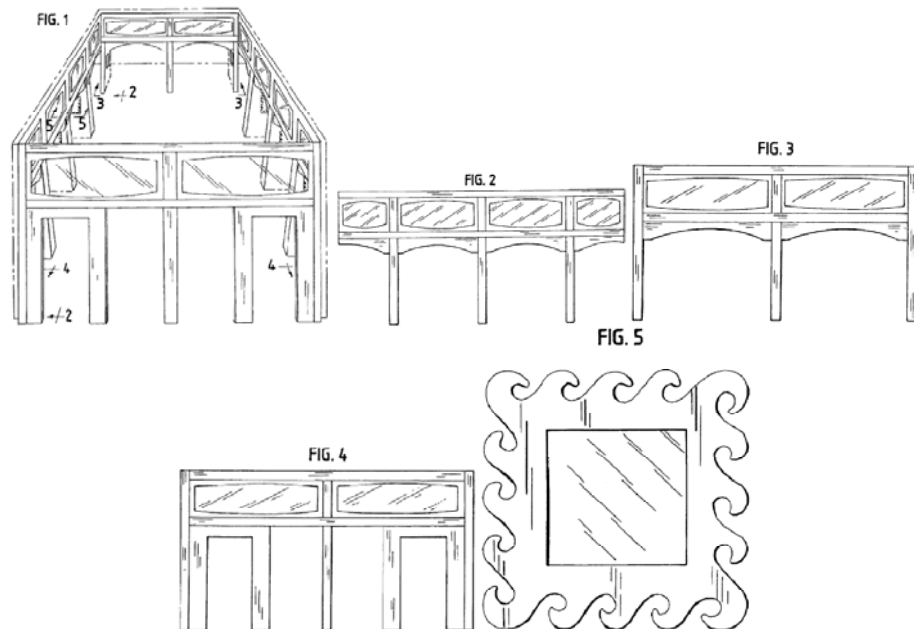
D537,953 Building structure (D25/35)

명칭은 건물 구조이나, 실질상 건물 내부의 구조를 청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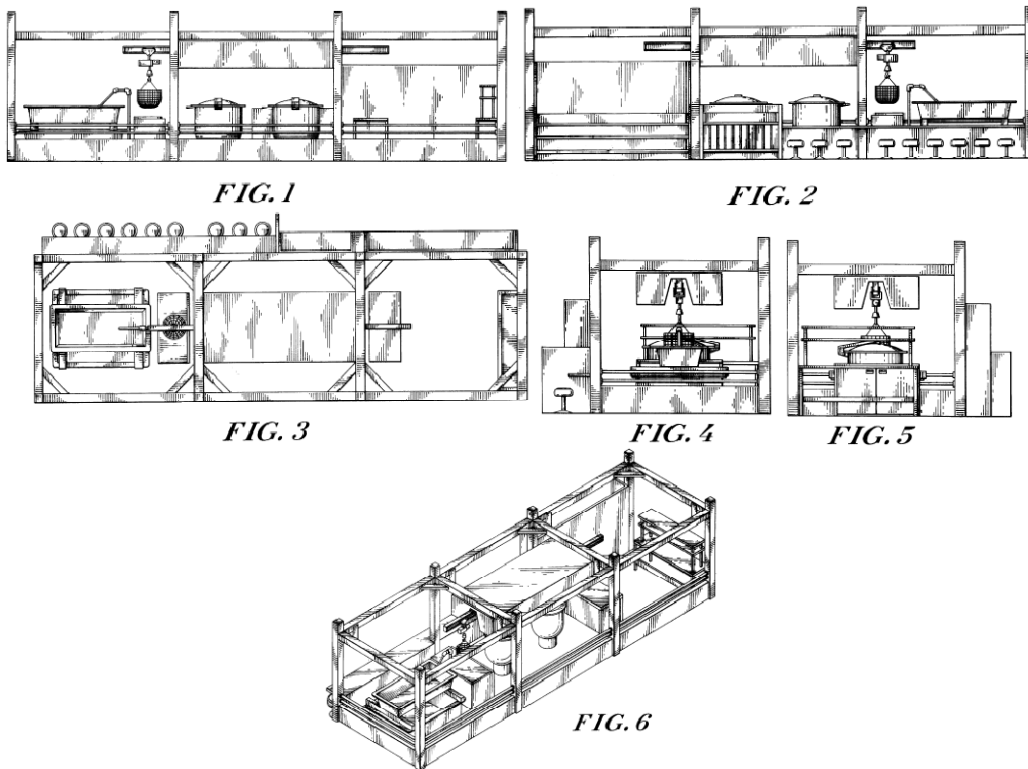
D515,221 Building structure (D25/35)

명칭은 건물 구조이나, 실질상 건물 내부의 구조를 청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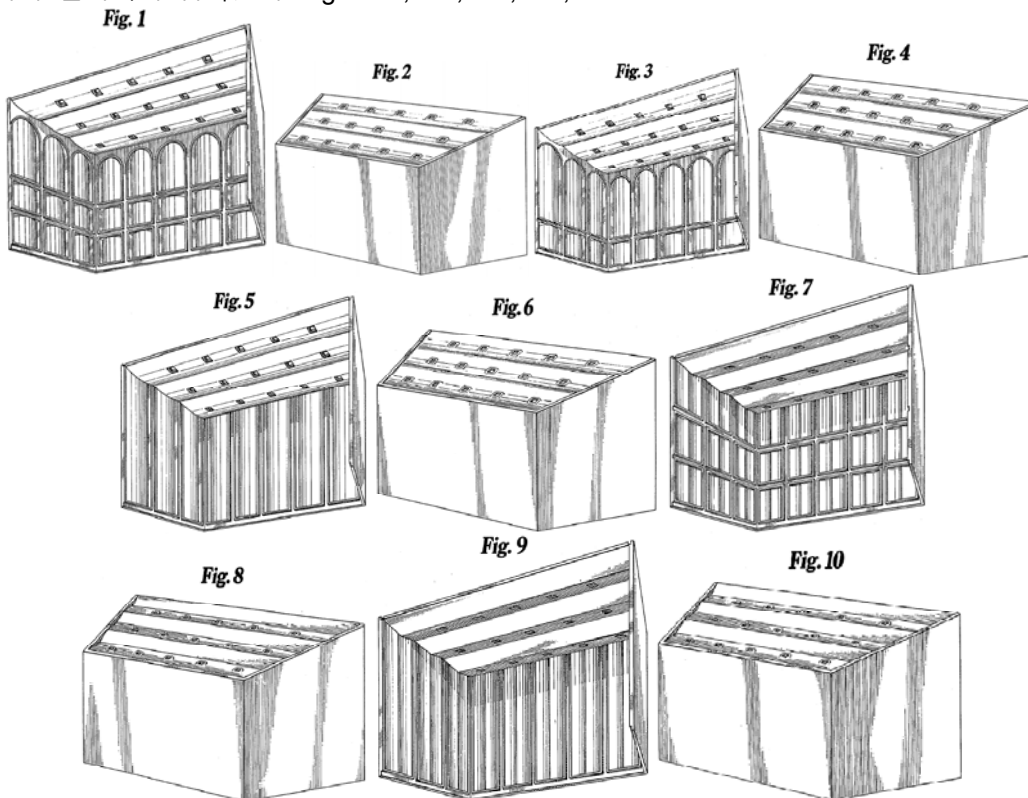
D450,133 Food processing and serving area for a restaurant (D25/35)

식당 주방에서의 음식 처리대에 대한 인테리어 디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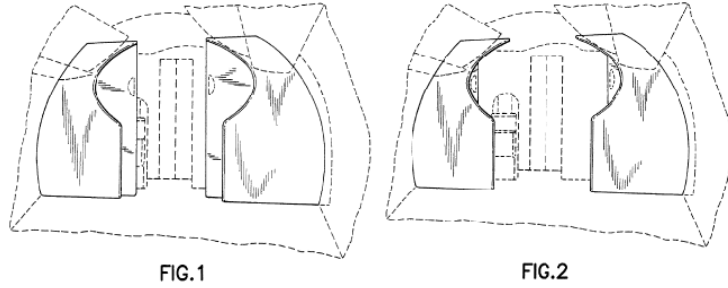
D304,083 Band shell (D25/58; D25/35; D25/56)

여러 실시예가 담겨있다. Figs. 1-2, 3-4, 5-6, 7-8,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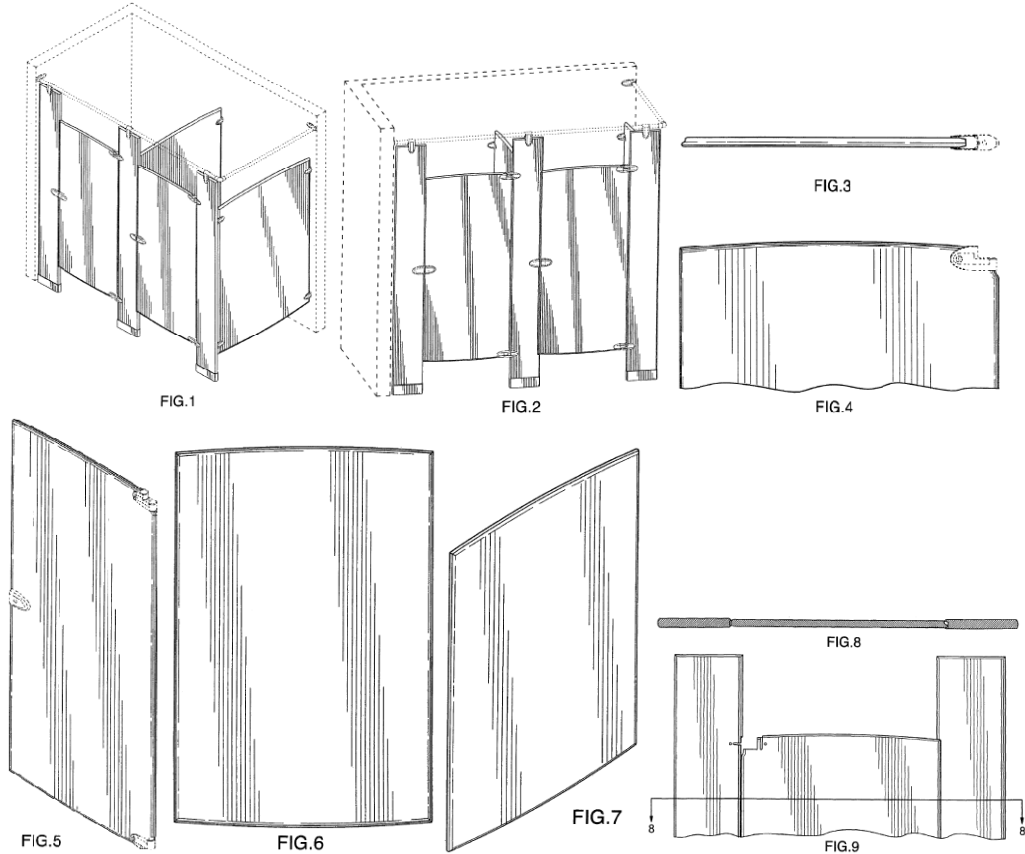
D559,999 Retractable entry partition (D25/58)

건물 입구에 설치하는 파티션에 관한 것으로, 건물 부분은 환경적(environmental) 요소로 점선으로 처리되어 있다. 다만, 파티션을 통한 인테리어의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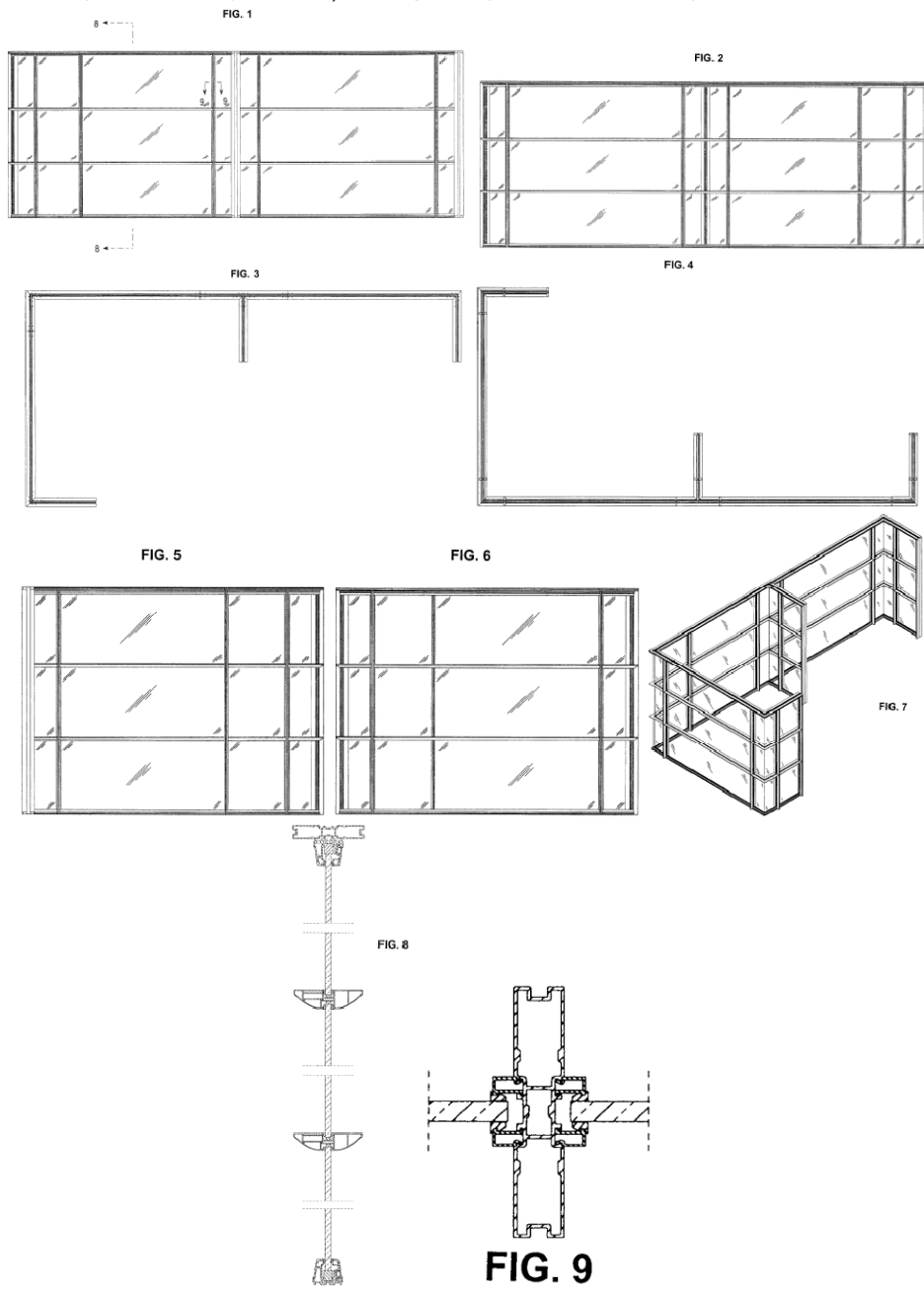
D546,971 Toilet partition assembly (D25/58)

파티션 조립체(partition assembly)라고는 되어 있으나, 이렇게 조립되어 운반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시공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설치된 상태의 조립체의 형상을 청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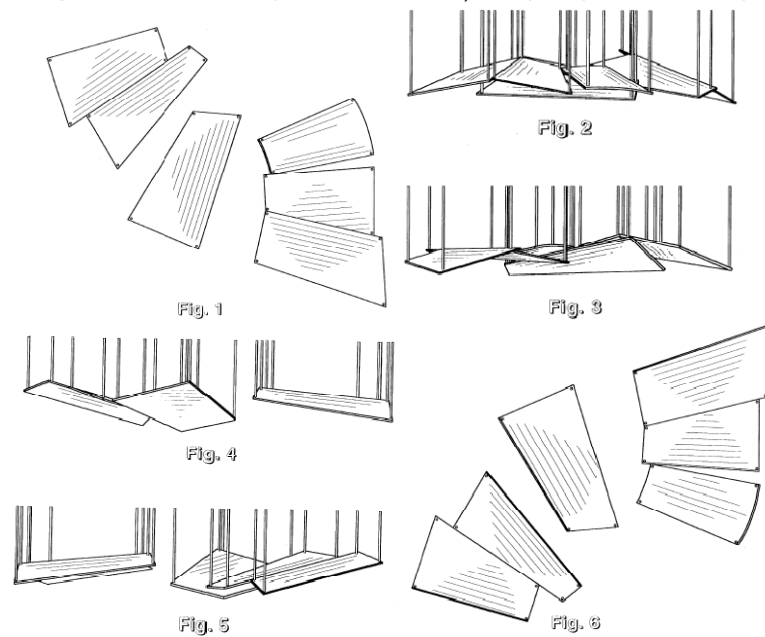
D485,368 Partition (D25/58)

명칭은 파티션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상 파티션된 배열을 청구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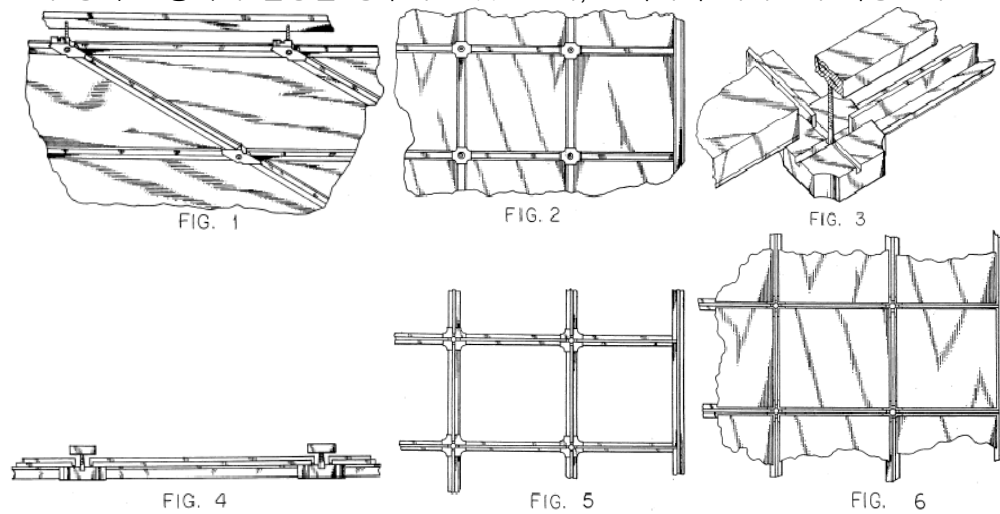
D373,831 Ceiling (D25/58)

건물에 정착된 상태의 천정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인테리어 디자인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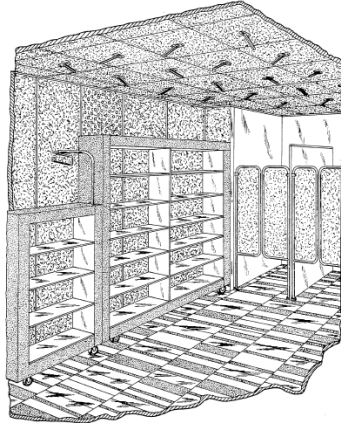
D341,668 Suspended ceiling (D25/58)

건물에 정착된 상태의 천정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인테리어 디자인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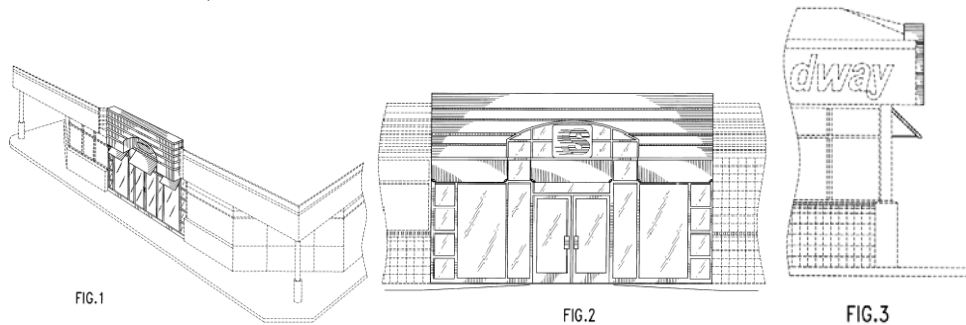
D290,658 Combined ceiling, wall, floor, partition and shelves unit for the interior of a store (D25/58)

천정, 벽면, 파티션, 책꽂이가 조합된 “유닛”이라고 하고 있으나, 현장시공에 의하여 건물에 고정되는 것으로서, 인테리어 디자인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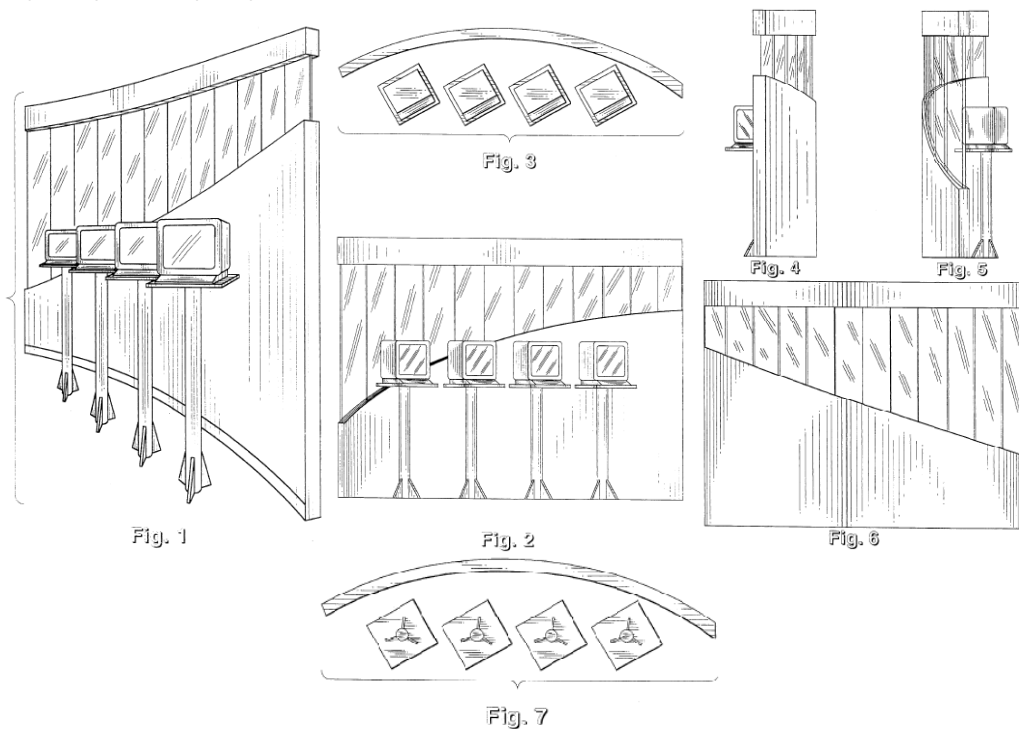
D467,351 Store entrance (D25/59)

“내부”장식은 아니나, 현관의 디자인이다. 이러한 현관디자인은 다수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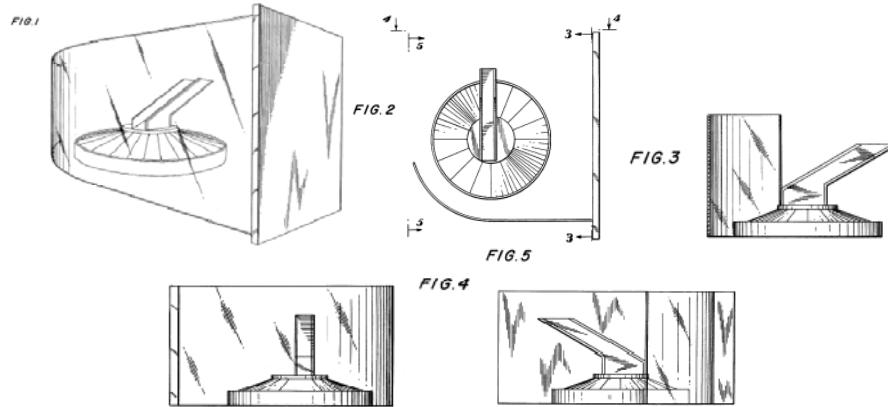
D368,779 Entryway (D25/59)

입구 내부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권리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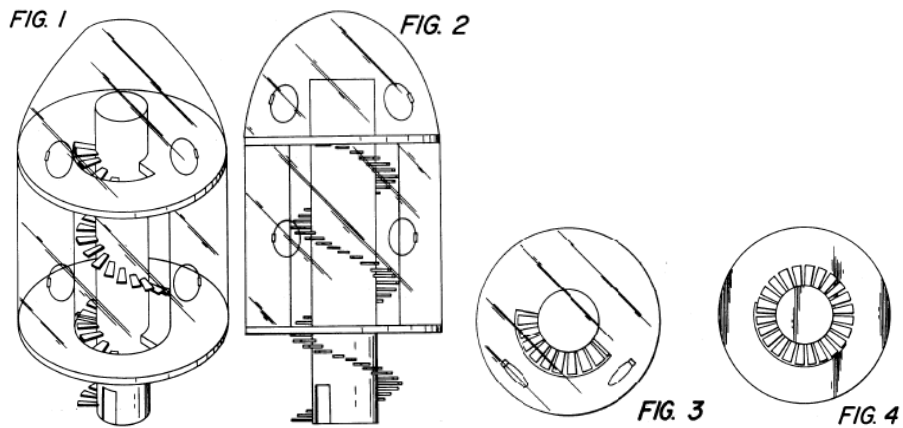
D267,346 Storefront (D25/59; D25/58; D25/80)

유리를 통해 보여지는 내부장식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인테리어 디자인의 속성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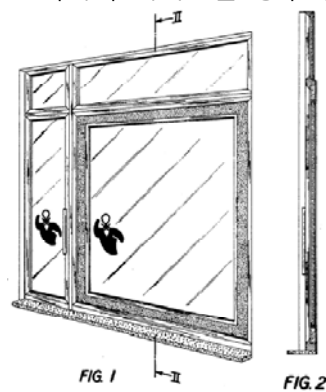
D259,280 (D25/5) Building

건물을 청구하고 있으나, 건물 내부의 구조가 유리를 통해 보여짐으로써 내부구조도 권리범위에 포함된다.



D287,883 Store front (D25/9; D2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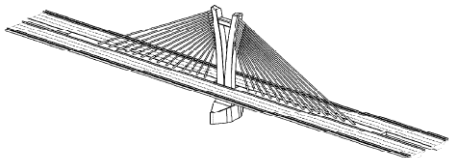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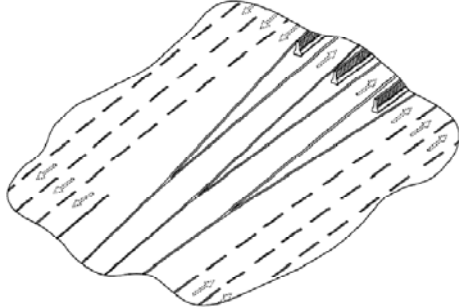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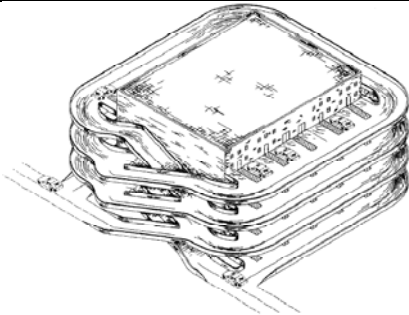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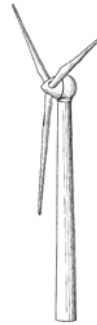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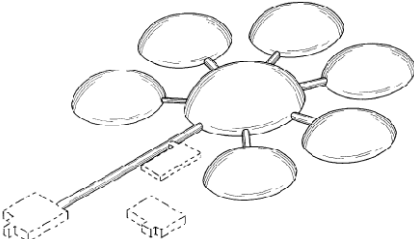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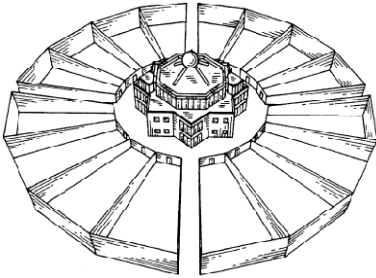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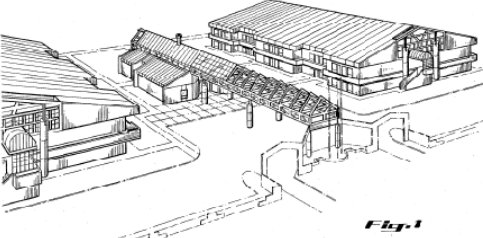
점포의 정면에서 창문 부분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청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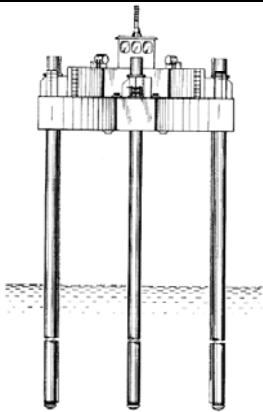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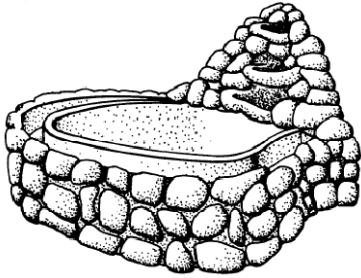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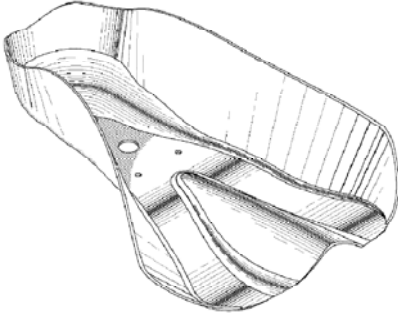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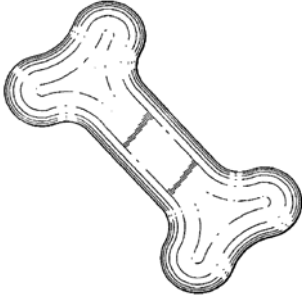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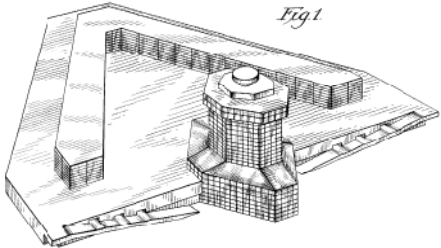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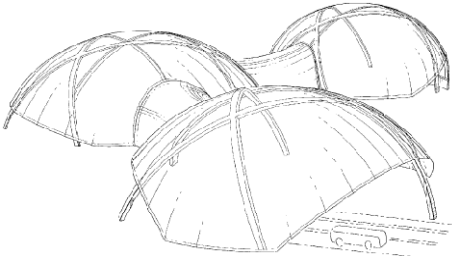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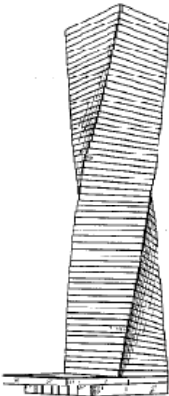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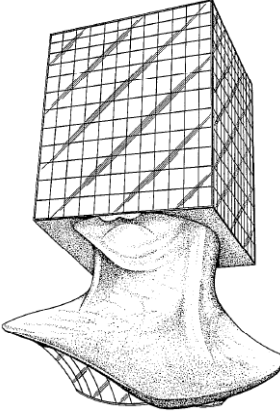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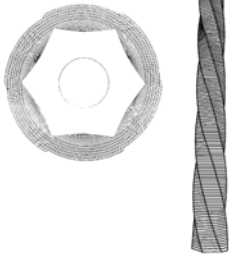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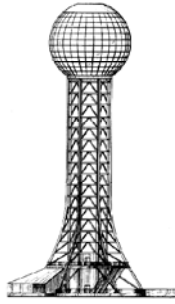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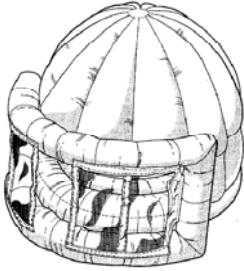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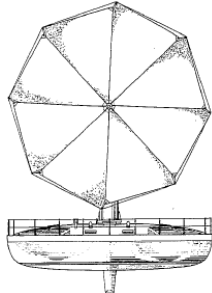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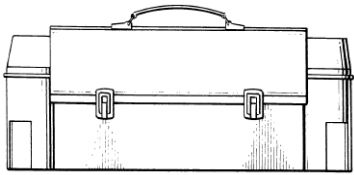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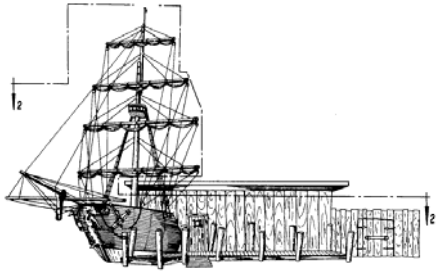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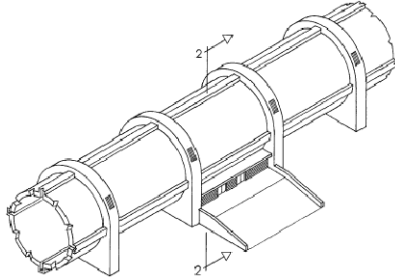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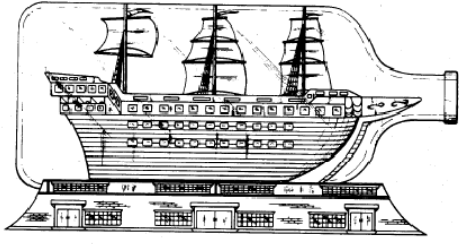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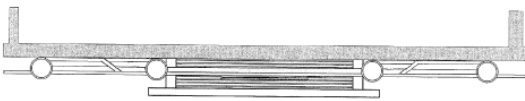
(3) 건축물 관련 디자인특허

통상적인 건물, 집, 창고 등은 매우 많이 발견된다. 아래에는 독특한 디자인이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부류의 건축물 위주로 나열하였다.

[표 41] 건축물 관련 미국 디자인특허 예시

 <u>D641,089</u> (D25/1) Cable stayed bridge double arch front facing	 <u>D524,450</u> (D25/1) Road system
 <u>D486,237</u> (D25/1) Multi-story individual automobile accessible structure	 <u>D444,569</u> (D25/1) Windmill
 <u>D434,154</u> (D25/1) Operating center for industrial equipment	 <u>D376,653</u> (D25/1; D25/12) Sports complex
 <u>D299,867</u> (D25/1; D25/22) Hotel 복수건물로 이루어진 건축물	 <u>D251,132</u> (D25/1; D25/3) Combined amusement ride and building structure 놀이동산의 정착물

 <u>D271,098</u> (D12/316; D25/1) Self-elevating well servicing vessel for offshore oil wells or the like	 <u>D255,142</u> (D23/13; D25/2) Combined waterfall and garden pond 정원의 일부로 정착된 정착물
 <u>D598,132</u> (D25/2) Aquatic structure 스위밍 풀의 바닥구조	 <u>D548,360</u> (D25/2) Bone shaped in-ground swimming pool 땅에 묻힌 거라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다.
 <u>D241,648</u> (D25/3) Airport 건물의 규모는 문제되지 않는다	 <u>D521,649</u> (D25/4) Building
 <u>D304,081</u> (D25/5) Multi-storied building	 <u>D296,934</u> (D25/5; D25/1; D25/9) Building

 <u>D554,271</u> (D25/6) Building	 <u>D270,949</u> (D25/6) Building structure
 <u>D391,374</u> (D25/7) Helmet-shaped inflatable enclosure 공기주입해서 얻어지는 형상	 <u>D289,032</u> (D12/315; D25/11; D25/32) Wind-powered floating home
 <u>D247,513</u> (D25/10) Restaurant building	 <u>D245,017</u> (D25/11) Store front
 <u>D629,123</u> (D25/18) Rocket train tube	 <u>D250,772</u> (D25/18) Building
 FIG. 2	 FIG. 3

D571,930 (D25/59) Store front

5. 미국 디자인특허 조사 결과의 시사점

(1) 건물 자체의 특허가 많다

건물 자체와 건축에 사용되는 부품을 포괄하는 미국특허분류 D25(Building units and construction elements) 전체의 디자인특허 건수는 9,528 건인 반면에, 주로 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한 디자인으로 구성된 세분류 D25/01~D25/35 와 D25/58~D25/59 에 포함된 디자인특허는 약 2,000 건을 초과한다. 따라서, 건물 또는 건축 관련 디자인특허 중 약 20%에 해당하는 비율로 건물 자체에 관하여 등록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건축에 사용되는 세부 부품보다는 건물자체의 등록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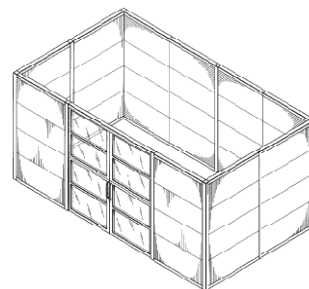
(2) 건물 등 부동산이 정규적으로 보호된다.

미국 특허법은, “제조 물품을 위한 신규, 독창적이고 장식적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본법의 조건 및 요건에 따라, 그에 대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³¹⁰고 하고 있다. 신규, 독창적, 장식적이기만 하면 그 물품이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가리지 않고 그 창작된 디자인이 보호된다. 물품이 이동 가능한지, 현장 시공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는 것이다. “제조”의 의미는 좁은 의미의 공업적 생산뿐만 아니라, 수작업에 의한 것이라도 무방³¹¹하다.

(3) 인테리어 디자인도 보호된다.

미국 디자인 특허분류 상에는 건물 등의 “interior”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분류화하고 있지는 않다³¹². 그러나, 이는 건물 등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다른 분류의 물품에서 그 내부 디자인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호되고 있다. 실제로 인테리어 디자인특허는 여러

³¹⁰ 35 U.S.C. 171 (디자인에 대한 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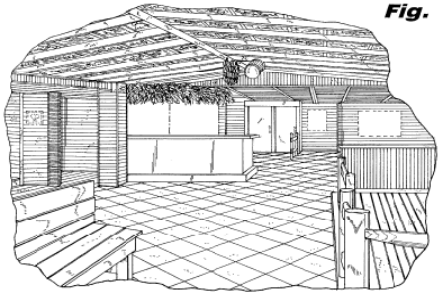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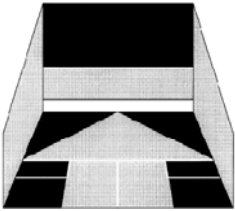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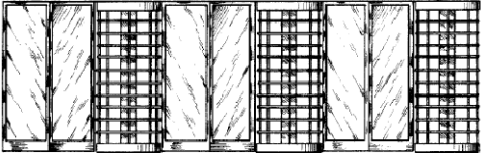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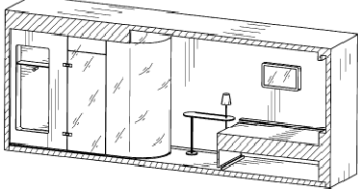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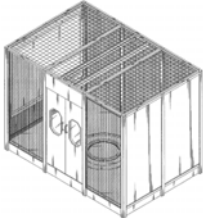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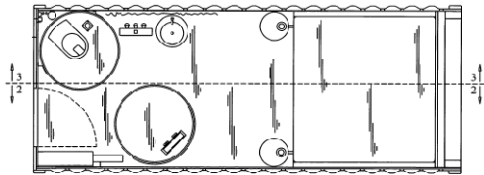
³¹¹ D433,151(OFFICE WORKSPACE) 2000.10.31.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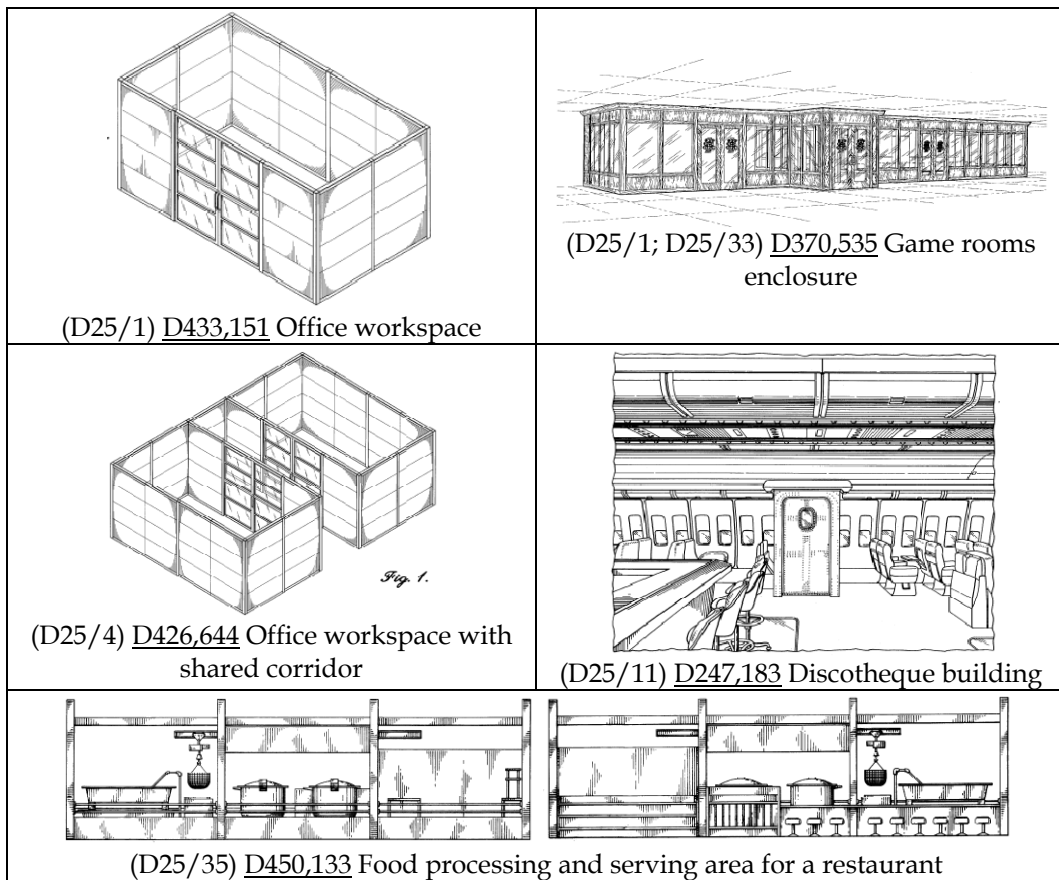
³¹² 다만, 미국 디자인특허분류 D25/37은 “Elevator cab interior”라고 하여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를 하나의 세분류로 하고 있다.

세분류에 나뉘어서 발견되고 있다.

아래의 예에서는, D21/199, D25/1, D25/4, D25/11, D25/33, D25/35, D25/58, D25/59 등 다양한 세분류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의 예가 발견된다.

[표 42] 다양한 분류와 명칭의 인테리어 디자인

 (D25/59) <u>D639,453</u> Store interior with a storefront	Fig. 2  (D25/35) <u>D475,467</u> Restaurant building interior
 (D21/199) <u>D395,688</u> Interior surface for a squash court	 (D25/58) <u>D395,521</u> Boutique interior
 (D25/58) <u>D262,998</u> Interior wall for a store	 (D25/1) <u>D641,494</u> Hotel room
FIG. 1  (D25/33) <u>D559,997</u> Indoor room	 (D25/35) <u>D561,910</u> Hotel room



(4) 명칭이 자유스럽다.

위에서 예를 든 인테리어 디자인의 명칭은, “Store interior with a storefront”, “Restaurant building interior”, “Interior surface for a squash court”, “Boutique interior”, “Hotel room”, “Interior wall for a store”, “Indoor room”, “Office workspace”, “Game rooms enclosure”, “Discotheque building”, “Food processing and serving area” 등 매우 다양하다³¹³. 건물을 명칭으로 하기도 하고, 인테리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사용하기도 한다. 이로부터 판단컨대, 독립거래의 대상³¹⁴이 되는가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발명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용어로 명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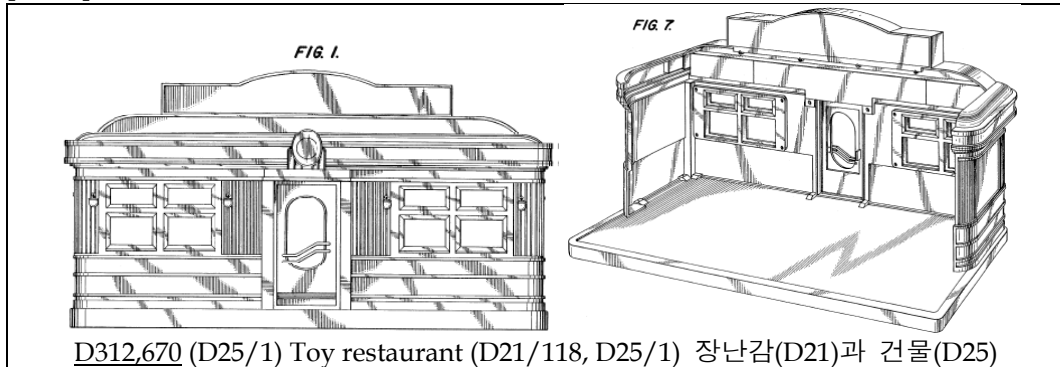
³¹³ 이는 비단 인테리어 디자인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미국 디자인특허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³¹⁴ 우리 디자인보호실무에서는 물품이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건물의 현관이나 (건물의 일부로서의) 난간, 지붕 따위와 같이 물품의 일부에 해당하는 명칭은 물품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여러 분류가 부여되기도 한다.

하나의 디자인특허에 둘 이상의 분류가 부여되기도 한다. 특히, 서로 다른 대분류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는 같은 디자인이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권리가 여러 곳에 미칠 수 있다³¹⁵는 미국실무를 반영한다.

[표 43] 서로 다른 복수 대분류에 분류된 디자인의 예



(6) 도면의 실무

㉠ 미국 디자인 도면의 일반 원칙

미국 실무에서 도면은, “디자인은 § 1.84 의 요건에 부합하는 도면으로 도시되어야 하고, 디자인의 외관을 완전히 도시하도록 충분한 수의 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³¹⁶고 한다. 이와 같이 디자인의 외관을 “완전히 도시”³¹⁷하지 못하는 것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³¹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특허받을 수 없다.

㉡ 건물/인테리어 관련 도면

“충분히 도시”해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통상적인 물품에 대하여는 사시도와 육면도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물의 일부에 관한

³¹⁵ 표시된 대분류에만 미친다는 뜻이 아니라, 비슷한 디자인이 축적된 곳이라는 의미이다.

³¹⁶ 37 C.F.R. 1.152 디자인 도면

³¹⁷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의 전체 외관을 완전히 도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건물의 현관이 디자인의 대상인 경우 건물 전체를 완전히 도시할 필요는 없다),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외관만 완전히 도시하면 족하므로 특정한 물품의 일부에 관한 디자인인 경우 그 일부의 외관을 완전히 도시하면 된다.

³¹⁸ 35 U.S.C. 112 첫번째 문장

디자인에 관하여도 6 면도에 준하는 도면을 제출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인테리어에 대하여는 내부에서 동/서/남/북/위/아래의 각 방향으로 보여지는 도면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그런 식으로 도시한 인테리어 디자인은 없었다.

인테리어의 경우 건물 내부에서 보여지는 상태 그대로를 도시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인데, 보는 방향에 따라 보여지는 것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테리어의 세부구성을 충실히 도시하기 위하여 매우 많은 도를 첨부하거나³¹⁹, 아예 2 개 정도의 적은 수의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³²⁰도 있다.

마찬가지로, 기타 물품(예: 자동차)의 인테리어에 관하여는, 인테리어의 각 세부가 다 드러나도록 매우 많은 수의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게는 2 개 정도의 도면만을 제출하는 경우³²¹도 있다.

© 선도 v. 사진

도면은 통상적으로는 흰색 용지에 검은색 잉크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³²². 사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미국특허에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³²³. 특히 컬러 사진을 사용하려면, “청구된 디자인에서 색체가 그 일부를 이루기 때문에 컬러 사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신청서(petition)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³²⁴.

이러한 미국 디자인 도면실무와 마찬가지로, 건물/인테리어 관련 디자인 출원에서도 사진으로 구성된 도면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고³²⁵, 특히 컬러

³¹⁹ D639,453(Store interior with a storefront)에서는 11도, D641,494(Hotel room)에서는 11도, D247,183(Discotheque building)에서는 16도, 등

³²⁰ D272,469 (Clean room)에서는 2도, 그리고 D304,083 (Band shell)에서는 각 실시예마다 2도씩, 등

³²¹ D610,521(Interior of a passenger cabin of an aircraft)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에서 도시한 2개의 도면만을 제출하고 있고, D561,400(Interior rear wall panel for use in an aquarium)에서는 단지 하나의 도면만을 제출하고 있다.

³²² 37 CFR 1.84(a)(1)

³²³ 디자인 출원에서 선도를 그리지 않고 샘플 등을 사용하여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것은 매우 간명한 방법이나, 미국 디자인 실무에서 사진으로 출원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사진에 표현된 미세한 사항들도 권리범위 해석에 작용하게 되어 디자인특허의 보호범위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³²⁴ 이 신청서는 기술센터장을 대표로 하여 수석 심사관이 검토하게 된다.

³²⁵ 매우 드문 예로,

사진으로 된 도면은 조사의 범위 내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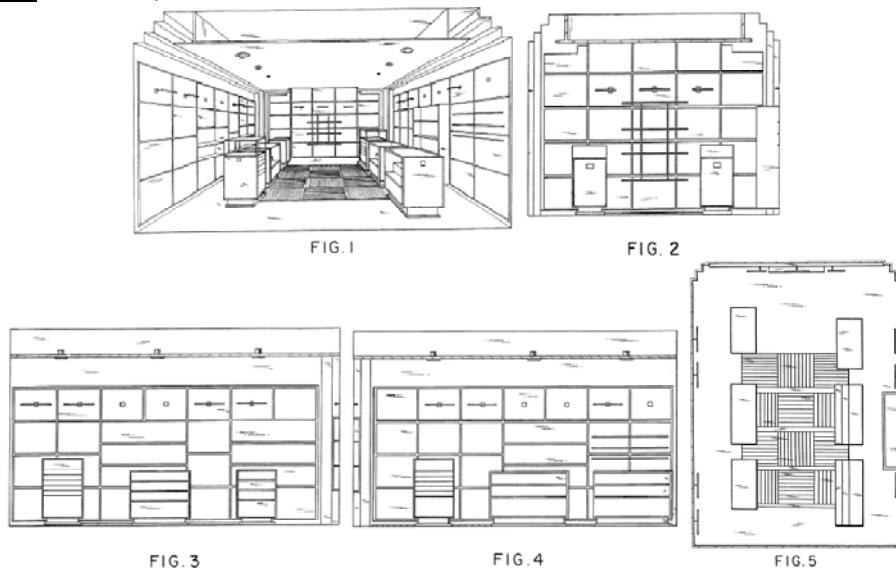
㉔ 도면의 특징

건물,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도면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하여 단면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³²⁶. 건물의 외부의 디자인만이 아니라 내부의 구조도 보여주기 위하여 선택된 방식이다.

㉕ 설계도면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도면을 제출한다.

디자인 도면은 설계도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설계도처럼 보이는 것은 평면도일 뿐이고, 사시도, 측면도 등 디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보여지는 그대로의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즉, 아래 디자인특허에서 FIG. 5는 부띠크 인테리어의 설계도가 아니라 부띠크 인테리어를 위에서 바라본 그대로의 평면도인 것이다.

D395,521 Boutique interior



D526,065(Shipard)

와, D521,155(Shipard)



가 발견된다.

³²⁶ 일예로, D641,494 (Hotel room) 참고

(7) 미국 건물/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유사성의 범위

㉠ 여러 실시예 v. 존속기간 포기서

디자인을 특허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미국실무에서는, 하나의 발명적 개념에 포함되는(즉, 특허성 면에서 구별되지 않는³²⁷) 여러 실시예(embodiments)³²⁸를 하나의 출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³²⁹. 한편, 특허성 면에서 차별화되지 않는 실시예들을 별개의 출원으로 한 경우, 심사관은 이중특허(double patenting) 거절이유를 발행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는 존속기간포기서(terminal disclaimer)³³⁰를 제출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

㉡ 비자명성의 기준 참작에의 효용성

조사된 건물/인테리어 관련 디자인특허 중에는, 둘 이상의 실시예를 포함하고 있는 특허들이 있으며, 또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디자인으로서 별개로 등록된 것들이 발견된다. 따라서 이들을 분석함으로써 미국 건물/인테리어 관련 디자인 실무에서 특허성, 특히 비자명성(non-obviousness)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하나의 출원에 여러 실시예를 포함하고 있는 예, 서로 다른 출원인데 이중특허 거절이 통지되었던 예³³¹, 최초 출원에서는 하나의 출원에 포함되었었으나 거절이유를 통지받고 분할하였던 예, 관련된 디자인인데 별개의 출원으로 문제없이 진행되었던 예들을 각각 나누어 예시해보았다.

㉢ 하나의 출원에 포함된 여러 실시예의 예

³²⁷ Patentably indistinct

³²⁸ 변형형태(modified forms)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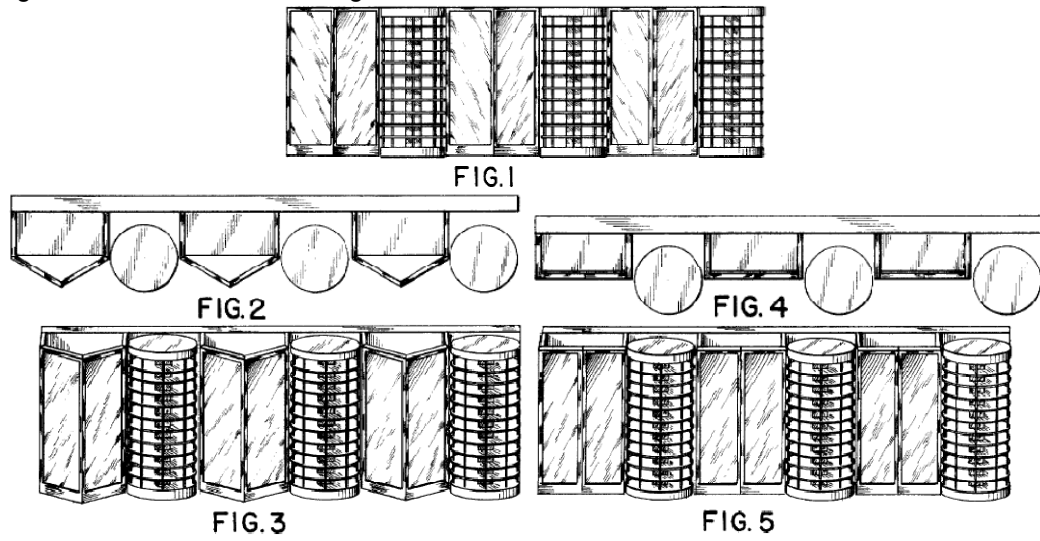
³²⁹ 출원시에 하나의 출원에 포함시켰던 여러 실시예 중 특허성 면에서 구별가능한 것이 있다면 미국의 1출원주의에 위반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심사관은 한정요구(restriction requirement)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분할 출원으로서 대응할 수 있다.

³³⁰ 별개로 진행되어 특허된 두 출원에 대하여, 늦게 특허된 것의 존속기간을 일찍 특허된 것의 존속기간으로 하여 존속기간의 일부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이다. 두 출원이 별개로 다른 날에 특허되면, 일찍 특허된 것이 존속기간이 만료되어도 늦게 특허된 것을 이용하여 같은 디자인에 대하여 계속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늦게 등록된 것의 존속기간이 조기에 만료된 것으로 하겠다는 서약인 것이다.

³³¹ 따라서 이들은 특허적으로 서로 동일하거나 자명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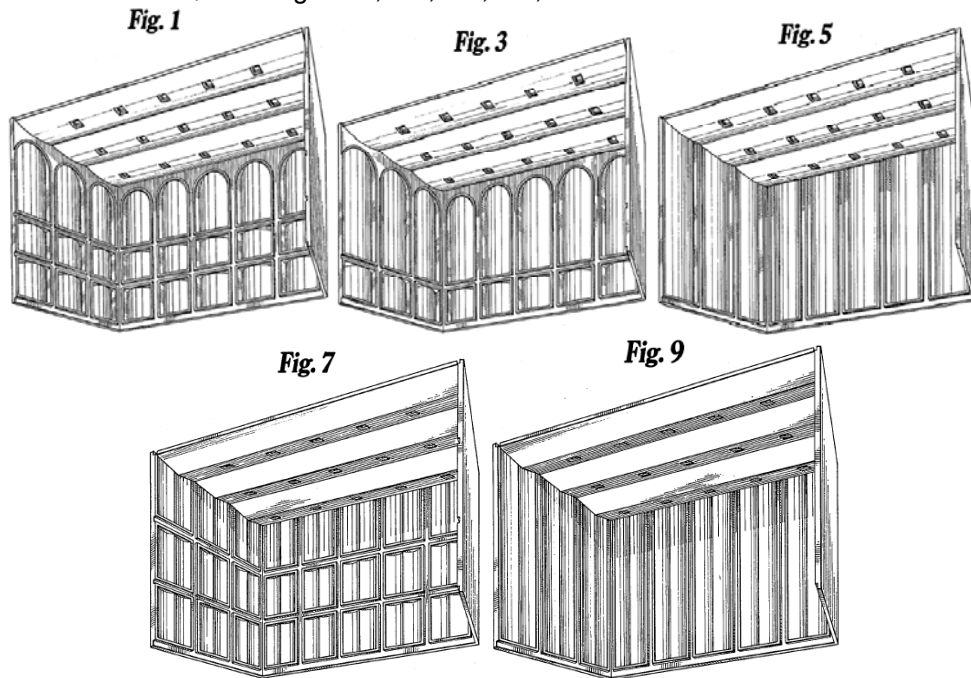
D262,998 Interior wall for a store (D25/58) (1982.02.09등록)

Figs. 2-3이 하나의 실시예, Figs. 4-5는 다른 실시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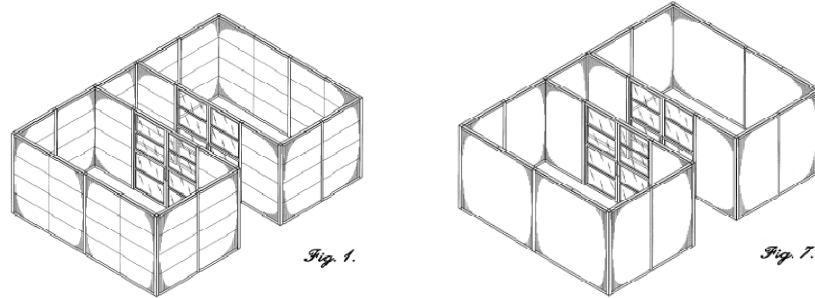
D304,083 Band shell (D25/58; D25/35; D25/56)

여러 실시예가 담겨있다. Figs. 1-2, 3-4, 5-6, 7-8,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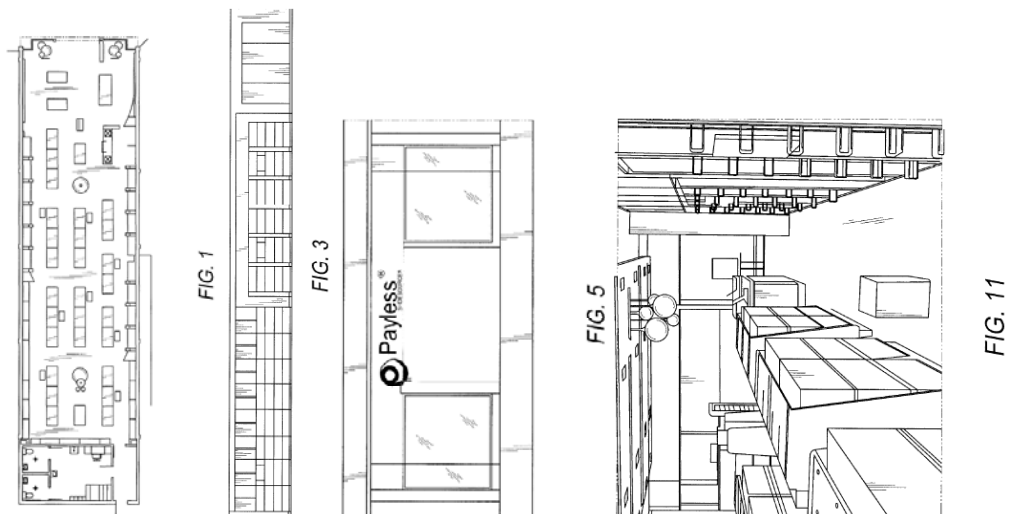
D426,644 Office workspace with shared corridor (D25/4) (실시예 1 및 2)

파티션의 배열은 같되 파티션의 형태가 유사하다; 이 정도의 차이로는 미국디자인특허의 **patentably distinct** 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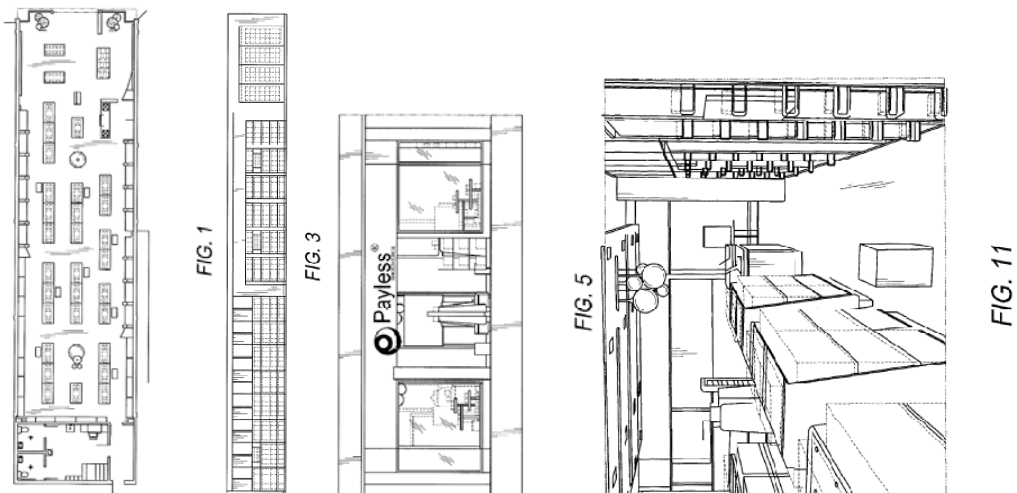


④ 서로 다른 출원인데 이중특허로 문제되었던 예

D639,453 Store interior with a storefront (D25/59) 출원번호: 29/284,047(2007.08.29)



D638,139 Store interior with a storefront (D25/59) 출원번호: 29/284,048 (2007.0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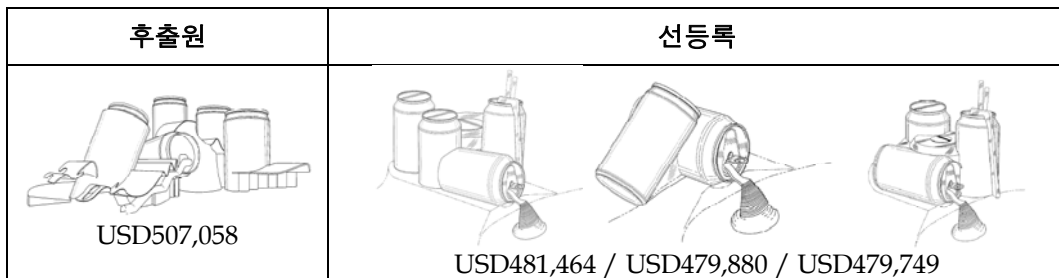
㉔ 1 디자인 1 출원 위배로 거절되어 분할되었던 예

아래는, 출원시 여러 실시예들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하였으나, 거절이유를 통지받고 분할한 예로서, 이들은 서로 별개의 특허로 취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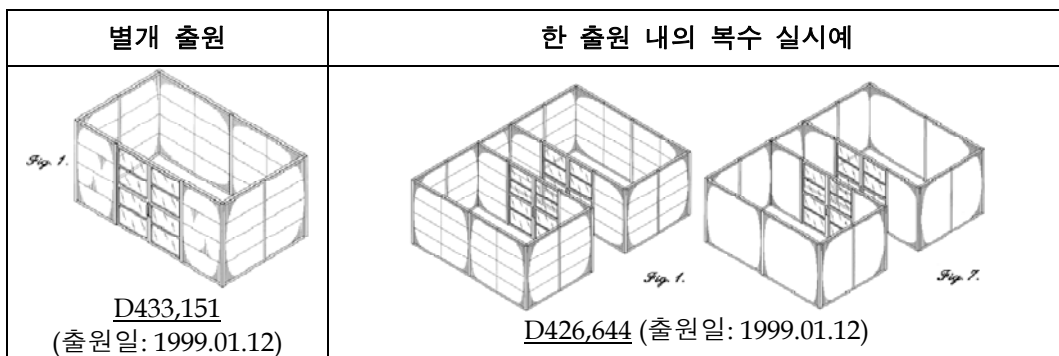


㉕ 별개의 출원으로 문제없이 진행되었던 예

아래는 3 개의 선등록 디자인에 대하여 후출원이 별개로 진행되어 등록되었던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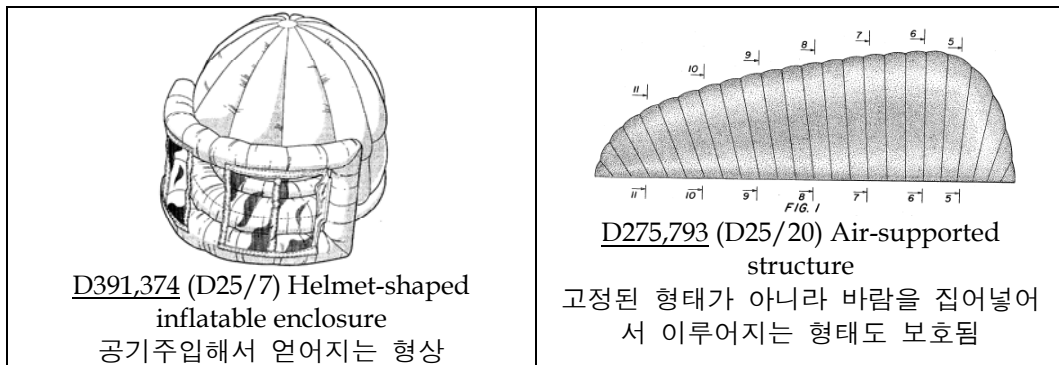


아래는, 동일자로 출원된 두 출원으로서, 한 출원(D426,644)에는 두 개의 실시예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관련성 있는 디자인이 별개의 출원(D433,151)으로 진행되어 등록된 예이다. 이 정도의 차이라면 디자인특허 면에서 구별된다는 것이다.



(8) 일시적인 디자인도 보호되고 있다.

아래의 등록예는 공기를 불어넣어 생기는 형태³³²가 등록된 것으로서, 콘크리트 건물과 같이 그 외형과 구조가 확고히 고정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바람만 빠지면 해체될 일시적인 디자인도 보호되고 있었다.



³³²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야 하거나, 마개 등으로 막아야 한다.

제3절 유럽 등록공동체디자인 조사

1. 검색 데이터베이스와 검색방법

유럽 등록공동체디자인(RCD)의 조사에는, OHIM³³³의 데이터베이스를 RCD-online 서비스³³⁴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미국과 같이 “room”이나 “interior”의 단어로 검색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으나, 이렇게 초벌 검색한 결과 검색수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고³³⁵, 이들 중 대부분은 목적하는 “건물의 인테리어”와는 무관한 것들이 많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럽은, 로카르노 분류를 정면으로 채택하고 있고, 따라서 로카르노 분류 제 32 류의 “차림새[실내배치]”³³⁶의 항목이 그대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유럽의 등록공동체디자인 중 건물이나 인테리어의 등록을 조사하기 위하여는 건물에 해당하는 분류의 디자인특허를 조사할 수 있다.

한편, 유럽 역시 건물의 인테리어는 건물 자체의 일부에 대한 디자인으로서 건물을 제품으로 표시하여 등록될 수 있다. 따라서, 건물에 관한 유로로카르노 분류 제 25.03 류³³⁷에 등록된 RCD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유럽공동체디자인은 “차림새[실내배치]”의 분류항목에 포함된 RCD를 먼저 조사하여 이들 중 인테리어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을 추출하였고, 다음으로 유로로카르노 분류 제 25.03 류의 전체를 조사하여 이들 중 인테리어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을 추출하였다.

³³³ <http://oami.europa.eu/>

³³⁴ <http://oami.europa.eu/RCDOnline/RequestManager>

³³⁵ RCD-online의 경우 검색수가 1천건까지의 데이터만을 얻을 수 있으므로, “room”이나 “interior”의 단어로만 검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³³⁶ 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

³³⁷ 실질은 건물이나 다른 소분류에 등록된 인테리어 디자인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나, 제 25.03류만을 조사하여도 전체적으로 조사의 완성도는 이 연구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할 것이다.

2. 로카르노 분류 제32류의 차림새[실내배치]³³⁸의 디자인 검색

(1) 설명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차림새[실내배치]를 물품으로 하지 않고 단지 “차림새”³³⁹로만 등록된 것이 많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로카르노 분류 제 32.00 류 중 제품의 표시에 “Get”을 포함하는 것을 연도별로 검색하였다³⁴⁰.

한편, 공동체디자인에 대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을 검색할 때 알아야 할 것은, 이들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분류가 변경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즉, 한 때 실내배치에 관하여 유럽의 분류는 제 99 류에 포함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제품이 로카르노 분류 제 32-00 류에 편입되면서, 제 99 류에 포함되었던 이들 인테리어 디자인은 2008 년말부터는 제 32.00 류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2008 년까지 등록된 인테리어 디자인을 검색하기 위하여는 제 32 류뿐만 아니라 제 99 류까지 검색하여야 하게 된다. 따라서, RCD 가 등록되기 시작한 2003.04.01 부터 2011.08.15.까지 제 32 류 및 제 99 류 모두에 관해 제품의 표시에 “get”이 포함된 디자인을 모두 검색하여 일일이 확인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만을 골라내었다.

검색결과, 제 32 류 및 제 99 류에 포함되고 제품의 표시에 “get”을 포함한 총 수는 2,319 건이었고, 이들 중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련된 RCD 는 100 건이 발견되었다.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 도면의 실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등록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을 일일이 확인하여 하나의 도면만이 제출된 경우에는 대표도만 리스트에 붙여넣고, 둘 이상의 도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제출된 도면을 모두 복사하여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³³⁸ 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

³³⁹ “Get-up”

³⁴⁰ 제32류 전체를 물리적으로 모두 조사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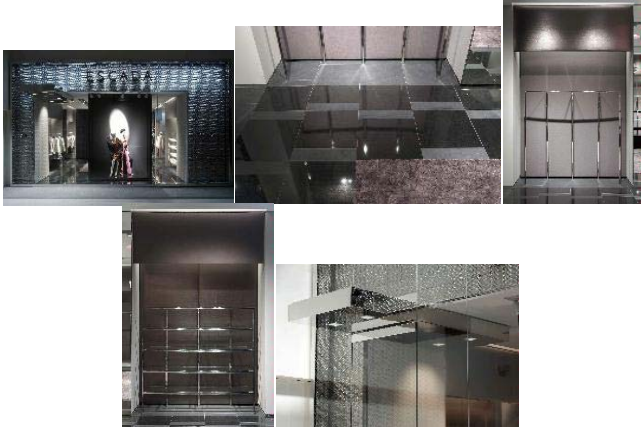
(2) 제 32 류 및 제 99 류의 인테리어 디자인 RCD 리스트

[표 44] 유로로카르노 제32류와 제99류에 포함된 인테리어 디자인들

000317920-0001 	Name of owner: IT Service Consulting AG Filing date: 31/03/2005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소멸
000317920-0002 	Name of owner: IT Service Consulting AG Filing date: 31/03/2005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소멸
000317920-0003 	Name of owner: IT Service Consulting AG Filing date: 31/03/2005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소멸 
000317920-0004 	Name of owner: IT Service Consulting AG Filing date: 31/03/2005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소멸 
000317920-0005 	Name of owner: IT Service Consulting AG Filing date: 31/03/2005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소멸

000317920-0006 	Name of owner: IT Service Consulting AG Filing date: 31/03/2005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소멸 
000317920-0007 	Name of owner: IT Service Consulting AG Filing date: 31/03/2005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소멸
000317920-0008 	Name of owner: IT Service Consulting AG Filing date: 31/03/2005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소멸 
000317920-0009 	Name of owner: IT Service Consulting AG Filing date: 31/03/2005 Locarno class-subclass: 99.00 Verbal element: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소멸
000317920-0010 	Name of owner: IT Service Consulting AG Filing date: 31/03/2005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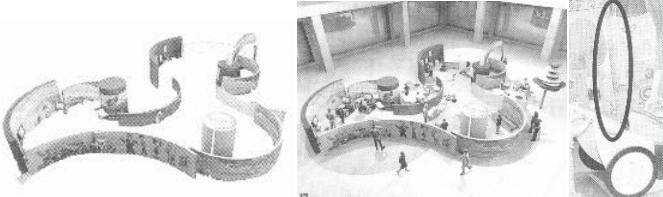
000317920-0011 	Name of owner: IT Service Consulting AG Filing date: 31/03/2005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소멸
000317920-0012 	Name of owner: IT Service Consulting AG Filing date: 31/03/2005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소멸 
000317920-0013 	Name of owner: IT Service Consulting AG Filing date: 31/03/2005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소멸
000451299-0001 	Name of owner: TeleDatacast Kft. Filing date: 22/12/2005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소멸 
000461926-0001 	Name of owner: GASTON Y DANIELA, S.A. Filing date: 12/01/2006 Locarno class-subclass: 25.03,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Rooms,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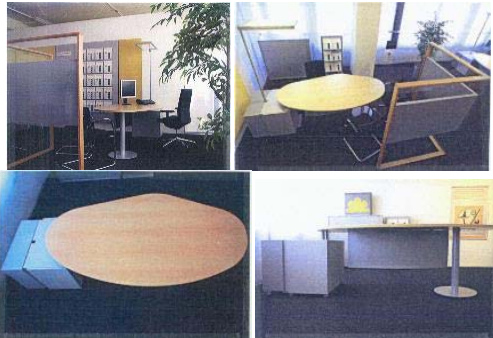
000521760-0001 	Name of owner: ESCADA Luxembourg S.à r.l. Filing date: 03/05/2006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0521760-0002 	Name of owner: ESCADA Luxembourg S.à r.l. Filing date: 03/05/2006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0521760-0003 	Name of owner: ESCADA Luxembourg S.à r.l. Filing date: 03/05/2006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0521760-0004 	Name of owner: ESCADA Luxembourg S.à r.l. Filing date: 03/05/2006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0521760-0005 	Name of owner: ESCADA Luxembourg S.à r.l. Filing date: 03/05/2006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0521760-0006 	Name of owner: ESCADA Luxembourg S.à r.l. Filing date: 03/05/2006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0521760-0007 	Name of owner: ESCADA Luxembourg S.à r.l. Filing date: 03/05/2006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0655121-0001 	Name of owner: Just Petersen, Kimmickey Filing date: 19/01/2007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0731302-0001 	Name of owner: Andrzej Gawin trading ... Filing date: 30/05/2007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0731302-0002 	Name of owner: Andrzej Gawin trading... Filing date: 30/05/2007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0813340-0015 	Name of owner: Oy Matkahuolto Ab Filing date: 23/10/2007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0815907-0001 	Name of owner: HMG Hotel Management Services S.A.R.L. Filing date: 25/10/2007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0815907-0002 	Name of owner: HMG Hotel Management Services S.A.R.L. Filing date: 25/10/2007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0815907-0003 	Name of owner: HMG Hotel Management Services S.A.R.L. Filing date: 25/10/2007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0815907-0004 	Name of owner: HMG Hotel Management Services S.A.R.L. Filing date: 25/10/2007 Locarno class-subclass: 99.00 Verbal element: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0815907-0005 	Name of owner: HMG Hotel Management Services S.A.R.L. Filing Date: 25/10/2007 Locarno class-subclass: 99.00 Verbal element: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0840343-0001 	Name of owner: PAOLO ODDENINO PARIS S.R.L. Filing date: 12/12/2007 Locarno class-subclass: 99.00 Verbal element: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hop ornamentation and decoration, Shop layouts, Graphic representations Status: 등록 및 공고 
000853635-0001 	Name of owner: C-C Group s.r.o. Filing date: 05/12/2007 Locarno class-subclass: 99.00 Verbal element: CC COFEE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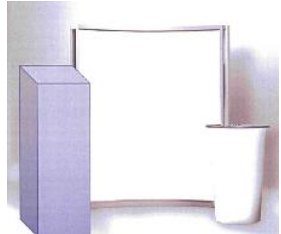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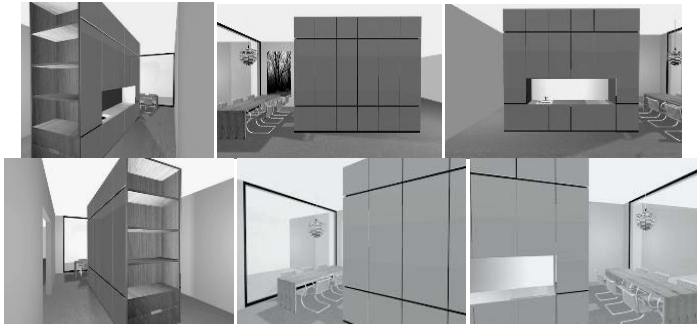
000855119-0001 	Name of owner: Egerland, Claus Filing date: 08/01/2008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0931712-0003 	Name of owner: Andrzej Gawin trading... Filing date: 09/05/2008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0931712-0004 	Name of owner: Andrzej Gawin trading ... Filing date: 09/05/2008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0931712-0005 	Name of owner: Andrzej Gawin trading ... Filing date: 09/05/2008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0931712-0007 	Name of owner: Andrzej Gawin trading ... Filing date: 09/05/2008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0935309-0001 	Name of owner: Comfyware Ltd. Filing date: 12/05/2008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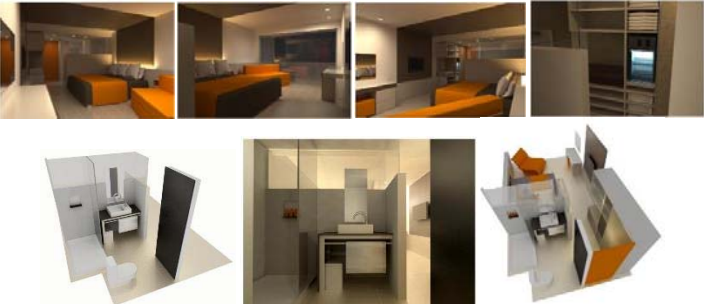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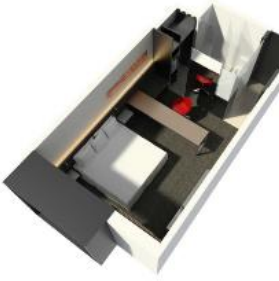
000939145-0001 	Name of owner: Fabryka Mebli MEBLAR ... Filing date: 23/05/2008 Locarno class-subclass: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0939145-0002 	Name of owner: Fabryka Mebli MEBLAR ... Filing date: 23/05/2008 Locarno class-subclass: 99.00 Verbal element: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0955406-0001 	Name of owner: Fabryka Mebli MEBLAR ... Filing date: 20/06/2008 Locarno class-subclass: 99.00 Verbal element: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018378-0001 	Name of owner: Commerzbank AG Filing date: 10/10/2008 Locarno class-subclass: 99.00 Verbal element: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001018378-0002 	Name of owner: Commerzbank AG Filing date: 10/10/2008 Locarno class-subclass: 99.00 Verbal element: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001064588-0001 	Name of owner: Raquin, Régis Filing date: 31/12/2008 Locarno class-subclass: 32.00 Verbal element: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133243-0001 	Name of owner: Rust, also trading as Mebel Rust- Marian Rust, Marian Filing date: 01/05/2009 Locarno class-subclass: 32.00 Verbal element: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133243-0002 	Name of owner: Rust, also trading as Mebel Rust- Marian Rust, Marian Filing date: 01/05/2009 Locarno class-subclass: 32.00 Verbal element: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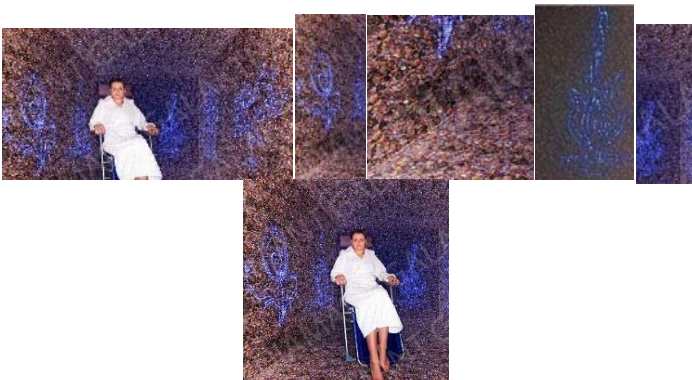
001133243-0003 	Name of owner: Rust, also trading as Mebel Rust- Marian Rust, Marian Filing date: 01/05/2009 Locarno class-subclass: 32.00 Verbal element: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136923-0001 	Name of owner: SYNALIA (société anonyme coopérative à capital variable) Filing date: 06/04/2009 Locarno class-subclass: 32.00 Verbal element: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251342-0001 	Name of owner: Illycaffè S.p.A. Filing date: 22/12/2010 Locarno class-subclass: 32.00 Verbal element: ILLY ESPRESSAMENTE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001251342-0002 	Name of owner: Illycaffè S.p.A. Filing date: 22/12/2010 Locarno class-subclass: 32.00 Verbal element: ILLY ESPRESSAMENTE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001251342-0003 	Name of owner: Illycaffè S.p.A. Filing date: 22/12/2010 Locarno class-subclass: 32.00 Verbal element: ILLY ESPRESSAMENTE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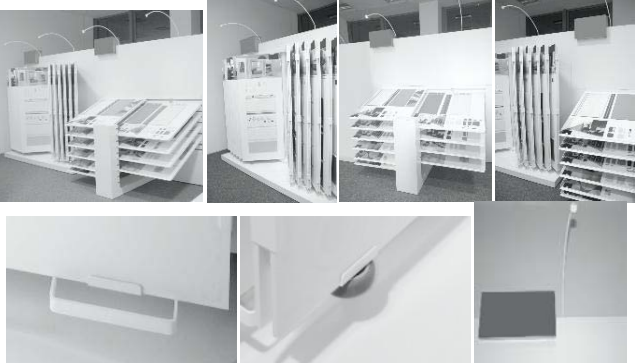
001251342-0004 	Name of owner: Illycaffè S.p.A. Filing date: 22/12/2010 Locarno class-subclass: 32.00 Verbal element: ILLY ESPRESSAMENTE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001251342-0005 	Name of owner: Illycaffè S.p.A. Filing date: 22/12/2010 Locarno class-subclass: 32.00 Verbal element: ILLY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001251342-0006 	Name of owner: Illycaffè S.p.A. Filing date: 22/12/2010 Locarno class-subclass: 32.00 Verbal element: ILLY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001251342-0007 	Name of owner: Illycaffè S.p.A. Filing date: 22/12/2010 Locarno class-subclass: 32.00 Verbal element: ILLY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001251342-0008 	Name of owner: Illycaffè S.p.A. Filing date: 22/12/2010 Locarno class-subclass: 32.00 Verbal element: ILLY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001251342-0009 	Name of owner: Illycaffè S.p.A. Filing date: 22/12/2010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001251342-0010 	Name of owner: Illycaffè S.p.A. Filing date: 22/12/2010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001251342-0011 	Name of owner: Illycaffè S.p.A. Filing date: 22/12/2010 Locarno class-subclass: 32.00 Verbal element: ILLY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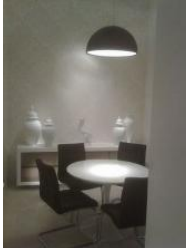
001251342-0012 	Name of owner: Illycaffè S.p.A. Filing date: 22/12/2010 Locarno class-subclass: 32.00 Verbal element: ILLY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001260905-0001 	Name of owner: SC SYMPHONY PUB SRL Filing date: 17/02/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Verbal element: SYMPHONY PUB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275705-0001 	Name of owner: brainlink gmbh Filing date: 12/05/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275705-0002 	Name of owner: brainlink gmbh Filing date: 12/05/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617358-0001 	Name of owner: Cristina Jorge de Carvalho, ... Filing date: 29/09/2009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665142-0001 	Name of owner: DORPAN, S.L. Filing date: 03/02/2010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001665159-0001 	Name of owner: DORPAN, S.L. Filing date: 03/02/2010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001691460-0001 	Name of owner: i.gen hotels GmbH Filing date: 07/04/2010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710690-0001 	Name of owner: LOUVRE HOTELS, société ... Filing date: 21/05/2010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001710690-0002 	Name of owner: LOUVRE HOTELS, société ... Filing date: 21/05/2010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001710690-0003 	Name of owner: LOUVRE HOTELS, société ... Filing date: 21/05/2010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001710690-0004 	Name of owner: LOUVRE HOTELS, société ... Filing date: 21/05/2010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001710690-0005 	Name of owner: LOUVRE HOTELS, société ... Filing date: 21/05/2010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001791351-0001 	Name of owner: Ungefucht, Robert Filing date: 09/12/2010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001791351-0002 	Name of owner: Ungefucht, Robert Filing date: 09/12/2010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001791351-0003 	Name of owner: Ungefucht, Robert Filing date: 09/12/2010 Locarno class-subclass: 32.00 Verbal element: DIAMANT GALAKTIJA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001801648-0001 	Name of owner: AEROPORTS DE PARIS Filing date: 05/01/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001801648-0002 	Name of owner: AEROPORTS DE PARIS Filing date: 05/01/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001801648-0003 	Name of owner: AEROPORTS DE PARIS Filing date: 05/01/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001801648-0004 	Name of owner: AEROPORTS DE PARIS Filing date: 05/01/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001812884-0001 	Name of owner: ELROB Robert Bzdikot Filing date: 28/01/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827205-0001 	Name of owner: Staatliche Porzellan-Manufaktur ... Filing date: 25/02/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827205-0002 	Name of owner: Staatliche Porzellan-Manufaktur ... Filing date: 25/02/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827205-0003 	Name of owner: Staatliche Porzellan-Manufaktur ... Filing date: 25/02/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827205-0004 	Name of owner: Staatliche Porzellan-Manufaktur ... Filing date: 25/02/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827205-0005 	Name of owner: Staatliche Porzellan-Manufaktur ... Filing date: 25/02/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842535-0001 	Name of owner: Staatliche Porzellan-Manufaktur ... Filing date: 14/04/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842535-0002 	Name of owner: Staatliche Porzellan-Manufaktur ... Filing date: 29/03/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842535-0003 	Name of owner: Staatliche Porzellan-Manufaktur ... Filing date: 29/03/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842535-0004 	Name of owner: Staatliche Porzellan-Manufaktur ... Filing date: 29/03/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842535-0005 	Name of owner: Staatliche Porzellan-Manufaktur ... Filing date: 29/03/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842535-0006 	Name of owner: Staatliche Porzellan-Manufaktur ... Filing date: 29/03/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842535-0007 	Name of owner: Staatliche Porzellan-Manufaktur ... Filing date: 29/03/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842535-0008 	Name of owner: Staatliche Porzellan-Manufaktur ... Filing date: 29/03/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854753-0001 	Name of owner: Staatliche Porzellan-Manufaktur ... Filing date: 21/04/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854753-0002 	Name of owner: Staatliche Porzellan-Manufaktur ... Filing date: 21/04/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854753-0003 	Name of owner: Staatliche Porzellan-Manufaktur ... Filing date: 21/04/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854753-0004 	Name of owner: Staatliche Porzellan-Manufaktur ... Filing date: 21/04/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854753-0005 	Name of owner: Staatliche Porzellan-Manufaktur ... Filing date: 21/04/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001889684-0002 	Name of owner: tea-licious GmbH Filing date: 11/07/2011 Locarno class-subclass: 32.00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실내배치] Status: 등록 및 공고    

(*) 등록 및 공고: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Get-up [실내배치]: Get-up [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

소멸: Design lapsed

3. 로카르노 분류 제25.03류³⁴¹의 디자인 검색

(1) 설명

인테리어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건물의 일부로서 출원한 예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유로로카르노 분류 제 25.03 류에 등록된 RCD 전부를 확인하였다. 유로로카르노 분류 제 25.03 류에는, 매년 약 500 건 정도의 공동체디자인이 등록되고 있다.

[표 45] 연도별 유로로카르노 분류 제25.03류에 등록된 디자인 수

기간	RCD수	인테리어 디자인 수 ³⁴²
2010.01.01~2011.08.20	895	24
2009.01.01~2009.12.31	563	1
2008.01.01~2008.12.31	506	10
2007.01.01~2007.12.31	510	3
2006.01.01~2006.12.31	451	2
2005.01.01~2005.12.31	373	1
2004.01.01~2004.12.31	553	9
2003.04.01 ³⁴³ ~2004.12.31	365	0
합계		

이들 중에는 건물 자체의 외부 외관이나 수영장 등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디자인이 매우 많고, 우리 법상 토지에 정착되기까지 이동 가능한 것으로서 보호될 수 있는 이동식 건물(booth, bus shelter 등)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이들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많은 수가 발견되어 일일이 예시하기 힘들고 ³⁴⁴, 아래에는 건물 기타의 인테리어에 관한 디자인만을 리스트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25.03 류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은 총 50 건 발견된다.

³⁴¹ Bridge, Building façades, Buildings, Conservatories, Filling stations, Halls, Hotel rooms, Houses, Houses, garages and other buildings, Inflatable buildings, Other buildings, Residence, Rooms, Stadiums, Swimming pools [non-transportable] 등이 나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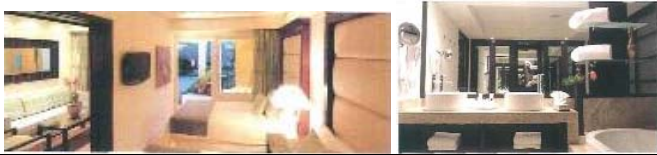
³⁴² 연도별로 유로로카르노 제25.03류에 포함된 인테리어 디자인은 이와 같이 집계되나, 이 숫자는 통계적 의미를 가질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³⁴³ 공동체디자인은 2003.04.01부터 등록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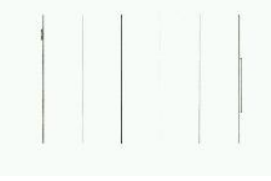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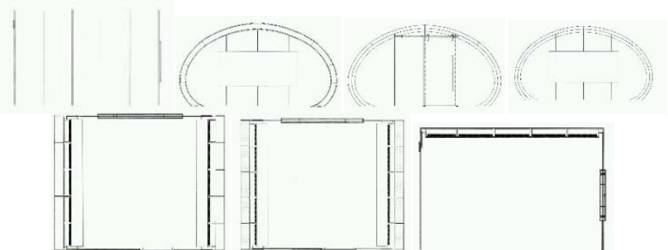
³⁴⁴ 건물의 일부(solaria, cubicle, Pavilions), prefabricated building unit, 차양(sheds) 등도 리스트에서 제외하였다.

(2) 제 25.03 류의 인테리어 디자인 RCD 리스트

[표 46] 유로로카르노 제25.03류에 포함된 인테리어 디자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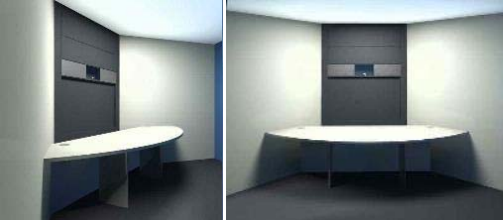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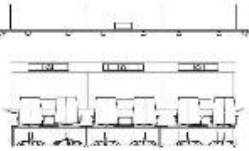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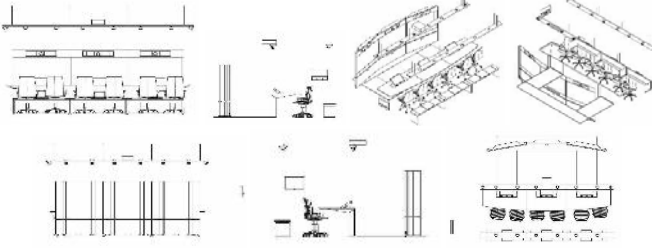
001794454-0001 	Name of owner: DORPAN, S.L. Filing date: 16/12/2010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Hotel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794454-0002 	Name of owner: DORPAN, S.L. Filing date: 16/12/2010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Hotel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794454-0003 	Name of owner: DORPAN, S.L. Filing date: 16/12/2010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Hotel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794454-0004 	Name of owner: DORPAN, S.L. Filing date: 16/12/2010 Locarno class-subclass: 25.03 Verbal element: Indication of the product: Hotel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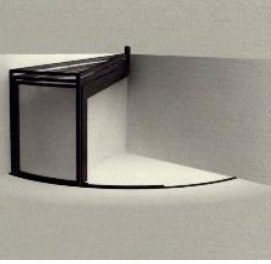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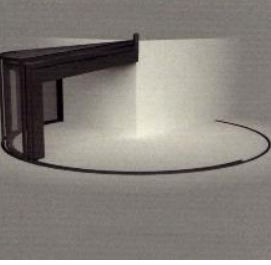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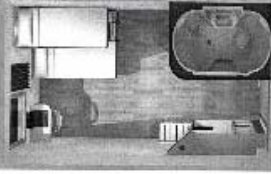
001794454-0005 	Name of owner: DORPAN, S.L. Filing date: 16/12/2010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Hotel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794454-0006 	Name of owner: DORPAN, S.L. Filing date: 16/12/2010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Hotel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794454-0007 	Name of owner: DORPAN, S.L. Filing date: 16/12/2010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Hotel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794454-0008 	Name of owner: DORPAN, S.L. Filing date: 16/12/2010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Hotel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794454-0009 	Name of owner: DORPAN, S.L. Filing date: 16/12/2010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Hotel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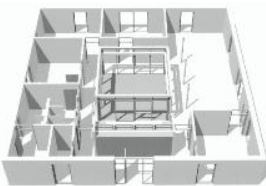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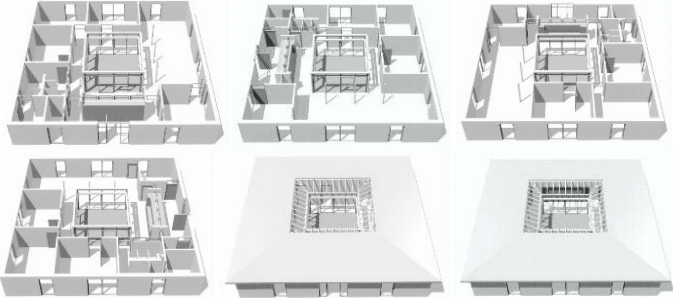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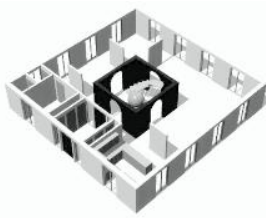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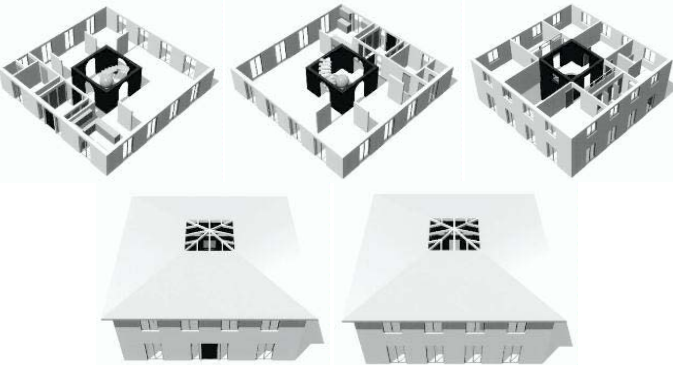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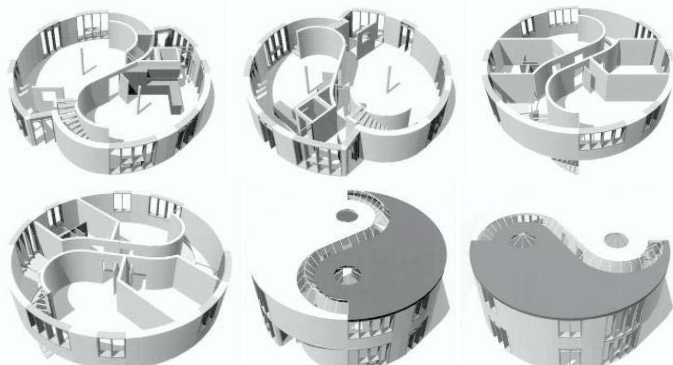
001794454-0010 	Name of owner: DORPAN, S.L. Filing date: 16/12/2010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Hotel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794454-0011 	Name of owner: DORPAN, S.L. Filing date: 16/12/2010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Hotel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740002-0001 	Name of owner: Robinson, Martin Filing date: 04/08/2010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214571-0002 	Name of owner: THINKCO2,S.L Filing date: 14/05/2010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703554-0001 	Name of owner: Gumhalter, Matthias Filing date: 03/05/2010 Locarno class-subclass: 11.02,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Mobiles [decoration], Hotel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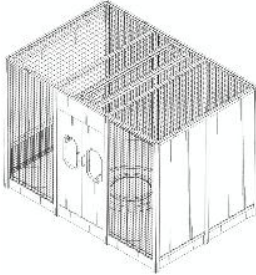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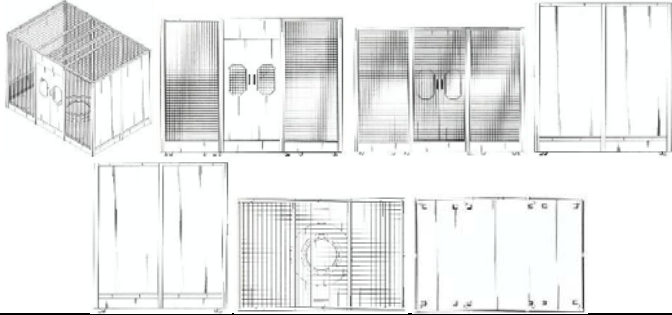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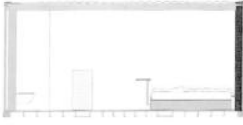
001697160-0001 	Name of owner: CITIZENM IP Holding Ltd Filing date: 19/04/2010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Hotel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691460-0002 	Name of owner: i.gen hotels GmbH Filing date: 07/04/2010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691460-0003 	Name of owner: i.gen hotels GmbH Filing date: 07/04/2010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691460-0004 	Name of owner: i.gen hotels GmbH Filing date: 07/04/2010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691460-0005 	Name of owner: i.gen hotels GmbH Filing date: 07/04/2010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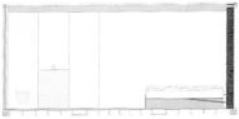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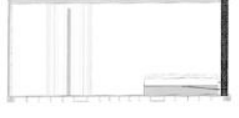
001691460-0006 	Name of owner: i.gen hotels GmbH Filing date: 07/04/2010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691460-0007 	Name of owner: i.gen hotels GmbH Filing date: 07/04/2010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691460-0008 	Name of owner: i.gen hotels GmbH Filing date: 07/04/2010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691460-0009 	Name of owner: i.gen hotels GmbH Filing date: 07/04/2010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Get-up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675554-0001 	Name of owner: DORPAN, S.L. Filing date: 01/03/2010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Hotel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611245-0001 	Name of owner: DEAG Classics AG Filing date: 14/09/2009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Theatre stage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053359-0008 	Name of owner: Vpod Solutions Limited Filing date: 10/12/2008 Locarno class-subclass: 25.03 Verbal element: Indication of the product: Video-conferencing booth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052005-0001 	Name of owner: Tandberg Telecom AS Filing date: 05/12/2008 Locarno class-subclass: 25.03 Verbal element: Indication of the product: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052005-0002 	Name of owner: Tandberg Telecom AS Filing date: 05/12/2008 Locarno class-subclass: 25.03 Verbal element: Indication of the product: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052005-0003 	Name of owner: Tandberg Telecom AS Filing date: 05/12/2008 Locarno class-subclass: 25.03 Verbal element: Indication of the product: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044499-0001 	Name of owner: FASSBIERE, S.L. Filing date: 24/11/2008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Commercial premise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044499-0002 	Name of owner: FASSBIERE, S.L. Filing date: 24/11/2008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Commercial premise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033682-0001 	Name of owner: OPENSUN (SARL) Filing date: 29/10/2008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Veranda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033682-0002 	Name of owner: OPENSUN (SARL) Filing date: 29/10/2008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Veranda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033120-0001 	Name of owner: Best Rest Hotels, S.L. Filing date: 22/10/2008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1033120-0002 	Name of owner: Best Rest Hotels, S.L. Filing date: 22/10/2008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0698246-0001 	Name of owner: Altekamp, Martin Filing date: 03/05/2007 Locarno class-subclass: 25.03 Verbal element: Indication of the product: House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0698246-0002 	Name of owner: Altekamp, Martin Filing date: 03/05/2007 Locarno class-subclass: 25.03 Verbal element: Indication of the product: House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0698246-0003 	Name of owner: Altekamp, Martin Filing date: 03/05/2007 Locarno class-subclass: 25.03 Verbal element: Indication of the product: House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0511696-0001 	Name of owner: Sega Corporation Filing date: 11/04/2006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0461926-0001 	Name of owner: GASTON Y DANIELA, S.A. Filing date: 12/01/2006 Locarno class-subclass: 25.03, 99.00 Indication of the product: Rooms, Get-up Status: Design lapsed
000321625-0001 	Name of owner: IT Service Consulting AG Filing date: 07/04/2005 Locarno class-subclass: 06.06, 11.02, 23.02,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Wall ornaments, Saunas, Furniture, Swimming pools, Layout Status: Design lapsed
000238357-0001 	Name of owner: CITIZENM IP Holding Ltd Filing date: 13/10/2004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Hotel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0225883-0001 	Name of owner: CITIZENM IP Holding Ltd Filing date: 14/09/2004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Hotel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0225883-0002 	Name of owner: CITIZENM IP Holding Ltd Filing date: 14/09/2004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Hotel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0225883-0003 	Name of owner: CITIZENM IP Holding Ltd Filing date: 14/09/2004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Hotel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0225883-0004 	Name of owner: CITIZENM IP Holding Ltd Filing date: 14/09/2004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Hotel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0225883-0005 	Name of owner: CITIZENM IP Holding Ltd Filing date: 14/09/2004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Hotel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0225883-0006 	Name of owner: CITIZENM IP Holding Ltd Filing date: 14/09/2004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Hotel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0225883-0007 	Name of owner: CITIZENM IP Holding Ltd Filing date: 14/09/2004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Hotel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000225883-0008 	Name of owner: CITIZENM IP Holding Ltd Filing date: 14/09/2004 Locarno class-subclass: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Hotel rooms Status: Registered and fully published (A1)

4. 유럽 등록공동체디자인 조사 결과의 시사점

(1) 건물 등 부동산,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이 정식으로 보호된다

건물 등 부동산은 로카르노 분류 제 25 류에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디자인이 정식으로 보호되는 것은 미국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디자인이 보호되므로 그 내부의 일부에 관한 형태로서도 인테리어 디자인이 보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인은 로카르노 분류 제 32 류에서 차림새[실내배치]로 정식으로 제품의 표시로 인정되고 있어, 이 류를 지정하여 디자인등록이 가능하다.

(2) 제품의 표시가 비교적 자유스럽다.

미국에서는 실질상 인테리어 디자인에 해당하는 디자인특허의 명칭이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유럽의 경우 이보다는 덜 자유스럽지만 그래도 로카르노 분류 상의 명칭에 물리적으로 구속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출원인이 로카르노 분류상의 명칭에 물리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것은, 로카르노 분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출원인의 편의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권장되는 사항일 뿐이고, 유로로카르노 분류 내의 제품명을 선택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³⁴⁵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에서는, 유로로카르노에 포함된 제품명들은 각 동맹국 언어로 이미 번역되어 있는 점에서, 공동체디자인 출원에서 제품의 표시는 유로로카르노 분류에서 선택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되고, 이러한 취지에서, 자명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기재한 명칭을 유로로카르노에 맞도록 심사관이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³⁴⁶.

(3) 여러 분류가 부여되기도 한다.

유럽의 실무에서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하나의 분류 내에서만 허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제 32 류(과거 제 99 류)의 경우에는 다른 분류와 함께 출원하여도 1 출원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 99 류(기타)와 제 25.03 류(건물)로 함께 분류된 RCD가 발견된다.

³⁴⁵ Cash Register case; OHIM 항고심판부 심결 R 1421/2006-3 (2007.07.05.)

³⁴⁶ OHIM Examination Guidelines Community Design, section 6.1

000461926-0001	Name of owner: GASTON Y DANIELA, S.A.
	Filing date: 12/01/2006
	Locarno class-subclass: 25.03, 99.00
	Verbal element:
	Indication of the product: Rooms, Get-up
	Status: 등록 및 공고

유럽의 실무상, 하나의 분류 내에서만 허용되는 복수디자인출원에는 류를 달리하여 제품을 표시할 수는 없으나, 하나의 디자인에 대한 출원에서는 다른 분류상의 제품을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다. 아래는 그 예로서, 벽면의 장식, 사우나 시설구조, 등을 제품으로 표시하고 있다.

000321625-0001	Name of owner: IT Service Consulting AG
	Filing date: 07/04/2005
	Locarno class-subclass: 06.06, 11.02, 23.02, 25.03
	Indication of the product: Wall ornaments, Saunas, Furniture, Swimming pools, Layout
	Status: Design lapsed

(4) 동일자 시리즈 출원이 서로 다른 류에 분류되기도 한다

한편, 동일 출원인의 동일자 출원임에도 서로 다른 분류에 분류되기도 한다. 제 99 류는 다른 류와 함께 복수디자인 출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소파 자체와 그 소파를 포함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이 하나의 출원으로 출원될 수 있다.

000731302-0002  Get-up (99.00)	000731302-0003  Couches (06.01)	000731302-0004  Couches (06.01)	000731302-0005  kitchen furniture (06.04,06.05)
000931712-0003  Get-up (99.00)	000931712-0001  Couches (06.01)	000931712-0002  Settees (06.01)	000931712-0006  Get-up(06.01)

(5) 차림새(Get-up)은 제 32 류 이외로 분류되기도 한다.

Get-up 이 로카르노 제 32 류에 해당하여 이에 관한 디자인은 다른 제품의 디자인과 함께 출원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제품의 표시가 “Get-up”으로 되어 있으나 분류가 제 32 류로 되어 있지 아니한 예도 발견된다. 아래에서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포함된 제 1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 32 류로 분류되었고, 나머지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 25.03 류로 분류되었다.

이를 참고로 하면, 유럽 공동체디자인 실무에서, 실내 인테리어에 관한 디자인의 경우 제 25.03 류에 포함되거나, 제 32 류에 포함되거나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³⁴⁷. 인테리어 디자인이 원칙적으로 제 32 류나 제 99 류에서 많이 발견되지만, 그 절반 정도³⁴⁸는 제 25.03 류에서도 발견된다는 점도 이를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001691460-0001  Get-up (32.00)	001691460-0002  Get-up (25.03)	001691460-0003  Get-up (25.03)	001691460-0004  Get-up (25.03)	001691460-0005  Get-up (25.03)
--	--	--	---	---

아래의 등록에서는, 복수디자인에 포함된 다른 디자인들은 Get-up(99.00)이나, 소파(06.01)로 분류되었으나, 소파와 배경을 포함한 하나의 디자인은 물품은 Get-up 으로, 분류는 06.01 로 표시되고 있다.

000931712-0003  Get-up (99.00)	000931712-0001  Couches (06.01)	000931712-0002  Settees (06.01)	000931712-0006  Get-up(06.01)
---	--	---	--

(6) 인테리어 관련 공동체디자인 도면의 실무

㉠ 사진으로 출원

디자인 출원에 포함되는 도면의 형식으로서 거의 예외없이 선도(line drawing)가 대부분인 미국과는 달리, 유럽 RCD 실무상에서 인테리어

³⁴⁷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³⁴⁸ 이번 조사에서 제32류 및 제99류에서는 100건, 제25.03류에서는 50건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발견되었다.

디자인에 관한 도면은 대부분 사진으로 출원되고 있다.

제 32 류나 99 류에서는 3D 이미지처럼 보이는 하나의 등록³⁴⁹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진이나 그래픽 이미지로 출원되었다. 제 25.03 류에 관하여는, 2005 년 이후 출원에서는 단지 4 건만이 선도로 출원되었고, 3 건은 3D 이미지³⁵⁰이며, 나머지는 모두 사진이나 그래픽 이미지로 출원되었다.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약 95%의 출원은 선도가 아닌 사진이나 3D 와 같은 그래픽 이미지로 제출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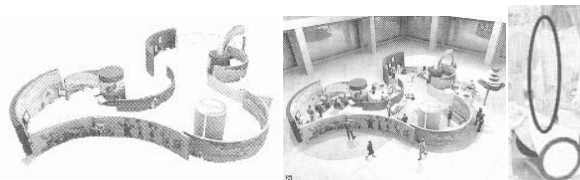
㉞ 흑백 보다는 컬러

유럽의 인테리어 디자인 출원에서 사진으로 제출된 도면은 대부분은 컬러 사진으로 제출되고 있다. 명확히 사진으로 제출된 132 개의 RCD 중 흑백 처리된 사진을 포함하는 출원은 14 개에 불과하고, 이는 약 90%에 달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이 컬러사진을 도면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컬러도면을 제출함으로써 권리가 색채로 한정해석될 것을 고려하여 흑백도면으로 새로운 출원을 한 일련의 등록³⁵¹을 제외하면, 순수히 흑백 사진을 제출하는 예는 매우 극소수이고 예외적이다.

㉟ 절반 정도는 하나의 사진만 제출

또한, 관행적으로 여러 각도에서의 도시를 도면으로 포함하는 우리와 미국의 실무와는 달리,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유럽공동체디자인 실무에서는 단지 하나의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³⁴⁹ 000935309-0001(Get-up)



³⁵⁰ 000698246-0001~0003 (Houses)



³⁵¹ 001251342-0001~0012 (Get-up)
(Illycaffè S.p.A 출원)



등

제 32 류와 제 99 류에서 Get-up 으로 출원된 디자인에서는, 단지 하나의 도면만을 제출한 것이 56%로서 절반이 넘고, 거의 비슷한 각도에서 단지 사진의 규격만을 달리하여 2 개 도면으로 제출한 경우까지 합하면 약 70%의 출원은 실질상 하나의 각도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도시하여 제출하고 있다.

한편, 제 25.03 류로서 출원된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에는, 하나의 도면만을 포함한 경우는 30%에 못미쳐 많은 경우 복수 도면을 제출하고 있으며, 3 방향 이상의 여러 각도에서 디자인을 도시한 경우도 60%로 과반수에 달한다.

이를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은 하나의 사진이건 복수의 사진이건, 그 인테리어에 대한 전체적인 외관(overall appearance)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면 족하고, 제출된 도면에서의 나타나는 개성(individual character)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단지, 건물을 주제로 한 제 25.03 류에 관하여는 디자인의 대상의 입체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다양한 도면을 제출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7) 색채를 달리 하는 실시행위에 대한 보호방안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도면의 도시에 의하여 해석되고, 컬러로 도시된 디자인이라면, 그 도시된 색채로 보호범위가 한정해석되게 된다. 이는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색채를 사용하여 디자인을 모방할 것에 대비하여, 컬러도면의 등록과 별도로 색채를 제거한 도면으로 별개의 출원³⁵²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아래의 Illycaffè S.p.A 사의 등록³⁵³에서 발견된다.



001251342-0009 및 0010

³⁵² 색채를 입힌 것이 무채색에 비하여 유사한 것이라면 우리 법제상 유사디자인이나 개정안에 따른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법상에서는 여러 실시예(embodiments 또는 modified forms)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유럽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별도로 출원의 형식을 구분하는 실무가 없어 별개의 출원으로만 보호된다. 한편, 유럽 공동체디자인 실무에서는, 같은 출원인의 디자인이라도 이들 사이에 개성이 없는 정도로 유사한 것이면 무효로 되게 된다.

³⁵³ 001251342-0001~0012 (Get-up); Illycaffè S.p.A사는 6가지의 카페 디자인에 대하여 컬러사진과 흑백사진으로 각각 출원하였다

(8) 같은 실내라도 별개의 출원을 할 수 있다

같은 실내라도 별개의 출원으로 등록한 예도 발견된다. 아래의 예에서, 거실의 탁자를 포함하는 마지막 사진들을 보면 이들은 모두 하나의 호텔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³⁵⁴을 알 수 있다.

001794454-0002 Hotel rooms (25.03)	
001794454-0004 Hotel rooms (25.03)	

이는, 디자인이 적용되는 대상물이 하나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물에서 어떤 부분을 보호받고자 하는가에 따라 별개의 출원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³⁵⁴ 거실의 일부가 동일하거나 특정 방향에서 보이는 것이 동일하고 나머지만 다른 별개의 방이라도 마찬가지다.

제4절 헤이그 데이터베이스 조사

1. 검색 데이터베이스와 검색방법

디자인국제등록의 조사에는 WIPO 의 데이터베이스(헤이그 데이터베이스)를 Hague Search 사이트 ³⁵⁵ 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조사의 기준일자는 2011.08.15 이다. 먼저, 미국에서의 검색과 마찬가지로, 물품의 표시에 “interior”나 “room”를 포함하는 것을 검색하여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로카르노 분류 제 32 류와 제 25-03 류 전체를 검색하였다.

[표 47] 헤이그 시스템 기초검색 결과

검색조건	검색 수
물품의 표시에 “interior” 포함 등록 수	66
물품의 표시에 “room” 포함 등록 수	31
로카르노 분류 제32류의 등록 수	224
로카르노 분류 제25-03류의 등록 수	173

이들 검색 결과는, 제품의 표시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디자인을 인테리어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고, 결과적으로 발견되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수는 많지 않았다.

2. 검색 데이터베이스와 검색결과의 시사점

다만, 아래의 검색결과로부터, 비록 로카르노 분류 제 32-00 류에 “차림새[실내배치]”라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디자인의 국제등록 상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은 대부분 건물 등에 관한 분류인 제 25-03 류로 분류되고 있고, 국제등록 상으로도 이러한 분류에 건물 등의 인테리어를 등록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국제등록 상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조사한 결과를 붙였다.

³⁵⁵ <http://www.wipo.int/ipdl/en/hague/search-struct.jsp>

3. 물품의 표시에 “interior”를 포함한 인테리어 디자인 국제등록

(1) 설명

물품의 표시에 “interior”를 포함하는 디자인 국제등록은 총 66 건으로 검색된다. 드물게 인테리어 장식용 전등이나 와인박스 내부와 같은 물품도 있으나, 대부분 자동차의 인테리어에 관한 것이고, 이 중, 아래의 몇가지만 인테리어에 관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물품의 표시에 “interior”를 포함한 인테리어 디자인 국제등록 예

No. Title

(DM/66898) Design to be used in an interior and exterior fittings store (Cl.20-03)



(DM/66891) Design to be used in a interior and exterior fittings store for the children's area (Cl.06-12)



(DM/66658) Interior furniture for a bar (Cl.06-05)



(DM/52004) Restaurant façade, restaurant, interior fittings for restaurants (Cl.2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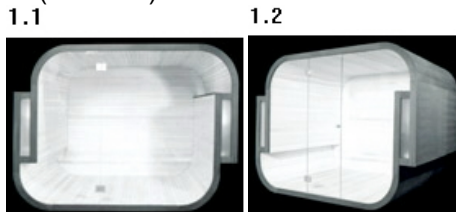
4. 물품의 표시에 “room”를 포함한 디자인국제등록

(1)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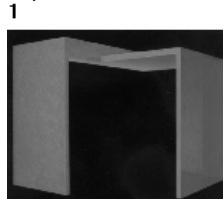
물품의 표시에 “room”을 포함하는 디자인 국제등록은 총 31 건으로 검색된다. 대부분 실내의 가구 등 단품에 대한 등록이 많았다. 이러한 단품에 관한 등록을 제외하고 아래에는 인테리어에 관련된 등록을 조사하여 나열하였다.

(2) 물품의 표시에 “room”를 포함한 인테리어 디자인 국제등록 예

No. Title
(DM/70061) 1. Sauna room (Cl.23-02)



(DM/66267) 1. Sauna room (Cl.23-02)



5. 로카르노 분류 제32-00류의 인테리어 디자인 국제등록

로카르노 분류 제 32-00 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24 건의 등록디자인이 검색되었으나, 이들은 패턴(pattern), 장식(Ornamentation), 그래픽 디자인(Graphic designs) 등 2차원적인 디자인이 전부였고, 건물의 인테리어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6. 로카르노 분류 제25-03류의 건물/인테리어 디자인 국제등록

(1) 설명

로카르노 분류 제 25-03 류는 건물 기타에 관한 것이다. 이 분류에 등록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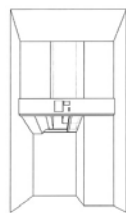
수는 총 173 건이 검색된다. 이 중에서 아래와 같이 인테리어 디자인이 발견된다.

(2) 로카르노 분류 제 25-03 류의 인테리어 디자인 국제등록 예

No. Title
(DM/68471) Shop furnis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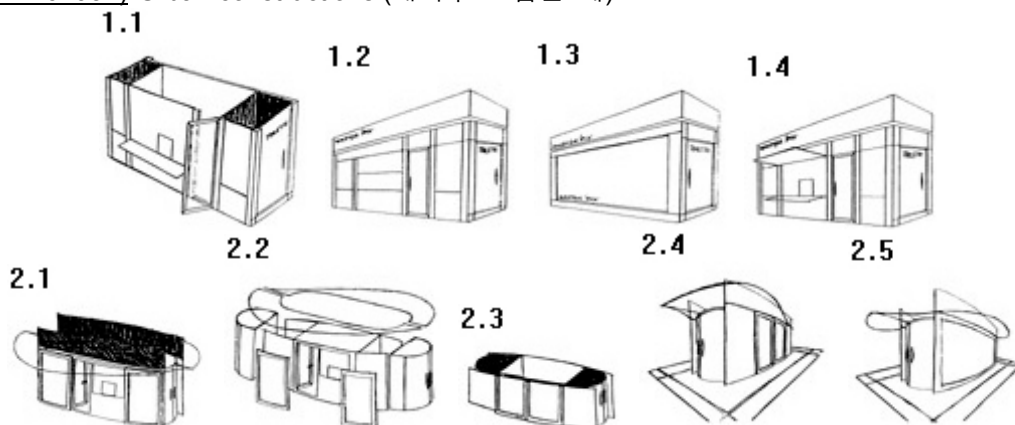
(DM/67637) 1. Goods/parcel delivery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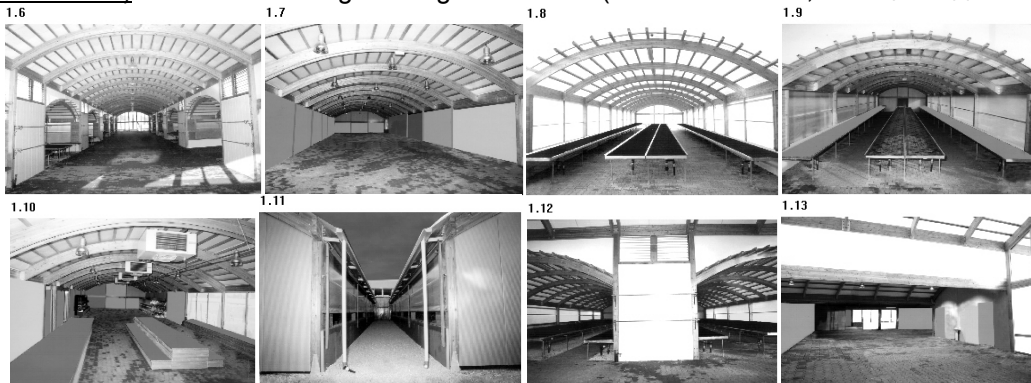
(DM/67636) 1. Goods/parcel delivery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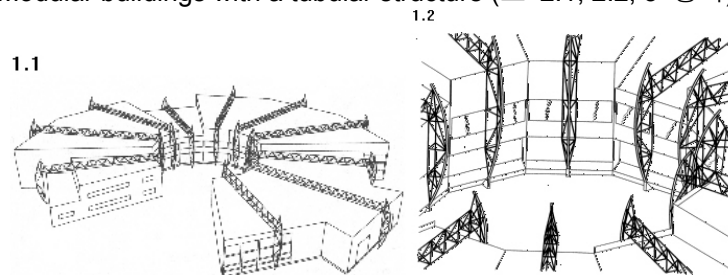
(DM/61957) Urban constructions (내외부 조합된 예)



(DM/61561) Architectural design for a garden centre (도 1.1~1.5 생략; 내외부 조합된 예)



(DM/53931) Modular buildings with a tubular structure (도 2.1, 2.2, 3 생략)



(DM/52004) Restaurant façade, restaurant, interior fittings for restaurants (도 1~2 생략)



(DM/50957) Bedroom furniture



제5장 건축/인테리어 디자인과 저작권법의 조화

제5장 건축/인테리어 디자인과 저작권법의 조화

제1절 건축/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법상의 취급

1. 우리 저작권법상의 규정과 해석

(1) 저작권

㉠ 법률의 규정

저작권이란, 저작자³⁵⁶가 자기 저작물³⁵⁷을 통제하고 이에 의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독점배타권을 말한다.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는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아래와 같은 저작물을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예시하고 있다³⁵⁸.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악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건축저작물과 저작권³⁵⁹

1957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건축저작물을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본법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건축...도형,모형...와 기타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³⁵⁶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2호).

³⁵⁷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호).

³⁵⁸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³⁵⁹ 건축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p17~p18(2009.12; 한국저작권위원회);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³⁶⁰ 라고만 규정하고,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건조,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할 권리가 있다”라는 이른바, “실시권”도 건축저작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저작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 후 1986년에 전면개정된 저작권법에서 건축저작물을 특별한 보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된다.

현행법상 건축저작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 분명하며, 보호되는 건축저작물로는,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이 포함된다. 즉, 건축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모형과 설계도면도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³⁶¹, 독일, 일본 등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건축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됨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2) 저작인격권

㉠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서 본질적으로 저작자에게만 귀속되는 권리인데, 저작권법에서는 공표권³⁶², 성명표시권³⁶³ 및 동일성유지권³⁶⁴으로 구분하고 있다.

㉢ 공표권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를 말한다³⁶⁵. 다만,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³⁶⁰ 1957년 제정 저작권법 제2조

³⁶¹ 건축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p12~p13(2009.12; 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은 과거 건축설계도면과 그림 등만을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으로 보고 건축물 자체는 실용적인 물품으로 분류되어 저작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1988년 베른 협약에 가입한 후 미국은 1990년에 건축저작권법(The Architectural Works Protection Act)을 제정하여 건축물을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된다. 미국 건축저작권법은 “건축저작물은 유형의 매체를 통해 표현된 건축물의 디자인을 말한다. 이에는 전반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공간이나 공간요소의 배열과 구성도 포함하나, 개개의 표준적인 특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미국 저작권법 제101조; 17 U.S.C. 101)

³⁶² 저작권법 제11조(공표권)

³⁶³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

³⁶⁴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³⁶⁵ 저작권법 제11조제1항

것으로 추정한다³⁶⁶. 또한,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³⁶⁷.

따라서, 건축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스스로 저작물을 공표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³⁶⁸나 이용허락한 경우에는 양수인 등이 그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표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㉞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한다³⁶⁹.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³⁷⁰.

따라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건축물³⁷¹의 경우에 그 설계자는 그 건축물, 복제물, 또는 공표매체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㉟ 동일성유지권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³⁷². 다만,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³⁷³에 대하여 저작자는 이의할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건축저작물의 경우 신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설계자)의 설계대로 건축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증축/개축 및 그 밖의 변형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이 때에는 원 건축물과 내용/형식 면에서

³⁶⁶ 저작권법 제11조제2항

³⁶⁷ 저작권법 제11조제3항

³⁶⁸ 예를 들어, 의뢰에 의하여 건축물을 설계하고 그 설계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발주인에 양도한 경우

³⁶⁹ 저작권법 제12조제1항

³⁷⁰ 저작권법 제12조제2항 본문

³⁷¹ 모든 건축물이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며, “저작물”로 인정되는 건축물이라야 할 것이다.

³⁷² 저작권법 제13조제1항

³⁷³ 저작권법 제13조제2항제2호

동일성이 상실되는 범위라도 원칙적으로 증축/개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을 재산적 가치로 활용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재산권은 애초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나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고, 저작자가 사망하여 저작인격권이 소멸하여도 저작재산권은 보호가 유지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복제권³⁷⁴,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건축저작물에 관련된 것은 복제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라 할 수 있고,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은 건축저작물과는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복제권

복제권이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말하는 것³⁷⁵으로서, 여기서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³⁷⁶. 즉, 건축저작물에서 복제란, 건축물 자체를 복제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시공하는 것을 포함³⁷⁷하는 것이다.

㉢ 전시권

전시권이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³⁷⁸를 말하는 것이다. 전시에 관하여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³⁷⁹,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경우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는

³⁷⁴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³⁷⁵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³⁷⁶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22호

³⁷⁷ 같은 설계도면이라고 하여도, 구체적인 마감 등 일부 다른 시공이 가능할 것이다.

³⁷⁸ 저작권법 제19조(전시권)

³⁷⁹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것으로 하고 있다³⁸⁰. 다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등³⁸¹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즉, 건축저작물은 그 속성상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것과 같이 노출되어 있을 것이나, 이를 건축물로 복제하기 위하여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게 된다.

㉔ 2 차적저작물 작성권

2 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³⁸²로서, 이러한 2 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³⁸³. 건축저작물에서 2 차적저작물이란, 건축설계도의 변형 등을 통하여, 원저작자의 건축물을 결과적으로 변형하게 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2 차적저작물의 작성권도 저작재산권의 일종으로 건축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4)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저작자는 반드시 개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되는 것³⁸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 일반적인 지적재산권법에서는, 발명, 고안, 디자인 등 창작에 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 지적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창작자에게 원시적으로 발생³⁸⁵ 하고, 법인 등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수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건축설계가 특정한 건축설계사무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공표되거나, 건설회사 내의 설계부서에서 이루어지고 건설회사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 이러한 건축저작물은 건축설계사무소나 건설회사의 저작물이 되게 된다.

³⁸⁰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본문

³⁸¹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예외규정

³⁸²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³⁸³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³⁸⁴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³⁸⁵ 법인등이 특허의 발명자나 디자인의 창작자가 될 수는 없다.

2. 저작권 등록 사례 분석

(1) 건축저작물 등록/분쟁 현황

㉠ 건축저작물 등록 현황

건축관련 저작권 등록 현황을 조사하였다. 2009 년 기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건축저작물은 2,131 건으로 추산된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제외하면, 등록된 저작물은 대부분 미술저작물(33,273 건), 사진저작물(15,886 건), 어문저작물(13,737)로서, 이는 프로그램 저작물을 제외한 전체(88,348 건)의 71%에 이른다. 연극저작물이 유난히 적은 숫자로 등록되고 있으며, 나머지 음악저작물(4,376), 건축저작물(2,131), 영상저작물(5,432), 도형저작물(2,484), 편집저작물(7,321), 이차적저작물(3,618) 등은 대략 비슷한 정도로 등록되고 있다.

[표 48] 연도별 저작물 종류별 등록건수 (2009년12월31일 현재)³⁸⁶

연도		'87~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종류	어문 저작물	804	56	127	64	84	64	218	495	625	822	991	1,521	1,792	1,890	1,875	2,309	13,737
	음악 저작물	36	15	35	1	21	112	290	101	214	248	238	313	362	659	744	987	4,376
	연극 저작물							1	6	2	11	5	4	14	3	16	27	89
	미술 저작물	667	89	66	13	50	159	712	1,774	2,842	2,919	2,435	4,816	3,779	3,599	4,278	5,075	33,273
	건축 저작물				4	1	78	453	262	184	161	285	145	132	210	99	117	2,131
	사진 저작물	5	1			1	4	18	43	93	339	736	1,048	3,877	6,350	2,993	378	15,886
	영상 저작물	425	30	29	186	41	20	109	473	287	432	800	732	723	660	247	238	5,432
	도형 저작물	25		1	1	6	5	24	49	91	88	19	265	440	564	506	400	2,484
	편집 저작물	39	3	3	2	2	16	106	273	427	658	706	696	796	1,101	1,414	1,079	7,321
	이차적 저작물							7	99	193	772	846	795	180	252	197	277	3,618
	프로그램 저작물	22,382	7,060	9,736	7,700	7,582	7,836	13,854	11,018	10,062	9,939	10,299	10,528	10,686	10,623	11,190	11,855	172,350
	기타 저작물									1								1

³⁸⁶ 2009년 저작권연감 (한국 저작권위원회)

㉞ 건축저작권 분쟁조정 현황

저작권 관련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앞서 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다. 아래에, 분야별 조정건수를 조사하였다. 등록된 저작권이 많은 어문,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이 분쟁조정이 많았다.

[표 49] 연도별 분야별 조정 건수(2009년7월22일 이전)

연도 분야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어문	6	5	6	13	19	18	30	12	10	6	13	8	7	19	32	29	14	31	24	13	9	4	328
음악	2	0	0	1	1	1	2	13	6	5	9	0	1	3	7	29	3	1	30	4	15	1	134
연극	0	1	0	1	0	0	0	0	0	0	0	0	1	1	1	0	0	0	0	0	0	-	5
미술	0	1	0	4	2	6	6	7	1	11	20	14	9	26	23	4	33	12	5	8	5	5	202
건축	0	0	0	0	0	0	0	0	0	0	0	0	1	2	1	1	1	1	0	0	0	-	7
사진	0	1	7	1	4	2	6	1	1	2	4	3	1	10	20	41	13	13	16	8	10	4	168
영상	0	0	0	1	1	0	1	0	0	0	1	1	3	4	16	1	1	0	1	0	3	-	34
도형	0	0	0	0	0	0	0	0	0	0	1	1	1	1	1	0	0	0	0	2	0	-	7
편집	0	0	0	0	0	0	0	1	0	3	3	2	0	1	8	6	6	6	6	4	4	1	51
2차적 저작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1	3
저작 인접물	2	0	2	4	2	0	1	1	0	1	0	3	3	0	0	0	2	1	6	5	1	-	34
데이터 베이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2	0	2	-	5
계	10	8	15	25	29	27	46	35	18	28	51	32	27	67	109	111	73	67	91	44	49	16	978

등록건수 대비 분쟁비율을 조사한 바로는, 연극저작물이 등록건수는 작으나 분쟁율을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이 몇%대의 분쟁율을 보인 반면, 미술, 건축, 영상, 도형 등 저작물은 분쟁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0] 저작물 종류별 분쟁율(2009.12.31)

저작물	등록건수	조정건수	분쟁율
어문	13,737	334	2.43%
음악	4,376	136	3.11%
연극	89	6	6.74%
미술	33,273	204	0.61%
건축	2,131	14	0.66%
사진	15,886	175	1.10%
영상	5,432	34	0.63%
도형	2,484	7	0.28%
편집	7,321	52	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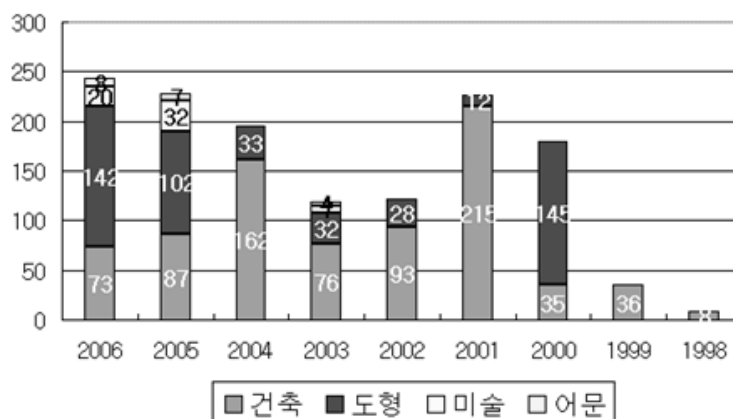
(2) 건축/인테리어 관련 저작물 통계 분석

㉠ 건축 관련 저작물의 등록 형태

건축이나 인테리어 관련 저작권은 반드시 건축저작물로 등록되고 있지는 않다. 이들은 미술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아래는 사설통계³⁸⁷에 따른 건축/인테리어 관련 저작물 등록 경향을 옮겨온 것이다.

[그림 48] 사설 통계에 따른 건축/인테리어 관련 저작물 등록경향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건축	73	87	162	76	93	215	35	36	8
도형	142	102	33	32	28	12	145		
미술	20	32		7					
어문	8	7		4					
총합	243	228	195	119	121	227	180	36	8



387

http://kornc.mireene.com/bbs/view.php?id=15&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desc&no=27

㉞ 건축저작물의 대상별 분류

건축저작물의 보유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³⁸⁸의 저작권등록시스템³⁸⁹을 검색하였다. 분류를 건축저작물로 하고, “건”을 포함하는 검색결과는 2011.08.13. 기준 1,711 건이 검색³⁹⁰되고, 이 중 2000.01.01 이후 등록된 582 건을 전수조사하였다.

검색된 582 개의 건축저작권 등록 중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 집단주거형태에 관한 디자인이 515 건으로서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배드민턴장, 신한옥, 펜션, 복지관 등 기타 건축물들이 67 건으로서 전체의 11%를 차지하였다.

㉟ 건축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분석

검색된 582 건의 건축저작물 등록권리자를 일일이 확인하여, 건설회사들은 “시공/시행사”에 포함시키고, 건설회사가 아니나 자체적으로 설계/디자인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회사/지방자치단체들은 “발주회사”로 분류하였다. 개인명의인 경우 본인 설계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개인”으로 분류하였고, 설계회사나 디자인회사가 분명한 것은 “설계/디자인 회사”로 분류하였다. 설계/디자인 회사의 단독소유가 아닌 다른 주체와 공동으로 소유된 저작물은 “공동소유”³⁹¹로 분류하였다.

조사결과, 등록된 건축저작권 582 건 중 약 82%에 해당하는 479 건이 시공/시행사나 발주회사에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³⁸⁸ www.copyrigh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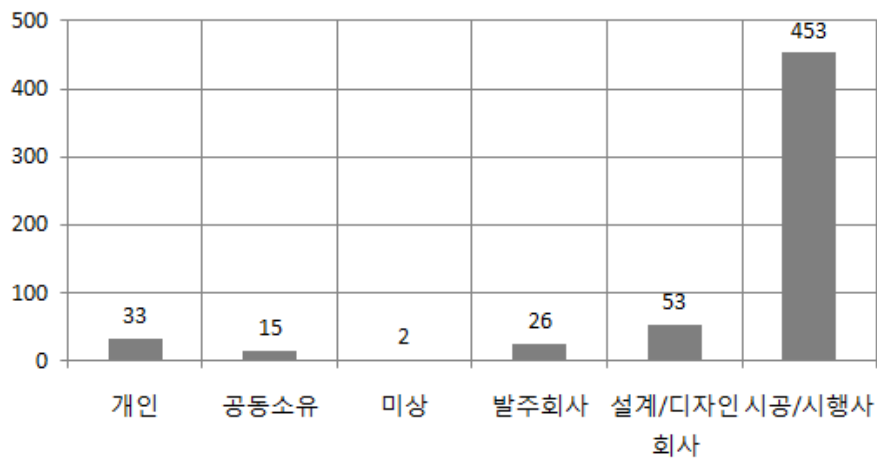
³⁸⁹ www.cros.or.kr

³⁹⁰ 2009년 저작권 연감 상의 약80%에 해당하는 숫자가 검색되었으므로, 통계의 의미를 잃지 않고 대표성이 있는 검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³⁹¹ 개인들의 공동소유인 저작물은 “개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49] 건축저작물의 권리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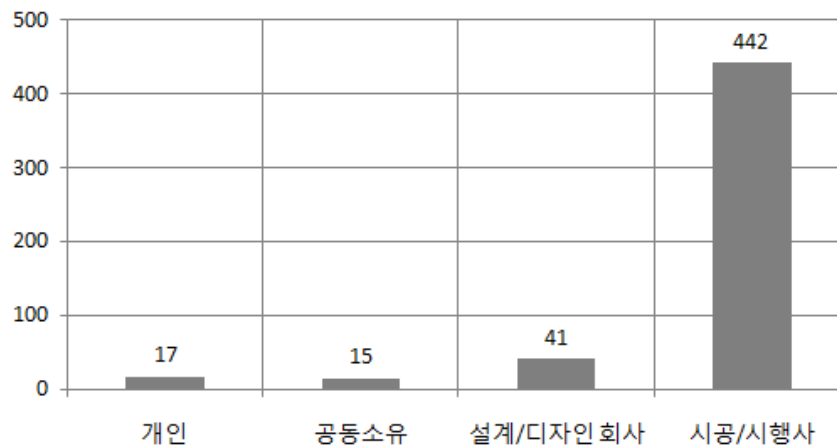
건축저작권 소유형태



이러한 경향은, 등록된 건축저작물이 대부분 아파트 등의 공동주거물에 관한 것임에 일차적으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공동주거물 515 건 중 시공/시행사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은 442 건으로서 86%로서 전체의 82%에 비하여 차이가 크지 않고, 기타 건축물 67 건 중 55%는 여전히 발주회사나 시공/시행사에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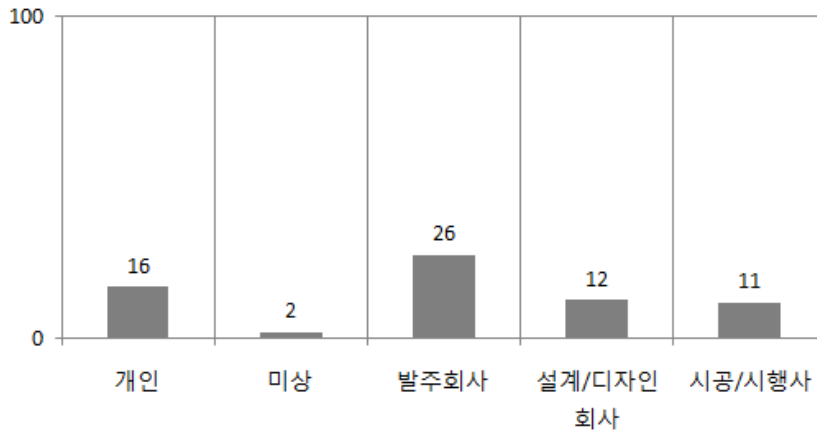
[그림 50] 공동주거물의 건축저작권 소유

건축저작권 소유형태



[그림 51] 기타 건축물의 건축저작권 소유

건축저작권 소유형태



즉, 건축관련 설계의 경우, (i) 건설회사 등의 내부에 설계부서가 있는 경우 이에서의 설계는 건설회사 자체적인 업무상의 저작물로 등록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³⁹² 되고, (ii) 공동주거물 이외의 일반 건축물에서도 대부분 발주회사 등 설계의뢰인이 저작권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⁹³.

④ 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 등록 현황 조사

제호나 다른 서지사항에 “인테리어”라는 단어를 포함한 저작물은 2011.08.13. 현재 총 226 건이 검색³⁹⁴ 되었다. 이들은 건축저작물로 등록되는 경우는 미미하고(5 건, 2%), 대부분 미술저작물로 등록되고 있다(138 건,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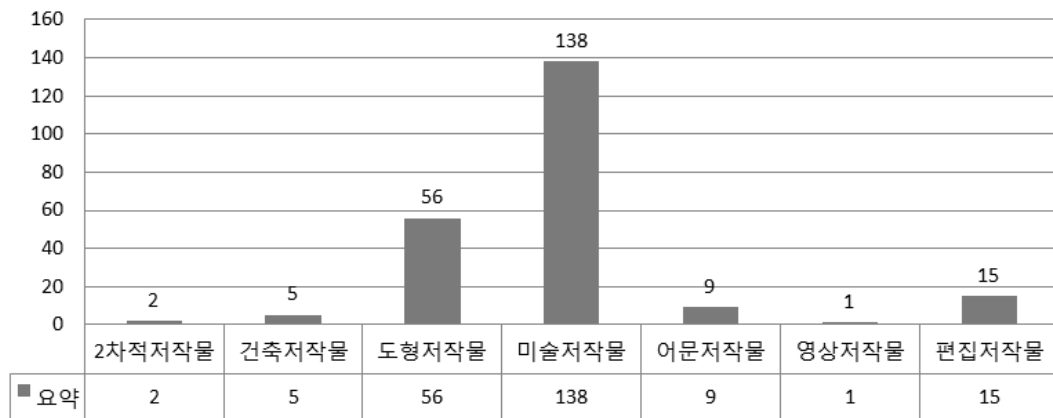
³⁹²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에서는 발명자/창작자에게 귀속된 권리를 고용인인 회사가 양수받기 위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하고 있으나, 저작권법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창작의 노고가 충실히 보상되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³⁹³ 구체적인 조사결과에서, 단지 저작권리자의 이름만 등록되고 저작자의 이름은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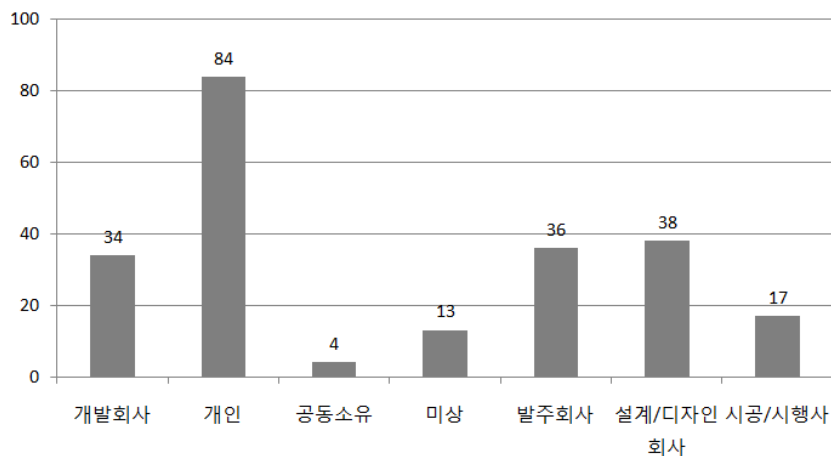
³⁹⁴ 아웃렛 외부 인테리어, 아웃렛 내부 인테리어, 청주웨딩홀 리모델링 시안, 뽀띠 프랑스, 숙박업소 인테리어, 등 이 연구의 본질적인 대상인 인테리어 디자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52] 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 등록형태

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 등록형태



㉠ 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 소유형태

[그림 53] 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 소유 형태
인테리어 저작권 소유형태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하여는, 그 등록권리자는 대부분 개인소유로 집계되고, 시공/시행사나 발주회사 못지않게 설계/디자인 회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축/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에서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건축/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 관련 판단 사례

(1) 서론

아래에서는, 건축저작물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련된 저작물에 관하여, 법원의 판례와 기타 판단사례를 살펴본다.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서 명백히 보호되기 시작한 것은 1986 년부터이나, 건축저작물이 등록되는 빈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낮은 편에 해당하는 만큼, 건축저작물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는 아래에서 조사한 판례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드물다.

(2) 대법원 2000.6.13.자 99 마 7466 결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³⁹⁵

㉠ 사실관계³⁹⁶

신청인은 1997. 10. 24. 피신청인과 사이에 피신청인이 ... 지상에 건축하는 ...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용역범위는 ... 등으로 하고, 용역 기간은 ...로, 보수는 ...로 하되 신청인이 작성한 모든 설계도와 참고서류에 대한 소유권 및 모든 권리는 피신청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수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금 ...원은 ...시에, 1 차 중도금 ...은 이를 2 분하여 ...시와 ...시에, ... 2 차 중도금은 ...시에 각 지급하고, 최종 잔금 ...은 준공검사 완료 후에 신축한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그 후 신축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연면적이 ...으로 줄어들자 설계용역비를 ...으로, 1 차 중도금을 ...으로 감액하고, 2 차 중도금은 ...으로 하기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교부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따라서 현재 지하층의 공사를 마치고,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8. 6. 3.까지 설계용역에 대한 보수로 ...을 지급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신청인이 설계한 도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설계용역의 보수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은 1999. 1. 28.자

³⁹⁵ 건축설계계약 해제사건

³⁹⁶ 대법원 판례의 판결 이유에서 발췌 정리함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다음날 그 의사표시가 신청인에게 도달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9. 2. 10.경 피신청인과의 건축설계계약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설계용역에 관한 보수의 정산을 요구하였다.

㉞ 신청인의 주장요지

[1] 계약이 해제되어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은 신청인에게 귀속되고 피신청인에게는 이에 관한 권리가 없으므로, 제공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을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2] 일신전속권인 저작인격권중 공표권에 의하면,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가 저작자인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이 공표권에 의하여도, 설계도서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시공을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㉟ 결정요지

[1]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사이에 건축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건축주에게 허여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의연 건축주에게 유보된다.

[2] 저작자가 일단 저작물의 공표에 동의하였거나 저작자가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하여 저작권법 제 11 조 제 2 항에 의하여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비록 그 저작물이 완전히 공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는 없다.

㊱ 판례의 시사점 - 이용권의 존재

이용권의 존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건축주는 납품받은 설계도서에 따라, 즉 이를 이용하여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이용권이 1 회에 한정되는지 2 회 이상 다른 곳에 건축을 할 수 있는지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경우 같은 설계도서에 따라서 다른 곳에 건축을 하는 것이 건축설계도서의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건축저작물 자체의 복제라고도 말하기 어렵다³⁹⁷. 이 판례에서는 우리 법제상 건축저작물에 있어서의 이용권의 존재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다만, (i) 건축설계계약이 가분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 (ii)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부분이 지급되었을 것, (iii)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용권을 인정하려면, 건축가(저작자)의 보수청구권을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건축주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건축가(신청인)이 달리 설계용역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도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까지 건축주를 보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견해가 있다³⁹⁸.

㉔ 판례의 시사점 - 공표권

일단 추정된 공표 동의는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요지이다. 그렇다면 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건축가가 시공과 감리에 관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이 되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설계도서의 수정보완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독단적인 변경을 지켜보아야만 하게 되므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에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³⁹⁷ 건축저작물과 저작권; 저스티스 저스티스 33,4(2000.12) pp.258-275

³⁹⁸ 건축저작물과 저작권; 저스티스 저스티스 33,4(2000.12) pp.258-275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7.12 선고 2006 가합 14405 판결(저작권침해금지)³⁹⁹

㉠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압구정점을 본점으로 하여 2003 년 3 월경부터 회전초밥식당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2004 년 12 월 피고와 가맹점 계약을 하였다. 원고는 소외 인테리어 업자에게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계에 따라 시공하던 중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인테리어 업자는 공사를 마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설계도와 공가의 결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공동 피고들은 피고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프랜차이즈 본점을 운영하고 있다⁴⁰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점포의 설계도와 실내외 디자인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그 창작자인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모든 권리를 이전받았으므로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인테리어를 저작물을 이용한 타 가맹점들은 이를 철거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 및 저작권 침해 가맹점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소송을 제기 하였다.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i) 이 사건 각 설계도와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그 창작자에게 그 저작권이 있으며, (ii) 저작자가 저작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이전하였으므로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고, (iii) 피고회사는 저작자로부터 설계도를 교부받고 피고들은 원고 점포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과 동일/유사하게 피고들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을 구성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i)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설계도와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의 독창성에 관한 사항들은 피고 회사 본점의 실내외 디자인을

³⁹⁹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사건

⁴⁰⁰ <http://changup.mk.co.kr/special/viewspInfo.php?uid=583> 에 따르면, 압구정 본점의 인테리어에 만족하지 못하여 원고가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고, 피고 회사는 새로운 가맹점들에 대하여 원고 점포의 인테리어 디자인과 동일/유사하게 실내외 디자인을 구성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모방하거나, 기존에 널리 알려진 식당의 실내외 디자인을 모방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ii) 설령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설계도 또는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에 의거하여 피고들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았고, ② 또한 피고들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은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각 설계도는 점포의 실내외 장식을 위해 필요한 형상·치수 등의 사항을 일정한 규약에 따라 도면에 표시한 것이고,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은 점포의 실내외 장식에 관한 것으로서 상호의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간판의 구성, 회전초밥식당으로서의 이미지 부각 및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구현하기 위하여, 간판, 창외 장식, 내벽 부분의 벽지, 창내 부분의 블라인드 부분 등의 형태, 색채, 문양 등을 취사선택하고, 취사선택된 각 부분을 적절히 조합, 배열하여 만들어진 디자인을 건축물인 원고 점포의 실내외에 시공한 것으로서 건축물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고, 그 디자인이 이용된 건축물인 원고 점포와 구분되어 독자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설계도는 도형저작물에 해당하고,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설계도와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저작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능적 요소 이외의 요소를 갖추고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원고는 이 사건 각 설계도 및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은 실내건축에 관한 것으로서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설계도와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은 건축물의 실내외 장식에 관한다. 그 디자인이 이용된 건축물인 원고 점포와 구분되어 인식되는 것으로서, 건축물 내지 건축을 위한 설계도서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각 설계도와 원고 점포의 디자인은 저작권법 제 4 조 제 1 항 제 5 호에서 규정한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다.

[2] ...를 종합하면, 앞에서 살핀 이 사건 각 설계도와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 중 기능적 요소 이외의 부분으로 인정한 점들 중, ㉠ 간판에서의 상호의 도안, ㉡ 간판의 전체적인 색채가 녹색인 점, ㉢ 간판을 세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한 점, ㉣ 내벽 부분의 중앙부분을 벽돌무늬벽지로, 좌우부분은

목재무늬벽지로 구성된 점, ㉔ 벽돌무늬부분의 문양, ㉕ 벽돌무늬부분과 목재무늬부분의 배치, ㉖ 목재무늬부분의 블라인드, ㉗ 기둥부를 목재무늬로 구성된 점 등은 ○○○이 이 사건 각 설계도를 작성하고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을 구성하면서 참조한 피고 회사 본점의 실내외 디자인에서 사용된 표현방식 및 그 조합, 배열에 있어 동일 혹은 유사하거나, 일부 변형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점들 또한 국내 상가의 실내외 디자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방식 및 그 조합 및 배열에 있어 동일, 유사하거나, 일부 변형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설계도 및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의 그 구성부분 또는 그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설계도 및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먼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설계도에 의거하여 피고들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을 구성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각 설계도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은 저작물에 나타난 창작성 있는 표현이고 표현에 이르지 아니한 아이디어는 그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설계도에 따라 물품을 만들거나 시공하는 것은 그 설계도에 나타난 아이디어를 이용한 것일 뿐 그 표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설계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서 설계도에 따라 물품을 만들거나 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경우에 저작권법 제 2 조 제 1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을 위한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여 그 복제권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것인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설계도는 건축설계도라 볼 수 없으므로, 가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설계도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고들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을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이 이 사건 각 설계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설계도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고들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을 구성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각 설계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침해물폐기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㉘ 판례의 시사점 - 인테리어 디자인은 건축저작물이 아니다.

비록 지방법원판례이기는 하나,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하여 판단한 유일한 판례에 해당한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실내외 디자인(즉, 인테리어 디자인)은 건축물의 실내외 장식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건축물과 구분되어 인식 되어야

하고, 건축물 내지 건축을 위한 설계도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건축저작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㉔ 판례의 시사점 - 인테리어 디자인은 도형저작물/응용미술저작물이다.

그러나, 이 판례로서 인테리어 디자인이 저작권으로서 전혀 보호되지 못한다고 선언된 것은 아니다. 건축저작물이 아니라는 것이지 여하한 저작물로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⁴⁰¹. 이 판례에서 법원은 인테리어 디자인의 설계도에 따라 건축물인 원고 점포의 실내외에 시공한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은 건축물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고, 그 디자인이 이용된 건축물과 구분되어 독자성이 있어 이 사건 각 설계도는 도형저작물에 해당하고,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㉕ 판례의 시사점 - 인테리어 디자인은 저작권으로 보호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판례는, 판결문에서, 기능적 요소 이외의 부분들을 ① 외부 간판 및 창외 장식, ② 내벽 장식, ③ 창내 장식으로 구분하여 세분하고, 이들 중 구체적인 몇가지 사항들에 관하여는 본점의 것과 동일/유사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것과 동일/유사/변형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창작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 창작성 부정의 결론에 대하여는 논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가맹점주는 본점의 인테리어에 만족하지 못하였던 점, 별도의 인테리어 업자를 통하여 자신의 가맹점의 인테리어를 하였던 점, 그리고 가맹본부는 그 가맹점의 인테리어를 따라서 다른 가맹점의 인테리어를 하도록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가맹점 인테리어는 최소한 본점의 인테리어와는 “구별”되고, 현실상 모방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정황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가맹점 인테리어에 대하여 저작권으로서의 보호에 이르기 위한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참작하면, 인테리어 디자인이 저작권으로서 보호되기 위하여는 매우 높은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㉖ 판례의 시사점 - 도형저작물/응용미술저작물 저작권 행사의 곤란성

⁴⁰¹ 판례에서 두번째 논점으로서, “기능적 요소 이외의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이러한 취지로 파악된다.

설령 인테리어 디자인이 도형저작물이나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실상 행사하는 것에는 곤란성이 따를 것이 예상된다. 이 판례에서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복제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저작물에 대하여 부여되는 예외적인 것이라 판단하면서, 건축설계도 이외의 설계도에 따라 물품을 만들거나 시공하는 것은 그 설계도에 나타난 아이디어를 이용한 것일 뿐 그 표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라 하면서, 설계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서 설계도에 따라 물품을 만들거나 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 하였다.

즉, 인테리어 디자인의 시안이나 설계안이 비록 도형저작물이나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 시안이나 설계안에 따라서 인테리어 시공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고, 인테리어 디자인의 설계도는 단지 그 설계도 자체의 복제 따위가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뿐이게 된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29 선고 2007 가합 77724
판결(저작권침해)⁴⁰²**

㉠ 사실관계

원고는 다수의 작품을 제작한 조각가이고, 피고⁴⁰³는 원고가 작성한 등대도안을 기초로 등대⁴⁰⁴의 건축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가지고 수급인으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바다에 등대를 건축하도록 한 건축주이다.

원고는 2005년 1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바다에 등대를 설치하려던 피고에게 별지와 같이 등대의 하부기초를 꽃잎으로, 등탑을 꽃술로 하여 꽃술의 상부에 등대의 불빛을 밝히도록 하는 모양의 등대의 도안(이하, ‘원고의 등대도안’이라 한다)을 그려 제공하였고, 2005. 4. 25. 이를 미술저작물로 등록하였다. 원고는 등대도안에 따라 원고가 직접 제작한 등대의 축소모형과 원고의 등대도안을 기초로 작성된 건축설계도서를 만들어 이를 등대도안과 함께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피고는 2004. 11. 23. 전자입찰을 통하여 시공자로 선정된 수급인에게 2004. 11. 29.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으로부터 약 1 km(동백섬으로부터 1.7 km) 떨어진 해상의 암초에 등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어 2005. 11. 11. 등대를 완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등대를 건축함에 있어 수급인에게 피고의 주문에 따라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안상진이 원고의 등대도안을 기초로 작성한 등대의 건축설계도서를 넘겨주었고, 수급인은 피고로부터 받은 건축설계도서에 따라 등대를 시공하였다.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①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등대도안에 저작물성이 있는지, ② 피고가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는지, ③ 피고가 원고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⁴⁰⁵, ④ 피고가 원고의 저작인격권(동일성 유지권,

⁴⁰² 소위 “등대고안사건”이다

⁴⁰³ 소장에서의 피고는 대한민국으로서, 구체적으로는 해양수산부 소속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다.

⁴⁰⁴ 부산 해운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기념하는 등대이다.

⁴⁰⁵ (가) 피고가 건축한 등대 또는 피고가 등대를 건축함에 있어 사용한 건축설계도서가 원고의 등대도안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나) 원고가 피고에게 등대도안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㉔ 법원의 판단 - 등대도안의 저작물성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등대도안은 건축을 위해서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대략적인 등대의 모양만을 그린 원고의 등대도안은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⁴⁰⁶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등대도안은 건축구상을 위한 일종의 스케치로서 건축구상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구상의 밀도에 있어서 대략적인 구상단계에 불과하고, 그 표현에 있어도 건축설계도면이 가지는 기술성, 기능성보다는 형상, 색채, 구도 등의 미적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원고의 등대도안만으로는 실제로 등대를 건축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건축법은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고 규정 407 하여 설계도서를 공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도면이나 서류로 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등대도안은 저작권법 제 4 조 5 호에 정해진 설계도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도형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⁴⁰⁸.

㉕ 법원의 판단 - 복제권의 침해여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등대도안이 건축저작물인 설계도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등대도안 또는 건축모형에 기초해서 등대를 건축함으로써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의 이용을 허락하였는지, 및 (다) 조건부 이용허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⁴⁰⁶ 등대와 같은 건축물은 대략적인 등대의 모양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측량 등의 현장조사를 거쳐 기본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 이에 따라 시공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건축된다는 것을 이유로 하였다.

⁴⁰⁷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4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⁴⁰⁸ 한편, “다만 건축을 위한 도면에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도면에 따라 시공한 건축물의 저작물성과 직결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 제4조 제5호에 정해진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건축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저작물이 아니라 도형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데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도 함으로써, 건축설계도면이 건축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건축된 결과물인 건축물에 저작물성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등대도안이 건축저작물인 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대도안이 건축저작물인 설계도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설계도면은 등대의 재질을 스테인리스강으로, 등대의 내부구조를 내부에 공간이 있는 콘크리트구조로, 사다리를 등대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다, 반면에 피고가 건축한 등대는 이와 같이 건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모형이나 설계도면에 기초해서 등대를 건축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설계용역을 맡긴 안상진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토대로 등대를 시공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㉔ 법원의 판단 - 2 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

원고는, 피고의 등대는 원고의 등대도안에 기초하여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고, 원고의 등대도안과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등대도안에 관한 2 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등대를 건축함에 있어 등대도안의 이용을 허락하였으므로 원고의 2 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사용한 설계도서는 도안과 설계도서라는 목적의 상이점에 따라 그 세부적인 표현방식이 다를 뿐 예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전체적인 형상은 원고의 등대도안의 등대와 동일하므로 원고의 등대도안과 그 표현상의 본질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접하는 사람은 그 본질적인 특성을 느껴서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의 등대는 이러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되었으므로 피고가 건축한 등대 또는 피고가 등대를 건축함에 있어 사용한 건축설계도서는 원고의 등대도안의 2 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2 차적 저작물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여러 차례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조형물을 제작하였고,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의 하나로 피고로부터 개인전시회를 개최하는 기회를 제공받았고, 피고가 건축하는 등대는 당시 상당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하는 기념물이었으며, 원고가 피고의 부탁에 응하여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여러 차례 도안을 변경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공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이 도안한 등대가 설치됨으로 인한 조각가로서의 이름을 더욱 알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서 피고에게 등대를 건축함에 있어 원고의 등대도안의 이용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함으로써 이용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였다.

㉔ 법원의 판단 - 저작인격권의 침해여부

법원은, 원고가 등대도안에 기초해서 등대를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면 이와 같은 정도의 변경에는 이미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동일성 유지권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피고가 신문에 원고가 등대의 도안을 그렸다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의 저작물인 등대도안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등대도안의 공표에 있어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피고가 신문을 통해 등대의 도안을 그린 사람이 원고라고 보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㉕ 판례의 시사점 - 건축을 위한 기본도안은 건축저작물이 아니다

이 판례는, 건축설계도의 기초가 되는 도안은 설계도서가 아니므로 건축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첫 판결이다. 건축저작물로서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을 말하는데, 이는 건축물의 외관이나 내부 디자인의 확정만으로는 건축저작물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하여는, 건축물의 내외관의 확정에 더하여, 실제로 그 건축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공방안이 적시된, 건축법상의 설계도서에 준하는 설계도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⁰⁹.

이러한 요건에 도달하지 아니한 도안은 건축저작물이 아니라 도형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 경우, 그 도안과 동일한 형태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은 단지 아이디어를 이용한 것일 뿐 그 표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그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게 된다⁴¹⁰.

㉖ 판례의 시사점 - 건축저작물에는 구조와 재질도 고려된다

건축저작물이 되기 위한 설계도서가 건축법상의 설계도서에 준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른 시공은 그 설계도서 상에 규정된 재질과 구조가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재질과 구조로 시공된다면 이는 그

⁴⁰⁹ 저작권법 제4조제5호에서 “건축을 위한 모형”도 건축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판례에 따르면 건축법상의 설계도면이 완비되지 않은 모형은 그 자체로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⁴¹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7.12 선고 2006가합14405 판결(저작권침해금지)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이라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건축저작물의 복제에는 해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⁴¹¹. 이러한 사정은, 건축저작물의 건축저작권에 기하여 보호되는 “표현”은 단지 그 건축물의 외관이나 내부 장식을 넘어서 그 건축물의 구조나 재질 등의 속성을 포함하여 구체화된 것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⁴¹¹ 2차적저작물의 창작이라 볼 소지가 있을 것이나 이는 별론으로 한다.

(5) 서울지방법원 1995.8.18 선고 95 가합 52463 판결⁴¹²

㉠ 사안의 개요

원고는 건축물의 연구, 구상 및 기본설계의 용역업에 종사하는 건축가이고, 피고는 일본에 대규모의 그랜드 호텔을 신축하려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랜드 호텔의 기본설계 및 자문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호텔건물에 대한 연구와 국제 일류호텔의 답사검토, 여러가지 건물모형의 구상과 그 구상들에 따른 여러 안의 모형도 또는 투시도를 작성한 후에 1990년 8월 30일경 피고에게 원고의 기본설계구상을 보고한 후 모형도 및 투시도(필름)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와의 도급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더니, 1991년 6월중순에 원고가 저작한 모형도 및 투시도를 모방해서 그와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게 모조한 건축물의 모형도, 투시도, 평면도, 입면도를 일본인 건축사에게 교부하면서 그 기본설계도대로 위 호텔 신축설계도를 제작해서 일본의 건축허가 당국에 건축허가를 대리 신청하도록 하여 1992년 4월 경에 그 허가를 받아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손배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i) 사건개요에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 원고는 1990.8.30. 경 위 호텔의 모형도 10 여개 안과 그에 따른 투시도 14 개안을 슬라이드(환등영사용) 필름으로 저작함으로써 그 건축물 모형도 및 투시도 등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 건축저작물(모형도 및 투시도)들을 변형, 모방해서 모형도 및 투시도를 포함하는 기본설계도 등 2 차적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할 2 차적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외 핫또리에게 원고의 건축저작물을 모방, 변형하도록 도급시키고 그대로 건축허가를 받아낸 행위는 원고의 2 차적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2 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인정한 뒤, (ii)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위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손해액은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하였으면 통상 얻을 수 있었을 금액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호텔에 대한 기본설계도 제작의 통상 도급금액이 금 470,000,000 원

⁴¹² 소위 그랜드호텔설계도 사건이다; 건축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이호흥) p78~p79; 2009.12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도인 사실과 원고가 저작한 위 모형도 및 투시도가 기본설계도 저작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원고가 저작한 위 모형도 및 투시도를 사용할 권리(그것에 의하여 2 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 포함)를 행사하였을 경우 취득할 수 있었던 가액은 금 282,000,000 원이 된다”고 하였다.

㉔ 판례의 시사점 - 기본설계의 도용은 2 차적저작물 침해

건축저작물을 모방,변형하도록 도급시키고 그대로 건축허가를 받아 낸 행위는 2 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고 하였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의 저작물이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관하여는 밝히고 있지 않으나, 모형도 등이 건축저작물로 인정받은 초기의 판례이다.

(6) 서울고등법원 2004.9.22. 선고 2004 라 312 판결⁴¹³

㉠ 사안의 개요

소외 건축사사무소는 충북 청원군 오창면에 건축할 예정인 “OO 아파트”를 설계하였고, 그 중 34 평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포함한 3 종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신청인은 위 건축사사무소로부터 건축설계도 저작권을 양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신청인은 같은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안내 카탈로그에 신청인의 저작권을 가진 평형과 거의 같은 평형을 포함시켰고, 모델하우스도 건립하여 분양을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04 년 3 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분양금지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상고를 포기하였다.

㉡ 제 1 법원의 판단

[1] “건축저작물은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여 ... 편의성, 실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 요소에 대하여는 설사 그 요소에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설계도에는 욕실을 현관 측부에 배치하지 않고 안쪽에 배치함으로써 양쪽에 신발장을 두어 충분한 수납공간을 확보한 점, 주방에 냉장고를 배치할 수 있도록 부부욕실 배치와 더불어 계획한 점, 안방에 후면 발코니와 파우더 룸, 수납공간을 같이 배치하여 발코니 확장시 수납공간을 강화할 수 있는 점 등의 설계상 특징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특징들은 아파트 내부 공간 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적 요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기능적 요소를 넘어서 전체적인 외관에 대하여 창작성을 인정할만한 디자인 요소를 갖추었다고 볼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설계도에 대하여 건축저작물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제 2 심 항고심 법원의 판단

[1] 건축저작물은 기본적으로 기능적 저작물로서 이에 기초한 건축물의

⁴¹³ 소위 오창아파트설계도 사건이다; 건축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이호홍) p80~p84; 2009.12 한국저작권위원회

편의성, 실용성 및 효율성 등의 기능적 가치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으며,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을 구현하는 표현방법에 있어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이른바 ‘합체의 원리’(merger doctrine)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저작권적 보호가 인정되는 부분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2] 채권자는 ... 등의 설계상 특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특징들은 수납공간을 확보한다는 등 아파트 내부 공간 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 및 요소들의 배치 및 구성에 관련된 것으로서 기능적 요소라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저작권적인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㉔ 판례의 시사점 - 아파트 설계도의 저작물성 인정이 어렵다.

판례는, 아파트 내부 공간 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 및 요소들의 배치 및 구성에 관련된 것은 기능적 요소라 할 것이고, 이러한 배치 및 구성이 저작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⁴¹⁴ 고 하였다. 아파트 설계에서 창작의 노력의 상당부분은 그 배치에 관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판례를 참고할 때, 그 창작성의 판단기준이 매우 높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아파트 구조 설계는 쉽게 발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⁴¹⁴ 사건으로는, 그러한 배치를 하도록 한 배경은 기능적이고 개념(concept)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에 따라 구체화된 도면은 “표현”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어문저작물에서 내용은 개념에 해당하나 그 내용을 담은 표현은 보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욕실을 현관 측부에 배치하지 않고 안쪽에 배치함으로써 양쪽에 신발장을 두겠다는 개념 자체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그 결과 그렇게 배치된 여하한 배치에 관하여 저작물성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일단 저작물성을 인정한 후 결과적인 구체적인 도면의 유사성을 기초로 침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 도 29 결정⁴¹⁵

㉠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인바, 2006 년 7 월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기획 대표 공소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기획에서 제작한 아파트백과 책자 내용을 복사하고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에 피고인 회사명을 기재하여 피고인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이에 검사는 공소외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였다.

㉡ 원심의 판단

아파트의 경우 해당 건축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조건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각 세대전용면적은 법령상 인정되는 세제상 혜택이나 그 당시 유행하는 선호 평형이 있어 건축이 가능한 각 세대별 전용면적의 선택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아파트의 경우 공간적 제약, 필요한 방 숫자의 제약, 건축관계 법령의 제약 등으로 평면도, 배치도 등의 작성에 있어서 서로 유사점이 많은 점, 이 사건 평면도 및 배치도는 기본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단순화하여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만든 것으로서, 발코니 바닥무늬, 식탁과 주방가구 및 숫자 등 일부 표현방식이 독특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는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 형식을 다소 변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평면도 및 배치도에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 8101 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 조 제 1 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⁴¹⁵ 아파트 평면도 사건;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서, 원고는 검사고 피고인은 건설사 대표이다.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구 저작권법은 제 4 조 제 1 항 제 5 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 제 8 호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설계도서와 같은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 도 965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떤 아파트의 평면도나 아파트 단지의 배치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구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령 동일한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의 평면도나 배치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416 417}

㉔ 판례의 시사점 - 아파트 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인정이 어려움

앞서 살펴본 오창아파트설계도 사건⁴¹⁸에 더하여, 아파트 설계도의 경우 기능적 저작물로서 다른 저작물을 다소 변경하는 것으로 인하여는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⁴¹⁶ 기능적 저작물의 하나인 특정기계장치의 설계도가 작성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 대법원 2007.8.24. 선고 2007도 4848판결

⁴¹⁷ 대법원 2005.1.27. 선고 2002도965판결에서는,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의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지하철 통신설비 중 화상전송설비에 대한 제안서도면에 관하여 기능적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부인하였다.

⁴¹⁸ 서울고등법원 2004.9.22. 선고 2004라312판결

(8) 건축설계경기 약관 사건 - 공정거래위원회

㉠ 배경 사실

건축설계경기(建築設計競技)란 발주기관 등이 2인 이상의 설계자로부터 각기 설계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⁴¹⁹. 이러한 건축설계경기의 약관이 문제되었다. 설계경기에서 흔히 발견되는 약관 조항으로서, “입상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주최자에 귀속한다”는 등의 규정이 포함되게 되는데, 이러한 조항이 공정거래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건축사협회는 2008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 건축설계경기 지침의 법률적 성격

[1] 지침에서 정한 경기절차가 완료되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발주기관과 입상한 설계자들 사이에는 지침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한다. 즉, 위 지침은 광고자(발주기관)가 응모기간을 정하여 어느 행위를 한 자 중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설계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민법상 ‘우수현상광고’라 할 수 있다(민법 제 675 조, 제 678 조). 우수현상광고는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계약의 형태 중 하나이므로 건축설계경기지침은 결국 ‘계약’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이 사용하는 건축설계경기지침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 제 2조 제 1항의 약관에 해당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 위법성 여부

[1]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저작권법 제 2조제 1호)을 의미하고, 저작권법 제 4조에서는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창작성은

⁴¹⁹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72호 「건설경기운영지침」 제3조 제1호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는데⁴²⁰, 건축설계경기를 통해 건축을 하게 될 경우 그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⁴²¹, 건축사가 발주기관에 건축사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모형 등과 향후 이를 통해 건축될 건축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개연성이 많은 것으로 보았다.

[2] 건축사들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려면 발주기관의 입찰이나 건축설계경기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발주기관은 건축사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입장으로서는 건축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건축설계경기지침에는 대부분 입상작의 저작권은 모두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건축사들은 발주기관의 이러한 계약 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 건축사의 창작물인 설계도, 모형 및 건축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건축사에게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은 건축사들이 설계한 건축물을 직접 사용할 건축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을 포함한 건축물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귀속할 필요성이 있다. 즉, 건축저작권은 다른 저작권과 달리 ‘실용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의 저작권 귀속은 필요하다. 다만, 현재의 건축설계경기지침처럼 저작권 전부를 모두 귀속시키는 것은 건축사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과 건축사들의 이익을 형량하여 발주기관이 건축설계경기를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저작권의 일부만 귀속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설계의 예술성·작품성·참여기술자의 능력·작업계획 및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거나 건축설계경기에

⁴²⁰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도2238판결: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⁴²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발주청은 건축공사가 특별히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발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의 2 제2항). 즉, 발주기관이 판단하기에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건축설계경기라는 방법을 통해 건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의하여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⁴²². 또한 발주청은 건축공사가 특별히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발주할 수 있다⁴²³. 즉, 건축사들의 설계에 대해 창의성을 인정하여 건축설계경기라는 특별한 계약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⁴²⁴에는 ‘공모안의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다만, 발주기관이 공모에 참여한 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지침상 예외로 할 수 있는 ‘협의’는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협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조항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해당 약관조항들은 건설기술관리법령과 이에 따른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

[5] 저작권 양도에 따른 대가가 어느 정도인가도 저작권 귀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⁴²⁵. 발주기관은 우수작,佳作에게 주어지는 상금이 저작권 양도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모를 할 때 제시되는 상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토록 하기 위한 유도장치인 것이지 저작권 양도에 따른 대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건축설계경기지침 어디에도 입상작에 대한 상금이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것이라는 언급은 없다. 또한 건축사협회의 진술에 의하면, 건축사들이 건축설계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입상작에 주어지는 상금을 초과한다고 한다. 더군다나 당선작인 최우수작은 상금조차 받지 못하고 차후에 직접 설계용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뿐이다. 즉, 설계경기 자체만을 통하여서는 아무런 실질적인 이익을 받지 못한 것인데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이다.

[6]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건설교통부공고 제 2002-152 호)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공고에 정해진 대가 산정 기준 중에는 저작권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건축사와 건축주간의 계약서인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건설교통부고시 제 2003-42 호)에는 위 약관조항과 반대로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⁴²²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⁴²³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⁴²⁴ 우리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72호)

⁴²⁵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있다⁴²⁶. 위의 규정들에 의하면 건축사의 설계에 대한 대가에 저작권에 대한 가치는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건축주와 건축사간에 설계용역계약에서 저작권은 건축사에게 있는 것이 원칙임을 알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 적정한 저작권 귀속범위(1회 이용허락권)

[1] 당해 약관조항은 개별적인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을 발주처에 귀속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저작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한다는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이 전부 양도될 경우 양도인은 더 이상 당해 저작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양수인이 저작권자로서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의 양도시 반드시 그 전부가 양도될 필요가 없으므로 양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일부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⁴²⁷.

[2] 발주기관이 건축설계경기지침을 통해 달성하려는 최종적인 목적은 건축물을 용도에 맞게 건축하는 것이다. 또한 당선작이 아닌 우수작·가작의 경우에는 건축설계경기의 결과를 홍보하기 위한 전시·출판에 사용하기를 원할 뿐이다. 발주기관의 위와 같은 목적은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고 당선작의 경우 당해 저작권을 1회 이용 허락권, 전체 입상작을 전시·출판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3] 이 때 발주기관은 건축사에게 저작권을 갖게 하면 동일한 건물이 다시 건축될 가능성에 대하여 염려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사는 창의적인 건축물을 원하는 발주기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설계를 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동일한 건축설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발주기관이 이러한 점을 염려하여 저작권을 전부 양수받기 원한다면, 별도의 협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저작권을 양도받아야지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4] 그리고 발주기관은 당선된 건축 저작물을 그대로 건축하기보다는 용도에 따라 많은 변경이 필요하므로 저작권의 귀속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⁴²⁶ 제18조(저작권 보호) 이 계약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건축사)”에게 귀속되며, “갑(건축주)”은 “을”과 협의 없이 이 설계도서를 사용하여 다른 곳에 건축을 할 수 없다

⁴²⁷ 대법원도 저작권의 양도계약인지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설계를 하는 건축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건축사법 제 2 조 제 1 호) 건축물의 설계에 관하여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이다. 즉, 건축사는 건축물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려면 필요한 변화가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합당한 변경의 경우에는 건축사와의 협의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당해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주최측(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설계도와 달리 건축하였다면 주최측은 수상자(입상작)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발주기관 등 건축주는 건축 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축사의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⁴²⁸. 그리고 저작인격권은 본래의 성격이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양도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당해 경가지침에서는 저작권 전부를 귀속시키고 있어서 저작인격권의 성질에 반한다.

[5]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발주기관에 귀속시키는 저작권의 범위는 당선작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에 필요한 ‘저작재산권의 1 회 이용허락권’, 전체 입상작에 대하여는 전시·출판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 개선된 약관조항 유형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가 있는 약관조항을 대체하여 구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항의 유형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별도 협의한다. 다만, 당해 건축설계경기와 관련한 전시, 홍보 등은 별도 협의 없이 할 수 있다

[2] ① 우리 공사는 당선작에 대하여 건축설계용역 계약 체결시 1 회에 한하여 저작권 사용권한을 소유한다. ② 우리 공사는 당선작을 포함한 입상작에 대하여 저작자와 별도의 협의 없이 작품을 전시 및 홍보책자출판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기타 개별사안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등에 따라 저작권자와 별도 협의한다.

㉕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의 시사점

앞서, 등록저작권의 소유권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저작물이나

⁴²⁸ 저작권법에서는 동일성 유지권의 예외로서 저작자는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은 대개 발주회사나 시공/시행 건설사들이 양수하여 등록하고 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 사례는, 의뢰에 의한 설계에서뿐만 아니라 건축설계경기에서 단지 당선된 작품에 대하여도 그 창작된 건축설계의 저작권이 발주회사에 귀속되도록 하는 불공정한 약관이 공공연하게 시행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건축설계나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에서는 비록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가 명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⁴²⁹에도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설계자나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권리는 현실상 무시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⁴²⁹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42호

제2절 건축/인테리어의 디자인권으로서의 보호와 저작권과의 충돌 여부

1. 저작권 보호에 의한 건축/인테리어의 디자인권

(1) 저작권으로서의 보호의 불충분

㉠ 저작권리의 귀속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은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 하고 있고⁴³⁰, 이에 대하여는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분석한 건축/인테리어 관련 저작권등록의 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건축저작물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은 발주처나 시공/시행사의 명의로 등록되고 있어, 실질상 건축설계자나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권리는 발주처 등에 흡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저작권리의 실질적인 제한 해석

이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판례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건축저작물과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저작물은 여러 면에서 충실한 보호가 되고 있지 않다.

설계도서가 건축저작물로서의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설계도서가 완성이 되어야 하고 건물의 외관이 명확할 정도로 설계되는 것만으로는 건축저작물로 보기 힘들다⁴³¹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건축저작물은 기능적 저작물이고 기능적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기능적 요소 이외의 부분에 창작성이 발견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 특히 아파트 설계도 등에 관하여는 저작물성이 부정된

⁴³⁰ 저작권법 제4조제5호

⁴³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29 선고 2007가합77724 판결; 등대도안사건

예⁴³²가 많다.

건축저작물로 성립되는 경우라도, 그 건축설계계약이 가분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이를 중단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정도라면 건축주에게 이용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등으로 건축가(저작자)의 저작권에 따른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⁴³³.

㉟ 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의 한계

특히 인테리어 디자인은 건축저작물로 보지 않고 겨우 도형저작물이나 응용미술저작물로서만 보호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인테리어 디자인의 설계안에 따라 시공하는 것은 그 설계도에 나타난 아이디어를 이용한 것일 뿐 그 표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지도 않게 되는 결과, 설계도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서 설계도에 따라 인테리어를 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⁴³⁴. 이는 현실상 인테리어 디자인은 저작권으로서 보호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⁴³⁵.

인테리어 디자인 등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 판례는 “원칙적 부정 & 예외적 인정”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예외적 인정이 되기 위하여는 “응용미술작품은 분리가능성을 만족한다는 조건 아래에서 예외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하고 있으며, 응용미술저작물에 기인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응용미술작품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예는 매우 드물다⁴³⁶.

(2) 업계에서의 인식

㉠ 저작권으로의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우리 법에서 건축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예로서 구체적으로

⁴³² 서울고등법원 2004.9.22. 선고 2004라312판결(소위 오창아파트설계도 사건);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29 결정(아파트 평면도 사건)

⁴³³ 대법원 2000.6.13.자 99마7466결정; 건축설계계약 해제사건

⁴³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7.12 선고 2006가합14405 판결; 프렌차이즈 인테리어 사건

⁴³⁵ 물론, 하급심 판례이므로 추후 대법원에서 다른 결론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⁴³⁶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김창현) p265~p269; 2010.12.14; 특허청정책연구보고서

명시하도록 개정된 것이 1986 년으로서 보호의 경과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불과하고, 건축/인테리어 디자인 관련 저작권 보호의 성공 사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건축/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짐작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앞서 건축저작권 등록이 다른 저작권에 비하여 적다는 점으로부터도 예상할 수 있으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㉞ 설문조사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⁴³⁷ 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2010.07.19.부터 2010.08.01 까지 10 일간 “건축저작물 저작권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⁴³⁸. 설문조사 결과, 563 명의 응답 중에서, “잘 알고 있다”로 응답한 수는 65 명(12%)에 불과하고, “들어본 적 있다”로 응답한 수도 218 명(39%) 밖에 되지 않으며, 절반에 해당하는 280 명(50%)이 “잘 모른다”로 응답하였다. 이는 건축/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은 저작권의 혜택에 익숙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㉟ 저작권에 대한 박탈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설계경기의 약관조항 중 입상자의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조항이 공정거래에 맞지 않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건축사협회는 그 협회지에서 특집기사⁴³⁹를 마련하면서, “건축설계가 저작권을 빼앗긴 이유와 그 결과”라는 주제를 필두로 하여 기사를 싣고 있다. 그만큼, 업계에서는 저작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박탈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 건축/인테리어의 저작권과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호

(1) 보호대상의 차이

㉠ 차이의 일반

⁴³⁷ AURIC;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⁴³⁸ http://www.auric.or.kr/user/poll/Poll_view.asp?PollId=80

⁴³⁹ 대한건축사협회지 Korean Architects 2009년7월호 p.45~p70

일반 응용미술작품에 관하여도 저작권법과 디자인 보호법은 그 보호대상의 차이가 있다. 건축저작물과 인테리어 디자인에 한정하여 앞서 살펴본 판례를 고려하여 그 보호대상의 차이를 분석하면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㉞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의 보호대상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의 보호의 대상은 건축 아이디어가 아닌 그 “표현”이다. 건축저작물의 건축 아이디어는 “설계도”로 표현되기도 하며, “모형”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므로, 이들에 대하여 건축저작물로서 보호하게 된다.

㉟ 디자인보호법상 건물/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대상

한편, 디자인보호법상 건물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으로서의 보호의 대상은 건축 아이디어의 표현이 아닌 건축물 자체의 외부 또는 내부의 외관이다. 때문에, “설계도”는 건물로서의 보호방식이 될 수 없고, 건물 자체의 외관을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대로, 즉 보여지는 대로 도시하여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하게 된다⁴⁴⁰.

㊱ 보호대상의 차이에 따른 결과

건축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모형도 등으로도 저작물성을 인정받은 초기의 판례⁴⁴¹도 있으나, 최근의 판례⁴⁴²는 그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이 가능한 것이라야 하고 건축을 위한 기본도안은 건축저작물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건축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료의 재질도 정하여져야 하고, 구조상 공법도 정하여져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그 디자인의 시공가능성이 있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⁴⁴³, 시공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디자인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전혀 필요치 아니하고, 외관을 형성하지 않는 한 재질 따위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⁴⁴⁰ 설계도는 로카르노 분류상 Architects plan이라는 별도의 물품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⁴⁴¹ 서울지방법원 1995.8.18 선고 95가합52463판결(그랜드호텔 설계도 사건)

⁴⁴²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29 선고 2007가합77724 판결(등대고안사건);

⁴⁴³ 공업상 이용가능한 디자인이 되기 위하여는,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2) 보호법익의 차이

㉠ 개설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은, 권리의 발생, 보호 요건, 보호기간, 보호의 목적 등 보호법익을 서로 달리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건축/인테리어에 관한 디자인이 모두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 권리의 발생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을 도면(또는 견본)으로 제출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는 어떠한 절차나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등록은 그 저작일자를 입증하기 위한 유효한 방안이 될 뿐이다.

㉢ 보호기간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 중 및 사후 50 년 동안 권리가 존속하므로, 출원일로부터 15~25 년 정도로 정해지는 디자인권에 비하여 훨씬 긴 존속기간이 보장된다.

㉣ 보호의 객관적 범위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출원시에 기재한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으로 한정되어 보호⁴⁴⁴되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구체적인 물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형태의 복제에도 권리가 미친다.

㉤ 보호의 내용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의 내용은 모방금지권이다. 타인이 “모방”을 통하지 않고 동일유사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 대하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권리의 행사시에는 상대방이 본인의 저작물을 “모방”하였음을, 직접적인 증거나 접근(access)하였다는 것을 보이는 간접적인 증거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상대방의 “모방” 또는 “독립 창작” 여부에 무관하게,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기만 하면

⁴⁴⁴ 미국과 유럽은 여하한 물품이라도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모방한 물품에 대하여는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고, 우리 입법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개정안이 발의중이다.

상대방의 디자인의 실시를 금지할 수 있다.

㉔ 부속권리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동일성 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도 부여되는 반면,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그와 같은 인격권은 부여되지 않고 오직 재산권만이 부여된다. 또한, 저작권법에서는 원저작물을 변경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개작하는 2 차적저작물의 창작권을 부여하나,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범위를 벗어나기만 하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의 범위로부터는 벗어나게 된다.

(3) 순수 인테리어 디자인(응용미술저작물)과 디자인보호법

㉕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작품”은 디자인 등록을 통해 디자인권으로도 보호될 수 있어 양 법률이 보호하는 대상은 필연적으로 중첩된다. 저작권법 제 4 조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응용미술저작물”이 미술저작물의 일종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저작권법 제 2 조제 15 호).

㉖ 이중보호의 현존

이 정의에서 말하는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디자인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⁴⁴⁵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신규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심미성을 지녀야 한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의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들 물품에 적용되는

⁴⁴⁵ “본질적으로 디자인법의 대상인 디자인은 디자인에 속한다. 여기에서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공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반복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 디자인법상의 디자인이다. 디자인과 디자인법상의 디자인은 양자 모두 형태로 나타나는 물품의 존재형식, 외적 인식을 가지고 파악되는 모양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어원적으로도 디자인(design)을 번역한 말에서 디자인법상의 디자인이 나왔다는 것을 볼 때 그 뿌리가 같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디자인법상의 디자인은 법에서 정의한 관념으로, 많은 디자인중에서 일정의 것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의 교차영역에 관한 연구』 9쪽, 한국저작권위원회 2007년 발행, 저자 이호홍

디자인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창작물인 이상 그것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물품의 디자인은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에서의 “디자인”에 해당한다.

㉔ 순수 인테리어 디자인

판례는, 원고 점포의 실내외 디자인은 건축물과 구분되어 인식되는 것으로서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⁴⁴⁶. 이러한 인테리어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상 보호가 된다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도 보호될 수 있는 이중보호의 영역에 놓이게 된다⁴⁴⁷.

그런데, 인테리어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되지 않는 현행법 하에서도 디자인법과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중보호되는 디자인은 현존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이 그러한 이중보호의 영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새로운 문제가 생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건축저작물과 디자인보호법

㉕ 건축물의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

현행법상 건물은 부동산으로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건축물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보호되는 경우에 이중보호의 문제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건축물은 로카르노 분류 제 25-03 류에 포함되어 있어, 로카르노 분류를 정면으로 모두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하게 된다면, 부동산인 건축물도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 범위에 포섭되게 된다. 건축물이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된다면, (i) 건축물의 외관 자체가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며, (ii) 인테리어 디자인은 건축물의 내부에 관한 부분디자인의 형식으로 보호될 수도 있을 것이다.

㉖ 응용미술저작물의 이중보호와 동일한 문제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두 법에 의한 건축물의 이중보호 문제는,

⁴⁴⁶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7.12 선고 2006가합14405 판결(프렌차이즈인테리어 사건)

⁴⁴⁷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저작물성(즉,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이중보호 현황에 더하여 새로운 문제가 유발될 것은 없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물이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그 보호법익은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요건과 그 보호법익과는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각각 다른 보호 절차와 보호범위가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의 건축물이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와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중첩하여 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두 법 사이의 충돌이 아니라 보완의 문제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⁴⁴⁸.

3. 건축/인테리어에 대한 보호 태도의 문제

(1) 미국에서의 저작권법에 의한 건축물/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

㉠ 미국 건축저작권법상 보호대상

1990 년 제정된 미국 건축저작권법(The Architectural Works Protection Act)은 “건축저작물은 유형의 매체를 통해 표현되는 건축물의 디자인을 말한다. 이에겐 전반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공간이나 공간요소의 배열과 구성도 포함하나, 개개의 표준적인 특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⁴⁴⁹ 라고 규정하고 있다⁴⁵⁰. 즉, 건축저작물은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며, 건축법상의 설계도서에 이르지 아니한 것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 Shine '99 사건

이러한 예로, 건축대학원 수업과정에서 “Shine '99”라는 초기모델을 고안하였고 이후 이를 발전시켜 “올림픽타워”라는 모델로 승화시켰는데, 이를 참고하여 고안된 Freedom Tower 의 디자인이 발표되자 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제소하는 과정에서 Freedom Tower 의 설계자는 원 디자인을 버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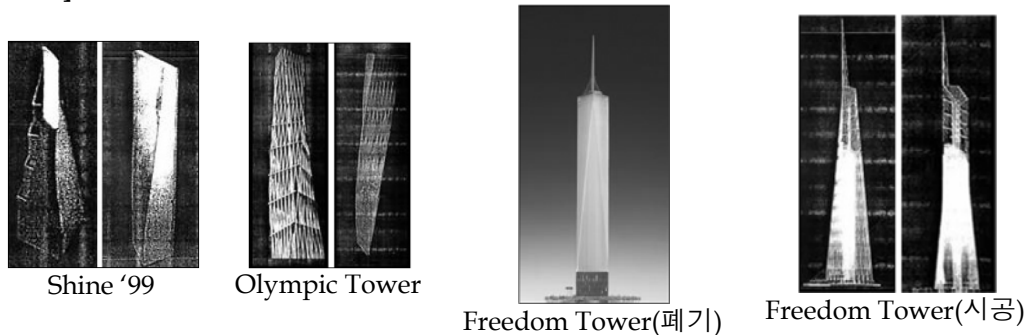
⁴⁴⁸ 하나의 건물에 적용된 기술적 사상이 있을 경우 이는 “특허”라는 또다른 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대하여 디자인권이나 저작권과 특허권이 충돌하고 있다고 해석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⁴⁴⁹ An “architectural work” is the design of a building as embodi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including a building, architectural plans, or drawings. The work includes the overall form as well as the arrangement and composition of spaces and elements in the design, but does not include individual standard features.

⁴⁵⁰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 17 U.S.C. 101

새로운 디자인으로 건축을 한 사건⁴⁵¹에서, 법원은 “비록 Shine ‘99 는 초기모델(a rough model)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구별되는 건물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타워가 실제로 그 모델로부터 지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본 사안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Shine ‘99 의 형태가 너무나 초기 단계여서 그것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마치 특정한 기하형태, 즉, 타원, 피라미드, 달걀 형태를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피고의 주장을 부정하고, “Shine ‘99 의 개개의 표준적인 요소들은 보호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모델에서 다양한 요소들의 배열과 구성은 최소한 AWCPA 에서 보호하는 건물의 디자인(the designs of a building)에 속한다”고 하였다⁴⁵².

[표 51] Shine ‘99 사건에서의 건축저작물과 Freedom Tower



㉔ Value Group 사건 -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공사 중지

뿐만 아니라, 설계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부동산개발회사의 부동산과 같은 설계를 그 경쟁회사가 그 설계자에게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 부동산개발회사의 도면을 복사하여 이용한 사안에서, 미국법원은 2 차적저작물 침해에 기인하여 피고 측의 공사를 중지시킨 사례⁴⁵³도 있다⁴⁵⁴.

⁴⁵¹ Thomas Shine v. David M. Childs and Skidmore Owings & Merrill, LLP, 382 F.Supp.2d 602 (2005)

⁴⁵²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디자인 분야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문화경; 계간 저작권 2006년 가을호 p114-p120 참고

⁴⁵³ The Value Group, INC. v. Mendham Lake Estates, L.P., 800 F.Supp. 1228 (1992)

⁴⁵⁴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사이에 건축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건축주에게 허여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의연 건축주에게 유보된다고 하여,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우리 판례(대법원 2000.6.13.자 99마7466결정)의 태도와는 상반된다.

(2) 독일에서의 저작권법에 의한 건축물/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

독일의 경우 일반주택·공장·가게·교회와 박물관뿐만 아니라, 교량·동상·광장·정원·무대세트⁴⁵⁵·내부인테리어와 무대그림⁴⁵⁶ 등도 저작권의 요건인 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된다⁴⁵⁷.

(3) 일본에서의 저작권법에 의한 건축물/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

일본에서 건축물 자체가 저작물임을 인정받은 판례는 그다지 많지 않고, 오히려 건축물 자체가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는 많다⁴⁵⁸.

(4) 의견 - 충돌의 문제보다는 국가별 입법/사법적 태도의 문제

미국은 건물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는데⁴⁵⁹,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으로서도 충실히 보호되고 있다. 독일은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으로서 공동체디자인법⁴⁶⁰의 적용을 받는데 이 공동체디자인법에서도 건물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⁴⁶¹.

미국과 독일과 같이 건물/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으로서도 보호해주는 나라는 저작권으로도 두텁게 보호하고 있고, 일본이나 우리 현행법과 같이 건물/인테리어 디자인을 디자인으로 보호해주지 않는 나라는 저작권으로도 보호해주는 정도가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저작권과 디자인의 충돌의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그 나라에서 건축이나 인테리어에 대하여 지적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입법적/사법적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미국이나 유럽에 대비할 때, 우리나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건축/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도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도 보호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⁴⁵⁵ Katzenberger, ZUM, 1988, 545.550; Loewenstein, UFITA, Bd., 126(1994), 99(영화건축의 저작권 보호).

⁴⁵⁶ Schricker & Loewenstein, Urheberrechts, §71 Rdnr. 9.

⁴⁵⁷ 건축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p36, 17~19째줄; 이호홍; 2009.12. 한국저작권위원회

⁴⁵⁸ 건축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p47, 12~20째줄; 이호홍; 2009.12. 한국저작권위원회

⁴⁵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article of manufacture)의 분류로서 25-03류에 건물이 명시하고 있으며, 심사를 거쳐 등록된 예들도 다수 발견된다.

⁴⁶⁰ Community Design Regulation (CDR)

⁴⁶¹ 유럽은 공동체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제품(product)의 분류로서 로카르노 분류를 취하고 있으며, 이 로카르노 분류의 제25-03류에 건물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제32-00류에는 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이 명시되어 있다.

4. 저작권과의 이용저촉과의 관계

(1) 법률의 규정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자 등⁴⁶²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하거나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2) 이용과 저촉의 의의

저작권의 이용이란, 예컨대 선발생 저작권에 해당하는 저작물을 디자인의 구성요소인 모양으로 채용하여 디자인등록 받은 경우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가 저작권법상의 복제 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디자인권과 저작권과의 저촉관계는 등록디자인의 실시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복제 등 사이에 침해가 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저촉관계

저작물은 물품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⁴⁶³. 따라서, 저작물은 건축/인테리어 디자인에도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등록디자인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권과 저작권과의 저촉관계도 성립할 수 있다. 건축/인테리어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경우 이용저촉은 아래의 예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이용저촉의 예

㉠ 꽃모양이나 기타 도형저작물을 벽면에 채용하여 인테리어를 디자인하는 경우, 그 인테리어 디자인은 도형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도형저작물의 저작권자의

⁴⁶²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⁴⁶³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일명 히딩크 벡타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히딩크 벡타이’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허락을 받아야 한다.

㉞ 건축설계도의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건물 디자인⁴⁶⁴이나 건축물의 실내외 디자인⁴⁶⁵이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보호되는 경우, 이러한 건물 디자인이나 실내외 디자인에 따라 건물을 시공하거나 인테리어를 시공하는 경우⁴⁶⁶, 그 결과물인 건물이나 인테리어는 등록된 디자인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그 건물 디자인이나 실내외 디자인을 참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즉, 건축하거나 시공)하기 위하여는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㉟ 한편, 건물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보호되고, 그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모형이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경우, 건물의 외관 디자인과 모형 사이에는 서로 저촉관계에 놓일 수 있다. 그 모형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⁴⁶⁷ 결과적으로 외관 디자인에 관한 등록디자인을 침해하게 된다. 한편, 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것(즉, 그 모형에 의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그 저작권의 복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㊱ 같은 창작자에 의하여 건물/인테리어의 디자인권 및 건축저작물/응용미술저작물이 성립하게 되고, 이 중 하나의 권리가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 문제된다. 예를 들어,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자 등록 현황에서 파악되듯이, 건축저작물의 경우 대부분 발주처나 시행/시공사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 건축/인테리어 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양도하지 않고 유보한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생각건대,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저작물의 복제가 디자인권의 침해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를 허락한 것으로 보는 것⁴⁶⁸이 타당할 것이다.

⁴⁶⁴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건물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⁴⁶⁵ 우리 판례는, 건축물에 분리하여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실내외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⁴⁶⁶ 이러한 경우 판례는, 건축설계를 위한 초기도안은 건축저작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시공하는 것은 건축저작물의 복제가 아니라 응용미술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2차적저작물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⁴⁶⁷ 즉, 설계도면이라는 건축저작물을 건축에 의하여 복제하는 경우

⁴⁶⁸ 미등록 통상실시권의 허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현행규정의 타당성

위와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법상 저작권과의 이용저촉 규정은 건축/인테리어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상 새로이 보호범위에 포섭된다고 하여도, 문제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저작권과의 이용저촉규정은 건축/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에 의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제6장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

제6장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한 입법론

1. 개정안의 검토

(1) 개정안의 입법론

개정안에서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 12 조를 제외한다) 글자체 및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디자인의 정의에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물품을 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이에 따라 로카르노 분류에 열거된 건물⁴⁶⁹과 인테리어 디자인⁴⁷⁰도 보호대상으로 포섭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2) 제기되는 문제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로카르노 분류의 일부물품을 우리 현행법상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 이외에, 그를 위하여도 이와 같은 입법론이 바람직한가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로카르노 협정이 달라지면 우리 법의 물품이 달라지는 형식이고 디자인의 정의에 관한 우리의 입법권을 국제간 협약에 종속시키게 된다는 점⁴⁷¹이 있고, 보호 대상을

⁴⁶⁹ 제25류(Building units and contruction elements) 중 제25-03류 “Houses, garages and other buildings”

⁴⁷⁰ 제32류(Graphic symbols and logos, surface patterns, ornamentation) 중 “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

⁴⁷¹ 전광출, 특허와상표 2010년8월5일자 제6면; 전광출: 디자인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디자인의 정의 규정의 입법형식에 관한 문제이다. 개정안의 표현만 보면 로카르노 협정이 달라지면 우리 법의 물품이 달라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제도의 주춧돌이 되는 디자인의 정의에 관한 우리의 입법권을 국제간 협약에 종속시키고 있는 셈이다

확인하기 위해서 조약을 찾아봐야 하므로 제도 이용자에게 불편하다는 점⁴⁷²이 주요 이유다.

(3) 문제에 대한 검토

㉠ 로카르노 분류

우리 법은 우리말로 입법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이 된다⁴⁷³. 따라서,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물품을 우리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국어로 번역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고, 개정 때마다 그 번역물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로카르노 분류의 개정은 로카르노 협정에서 정한 전문가 협의회(Committee of Experts)에서 이루어지고, 5 년마다 개정된다.

㉡ 로카르노 분류의 유지에 대한 행정부담

그런데, 현행 로카르노 분류 제 9 판은 이미 영한 대역본이 번역되어 출간되어 있다⁴⁷⁴.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외국어로 된 문서를 참조할 필요성은 반감시키고 있다⁴⁷⁵. 그리고 5 년마다의 개정은 분류를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전면개정 보다는 특정한 분류에 물품을 추가하는 등의 사항들이라 그 번역물을 마련하는데 큰 부하가 드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⁴⁷⁶. 따라서, 이와 같이 로카르노 분류를 우리 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하는 것⁴⁷⁷에는 행정적인 곤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⁴⁷² 대한변리사의 디자인보호법개정관련 특별위원회; 특허와상표 2010.10.20. 제7면;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정안대로 입법되면 보호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약을 찾아봐야 하므로 창작자나 법원 등 제도 이용자에게 매우 불편하다. 이것은 조약의 번역문 제공이나 특허청장이 물품의 구분명칭을 고시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보호대상은 우리말로 우리 법에 입법을 해야 한다.

⁴⁷³ 특정한 조약에 가입하고 그 조약에 위배되는 우리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 조약의 규정이 앞선다는 등과 같이 조약의 규정을 우리 법의 규정에 상위 규정으로 두는 예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 법에 의한 규정만으로도 조약을 충족하도록, 즉, 우리 국민은 우리말로 된 법만 보아도 조약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되도록 되었을 것이라는 전제가 내포된 것이다.

⁴⁷⁴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 제9판 영한 대역본(2010년6월); 특허청 발간 등록번호 11-1430000-000917-01

⁴⁷⁵ 우리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로카르노 분류”는 그 번역문이 아니라 정본으로서의 로카르노 분류를 말하게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원문(불어 및 영어)을 참조해야 할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라 할 수는 없다.

⁴⁷⁶ 아울러, 개정의 과정은 WIPO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가 협의회 회의록을 통해 미리 알 수 있다.

⁴⁷⁷ 우리 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의 종류가 조약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입

㉔ 외국어로 된 입법의 문제

다만, 로카르노 분류에 포함된 물품을 그대로 우리 법에 따른 물품의 일종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러한 입법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은 없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문제로는, 물품의 정의에 로카르노 분류를 언급함으로써, 로카르노 분류가 개정되면 그 번역문이 마련되는 여부에 무관하게 즉시 효력을 발생할 것이라 결국 외국어로 된 법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될 것이라는 점이 있다.

㉕ 로카르노 개정에 관한 현실적인 개정 움직임

위에서 언급한 5 년마다의 정기적인 개정에서는 주로 다루어지는 다소간의 개정은 별론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최근 WIPO 에서는 OHIM 및 유럽 상표권자 협회(MARQUES⁴⁷⁸)와 다자국 대표들과 함께 현재 기능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로카르노 분류를 기능과는 무관하게 형태적 특징에 의한 분류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다⁴⁷⁹. 이러한 연구의 결과 현행 로카르노 분류와는 별개의 새로운 보조 분류 체계가 도출될 지, 현행 로카르노 분류를 일부 수정하는 보완책이 마련될 지, 아니면 현행 로카르노 분류를 전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지, 그리고 언제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즉, 향후에 매우 큰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 로카르노 분류를 법으로서 디자인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위험스러운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인테리어 디자인과 로카르노 분류

건축물/인테리어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에 포섭하는 것은,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을 보더라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로카르노 분류상의 물품을 우리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인테리어 디자인이 우리 법의 보호대상으로 포섭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⁴⁸⁰. 디자인의 정의에 로카르노 분류 자체를 포함할 것인가에

법상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다.

⁴⁷⁸ The Association of European Trade Mark Owners; 1987년에 설립되고 750명 이상의 상표권자와 상표/디자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합으로서 유럽연합과 국제기구에 대하여 상표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⁴⁷⁹ <http://oami.europa.eu/en/office/newsletter/09004.htm#CD1>

<http://class-99.blogspot.com/2009/05/according-to-article-in-alicante-news.html>

⁴⁸⁰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로카르노 분류를 채택한 것은 아니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아래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하여는 다른 어떠한 입법이 가능할 것이며 그 중 어떠한 입법방식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살펴본다.

2. 가능한 입법론의 검토

(1) 디자인의 정의에 인테리어 디자인을 추가하는 방안

㉠ 입법안

글자체를 물품의 일종으로 의제하여 보호한 입법방식⁴⁸¹과 같이, 인테리어 디자인도 보호대상으로서 물품의 일종인 것으로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물품[물품의 부분(제 12 조를 제외한다), 인테리어 디자인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디자인을 정의하는 것이다.

㉡ 검토

그런데, 이러한 입법은 지나치게 인위적인 느낌을 준다. 공간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다른 방식으로는 보호대상에 포섭할 수 없는 글자체와는 달리, 인테리어 디자인은 여하한 방식으로든 공간적이고 시각적인 구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입법을 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의문이다.

한편, 이와 같이 입법을 하게 되는 경우, 건물 등 부동산의 보호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건물도 이러한 예외로서 법문에 포함하여 디자인을 정의해야 하게 되는 등, 새로이 보호대상에 포섭하게 될 대상마다 디자인의 정의에 등장하게 되어 법문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물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 입법안

며, 로카르노 분류의 채택 상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포함하게 되는 결과적인 것이다.

⁴⁸¹ 2004년법(2004.12.31 개정 법률 제7289호)에서는, 글자체도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물품의 정의가 개정되었다. 글자체 자체는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으로 볼 수는 없으나,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달리 보호범위에 포함시킬 방도가 없어 글자체 자체를 물품으로 의제하여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 2 조에 “물품”의 정의를 더하여 규정하고, 이에 인테리어 디자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디자인보호법 제 2 조의 제 1 의 3 목으로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유체 동산⁴⁸²을 원칙으로 하고 글자체와 인테리어 디자인을 포함한다”는 등과 같이 물품의 정의를 신설하는 것이다.

㉞ 외국의 입법사례

이와 같이 “물품”을 정의하고 있는 입법은 공동체디자인법에서 발견된다. CDR 제 3 조(b)에서는 “제품이란 여하한 산업적 또는 수공업적 물품을 말한다 - 특히 복합제품에 조립되는 부품, 포장, 차림새, 그래픽 심볼 및 글자체를 포함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은 포함하지 않는다”⁴⁸³라고 보호대상이 되는 제품을 정의하고 있다.

㉟ 검토

그런데, 후에 살펴보겠지만, 인테리어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일부라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하게 된다면 독립성이 있는 유체 동산이라는 물품의 개념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⁴⁸⁴.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입법을 하려면, 그 구체적인 표현도 위와는 달리 새로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디자인의 정의는 그대로 두고, 물품 구분에서 포섭하는 방안

㉠ 입법안

현행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정의는 그대로 두고, 로카르노 분류를 주분류 또는 보조분류로 채택함으로써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실질적으로 포섭하는 방안이다. 즉, 현행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물품의 분류를 별표로 정하고 있는 것과 대등하게 혹은 이를 대체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로카르노 분류의 국어로 번역된 물품 목록을 새로운 별표로 규정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⁴⁸² 현행 심사기준 상의 물품의 정의이다.

⁴⁸³ CDR 3(b) “product” means any industrial or handicraft item, including inter alia parts intended to be assembled into a complex product, packaging, get-up, graphic symbols and typographic typefaces, but excluding computer programs;

⁴⁸⁴ 인테리어 디자인과는 독립성, 동산성, 등이 문제 된다.

㉞ 타당성

이렇게 함으로써, 로카르노 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우리 국민은 우리 법이나 시행규칙의 개정만을 참고하면 되므로 편리하고, 쉽게 적용하기 힘든 정도로 대폭적인 개정이 있는 경우에도 충실히 검토한 후에 개정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로카르노 협정의 가입이 로카르노 분류상의 물품의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⁴⁸⁵, 유럽도 로카르노 분류 그대로가 아닌 유로로카르노로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입법방식이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㉟ 판례와의 관계

법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고, 여기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법률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포함된다. 따라서, 기존의 판례는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이라는 종전의 실무를 기초로 하여왔으나, 이러한 개정에 따르면 새로이 시행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물품을 그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㊱ 물품의 정의와의 관계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으로 현행 심사기준에 정하고 있는 물품의 정의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으로 포함하게 된다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⁴⁸⁶. 보호대상은 시대에 따라

⁴⁸⁵ 로카르노 협정 제2조제1항: 이 협정이 규정한 요건을 전제로 국제분류는 행정적 성격만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분류의 법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특히 국제분류는 특별동맹의 회원국의 디자인에 부여된 보호의 성질과 범위에 관련하여 특별동맹의 회원국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Subject to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is Agreement,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hall be solely of an administrative character. Nevertheless, each country may attribute to it the legal scope which it considers appropriate.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hall not bind the countries of the Special Union as regards the nature and scope of the protection afforded to the design in those countries.)

⁴⁸⁶ 물론, 현행 심사기준에서는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라 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 원칙의 예외로서 인테리어 디자인이 보호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작은 수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인테리어 디자인만을 고려한 지나치게 인위적인 변경인 것으로 이해된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이를 통하여 예상되는 물품성

변천되는 것이고, 우리 현행법의 경우 일본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최근에서야 미국과 유럽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개념정립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을 법에 정의하는 것보다는 심사기준에 정의하여, 시간을 두고 개념을 정립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의 변경도 심사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2절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가 물품의 개념에 미치는 영향

1. 현재의 실무⁴⁸⁷

(1) 법과 심사기준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물품[...⁴⁸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⁴⁸⁹을 디자인으로 정의함으로써,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이 되기 위하여는 “물품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물품성에 관하여, 디자인심사기준⁴⁹⁰은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라 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독립성, 구체성, 유체물성, 및 “동산성”이 필요한 것으로 하고 있다.

(2) 판례

판례⁴⁹¹ 또한, “의장법 제 2 조 제 1 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러한 심사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3) 정리

이와 같은 현재의 실무에서는, 건물 등 부동산은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그 일부로서 인테리어 디자인도

⁴⁸⁷ 더욱 상세하게는, 이 연구보고서 제2장제2절 건축/인테리어 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의 취급 참고.

⁴⁸⁸ 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⁴⁸⁹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

⁴⁹⁰ 2010.01.01자 디자인심사기준 제2조(디자인의 성립요건)

⁴⁹¹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후274 판결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한편,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상에 정하여져 있는데, 법에서는 이러한 물품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⁴⁹²하고 있고, 이 물품 목록에는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표시가 없다. 따라서, 현행법 상으로는 인테리어 디자인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새로이 포섭한다면, 이러한 현행 실무 및 판례에서 받아들이는 물품성의 정의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2. 동산성

(1) 동산성의 폐기 여부

인테리어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하여, 동산성을 버려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은 부동산의 일부로서 그 내부의 장식적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동산으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인테리어 디자인은 그 예외로서 보호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대상에 포섭하기 위하여 동산성을 버린다면, 이는 건물 등 부동산의 디자인도 새로이 보호하게 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2) 건물의 외부와 내부

현행 인테리어 사업의 실무에 따르면, 특히 건물의 내외부와 통하는 1층 점포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그 점포의 내부뿐만 아니라 건물의 외부에서 보여지는 디자인도 포함하여 디자인되는 것이 통상적이다⁴⁹³.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건물의 “내부”만이 디자인으로 보호되고 건물의 “외부”에서 보이는 장식적 특징⁴⁹⁴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인위적인 구분이 될 것이다. 또한, 수영장의 디자인이 실내이면 보호되고 실외이면 보호되지

⁴⁹² 디자인보호법 제11조(1디자인1디자인등록출원)제2항

⁴⁹³ 즉, 건물의 외부에서 확인이 곤란한 고층이나 지하층의 경우 점포 “외부”의 디자인이 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실상 점포 내부에 대하여만 인테리어가 디자인 및 시행되는 것에 불과하고, 점포 내부 및 외부가 함께 디자인될 수 있는 1층 점포의 경우 그 내외부가 함께 디자인되고 시공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다.

⁴⁹⁴ 예를 들어 점포 입구의 디자인 등

않는다⁴⁹⁵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게 되는 등, 실내인지 실외인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인위적인 경우도 있다⁴⁹⁶.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는 건물의 물리적인 내부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외부라 하더라도 인테리어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외부외관의 장식적 디자인도 그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건물과 인테리어

그런데, 점포의 입구 등 외부 외관이 보호된다면, 건물의 외관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게 된다. 건물의 관점에서는 그 일부라 할 수 있는 1 층 점포의 외관만 보호되고 건물 자체의 외관은 보호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 할 수 있고, 특히 단층 건물의 경우 점포의 외관이 곧 건물의 외관인 셈이 되어 단층 건물은 외관이 보호되고 복층 건물은 외관이 보호되지 않는 기이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건물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실무상 업계에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4) 건물의 디자인과 인테리어 디자인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동산의 예외로서만 보호하게 되는 것은 공중이 이해하기 힘들게 된다. 결국, 동산의 예외로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률적 구조보다는, 건물 등 부동산을 디자인의 보호대상에 포섭하고 그

⁴⁹⁵ 예를 들어, 아래의 반얀트리 클럽&스파의 수영장이 실내수영장의 디자인이면 등록되어 보호되고 실외 수영장이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이해하기 힘



들 것이다.

⁴⁹⁶ 예를 들어, 제주대학병원의 아래 디자인은 이 것만 보아서는 실내인지 실외인지 구분하기 힘든데, 실내라면 보호되고 실외라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입법구성은 이해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건물의 일부로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구성이 논리적 모순을 피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5) 건물 등 부동산의 장식적 특징 보호

한편, 부동산을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는 이유에 관하여 어디서도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을 발견하기 힘들다. 단지 우리 디자인보호법이 일본의 입법을 따랐다 연혁적인 이유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부동산의 장식적 특징도 당연히 보호되는 것으로 새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물 등 부동산을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6) 정리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는, 반드시 건물의 물리적인 내부에 한정된 보호라 해석하는 것은 현실상 받아들이기 힘들고, 건물의 외부에 대하여도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건물의 일부라 아닌 전부로서의 외관도 보호대상에 포섭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고, 결국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는 건물 등 부동산의 보호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독립성

(1) 현행 심사기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으로 물품을 정의하고 있는 현행 심사기준에서는,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양말의 뒷굽모양, 병 주둥이 등)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⁴⁹⁷. 물품으로 기재되기 위하여는 그 물품은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문제의 제기

그런데,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인테리어 디자인은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것인가에 의문이 있다. 특정한 점포의 인테리어만을 사고

⁴⁹⁷ 디자인심사기준 제2조제2항1.마.

과는 것이 현실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⁴⁹⁸.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room”이나 “hotel room”을 들 수 있는데⁴⁹⁹, 이들은 인테리어 디자인으로서 새로이 보호대상에 포섭될 것이 분명하나, 이들은 독립적으로 거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힘들다⁵⁰⁰. 따라서, 현행 심사기준상의 “독립성” 즉,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하여도 수정이나 폐기가 필요하게 된다.

(3) 다른 나라의 입법례

물품의 “독립성” 즉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질에 관하여 미국과 유럽은 별다른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법에서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디자인을 발명한 자는 이 법률에 의한 조건과 요건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물품이 필요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⁵⁰¹, 이에 대하여 디자인의 명칭은 특정한 물품을 지칭하여야 한다⁵⁰²고 하여 물품명 기재의 특정성을 요구할 뿐이고, 디자인의 명칭은 디자인이 화체된 물품을 공중에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사용되는 명칭으로 특정하는 것⁵⁰³으로 사용할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건물”⁵⁰⁴과 같은 전형적인 명칭뿐만 아니라, 점포 인테리어⁵⁰⁵, 식당건물 인테리어⁵⁰⁶, 호텔 룸⁵⁰⁷, 장난감 방 디스플레이⁵⁰⁸, 사무공간⁵⁰⁹,

⁴⁹⁸ 이들의 인테리어에 대하여 독립한 설계계약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독립한 계약은 단지 설계 대상에 대한 독립한 계약일 뿐이고, 그 결과물인 인테리어에 대한 독립한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설령 병의 주동이 부분이 독립하여 디자인계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병의 주동이 부분이 독립한 판매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⁴⁹⁹ 이들은 로카르노 분류 제25-03류에 물품의 명칭으로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들이다.

⁵⁰⁰ 최근 호텔 룸을 객실별로 분양하는 사례가 보이기는 하나(예: 해운대의 sea cloud 호텔), 이와 같이 객실별로 분양하는 경우에만 보호된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논리구성이고, 특히 별도로 분양이 가능한 부분은 보호되고 아닌 부분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는 논리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⁵⁰¹ 35 U.S.C. 171 Whoever invents any new, original and ornamental design for an article of manufacture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⁵⁰² 37 C.F.R. 1.153 (a) The title of the design must designate the particular article.

⁵⁰³ MPEP 1503.01 명세서 I. 전제부 및 명칭; 두번째 문단

⁵⁰⁴ building

⁵⁰⁵ D639,453 (Store interior with storefront)

⁵⁰⁶ D475,467 (Restaurant building interior)

⁵⁰⁷ D641,494 등

⁵⁰⁸ D274,343 (Toy room display)

⁵⁰⁹ D433,151 (Office Workspace), 등

디스코텍 건물⁵¹⁰, 건물구조⁵¹¹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제품이란 여하한 산업적 또는 수공업적 물품을 말한다”고 하면서,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물품을 유로로카르노 분류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호텔룸(hotel rooms), 룸(rooms), 워시룸(washrooms) 등 독립거래의 대상이라 할 수 없는 항목들이 물품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4) 검토

그 속성상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되지 않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대상에 포섭하면서 물품의 독립성의 조건을 유지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특히, 우리 실무상, 디자인이 물품 자체의 외관을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물품성을 해석하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⁵¹². 따라서, 이러한 우리 실무상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하기 위하여는, 출원서에 기재되는 물품의 독립성을 버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유체물성

(1) 현행의 규정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으로 물품을 정의하고 있는 현행 심사기준에서는, 물품은 “유체물”일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심사기준에서는,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기체 액체, 전기, 광, 열, 음향 등)⁵¹³ 과 분상물 또는 분상물의 집합으로 된 것(시멘트, 설탕 등)⁵¹⁴ 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물품으로 기재되기 위하여는 그 물품은 특정한 형체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인테리어 디자인과의 관계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 구체적인 형체를 가지는 것이 분명하므로,

⁵¹⁰ D247,183 (Discotheque building)

⁵¹¹ Building structure; D537,953; D515,221 등

⁵¹² 미국의 경우, 물품의 디자인이라 하지 않고, 물품에 대한 디자인이라고 하여, 물품 자체의 디자인일 필요는 없고 그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거나 화체되기만 하면 물품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우리 실무상의 해석에 따른 물품성의 조건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디자인과 물품성과의 관계에 관하여 후술한다.

⁵¹³ 디자인심사기준 제2조제2항1.나.

⁵¹⁴ 디자인심사기준 제2조제2항1.다.

유체물성을 가지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빛을 가함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 등에 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의 여러 문제 중 하나로서 후에 살펴보기로 한다.

5. 시각성

(1) 우리 실무에 따른 시각성의 정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이 되기 위하여는,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디자인의 “시각성”이 요구된다. 우리 디자인심사기준에 따르면 “시각을 통하여”라 함은,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⁵¹⁵ 고 하면서,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곳, 즉,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 볼 수 있는 곳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예외적으로 두껍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⁵¹⁶.

(2) 실무상 규정에 대한 검토

그런데,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곳을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예외적으로 두껍을 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이러한 표현은,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이 그 크기상 소형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법률은 “시각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커다란 물품의 내부에 들어가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디자인이라도 등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자동차, 이동식 조립주택 등과 같이 비교적 대형의 크기로서 사람이 그 속에서 실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현행 실무상으로도 여러가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사기준의 표현은, “다.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 볼 수 있는 곳 다만, 물품 자체의 내부에 들어가거나 두껍을 여는 것과 같이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의 대상이 된다.”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이 수정함으로써, 인테리어 디자인 또는 건물을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에 포섭하는 경우에 그 내부도 보호됨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⁵¹⁵ 디자인심사기준 제2조제2항3.

⁵¹⁶ 디자인심사기준 제2조제2항3.다.

6. 정리

(1) 새로운 정의의 필요

현행 심사기준에서 물품성으로서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이라는 정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부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동산성과 독립성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물품의 정의에서 유체물성만 남겨지게 되는데, 이러한 물품의 정의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물품의 정의를 새로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새로운 정의 형태

새로운 물품의 정의에 관하여는, 로카르노 분류상의 여러 물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간을 두고 정의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⁵¹⁷. 법률의 규정에 제품을 정의하고 있는 유럽 공동체디자인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물품이란 여하한 공업적 제품으로서 수공업적 제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예로서 건물이나 인테리어 디자인 등 현행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것들이나, 글자체 등 모호한 것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다.

(3) 건물 등 부동산과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오해

㉠ 공업상 이용가능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의문

개정안에 포함될 건축물 등 부동산은 로카르노 분류 제 25-03 류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개념과는 모순되는 것이라 “공업”이라는 개념에 의하여 이러한 물품에 대한 보호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물품으로 보호대상을 넓히려면 공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의 폐지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⁵¹⁸.

⁵¹⁷ 이러한 면에서, 물품의 정의를 법에 새로이 도입하는 것보다는, 심사기준 상에서 그 정의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⁵¹⁸ 지식과 권리 제13호(2010.10 발행) p. 90~91; 정책논단_2010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의 의미와 주요 쟁점

㉞ 공업과 산업의 사전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로서 “공업”이란, “원료를 인력이나 기계력으로 가공하여 유용한 물자를 만드는 산업. 예전에는 주로 가내 공업이었으나 기계의 발달에 따라 대규모로 되었다. 제조업, 건설업⁵¹⁹ 따위의 제 2 차 산업을 이르는 말”⁵²⁰ 이다.

한편, 사전적인 의미로서 “산업”이란,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적 기업이나 조직. 농업/목축업/임업/광업/공업을 비롯한 유형물의 생산 이외에 상업/금융업/운수업/서비스업 따위와 같이 생산에 직접 결부되지 않으나 국민 경제에 불가결한 사업도 포함”⁵²¹하는 말이다.

㉟ 특허법상 산업과 디자인보호법상 공업의 구분

특허법에서 말하는 산업이란, 상업/금융업/서비스업 등의 다양한 산업형태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공업이란 넓은 의미의 산업보다는 좁은 개념, 즉 3 차산업 등을 제외한 “생산”에 관한 산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면 그 구분이 명확하다.

㊱ 정리

따라서, 부동산의 디자인을 보호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공업의 의미에 제 2 차 산업인 건설업을 포함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로써 공업상 이용가능성 대신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보인다.

7. 토론 - 디자인과 물품과의 관계

(1) 우리 실무에 따른 물품과 디자인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디자인을 정의하고

⁵¹⁹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제2차 산업인 건설업은 공업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⁵²⁰ Naver국어사전; Daum 국어사전에서도 같다

⁵²¹ Naver국어사전; Daum 국어사전에서도 같다

있다.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이 되려면, 이러한 정의에 따라 물품 자체의 형태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소위 상업적 디자인은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다⁵²². 또한, 화상디자인에 대하여도 물품을 컴퓨터 모니터 등 그 화상디자인이 표시될 매체로 하여야 하게 된다⁵²³. 이는 법률의 규정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²⁴.

(2) 미국 실무에 따른 물품과 디자인

미국특허법에서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디자인을 발명한 자는 이 법률에 의한 조건과 요건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다”⁵²⁵고 하여, 디자인 자체를 정의하지는 않고, 보호대상이 되려면 디자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관하여만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이를 해석하는 심사기준에서는, “35 U.S.C. 171 은 물품의 디자인이라 하지 않고 물품에 대한 디자인이라 하고 있으며, 상품의 구성뿐만 아니라 표면 장식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장식적 디자인을 포함한다.”⁵²⁶고 한다.

따라서, 물품과의 건련성은 필요하나 물품 자체의 외관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아이콘 자체는 보호대상이 아니나,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아이콘은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고, “icon for a computer screen” 등과 같이, 디자인의 대상이 “icon”이고 단지 그 적용대상이 컴퓨터 스크린으로서 물품성을 구비하게 되는 것이고, “computer screen with icon”과 같이 computer screen 을 청구하는 형식이 아니다. 즉, 디자인은 특정한 물품을 전제로 하여 창작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창작된 디자인이 물품에 적용될 것을

⁵²² 상업적 디자인의 예로서 심사기준은 “물품자체의 형태가 아닌 것”(예: 손수건 또는 타월을 접어서 이루어진 꽃모양과 같이 상업적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디자인으로서 그 물품 자체의 형태로 볼 수 없는 것)은 디자인 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고 있다.

⁵²³ 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디자인한 것은 화상디자인인데 출원시 물품은 컴퓨터 모니터 등으로 제출하게 되어 컴퓨터 모니터를 디자인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되므로 출원실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⁵²⁴ 알사탕의 디자인은 알사탕 자체의 것이어야 하고, 포장지에 쌓여 판매되는 상태 대로의 사탕을 출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완구나 인형의 경우도 판매되는 완구나 인형 그대로가 아닌 각 완구나 각 인형 각각을 출원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된다.

⁵²⁵ 35 U.S.C. 171 Whoever invents any new, original and ornamental design for an article of manufacture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⁵²⁶ MPEP 1502 두번째 문단: “[35 U.S.C.] 171 refers, not to the design of an article, but to the design for an article, and is inclusive of ornamental designs of all kinds including surface ornamentation as well as configuration of goods.” In re Zahn, 617 F.2d 261, 204 USPQ 988 (CCPA 1980)

특허법상의 보호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3) 물품성과 디자인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 실무상에서도 디자인과 물품성에서 디자인을 “물품 자체의 외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물품에 화체되거나 적용되는 외관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물품의 상업적 디자인도 보호할 여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공업적으로 생산되는 포장된 제품의 중국적인 디자인도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⁵²⁷.

(4) 우리 실무의 물품의 표시와 미국 실무의 디자인의 명칭

다만, 미국 실무에서 디자인의 명칭은 “디자인이 화체된 물품을 공중에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사용되는 명칭으로 특정하는 것”⁵²⁸으로 하고는 있으나, 그 본질상 발명의 명칭인 것이고 물품의 기재가 아니다. 따라서, 그 본질상 미국특허분류상의 물품의 명칭만을 기재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을 특정하기만 하면 디자인을 표현하는 데에 자유가 있다.

(5) 유럽 실무상 제품의 표시

한편 유럽에서는 제품의 표시(indication of product)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실무에서는 물품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어 미국실무와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와 유사한 정도로 물품의 기재를 요구하는 유럽 실무에서도 로카르노 분류상에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제품명 이외의 명칭을 사용한 것이 발견⁵²⁹ 되고, 원칙적으로 바람직하게는 로카르노 또는 유로로카르노 분류의

⁵²⁷ 손수건의 접힌 꽃모양 등 공업적이지 않고 상업적인 디자인은 디자인의 정의가 아닌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의하여 거절될 수 있을 것이고, 설령 이러한 디자인이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것으로서 등록되는 경우라도, 테이블 보 등에 수작업으로 상업적으로 구현되는 경우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해하여 권리 행사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⁵²⁸ MPEP 1503.01 명세서 I. 전제부 및 명칭; 두번째 문단

⁵²⁹ 로카르노 분류 외의 명칭을 사용한 인테리어 디자인의 예로,

001053359-0008 Video-conferencing booths 	001044499-0001 Commercial premises 	001044499-0002 Commercial premises 
--	--	---

목록에 나타나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지만⁵³⁰, 이는 로카르노 분류의 목록에 나타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유럽동맹국 각국 언어로의 공보발행이 편리해지기 때문으로서, 로카르노 분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출원인의 편의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권장되는 사항일 뿐이고, 유로로카르노 분류 내의 제품명을 선택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⁵³¹.

(6) 정리

이러한 외국의 실무를 고려하면, 우리 법에 따른 물품의 기재에 있어서도 물품의 명칭을 지나치게 물품의 분류상의 물품명으로 한정하여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⁵³⁰ CDIR 제3조(3)

⁵³¹ 이러한 취지의 심결로는, Cash Register case; OHIM 항고심판부 심결 R 1421/2006-3 (2007.07.05.)

제3절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방안

1. 분류

(1) 서론

인테리어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에 포섭하는 경우, 이를 어떠한 물품으로 하여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련된 물품으로는 제 25-03 류의 가옥, 창고 및 그 밖의 건축물⁵³²의 내부로서 부분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고, 한편 제 32-00 류의 차림새[실내배치]⁵³³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미국의 실무

로카르노 분류를 주 분류로 채택하고 있지 않은 미국에서는 독자적인 디자인특허분류를 채택하고 있고, 여기에는 로카르노 제 32-00 류와 같은 차림새[실내배치]와 같은 물품분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로카르노 제 25-03 류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D25 류로서 “Building units and construction elements”를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실무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은 대부분 D25 류로서 보호된다.

(3) 유럽의 실무⁵³⁴

로카르노 분류를 주 분류로 채택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제 32.00 류와 제 25.03 류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등록이 발견되고 있다. 다만, 제 25.03 류보다는 제 32.00 류에 등록되는 인테리어 디자인이 많으며⁵³⁵, 이들은 혼재하여 등록되기도 하는 등 분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제 25.03 류에 등록된 인테리어 디자인은 복수의 도면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어, 제 32.00 류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비하여 더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도시하는 경향이 있다.

⁵³² Houses, garages and other buildings

⁵³³ 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

⁵³⁴ 본 연구보고서 제4장 제2절 4. “유럽 등록공동체디자인 조사결과의 시사점” 참고

⁵³⁵ 조사결과 제25.03류에 분류된 인테리어 디자인보다 제32.00류에 분류된 인테리어 디자인의 수가 약2배에 이른다.

(4) 검토

㉠ 검토해야 할 문제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하는 경우, 건물 등의 일부에 대한 디자인으로서의 보호형식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⁵³⁶, 이에 따르면 로카르노 분류 제 25-03 류로서의 출원과 등록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로카르노 분류 제 32-00 류에 차림새[실내배치]로서의 보호를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⁵³⁷.

㉡ 제 25-03 류만의 보호를 허용하는 경우

로카르노 분류 제 25-03 류만의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인테리어 디자인은 건물 등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될 것이고 출원시 물품은 제 25-03 류의 구체적인 물품, 즉, 건물, 가옥, 모듈식 건물, 창고, 등을 명칭으로 하여 그 내부에 관한 부분디자인으로서 출원되고 등록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출원된 물품의 명칭⁵³⁸에 따라 보호범위가 제한해석될 것이다⁵³⁹.

㉢ 제 32-00 류의 보호를 허용하는 경우

한편, 로카르노 분류 제 32-00 류에 따른 등록의 경우, 인테리어 디자인은 그 자체로서 물품으로 취급될 것이고, 출원시 제 32-00 류의 차림새[실내배치]를 물품의 명칭으로 기재될 것이다. 이는, 여하한 건물의 실내⁵⁴⁰라도 문언상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우리 현행실무상의 보호범위 면에서는, 형식적으로라도 제 32-00 류에 인테리어 디자인을 출원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⁵⁴¹.

⁵³⁶ 이 연구보고서 제6장 제2절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가 물품의 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 “2. 동산성” 참고

⁵³⁷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물품은 이로써 동맹국에서의 보호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2-00류의 물품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⁵³⁸ 즉, 건물, 가옥, 방갈로 등

⁵³⁹ 다만, 유사물품까지 보호범위를 확장하는 현행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범위를 기초로, 이들 다른 형태의 건물들이 유사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건물에 동일 유사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⁵⁴⁰ 즉, 호텔인지, 오피스텔인지, 주거용 아파트인지, 일반적인 건물인지, 가옥인지, 방갈로인지 등 인테리어의 대상이 된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⁵⁴¹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반드시 그 표시된 제품으로 한정하지 않는 유럽의 실무에 따르면, 어느 류에 출원하는가에 따라 보호범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㉔ 제 25-03 류와 제 32 류 양자의 보호를 허용하는 경우

로카르노 분류 제 25-03 류와 제 32-00 류 어느 분류에라도 인테리어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느 분류라도 등록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물품과는 달리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하여는 복수의 물품 중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게 된다.

㉕ 검토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를 혼용하고 있는 우리 실무상 제 25 류와 제 32 류를 무심사 또는 심사 중 하나로 통일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건물 등의 외관은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오직 인테리어 디자인만을 보호하는 입법이라면 인테리어 디자인을 제 32 류로 하여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건물 등의 외관도 제 25-03 류로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이라면 인테리어 디자인은 제 25-03 류로서 보호하는 것이 건물과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통일성 있는 입법이 될 것이다.

유럽의 경우 기재된 제품과는 원칙적으로 무관하게 보호범위가 결정되고⁵⁴², 복수 디자인등록출원은 하나의 류구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 32 류는 다른 류와 함께 출원하여도 무방한 등 특칙이 있다. 그러나, 우리 현행 제도 상으로는 기재된 물품으로 보호범위가 결정되고 있고⁵⁴³, 하나의 류구분 내에서 할 수 있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서도 제 32 류를 다른 류와 함께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두 분류로 각각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물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호를 두터이 하는 것이 예상된다.

다만, 인테리어 디자인을 제 25-03 류와 제 32-00 류 두 분류 모두로 보호하는 경우라도, 제 25-03 류에 따른 물품의 유사범위를 해석함에 의하여 두 분류에 따른 보호범위가 실질상 유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므로⁵⁴⁴, 어느 분류로서

⁵⁴² 따라서, 유로로카르노 제25.03류로 등록되거나 제32.00류로 등록되거나 실질상 그 보호범위에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⁵⁴³ 다만, 개정안 제43조에서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일반 수요자에게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 모두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물품과 그 물품류의 구분 그 자체는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보호범위에서 물품성의 한계를 완화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유럽과 유사한 범위로 보호범위가 인정될 것이 예상된다.

⁵⁴⁴ 예를 들어, 제25-03류의 물품으로서 건물, 가옥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인테리어 디자

보호할 것인가 혹은 두 분류 모두에 의하여 보호할 것인가는, 건물도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적 판단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1) 서론

우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고, 물품류구분에 따라서 무심사물품으로 하여 무심사등록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실무상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한다면 이러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심사주의에 의하여 보호할 것인가 무심사주의에 의하여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심사에 의하여 보호할 것인가 무심사로 등록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문제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얻어지는 현실상 기대되는 결과를 검토해봄으로써 어떠한 정책이 바람직한가 살펴본다.

(2) 무심사등록하는 경우

인테리어 디자인을 무심사등록하게 되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무심사등록 디자인의 여러 우려사항이 동일하게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염려되는 것은 부실권리의 양산과 권리 남용적 등록이다. 부실권리의 남용이란, 심사주의에 의하였다면 등록될 수 없었던 디자인이 대거 등록되어 디자인등록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⁵⁴⁵. 권리남용적 등록이란,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디자인이 등록되어 이를 행사함으로써 업계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⁵⁴⁶.

한편,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하여 무심사주의를 취하는 경우, 기존의 제 25 류에

인을 출원하는 경우 건물과 가옥 등을 유사물품으로 고려하게 된다면 실질상 인테리어 디자인을 물품으로 하여 출원하는 것과 같은 보호범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⁵⁴⁵ 심사가 완벽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 무심사등록이라는 자체에서 예상되는 우려이다. 그러나, 출원되는 디자인의 90% 이상이 등록되고, 엄격한 심사주의를 취하는 미국에서도 신규성/비자명성의 이유로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비율이 1.2%에 불과하다는 점(“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제320면; 2010 특허청)을 고려하면, 그 염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⁵⁴⁶ 이 역시, 심사가 완벽할 것을 전제로 하여, 무심사등록이라는 속성 자체에서 예상되는 우려이다.

포함된 건축자재 등에 대한 출원의 처리에서도 무심사주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이는 기존의 심사주의를 취하던 물품에 대하여 무심사주의로 변경해야 함을 의미한다.

(3) 심사를 하는 경우

한편, 실체심사를 하는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 년 정도 소요될 것⁵⁴⁷이 예상된다. 이론적으로는 심사를 통하여 등록되는 경우, 거절이유를 모두 해소한, 즉, 신규성과 창작성을 갖춘 디자인만이 등록될 것이다⁵⁴⁸.

한편,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하여 심사주의를 취하는 경우,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하여 제 32-00 류로의 출원을 허용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무심사로 취급될 것이 기대되는 제 32-00 류의 다른 물품⁵⁴⁹들과는 달리 인테리어 디자인⁵⁵⁰을 달리 심사하는 것이 곤란할 것이고, 따라서 이들 물품에 대하여도 심사주의를 취해야 하게 될 것이다.

(4) 무심사와 심사의 혼용

예를 들어, 제 25-03 류로 출원된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고, 제 32-00 류로 출원된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하여는 무심사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물품의 기재는 출원인이 출원서에 기재하고, 그 물품의 분류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부여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출원된 인테리어 디자인이 심사될 것인가 무심사로 등록될 것인가가 심사관의 직권에 따라 운명이 나뉘게 될 것이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물품의 기재뿐만 아니라 물품의 분류도 출원인이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⁵⁵¹, 이에 따르는 경우 출원된 인테리어 디자인을 심사할 것인가의 여부를 출원인이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⁵⁴⁷ 1차심사기간이 약8개월 정도 소요되고, 의견제출 및 등록결정을 거쳐 실제 등록까지는 약1년 정도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

⁵⁴⁸ 그러나, 심사의 통계상, 우리나라와 미국은 출원된 디자인의 90% 정도가 등록되고, 일본은 출원된 디자인의 약80%가 등록되는데, 이 중 신규성과 창작성 등의 실제적인 이유로 거절되는 비율이 약1~2%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원된 디자인 중에서 실제적인 이유로 등록이 배척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고, 단지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무심사등록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⁵⁴⁹ 그래픽 심벌, 로고, 표면 문양, 평면 패턴 등

⁵⁵⁰ 즉, 차림새[실내배치](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을 물품으로 하여 출원되는 출원

⁵⁵¹ 개정안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

(5) 업계의 의견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와의 공청회⁵⁵²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 참석자들에게 ① 미국과 유럽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이 보호되는 예를 설명하고, ② 심사주의인 미국에서의 등록과 권리행사, ③ 무심사주의인 유럽에서의 등록과 권리행사 및 무효화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 참석자들은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하여는 유럽식의 무심사등록주의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이유로는, ① 업계의 관행상 권리 남용적 등록을 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업계에서 나쁜 평판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을 것이므로 이러한 무리한 시도를 의도적으로 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점, ②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 쉽게 모방 시공이 가능하여 조속한 등록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 등이 주된 이유다.

(6) 검토의견

㉠ 인테리어 디자인의 가능한 분류

인테리어 디자인은 제 25-03 류에도 해당할 수 있음과 아울러 제 32-00 류에도 해당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 제 32 류에서의 출원이 허용되는 경우

인테리어 디자인이 출원될 수 있는 분류에 제 32 류가 포함된다면,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 제 25-03 류로서의 출원을 허용하는 경우라도 무심사주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서 무심사와 심사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속성의 디자인에 대하여 어떤 디자인은 심사등록되고 어떤 디자인은 무심사등록된다면, 이는 등록디자인을 조사하고 검토하는 공중의 입장에서 혼란이 초래될 것이 예상된다.

㉢ 제 25-03 류 만으로 출원을 허용하는 경우

⁵⁵² 2011.06.14. 한국 실내건축가 협회(KOSID; Korean Society of Interior Architects/Designers); 및 2011.07.14. 건축가 협회

이 경우에는, 제 25 류에 대하여 무심사주의를 취할 것인가의 정책적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제 25 류는 건물 등 부동산 자체뿐만 아니라, 이들의 건축에 들어가는 자재류도 포함되고 있으며, 현행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이동건물(prefabricated building)도 보호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들 현행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들은 현재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㉔ 검토

인테리어 디자인은 그 등록요건 면에서 다른 물품과 마찬가지로 신규성, 창작성 등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신규성과 창작성의 판단에서 공지디자인은 기존 출원/등록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공지공용되었거나⁵⁵³ 문헌공지된 디자인⁵⁵⁴이면 공지디자인에 포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심사관이 국내외의 공지공용된 디자인을 충실히 입수하여 심사에 반영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공지디자인으로 심사에 사용되는 디자인은 국내외 전문지 등에 공개된 디자인이나, 다른 나라의 디자인등록이나 특허문헌에 나타난 디자인에 국한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등록된 외국의 사례들은 앞서 외국의 등록사례 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수가 많지 않고, 국내외 전문지 등에 나타난 디자인 역시 현실에서 공지공용된 인테리어 디자인에 비하면 그 수가 미미할 것이다.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하여 형식상 심사주의를 취한다고 하여도 실질상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 무심사주의를 취하는 것이 심사주의를 취하는 것에 비하여 실질상 신뢰성 면에서 손실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등록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서 신속히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⁵⁵³ 현재 국내 또는 국외에서 실제로 건축된 건물 등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예로 들 수 있다.

⁵⁵⁴ 국내외 건축/인테리어 관련 전문지에 소개되거나, 건축설계공모에 당선되어 공표되는 등으로 문헌으로 공표된 디자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인테리어 디자인의 성격 - 구성물품과의 관계

(1) 서론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이 인테리어 디자인의 속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통념상 하나의 물품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물품으로 구성되고 그 각 구성물품⁵⁵⁵도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⁵⁶. 이는 인테리어 디자인 자체를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보호하건 이를 건물의 내부에 관한 일부로서 보호하는 형식을 취하든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현행 디자인보호 실무에서 여러 물품과 그 구성물품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완성품과 부품”의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한 벌의 물품과 그 구성물품”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⁵⁵⁷. 인테리어 디자인을 어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기에 앞서, 인테리어 디자인의 물품성에 관련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의 출원은 1 디자인 1 출원주의의 예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의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1 디자인 1 출원주의와의 관계

㉠ 1 디자인 1 출원주의의 의미

1 디자인 1 출원주의란, 디자인등록출원은 1 디자인마다 1 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여야 하는 것⁵⁵⁸을 말한다.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따라 각 디자인마다 별개의 출원을 하여야 할 것을 의미한다.

㉡ 1 디자인 1 출원주의의 예외

⁵⁵⁵ 예를 들어, 인테리어 디자인을 구성하는 가구, 가전제품, 카펫 등

⁵⁵⁶ 이러한 문제는 인테리어 디자인뿐만 아니라, 건물을 물품으로 보호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된다. 예를 들어, 건물을 구성하는 창틀, 외벽용 마감재, 바닥재, 등 구성물품이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

⁵⁵⁷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체디자인으로 보고 그 구성물품에 관한 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보아, 전체 대 부분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해석은 될 수 있으나, 이는 부분이 물품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정확한 대응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완성품과 부품, 또는 한 벌의 물품과 구성물품의 관계에서 파악되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유추될 수 있는 것이라 논외로 하기로 한다.

⁵⁵⁸ 디자인보호법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이러한 1 디자인 1 출원주의에는 예외가 있다⁵⁵⁹. 첫째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무심사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같은 류에 포함된 물품에 관하여는 복수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의 경우에 각 구성물품이 개별적으로 등록이 가능함은 물론, 그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경우 특정한 물품의 경우 한 별의 물품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㉔ 인테리어 디자인과 1 디자인 1 출원주의에 대한 의문

이러한 1 디자인 1 출원주의를 고려하면, 인테리어 디자인은 1 디자인 1 출원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의문이 있다.

㉕ 인테리어 디자인과 1 디자인 1 출원주의의 예외

물품의 속성으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될 것을 전제로 하는 현행 디자인보호실무에 따른 물품의 정의에 비추어본다면, 인테리어 디자인은 물품으로서 취급되기는 힘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1 디자인 1 출원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1 디자인 1 출원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한 별의 물품에 견주어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취급의 이론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㉖ 인테리어 디자인의 1 디자인성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품의 정의에서 독립성이라는 조건을 삭제한다면, 이는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하여 물품성을 부인하게 되는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출원도 1 디자인 1 출원에 부합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한편,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안으로서, 로카르노 분류 제 25-03 류의 건물의 내부에 관한 부분디자인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 32-00 류의 차림새[실내배치]로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안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건물이 하나의 물품으로서 인테리어 디자인은 그 건물의 내부에 관한 부분디자인이므로 이는 1 디자인 1 출원주의의 예외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제 32-00 류로서

⁵⁵⁹ 완성품과 부품의 경우, 완성품이 통념상 물품으로 거래되는 것을 전제로 완성품 자체를 하나의 물품으로 취급하므로, 완성품을 물품으로 한 출원은 그 자체로 1 디자인 1 디자인등록출원에 해당하는 것이고, 1 디자인 1 출원주의의 예외라고는 할 수 없다.

“차림새[실내배치]”를 하나의 물품으로 취급하여 물품류구분에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디자인을 출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1 디자인 1 출원주의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㉑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검토방향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과 1 디자인 1 출원주의와의 관계는 현행 실무를 바탕으로 형식적으로 따질 것은 아니라 판단되며, 건물의 실내 부분으로 출원되거나, 독립하여 정의되는 차림새[실내배치]라는 물품으로 출원되거나 어느 경우라도 1 디자인 1 출원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테리어 디자인과 그 구성물품과의 관계는, 1 디자인 1 출원주의와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인테리어 디자인에 포함된 구성물품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한 별의 물품과 구성물품 vs. 완성품과 부품

㉒ 한 별의 물품의 요건과 취급

디자인보호법상 한 별의 물품으로 취급되기 위하여는⁵⁶⁰,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별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여야 하고, ② 당해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별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③ 지식경제부령⁵⁶¹으로 정한 한 별의 물품의 구분에 해당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한 별의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이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은 1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㉓ 완성품의 요건과 취급

완성품이란 부품으로 이루어진 물품이 거래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완성품은 물품류구분상 하나의 독립된 물품으로 취급되므로 그 완성품을 대상으로 하여 출원하여 등록할 수 있다.

㉔ 공통점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 별의 물품으로 보거나 완성품으로 보거나 무관하게 그

⁵⁶⁰ 디자인보호법 제12조

⁵⁶¹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별표 5] 한별 물품의 구분

구성물품/부품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선원, 확대된 선원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㉔ 차이점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 별의 물품으로 본다면, 원칙적으로 각 구성물품을 도시하여야 할 것이고, 필요시 그 조합된 상태의 물품을 도시하여야 할 것이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완성품으로 본다면 완성된 인테리어 디자인을 도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은 한 별의 물품보다는 완성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출원 실무의 이론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4) 인테리어 디자인과 구성물품과의 신규성 관계

㉑ 서론

인테리어 디자인과 구성물품⁵⁶²간에 신규성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된다. 인테리어 디자인이 전체를 이루고 그 세부 구성을 구성물품이 이루게 되므로, 구성물품이 공지된 경우에 인테리어 디자인이 공지된 것으로 볼 것인지 혹은 반대로 인테리어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에 구성물품이 공지된 것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⁵⁶³. 이에 대하여는 공지공용의 경우와 간행물 개재의 경우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㉒ 공지 인테리어에 포함된 구성물품의 공지여부에 대한 기준

완성품, 즉, 인테리어 디자인이 공지공용된 경우⁵⁶⁴, 인테리어 디자인은 완전히 공지된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구성물품도 공지공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⁵⁶⁵. 한편, 간행물에 기재된 경우, 인테리어 디자인을 구성하는

⁵⁶² 즉, 인테리어 디자인에 포함된 냉장고 등 가전제품, 탁자 등 가구, 벽면 등의 구성물품들

⁵⁶³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로 보거나, 한 별의 물품과 구성물품의 관계로 보거나 무관하게, 완성품과 부품은 비유사 물품이고 한 별의 물품과 구성물품도 비유사 물품이므로, 원칙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과 그 구성물품과의 사이에는 유사판단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만, 완성품이 공지되면 그 공지된 한도 내에서 현실적으로 부품의 일부가 공지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 즉 공지된 완성품과 부품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지된 완성품 중에서 부품에 해당하는 부분과 출원된 부품을 대비하는 것이다.

⁵⁶⁴ 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인테리어 디자인이 전시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⁵⁶⁵ 예를 들어, 모델하우스를 통해 인테리어 디자인이 전시된 경우라면, 모델하우스에

구성물품은 반드시 그 전부가 공지된 것이라 할 수 없다⁵⁶⁶. 이러한 경우, 인테리어 디자인의 공지 정도에 따라 구성물품의 공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㉟ 공지 인테리어에 전부 표현된 구성물품

인테리어 디자인이 간행물에 게재되고, 이를 통하여 구성물품(예를 들어 탁자나 의자 등)이 여러 각도로 표현됨으로서 그 구성물품이 전체적으로 공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공지로 인하여 구성물품도 공지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㊱ 공지 인테리어에 일부 표현된 구성물품

한편, 인테리어 디자인이 일부 각도에서 공지된 경우(즉, 일부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이에 포함된 구성물품은 그 세부 사항이 모두 공지된 것은 아니며, 구성물품의 특정한 방향으로의 도시가 공지된 것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이 공지되었다 하여 반드시 그 구성물품의 전부가 공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공지디자인에 표현된 구성물품의 부분을 청구하는 부분디자인출원에 관하여는 신규성 상실로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성물품 전체 디자인에 대한 출원을 신규성 상실로 거절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인테리어 디자인의 공지에 표현된 구성물품의 부분을 기초로 하여 구성물품의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㊱ 공지 구성물품으로 구성된 인테리어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을 구성하는 물품들이 모두 공지된 경우, 이들을 조합하여 얻어지는 인테리어 디자인이 공지된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구성물품의 공지로 인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이 공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⁵⁶⁷. 원칙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은 그

설치된 가구도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⁵⁶⁶ 설계도와 같은 수준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의 모든 측면에서 공지된 것이 아니라, 일부 각도에서 공지된 것일 수 있다.

⁵⁶⁷ 다만 이러한 경우에 각 구성물품이 모두 공지된 것이라면, 이들을 배열하여 얻어지는 인테리어 디자인은 단지 그 배열에 있어서만 신규성이 있으므로 그 배열의 용이창작성을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지된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가구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구성물품과는 비유사 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사이에는 유사여부의 판단이 필요치 않고, 인테리어 디자인은 단지 구성물품의 조합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배열관계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 인테리어 디자인과 신규성 상실의 예외

㉠ 서론

인테리어 디자인이 공지공용 되었다면, 이에 대한 인테리어 디자인은 이를 기초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며 기한 내에 출원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인테리어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그 인테리어 디자인에 포함된 구성물품이 그 공지된 인테리어 디자인을 기초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 문제되는 경우

만약 인테리어 디자인이 문헌공지되고 그 공지내용에는 구성물품(예를 들어, 가구)의 일부분만이 표현된 경우, 그 가구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공지로 인하여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인테리어 디자인의 공지에 대하여 신규성상실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주요부분이 공지된 그 인테리어 디자인에서의 공지내용에 의하여 신규성 상실 또는 창작성 등의 이유로 거절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 법률의 규정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 8 조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 5 조제 1 항제 1 호⁵⁶⁸ 또는 제 2 호⁵⁶⁹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동조제 1 항⁵⁷⁰ 및 제 2 항⁵⁷¹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⁵⁷²”고 정하고 있다.

⁵⁶⁸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외에서 공지공용된 디자인

⁵⁶⁹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⁵⁷⁰ 신규성

⁵⁷¹ 용이창작성

⁵⁷² 공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㉔ 법률의 해석

이러한 규정에서,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과 출원된 디자인 간에는 유사성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⁵⁷³, 따라서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이 인테리어 디자인이고 출원디자인이 그 구성물품에 관한 디자인이라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단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주장되면, 그 공지디자인은 출원디자인의 신규성 및 용이창작성의 심사에서 공지디자인의 지위를 잃게 된다⁵⁷⁴.

㉕ 정리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의 문헌공지 등으로 인하여 그 구성물품의 일부가 공지된 경우, 공지된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하여 그 구성물품의 출원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지된 인테리어 디자인은 출원된 구성물품의 심사에서 공지디자인으로 고려되지 못하므로, 출원된 구성물품의 디자인은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등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6) 인테리어 디자인과 구성물품과의 선원 관계

㉖ 법률의 규정과 취지

디자인보호법 제 16 조는,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⁵⁷⁵고 하여, 동일 유사한 출원에 대하여는 하나의 등록만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⁵⁷⁶.

㉗ 선후원 관계 성립의 요건

⁵⁷³ 종전에는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과 출원디자인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하였으나, 이는 2007년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⁵⁷⁴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해석

⁵⁷⁵ 디자인보호법 제16조제1항

⁵⁷⁶ 이를 위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두 출원 사이에 선원 관계가 성립하려면, 선출원과 후출원의 디자인 사이에 동일 또는 유사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㉔ 인테리어 디자인과 구성물품 사이의 선후원 관계 성립 여부

그런데, 인테리어 디자인과 그 구성물품은 유사물품으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이들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유사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과 그 구성물품의 디자인 중 어느 것이 선출원이고 어느 것이 후출원이고 간에, 이들 사이에는 선후원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7) 인테리어 디자인과 구성물품과의 확대된 선원 관계

㉕ 법률의 규정과 취지

디자인보호법 제 5 조제 3 항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등록공개 또는 제 23 조의 6⁵⁷⁷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함으로써, 먼저 출원된 디자인등록 출원서류에 표현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후출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을 정하고 있고, 이를 소위 확대된 선원이라고 한다.

㉖ 확대된 선원의 요건과 효과

선출원이 후출원의 출원 전에 출원되었어야 하고, 이 선출원은 후출원의 출원 후에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후출원의 디자인은 선출원의 출원서류⁵⁷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한편, 선출원 디자인과 출원 디자인의 유사성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과 그 구성물품 사이에도 확대된 선원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㉗ 확대된 선원의 적용되는 예

선출원이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것이고, 후출원이 그 인테리어 디자인의

⁵⁷⁷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⁵⁷⁸ 출원서 및 이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

구성물품에 관한 것인 경우, 후출원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선출원 인테리어 디자인의 도면에 충분히 표현되었다면, 후출원 구성물품의 디자인은 선출원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하여 확대된 선원 규정에 따라 거절된다.

선출원이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것이고, 후출원도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것인 경우⁵⁷⁹에도 확대된 선원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후출원 인테리어 디자인이 선출원 인테리어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는 않으나⁵⁸⁰ 그 일부를 이루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16 조(선원)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될 수는 없으며, 다만 후출원 인테리어 디자인이 선출원 인테리어 디자인의 일부를 이루므로 선출원 인테리어 디자인의 도면에 표현된 것이 되어 확대된 선원의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㉔ 선출원 구성물품과 후출원 인테리어 디자인 사이의 확대된 선원의 적용

선출원이 구성물품에 관한 디자인이고, 후출원이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것일 때에도 확대된 선원이 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⁵⁸¹. 예를 들어, 선출원 구성물품에 관한 도면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전체를 도시하되 그 구성물품에 대하여는 실선으로 표시하여 보호범위로 하고, 나머지 인테리어 디자인 부분에 대하여는 파선으로 표시하여 보호범위에서 배제한 경우에, 그 점선으로 표현된 인테리어 디자인 부분을 후출원으로 출원한 경우에 확대된 선원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확대된 선원에서 디자인의 대비는 선출원된 디자인 대 후출원된 디자인 사이가 아니라, 선출원의 출원서류에 표현된 디자인 대 후출원된 디자인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선출원의 도면에서 파선으로 표현하였다는 것은 단지 권리범위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일 뿐 표현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선출원에서 파선으로 표현된 인테리어 디자인을 후출원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후출원은 확대된 선원으로 거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⁵⁷⁹ 예를 들어, 선출원 디자인이 실내 전체에 관한 인테리어 디자인이고 후출원 디자인은 한쪽 벽면에 관한 인테리어 디자인일 수 있다.

⁵⁸⁰ 후출원 인테리어 디자인이 선출원 인테리어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16조(선원)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될 것이다.

⁵⁸¹ 통상적으로 구성물품에 관한 디자인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이 표현될 여지가 많이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확대된 선원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제4절 인테리어 디자인의 표현 - 도면

1. 현행 도면 실무

(1) 전통적인 도면 실무

㉠ 구체적인 실무

2009 년까지의 우리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도면 실무는, 디자인 도면은 물품의 모든 측면을 도시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하여 거절하여왔다. 즉, 입체적 물품⁵⁸²에 관하여는 사시도를 필수도면으로 함과 아울러 정투상도법에 의한 6 면도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동일 또는 대칭인 도면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하거나, 상시 저면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저면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평면적 물품⁵⁸³에 관하여는, 표면도 및 이면도를 모두 제출토록 하였으며, 다만, 표면도와 이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이거나, 이면도가 무모양 또는 대칭인 경우는 이면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러한 도면 실무의 배경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완전히 도시하여야 그 물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배경이 담겨있다. 즉, 물품의 일부에 관한 부분디자인이라도 그 부분만을 도시하여서는 전체 물품의 형태를 알 수 없고, 당업자가 그 물품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그 물품에 관한 완전한 도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게 된다는 생각이 배경에 깔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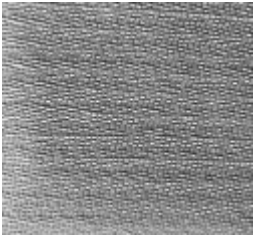
㉢ 판례 -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 후 265 판결

이 판례는, 표면에 관한 도면을 포함하고, 이면에 관하여는 “무모양”이라고 기재한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유사한 패턴의 표면을 가지고 이면은 표면과 유사하게 형성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가에 관한 판단이다.

⁵⁸² 2007년 개정 디자인심사기준 제3조(공업상 이용가능성) 3.아.

⁵⁸³ 2007년 개정 디자인심사기준 제3조(공업상 이용가능성) 3.자.

[표 52] 이면이 무모양인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관한 판례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표면:  이면: 무모양임	표면:  이면: 

이 판단에서 대법원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표면의 모양에 있어서는 좌우로 길쭉한 켜기 무늬를 상하좌우로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서로 유사한 면이 있으나, 그 이면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아무런 무늬가 없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표면과 거의 동일한 무늬로 구성되어 있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양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직물지로서 ... 비록 표면이 이면보다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띈다 하더라도 표면의 모양만이 요부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 양 디자인은 그 이면에 무늬가 있고 없는 현저한 차이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달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④ 과거 도면 실무의 문제점

그런데, 등록디자인에서 이면이 무모양임이라고 한 것은, 평면적 물품의 디자인에서는 표면도와 이면도를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이면에 관하여는 “무모양”이라고 제출하였던 결과, 등록디자인의 구성에서 이면이 적극적으로 무모양인 것으로 확정되고 이에 따라 모양을 가진 확인대상디자인과는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된 것이다.

(2) 개정된 도면 실무

① 개정된 심사기준의 내용

원칙적으로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한 6 면도를 제출하도록 한 도면 실무는, 2010 년 1 월 1 일자 개정 디자인심사가준에 의하여 변경되어 디자인을 충실히 도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도면만의 제출도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6 면도 중 일부의 누락이 된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정투상도법에 의한 6 면도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고⁵⁸⁴, 원칙적으로 제출되는 도면에는 한정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평면적인 물품에 관하여도, 평면도와 이면도 중 어느 하나만의 제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⁵⁸⁵. 제출되는 도면은 선도와 사진을 포괄하여 “도면”으로 명칭하고 있고⁵⁸⁶, 도면으로서 “3D 도면”⁵⁸⁷의 제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⁵⁸⁸.

㉞ 개정된 도면 실무의 의미

개정된 심사기준에서 하나 이상의 도면만의 제출도 가능하도록 한 것은, 하나의 도면만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7 개의 도면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형식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도면에는 그 디자인을 공업상 이용가능할 정도로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⁵⁸⁹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⁵⁹⁰. 예를 들어 정면도 하나만 제출하여 도면만으로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⁵⁹¹으로 하고 있다⁵⁹².

(3) 개정된 도면 실무의 중요성

㉞ 기본적인 의미

이와 같이 도면실무의 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헤이그협정에서 6 도 이상의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것⁵⁹³에 부합하는 것이다⁵⁹⁴. 이보다

⁵⁸⁴ 디자인심사기준 제3조3.아.

⁵⁸⁵ 디자인심사기준 제3조3.자.

⁵⁸⁶ 디자인심사기준 제3조3.다.

⁵⁸⁷ ‘3D 도면’이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축과 각도를 달리하여 돌려 보기가 가능한 컴퓨터 3차원 영상 그래픽으로 표현된 도면을 말한다.

⁵⁸⁸ 디자인심사기준 제3조1.라.

⁵⁸⁹ 디자인심사기준 제3조3.아.(1)

⁵⁹⁰ 도면은 보호범위를 정하는 외에도, 당업자가 디자인을 파악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가진다.

⁵⁹¹ 디자인심사기준 제3조3.아.(1)

⁵⁹² 다만, 사시도만의 제출도 허용하고 있고, 이 경우 도시되지 않은 부분은 권리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심사하고 있다(디자인심사기준 제4조제4항나(3)(나)목)

⁵⁹³ 헤이그협정 제네바법 시행규칙 제9조(3)(b) 어느 체약국도 산업디자인 또는 물품이

더 중요한 의미는, 디자인의 도면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를 도시하여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㉞ 디자인의 파악에 필요한 부분만 도시하면 된다

종래의 도면실무에 따라서는, 디자인의 대상이 된 부분이 물품의 일부에 한정된 것이라도 물품의 전부를 도시하여야만 했고⁵⁹⁵, 이 과정에서 당업자가 실시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자명한 부분까지 파선으로 도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⁵⁹⁶. 그러나, 당업자가 그 디자인의 대상이 된 부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체 제품을 실시하려고 할 때, 그 출원도면에서 도시하지 아니하여도 자명하게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은 도시하지 아니하여도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전혀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디자인의 파악에 불필요한 부분은 도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된 디자인 실무⁵⁹⁷는 매우 반길만한 것이다.

㉟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문 규정

한편, 이러한 실무는, “도면에서 도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권리주장에서 제외한 것”⁵⁹⁸으로 보는 국제적인 실무를 우리 실무상에서도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반길만하다. 창작자의 창작의 대상이 된 부분을 구별하여, 그 창작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과 창작성 등을 심사하고, 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도시되지 아니한 부분이 여하한 형태로 구성된 실시예에 대하여도 권리 주장이 가능하게 됨을 명문화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2차원적일 경우 1개, 물품이 3차원적일 경우 6개를 초과하는 도면을 요구할 수 없다.

⁵⁹⁴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사시도 및 6면도라는 우리의 종전 실무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⁵⁹⁵ 디자인의 대상이 아닌 부분은 파선으로 도시하여야 하였다.

⁵⁹⁶ 한 때, 화상디자인의 출원에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컴퓨터 모니터인 경우, 디자인의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모니터의 배면도까지 전체를 파선으로 도시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⁵⁹⁷ 다만, 환경적 구성을 도시하지 않고는 그 디자인의 부분이 전체 물품의 어느 부분인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파악에 필요한 한도까지는 물품의 다른 환경적 부분을 도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전자의 손잡이의 일부분을 도시함으로써 이 부분이 주전자의 어느부분인지 파악조차 할 수 없게 되거나 주전자 전체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전체 주전자와의 관계에서 디자인의 대상이 된 부분 이외의 환경적인 부분을 파선으로 도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⁵⁹⁸ 즉, 도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여하한 형태라도 출원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

2. 업계에서의 인테리어 디자인의 실무에 대한 검토

(1) 서론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출원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즉,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을 어떻게 작성하게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바람직하게는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면을 그대로 활용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출원인의 입장에서 출원을 위한 노고와 비용을 줄이는 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도면을 예시⁵⁹⁹ 하고, 이를 검토하여 인테리어 디자인 출원에 첨부될 도면의 필요한 속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에 예시된 인테리어 디자인의 도면은,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전체 도면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2) 업계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특정하기 위한 도면의 예



⁵⁹⁹ 출처: 모이 건축디자인 사무소의 홍성용 대표

◆ FACADE

1. SIGN & LIGHTING



④ SIGN

- 갈바에 레어저 컷팅 후 도장(삼화페인트 C597)
- 조명: 루미스트650*650 (6300K) 2EA; 보고폼텍스 제품

⑤ SIGN

- T8 블랙 무광 아크릴
- 글씨체: 본사 지정 (American Typewriter Medium BT-nell24)

⑥ 조명

- 노출 HQI-TS/70W _사각+파이프 2EA

WOOD FILM: LG-FW354
현대 조명용: HL7021
현대 조명용: HL7025
현대 조명용: HL7042
현대 조명용: HL7025
현대 조명용: HL7075

- 조명: 루미스탁1140_7EA.
:성신일렉트릭 제품

④ 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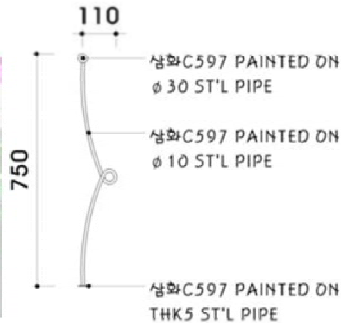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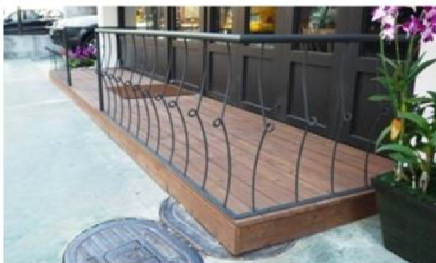
- T8 블랙 무광 아크릴
- 조명: EZLED1구 3.3W (MR-16대채용); 어지예크그린 제품
- 1구 LED위
- 검정반투명 아크릴 덮개 必

모이건축디자인

◆ FACADE

2. DOOR & HAND RAIL

A. 테크 & 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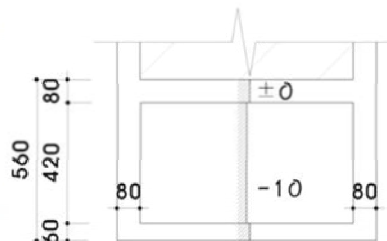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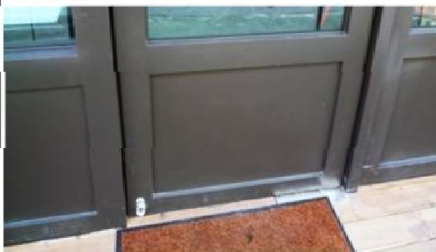
A-1. 테크

- 방부목 워 스테인(WS-3009)

A-2. 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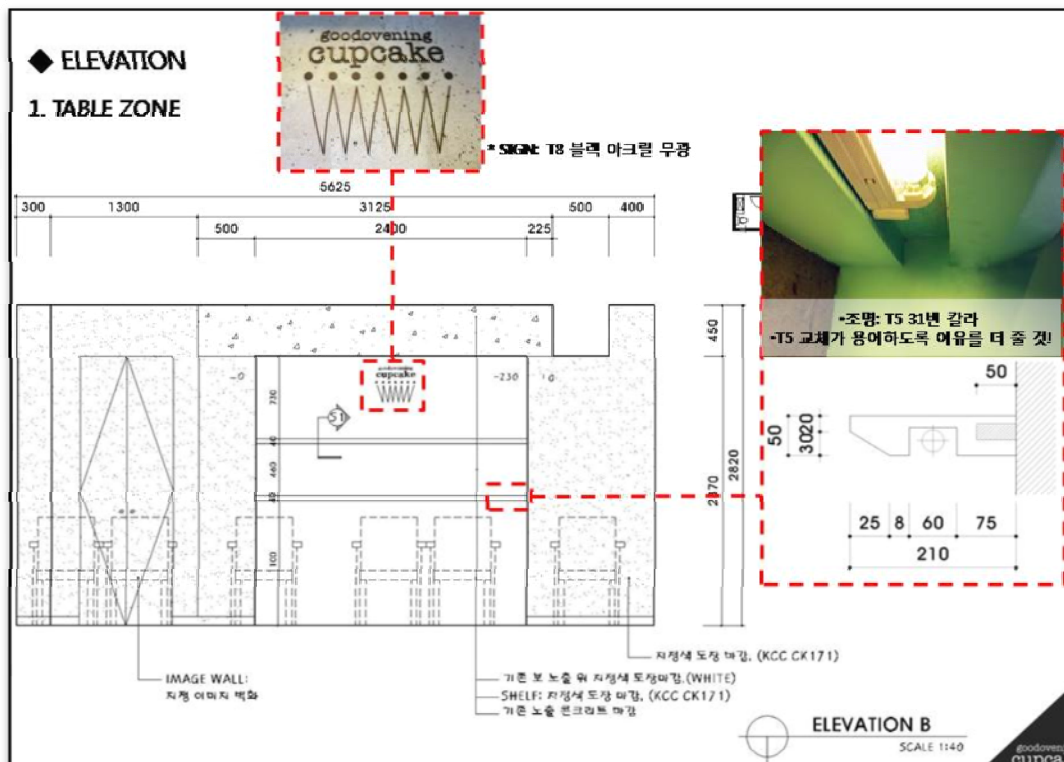
- φ30st1 pipe+φ10st1 pipe
- 삼화페인트 C597 도장
- H: 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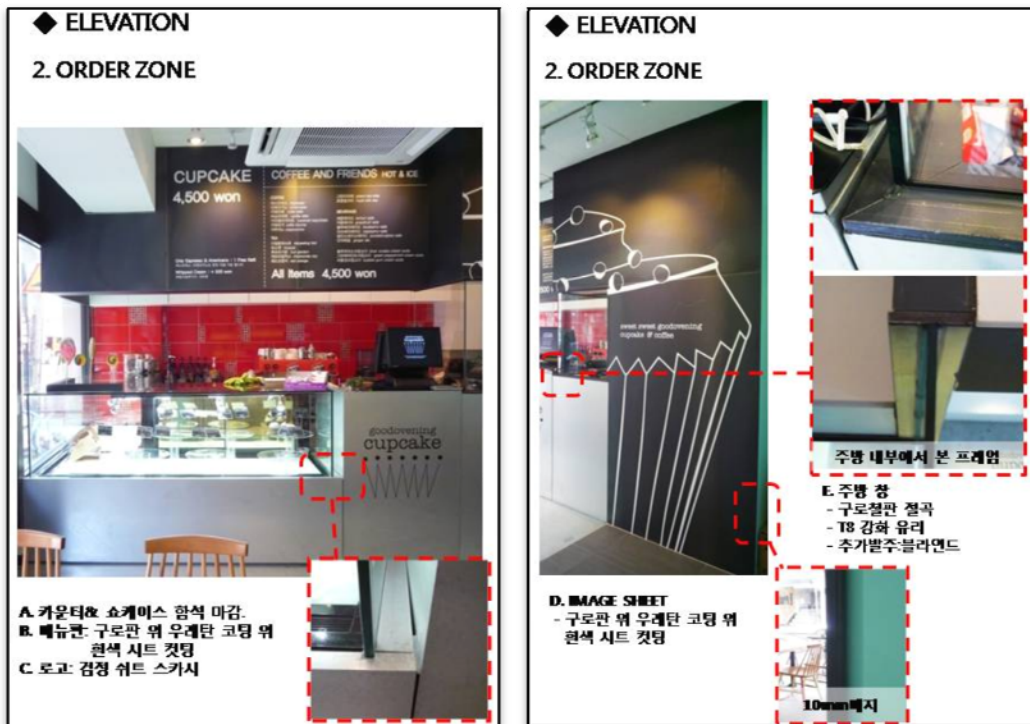
B. 프레임



B. 프레임

- 삼화 C597 도장
- 면에서 10mm down





(3) 검토

㉠ 전체 인테리어 디자인의 특징

이상의 도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실시하기 위하여, 즉, 점포의 인테리어를 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면은 그 점포의 전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디자인을 모두 필요로 하게 된다. 입구, 주문대, 좌석 등 점포의 공간별로 구체적인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다. 모서리 부분과 같이 전체 사진으로 잘 표현되지 않는 부분은 확대사진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그 공간의 구획에 관해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하고 있다.

㉢ 디자인 출원의 도면과의 관계

그런데, 이러한 상태로서 디자인등록 출원용 도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세부사항까지 정의된 상태로 출원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세부사항에서만 달라지면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출원인이나 등록권리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도면의 수에 있어서도 우리 실무상 제출되는 도면의 수에 제한을 가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7 도까지만 도면제출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어 외국에의 출원을 고려하는 경우 등 국제적인 관점에서 과도한 수의 도면 제출이 필요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테리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간은 통상적인 물품보다는 큰 공간이고, 이에 사용되는 손잡이 등의 구성물품은 인테리어 전체 공간에 대비하여서는 매우 작은 것이 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안에서는 필요시 다수의 확대사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 실무상으로는 “축척의 불일치”로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㉔ 인테리어 디자인 실무를 고려한 도면 요건 구상

위와 같은 형태로서 인테리어 디자인이 실시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인테리어 디자인 창작자의 입장에서 도면의 작성에 더욱 편리하도록 도면의 요건과 절차를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출원용 도면에 관한 요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인테리어 디자인 출원용 도면에 관한 검토

(1) 출원에 필요한 도면의 수

㉕ 실무상 요구되는 도면의 수

디자인심사기준에 나타난 실무에서는 하나의 도면만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면도 하나만 제출하여 도면만으로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⁶⁰⁰으로 하고 있으나, 반드시 복수의 도면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시도만 제출한 경우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⁶⁰¹으로 간주하여 심사하고

⁶⁰⁰ 디자인심사기준 제3조3.아.(1)

⁶⁰¹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부분에 관하여 특정한 형태를 가져야 할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도시한 부분만 도시된 대로의 형태를 주장하고 도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여하한 형태라도 출원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있다⁶⁰². 따라서, 심사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면 수는 하나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㉞ 인테리어 디자인과 도면의 수

그런데, 상당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 그 창작된 인테리어 디자인을 단지 하나의 도면만으로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특히 인테리어 디자인은 공간을 점하는 입체적 디자인으로서 대개의 경우 형상의 창작을 필요로 하는데, 단지 하나의 도면만으로 입체적 특징을 충분히 도시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다.

㉟ 외국의 사례

미국의 경우 도면의 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디자인의 외관을 완전히 도시하도록 충분한 수의 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⁶⁰³ 고 하여, “완전한 도시”를 위한 “충분한 수”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된 미국디자인특허는 이를 반영하듯, 최소한 2 개의 도면⁶⁰⁴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도시하고 있으며, “완전한 도시”를 위하여 매우 많은 수의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⁶⁰⁵도 있다.

한편 유럽 공동체디자인의 경우 대개 사진으로 출원되는데, 제 32.00 류나 제 99.00 류에 등록된 차림새(get-up)의 경우 과반수의 디자인이 하나의 사진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만, 제 25.03 류에 등록된 인테리어 디자인은 3 방향 이상의 여러 각도에서 디자인을 도시하고 있다.

㊱ 필요한 최소한의 수



⁶⁰² 디자인심사기준 제4조제4항나(3)(나) 목의 예:

⁶⁰³ 37 CFR 1.152 “The design ... must contain a sufficient number of views to constitute a complete disclosure of the appearance of the design. ...”

⁶⁰⁴ D610,521(Interior of a passenger cabin of an aircraft)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에서 도시한 2개의 도면만을 제출하고 있고, D561,400(Interior rear wall panel for use in an aquarium)에서는 단지 하나의 도면만을 제출하고 있다.

⁶⁰⁵ D639,453 (Store interior with a storefront)과 D641,494 (Hotel room) 에서는 11개, D247,183 (Discotheque building)에서는 16개의 도면이 동원되고 있다.

모든 입체적인 디자인에 대하여 복수의 도면이 있어야 그 입체적 특징이 파악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하나의 도면만으로도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도면만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 우리 현행실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도면수를 하나 이상으로만 하는 현행실무를 인테리어 디자인을 고려하여 반드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⁶⁰⁶.

다만, 입체디자인에 관한 도면이라고 하면서 1 개의 도면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수 있으나⁶⁰⁷, 입체적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각도를 잘 선정하여 도시하지 않으면 당업자가 디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다⁶⁰⁸.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 복수의 도면을 제출함으로써 그 입체적 특징을 충실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⁶⁰⁹.

(2) 선도와 사진

㉠ 서론

도면을 선도로 제출하도록 할 것인가 사진으로 제출하도록 할 것인가, 또는 선도나 사진 중 어느 것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것이다.

㉡ 외국의 실무

미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디자인특허에서 도면은 선도(line drawing)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미국의 도면에 관한 규칙에서 도면은 통상적으로는 흰색 용지에 검은색 잉크로 작성하여 제출⁶¹⁰하도록 하고 있고, 사진은 일반적으로 기술특허와 디자인특허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⁶¹¹으로 하되, 발명이 잉크 도면으로 표현할 수 없거나 발명이 사진으로 더욱 명확하게 표현되는

⁶⁰⁶ 하나의 도면만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거절 또는 무효의 위험은 출원인의 부담이라 할 것이다.

⁶⁰⁷ 특정한 각도에서 그와 같이 보이는 디자인을 모두 범위로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⁶⁰⁸ 디자인심사기준에서는 정면도만을 제출하는 예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사시도의 경우라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

⁶⁰⁹ 도면의 형식에 관하여 매우 자유롭고 도면의 수도 7도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유럽의 실무에서도 제25.03류에 출원되는 디자인의 파반수가 3도 이상을 제출하고 있다.

⁶¹⁰ 37 CFR 1.84(a)(1) 및 MPEP 1503.02 V

⁶¹¹ 37 CFR 1.84(b)(1) Photographs are not ordinarily permitted in utility and design patent applications. ...

출원에서만 사진이 허용⁶¹²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의 경우 대부분 사진으로 출원되고 있다. 제 32.00 류나 제 99.00 류에서는 모두 사진이나 그래픽 이미지로 출원되는 등,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약 95%의 출원은 선도가 아닌 사진이나 3D 와 같은 그래픽 이미지로 제출되고 있는 것이다.

㉔ 검토

디자인을 선도로 표현하여 출원하는 경우 표면 패턴에 관한 한정을 가하지 않게 되므로 통상적인 관점에서 사진으로 출원되는 것에 비하여 보호범위가 넓게 된다. 따라서, 선도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업계의 실무상, 디자인의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 시공 후에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⁶¹³.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에는 단지 선도로서만 표현하기 힘든 표면의 장식들도 많이 포함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의 입장에서는 사진으로 제출하는 것이 폭넓게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하여는 예를 들어 점포의 디자인인 경우에 그 실제 점포의 시공 후에 시공된 점포를 촬영하여 이를 출원에 활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⁶¹⁴.

(3) 흑백 사진과 컬러 사진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하여는 사진으로 출원되는 것이 일반적이 될 것이라 본다면, 흑백 사진과 컬러 사진에 의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진이 컬러로 하여 출원되고 등록되는 유럽 공동체디자인의 경우를 참고할 때, 우리 실무상으로도 흑백 사진보다는 컬러 사진이 더 활용될 것인가이다.

출원에 첨부된 사진이 컬러 사진이라면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그 표현된 컬러로 한정된 후 확인대상디자인과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⁶¹² MPEP 1503.02 V: Photographs are acceptable only in applications in which the invention is not capable of being illustrated in an ink drawing or where the invention is shown more clearly in a photograph

⁶¹³ 공산품의 개발과 출시에는 사전의 컴퓨터 그래픽 설계 등 선도를 나타낼만한 자료들이 미리 구축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선도를 추출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⁶¹⁴ 다만, 이 경우, 점포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이미 공지공용된 것에 해당하게 되므로, 출원인은 그 공지공용된 점포에 관하여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컬러 사진으로 표현된 등록디자인은 흑백사진으로 표현된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보호범위가 좁게 된다⁶¹⁵.

사진의 대부분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것이 통상적이고, 디지털 이미지는 색채를 제거하고 흑백사진으로 변환하는 것이 극히 쉬운 것이라, 흑백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출원인에게 별도로 선도 작성만큼의 노고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한편, 같은 레이아웃을 가지고 색채만을 달리하여 인테리어를 디자인하는 경우보다는 레이아웃을 달리하는 것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새로이 하는 통상적인 경우임을 고려할 때, 색채 사진보다는 흑백 사진으로서의 출원이 출원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⁶¹⁶.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실무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하여는 흑백 사진이 주를 이룰 것이 예상된다.

(4)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의 특정

㉠ 서론

보호받으려는 디자인을 선도로 표현하는 경우,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환경적인 요소들은 파선으로 도시할 수 있다. 그런데, 사진으로 출원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사진은 사각형의 형태로 촬영되므로 이 사각형의 영역에는 출원인이 권리를 주장하려 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될 수 있고, 따라서 사진의 영역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권리주장하려는 것인지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 환경적 요소의 포함

논리적으로 간단한 방식은, 사진의 이미지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처리하여 출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사진 상에 나타난 인테리어 디자인은 건물과의 관계나 다른 인테리어 부분과의 관계가 이해되지 않아 인테리어 디자인 자체에 대한 이해가 흐려질 수 있다.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도 환경적인 요소로 도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⁶¹⁵ 흑백사진의 무채색은 적극적으로 무채색임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며 같은 채도의 다양한 색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⁶¹⁶ 유럽의 경우에도, 컬러 사진에 의한 출원과 별도로 무채색에 의한 사진으로 출원함으로써 보호를 두터이 하려는 예가 발견된다. (001251342-0009 및 001251342-0010 등)

㉔ 보호의 대상을 특정하는 유럽의 실무

사진 도면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을 특정하는 방식에는 유럽을 실무를 참고할만하다. 유럽의 실무에서 사진 도면을 제출하면서 부분디자인을 청구하려는 경우, 보호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특징만을 강조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흑백도면에 채색하거나, 색채에 음영을 주거나, 흐리게 할 수 있다.

[표 53] 보호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특징만을 강조하는 예

 RCD 229752 (흑백도면에 채색)	 RCD 220405-0003 (색채에 음영을 가함)	 RCD 222120-0002 (보호대상이 아닌 부분을 흐리게 함)
---	--	---

(5) 설계도와 인테리어 디자인

㉕ 설계도도 인테리어 디자인의 도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건축법상의 설계도도 인테리어 디자인의 도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즉, 인테리어 디자인을 표현하는 도면으로 건축법상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도면을 제출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 있다⁶¹⁷.

㉖ 판단

⁶¹⁷ 건축설계도가 등록되는 경우 설계도의 생산(복제)는 물론 그 설계도에 따라 시공을 하는 행위도 실시행위에 포함될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그 기재된 물품의 유사범위로 한정하는 우리 현행 실무상으로는 설계도면과 건물/인테리어는 전혀 다른 물품이라 유사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물품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의 도면은 제조방법을 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품의 외관을 시각적으로 파악되는 대로 디자인을 표현한 것으로서 설계도면으로 표현된 디자인의 외관은 그 설계도면 자체인 것이므로 이로부터 건축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건물의 입체적인 외관과는 전혀 다를 것이 분명하다.

설계도가 도면으로 사용된다면, 독해법에 관한 지식과 건축기술에 관한 기술적 사상을 통하여 설계도로부터 형상과 모양을 추론하여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된 설계도를 도시된 그대로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디자인보호법상의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건물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의 외관을 도시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설계도를 사용하는 것은 디자인의 외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공법을 나타내는 것이라 부적절한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제도에서 원칙적으로 디자인 도면은 물품의 보여지는 그대로를 도시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특별한 경우에는 전개도 등을 보조적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6) 축척의 문제

㉠ 현행 실무

우리 현행 실무에서는, 디자인의 도면 사이에서 각 도의 축척이 상이한 경우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거절⁶¹⁸ 하고 있다. 다만, 도면의 상호간 축척의 동일성 여부는 디자인의 모양·형상을 파악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단⁶¹⁹하고 있다⁶²⁰. 따라서, 축척의 동일성 여부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축척이 동일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 외국의 실무

유럽의 경우 각 도에서의 축척은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도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지 않음에도 서로 다른 축척의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인테리어의 특정 부분을 확대하여 강조하는 예들이 많이

⁶¹⁸ 디자인심사기준 제3조3.아.(6) 본문 및 제3조3.자.(1)

⁶¹⁹ 디자인심사기준 제3조3.아.(6) 단서

⁶²⁰ 한 때 축척이 상이한 것에 관하여 자로 재어서 약간의 오차라도 있다면 축척의 상이함으로 거절하였으나, 이러한 비현실적인 실무를 벗어나기 위하여 2005년 개정 디자인심사기준에서는 “도면 상호간의 축척의 동일성 여부에 대하여서는 육안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다”고 개정하였고, 2009년 개정시에는 그 표현을 현재와 같이 수정하였다.

발견된다⁶²¹.

미국의 경우, 대략적으로 육안으로 축척의 상이함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로 도면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별다른 설명이 추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⁶²². 다만, 어느 부분의 확대도시인지 구별하기 위하여 도면에 표시하고 설명에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⁶²³.

한편,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에서도 별다른 설명없이 디자인의

621 001018378-0001



001812884-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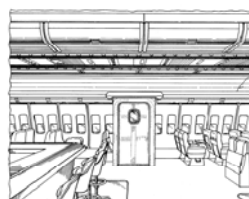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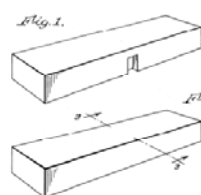


001691460-0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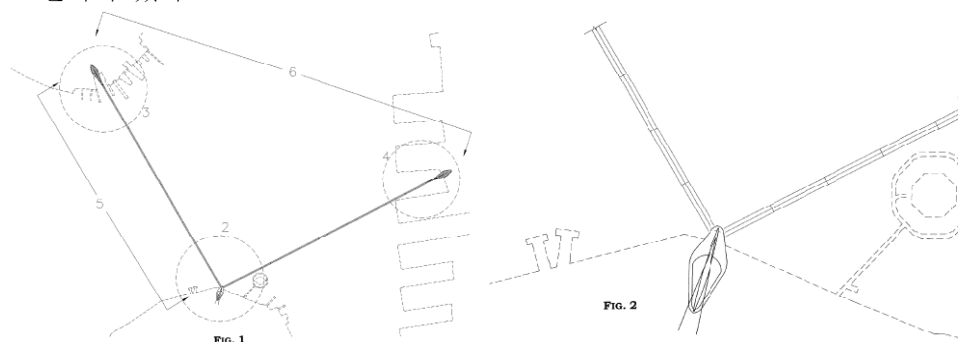
등 그 예는 매우 많다

622 D247,183의



는 전혀 다른 축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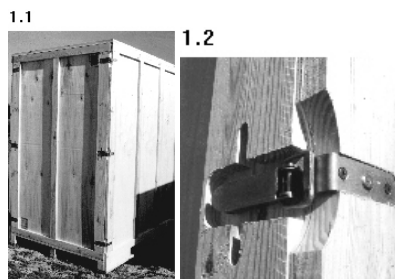
623 D615,211의 도1에는 확대대상이 파선 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확대 도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디자인의 설명에 도 2는 도 1의 선2에 따른 확대도라고 설명이 부여되어 있다.



특정부분을 확대하여 도시하는 예가 발견된다⁶²⁴.

㉠ 인테리어 디자인과의 관계

현행의 실무대로라면 이러한 축척이 상이한 경우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되어 거절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 전체 인테리어는 비교적 큰 공간을 차지하는 반면 이에 사용되는 구성물품은 크기가 작아 전체 인테리어 디자인과 같은 축척을 사용하여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시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⁶²⁵. 또한, 인테리어 디자인의 주요특징을 이루는 구성물품의 경우 그 구성물품을 더욱 명확하게 도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구성물품을 확대하여 도시하는 것이 자주 필요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 미국의 실무의 예에서와 같이, 디자인의 특정 부분을 확대하여 도시함을 설명에 기재함으로써 매우 다른 축척이라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⁶²⁴ (DM/46707) Furniture-depository box

⁶²⁵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 많은 소품이나 작은 물품들이 동원되기 마련이고, 이들 모든 구성물품에 대하여 완전히 도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각적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시되어야 할 것은 그 디자인의 특징을 이루는 구성물품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제5절 인테리어 디자인의 유사판단

1. 서론

(1) 유사판단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여러가지 상황에서 디자인의 유사판단이 필요하게 된다. 출원디자인이 공지디자인에 유사한가의 여부에 따라 신규성에 의하여 거절될 것인가의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유사디자인/관련디자인으로 출원되어야 할 것인가 독립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여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등록된 후에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유사범위에까지 미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과의 유사여부 판단이 필요하게 된다.

(2) 유사판단의 기본적인 원칙 - 물품의 동일·유사

디자인의 개념에 물품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현행 실무에 따르면, 제 5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디자인의 유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 간에만 판단한다. 물품의 유사성에 따른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표 54] 현행법상 디자인의 유사판단

형태 \ 물품	동일물품	유사물품	비유사물품
형상·모양·색채(동일)	동일디자인	유사디자인	비유사디자인
형상·모양·색채(유사)			
형상·모양·색채(비유사)			

즉, 물품이 동일하고 형태가 같으면 두 디자인은 동일한 것이고, 물품이나 형태 중 어느 것이라도 유사하지 않으면 두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즉, 물품의 동일·유사는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형태의 유사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는 것이다.

물품의 유사성은 실질적으로 결정된다. 물품의 구분은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의 일관성 유지와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디자인 물품 상호

간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⁶²⁶. 원칙적으로,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것이 유사물품⁶²⁷에 해당하고, 원래 비유사물품인 경우라도, 용도상으로 혼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⁶²⁸으로 볼 수 있다.

(3) 유사판단의 기본적인 원칙 - 외관의 동일·유사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며, 또한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그 디자인 분야의 형태적 흐름을 기초로 두 디자인을 관찰하여 창작의 공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⁶²⁹.

2. 인테리어 디자인의 유사판단의 주관적 기준

㉠ 문제의 소재

유사판단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유사여부 판단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유통과정에서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⁶³⁰.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하여는, 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무엇으로 볼 것이며, “유통”을 무엇으로 보아 “일반수요자”를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또한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그 디자인 분야의 형태적 흐름을 기초로 두 디자인을 관찰하여 창작의 공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⁶³¹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건물의 소유자, 인테리어 업자, 점포의 운영자 등 누구의 관점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 인테리어 디자인의 물품의 해석에 따른 직접적인 해석

⁶²⁶ 현행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물품의 구분등)제1항

⁶²⁷ 예를 들면, 볼펜과 만년필

⁶²⁸ 예를 들면, 수저통과 연필통

⁶²⁹ 디자인심사기준 제4조제4항나.(1)

⁶³⁰ 디자인심사기준 제4조제4항나.(1) 전단

⁶³¹ 디자인심사기준 제4조제4항나.(1) 후단

인테리어 디자인을 건물의 부분디자인으로 본다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건물”이 될 것이고, 그 유통(즉,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란 건물의 건축주나 소유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문언상의 직접적인 해석에 의한 결론이다. 한편, 인테리어 디자인 그 자체를 물품으로 본다면, 인테리어 디자인의 유통이란 인테리어 설계/시공 계약의 당사자로서 의뢰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의 형태적 흐름을 기초로 창작의 공통성이 인정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주체적 기준은 인테리어 업계의 당업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㉔ 현실을 고려한 해석

법률상 보호대상으로 포섭하려는 인테리어 디자인은 건물 전체의 완전한 인테리어라 보기는 힘들고⁶³², 건물의 특정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가 개별적으로 보호될 것이 예상된다. 그런데, 건물이 구분소유가 가능하고, 임대차도 유통으로 볼 여지가 있어 임차인도 건물의 수요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인테리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간에 대하여 인테리어 시공의 수요자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이 공간이 호텔의 객실이라면 호텔 소유자, 점포라면 점포의 영업주를 일반수요자라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의 유사판단에는 인테리어 시공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인테리어 디자인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판단하고,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의 형태적 흐름을 기초로 두 인테리어 디자인을 관찰하여 창작의 공통성이 있는 경우에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3. 인테리어 디자인의 유사판단의 물품에 관한 기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가 디자인등록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한정되어 해석되는 현행 실무에 따르면,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에도 그

⁶³² 예를 들어, 5층 건물의 내부 전체에 관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으로는 상상하기 힘들다.

대상이 되는 물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물품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인테리어 디자인이 제 25-03 류로 등록이 되는 경우, 즉, 제 25-03 류의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이 되는 경우, 인테리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제 25-03 류에 포함된 물품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물품은 창고(Barns), 방갈로(Bungalows), 건물, 이동식 건축물 등으로 표시될 것이고, 이들 사이에 물품이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도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한편, 인테리어 디자인 제 32-00 류로 등록이 되는 경우 인테리어 디자인 자체가 물품이 되어, 인테리어 디자인의 대상이 무엇이거나 무관하게 유사판단을 하게 된다.

이러한 괴리를 줄이기 위하여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건물 기타 물품은 모두 유사물품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인테리어 디자인의 유사판단의 디자인에 관한 기준

(1) 서론

인테리어 디자인의 유사판단에서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적인 기준은 현행 심사기준상의 일반적인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본다.

(2) 검토

㉠ 형상, 모양 및 색채에 의한 인테리어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인테리어 디자인의 형상(즉, 구성물품의 배열에서 오는 윤곽)이나 모양(배열된 구성물품 전체에서 흐르는 색구분/색흐름 등)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전체로서 판단한다.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Motif)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양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㉞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유사성 폭을 넓게 보고, 동 종류의 것이 많이 나올수록 유사성 폭을 좁게 본다.

유사성 폭이 비교적 좁은 것으로는, 아파트나 사무공간 등과 같이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이 크게 변화되지 않은 한도에서 다양한 인테리어 디자인이 시행되어 온 경우나, 실내경기장 등 기능적으로 변화의 폭이 제한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유사성 폭이 비교적 넓은 것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공간, 공간 내의 특이한 구획,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㉟ 인테리어 디자인의 잘 보이는 면에 유사여부 판단의 비중을 둔다.

벽면의 구석 등 눈길을 적게 끄는 부분에는 유사여부 판단의 비중을 낮게 두고, 공간의 중앙부분 등 눈길을 많이 끄는 부분에 유사여부 판단의 비중을 높게 둘 것이다. 또한, 인테리어 설계시 통상적으로 점포주 등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에 유사여부 판단의 비중을 높게 두어야 할 것이다.

㊱ 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적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도어의 장식적인 배치, 전정과 벽면의 장식적은 한도에서의 구획 등은 적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가구의 배치, 벽면 표면의 구성 등에 비중을 두어 평가해야 할 것이다.

㊲ 기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구성물품의 대소의 차이는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재질은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서 표현되는 경우에만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기능, 구조, 정밀도, 내구력, 제조방법 등은 그 자체가 인테리어 디자인의 외관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인테리어 디자인과 구성물품과의 유사여부 판단

㉠ 완성품과 부품에 관한 유사여부 판단 준용

인테리어 디자인과 구성물품과의 유사여부 판단은 완성품과 부품에 관한 유사여부 판단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이 연구보고서 제 6 장제 3 절 3. 인테리어 디자인의 성격 - 구성물품과의 관계 중 “(3) 한 벌의 물품과 구성물품 vs. 완성품과 부품” 및 “(4) 인테리어 디자인과 구성물품과의 신규성 관계”를 참고할 수 있다.

㉡ 적용

완성품과 부품에 관한 유사여부 판단을 인테리어 디자인과 구성물품과의 유사여부 판단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인테리어 디자인과 구성물품은 비유사물품으로 본다.
- (2) 인테리어 디자인과 구성물품은 비유사물품이므로 법 제16조의 선출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출원된 인테리어 디자인의 공개 또는 공고 전에 후출원된 구성물품은 인테리어 디자인⁶³³에 관한 선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된 때에 법 제5조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한다.
- (3) 공지된 구성물품을 이용한 인테리어 디자인은 그 구성물품이 공지된 것을 이유로 거절하지 아니한다.
- (4) 공지된 인테리어 디자인에 부착된 구성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구성물품은 그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하여 공지된 디자인으로 본다.
- (5) 구성물품의 구성이 인테리어 디자인에 가까운 경우⁶³⁴에는 (1) 및 (2)에 불구하고 양물품은 유사물품으로 보아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5. 인테리어 디자인의 유사판단에서의 참고자료

(1) 서론

인테리어 디자인의 유사판단에는, 인테리어 시공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인테리어 디자인과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⁶³³ 다만, 이 기준에 따라 구성물품이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한 확대된 선출원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되기 위하여는, 그 인테리어 디자인에 구성물품의 출원디자인이 충분히 표현되었을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⁶³⁴ 예를 들면, 벽면에 관한 인테리어 디자인과 그 벽면을 시공하기 위한 건축자재; 소파의 배열이 주를 이루는 인테리어 디자인과 소파; 등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의 형태적 흐름을 기초로 두 인테리어 디자인을 관찰하여 창작의 공통성이 있는 경우에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의 형태적 흐름은 무엇을 기초로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아래에, 업계의 연구논문들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의 형태적 흐름을 참고할 만한 자료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인테리어 디자인의 스타일에 관한 유형화는 주로 인테리어 디자인의 스타일을 어떠한 표현으로 유형화할 것인가가 주된 방향이었다⁶³⁵. 이러한 논문들 중, 인테리어 디자인의 스타일에 관하여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정리한 자료⁶³⁶가 있어 이를 정리하였다.

다만, 이러한 유형화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분류하는 절대적 분류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유형에 포함된 것이라도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이다. 한편, 다른 유형에 포함된 것이라면, 이는 인테리어로부터 얻어지는 인상이 다른 것으로서, “용이창작”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라도 원칙적으로 “유사”한 것은 아니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 실내디자인 스타일 유형별 정리

로맨틱 스타일	
배경	로맨틱 스타일은 낭만주의에서 비롯되었으며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엽까지 유럽전역과 남북아메리카에 전파된 문예사조로서 예술운동인 낭만주의에 기원을 두고 있음. 유럽의 완고한 고전주의에 대항한 인간 감정의 자유분방한 표현을 주장 함.
스타일 분류	여성적, 복잡한, 동적, 고전적
형용사 표현 어휘	고급스러운, 귀여운, 따뜻한, 밝은, 부드러운, 편안한, 편안함, 포근함, 낭만적, 여유있는, 이국적인, 장식적인, 컬러풀한, 화려한, 클래식한, 복잡한
이미지 요인	편안성 > 고전성 > 목가성 > 유희성 > 단순성 *편안성은 역척도
이미지요인과 실내구성요소의 상관성	단순성 : 바닥, 벽 (부정적 영향) / 창 (긍정적 영향) 편안성 : 벽 (긍정적 영향) 유희성 : 재료 (긍정적 영향)

⁶³⁵ 예를 들어, “간결한”, “고급스러운”, “동양적인”, “모던한” 등의 용어들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등이다

⁶³⁶ 김경숙; 실내디자인 스타일 유형화 및 특성에 관한 연구; 2004년6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표현 기법	과도한 장식과 화려하고 풍부한 장식이 많이 사용 됨. 부드러운 곡선, 레이스, 꽃무늬 등의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로 표현
패브릭	레이스, 실크, 브로데, 벨벳, 다마스크, 타피스트리, 꽃무늬의 패턴과 식물문양, 스트라이프 문양과 프릴이 있는 패브릭을 사용
창	백색의 레이스, 망사, 투명한 원단과 꽃문양, 프릴이 달린 원단을 이용한 커튼이 사용
바닥	꽃무늬 패턴으로 장식된 카펫과 밝은 색상의 원목 사용
색채	밝고 화사한 색채, 아이보리, 핑크, 블루, 민트그린, 옐로우 등이 주로 사용
가구	고딕, 조지안 시대의 전통적 가구의 사용과 함께 원목가구, 등나무 가구 등도 사용 됨.
재료	칠하지 않은 백목, 섬세한 레이스나 소재의 투명감이 있는 직물이 많이 사용 됨.
벽	부드러운 선의 꽃무늬와 추상적 무늬의 벽지가 주로 사용 됨.

에스닉 스타일	
배경	에스닉(ethnic)이란 '민족의'란 뜻으로 특정민족의 특정 양식을 의미함. 20세기 초기 폴 포와레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으며 70년대 후반부터 디자인 작업 시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 됨.
스타일 분류	고적적, 복잡한, 동적
형용사 표현 어휘	고급스러운, 고풍스러운, 동양적인, 이국적인, 클래식한, 토속적인, 독특한, 따뜻한, 컬러풀한, 화려한, 장식적인, 담담한, 무거운, 복잡한, 어지러운, 어두운, 혼란스러운
이미지 요인	고정성 > 유희성 > 편안성 > 목가성 > 단순성 *편안성은 역척도
이미지 요인과 실내 구성요소의 상관성	단순성 : 패브릭 (부정적 영향) 편안성 : 패브릭 (긍정적 영향), 재료 (부정적 영향) 목가성 : 천장 (부정적 영향) 고전성 : 가구 (긍정적 영향), 벽 (부정적 영향) 유희성 : 벽, 소품 (긍정적 영향), 조명,바닥 (부정적 영향)
표현 기법	원시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 민속적 토속적인 전통적 개념으로 오리엔탈리즘보다 간결하면서 부드럽고 섬세한 이미지를 가짐. 복잡한 기계성, 상업성을 벗어나 간결함을 추구.
재료	깔끔한 마감보다는 거칠고 투박한 느낌의 마감경향을 띰.
가구	소박하고 다소 투박한 느낌의 자연소재가 사용. 잘 다듬어지지 않은 목가구, 노끈이나 자연소재의 패브릭으로 엮어진 가구나 또는 토속적인 패턴이 있는 패브릭 의자, 인디언 풍의 가죽의자 등을 사용,
패브릭	화려하고 강렬한 색채나 독특한 문양, 자연염색 기법으로 색을 입힌 원색적 패브릭 사용, 패턴은 페이즐리나 기하학적인 문양이 대표적
색채	오렌지나 핑크, 검은빛이 감도는 붉은색, 깊은 바다 빛 등 화려하고 강렬한 색상 사용
소품	독특한 무늬를 이용한 수공예적 자연소재의 소품을 많이 사용

클래식 스타일	
배경	클래식의 어원은 고대 로마시민의 6계급 중 최상급인 클라시쿠스

	(classicus)에서 유래됨. 격식을 차린 포멀(formal)하며 고급스러운 느낌에서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 양식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표현함.
스타일 분류	남성적, 고전적, 복잡한
형용사 표현 어휘	고급스러운, 고풍스러운, 따뜻한, 부드러운, 여유있는, 편안한, 포근한, 장식적인, 화려한, 컬러풀한, 이국적인, 명상적인, 복잡한, 무거운
이미지 요인	고전성 > 목가성 > 편안성 > 유희성 > 단순성 *편안성은 역척도
이미지요인과 실내구성요소와의 상관성	단순성 : 천장 (부정적 영향) 편안성 : 소품 (긍정적 영향) 고전성 : 가구, 소품, 찬장 (긍정적 영향), 패브릭 (부정적 영향) 유희성 : 재료, 색채, 바닥 (긍정적 영향), 패브릭 (부정적 영향)
표현 기법	각 시대의 귀족문화가 고전적 양식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옛것에 대한 향수와 귀족적 신분의 표현을 나타냄
바닥	나무나 대리석을 주로 사용
재료	나무결을 그대로 살린 어두운 색상의 목재료를 사용하며 체리, 월넛, 마호가니가 주로 사용됨, 또한 대리석이나 어두운 색상의 타일류를 사용하기도 함.
벽	전통적 문영이나 모아래 문양의 벽지를 사용하며 또는 단색의 직물벽지를 사용함. 다른 구성요소가 무거운 분위기로 조합되었을 경우 밝은 토의 벽지가 전체 또는 부분으로 사용됨
가구	조지안 새대의 치펜데일, 애플 화이트, 셰라톤 양식, 앤여왕 양식 등의 전통적인 양식을 모방한 가구류로 어두운 색조로 마감된 가구를 사용함. 재료는 오크가 주로 사용됨.
조명	샹들리에나 금색으로 장식된 전통적인 형태의 조명기구사용
패브릭	꽃문양, 작은 프린트볼, 텍스타일 효과, 스트라이프, 격자무늬패턴 등이 사용, 면, 새틴, 다마스크, 실크, 벨벳, 무아레 등의 격식있는 패브릭이 사용
색채	트래디셔널믹스 스타일에서는 어두운 색상이 사용되며 패더럴 / 클로니일 스타일에서는 장미색상, 옅은 웨지우드, 블루, 민트, 밝은 녹색, 아이보리, 옅은 호박색을 사용, 포멀 프렌치에서는 아몬드 색상, 작약의 분홍색, 그린색상, 블루, 밝은 금색이 사용
소품	시계, 조명, 사진, 액자, 도자기류 등 실내장식 소품이 많이 사용됨. 금장식과 장식이 많은 소품을 사용.

하이테크 스타일	
배경	하이테크(High-Tech)란 하이스타일(High Style)과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크론과 슬레진 (J. Kron & S. Slesin)의 저서 하이테크에서 처음 나타남. 기계적이며 기술적인 인식을 배경으로 하며 가벼운 장식이나 최소량 요소를 조립한 가구나 기본적 범주 내에서 선택을 의미하는 실내디자인으로서 산업적 스타일의 경향을 가짐. 유통성있는 공간을 위해 현대의 기술을 최대한 적용해 조형된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세련된 형태를 만들어냄으로서 결과의 질을 높여가는 방식의 개념. 최대의 효용성, 경제성, 경량성을 목표로 함.
스타일 분류	남성적, 현대적, 동적
형용사 표현	간결한, 깔끔한, 깨끗한, 밝은, 시원한, 차가운, 직선적인, 도시적인, 세

현 어휘	런된, 미니멀한, 모던한, 독특한
이미지 요인	유희성 > 단순성 > 편안성 > 목가성 > 고전성 *편안성은 역척도
이미지요인과 실내구성요소와의 상관성	단순성 : 바닥 (긍정적 영향) 편안성 : 페브릭, 바닥 (부정적 영향)
표현 기법	재료의 투명성, 금속성, 경량성과 구조체 설비의 노출성, 회색의 닥트, 기계설비 등이 화학적으로 처리되어 기술의 상징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기술의 상징성, 밝고 단조로운 색채의 사용, 공간의 동질성 등을 나타냄.
재료	구조용 철제 형강, 금속판, 슬레이트, 고무판 등의 거친 텍스처의 재료와 유리 등을 사용

엘리гант 스타일	
배경	엘리гант(elegant)란 품위있고 우아한 것을 말하며 케쥬얼이나 프로빈셜과 대조시켜 사용함. 기품있고 우아하며 섬세하고 정숙한 이미지와 함께 풍류적이며 여성적, 정서적, 청려한 이미지를 나타냄.
스타일 분류	여성적, 단순한 정적
형용사 표현 어휘	고급스러운, 밝은, 부드러운, 세련된, 차분한, 단순한, 깨끗한, 깔끔한, 간결한, 심플한, 도시적인, 모던한, 여유있는, 따뜻한, 편안한, 포근한, 명상적인, 시원한, 하얀, 클래식한
이미지 요인	단순성 > 고전성 > 유희성 > 목가성 > 편안성 *편안성은 역척도
이미지요인과 실내구성요소와의 상관성	단순성 : 색채 (긍정적 영향) 편안성 : 벽 (긍정적 영향) 목가성 : 바닥 (긍정적 영향), 벽 (부정적 영향) 유희성 : 재료, 벽 (긍정적 영향)
표현 기법	흐르는 듯한 곡선, 적당한 장식을 살린 꽃무늬나 추상적인 문양을 사용. 대조나 대비를 살리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윤곽은 두드러지지 않고 질감을 살려 표현함.
색채	온화한 그레이 컬러가 중심을 이루며 보라색이 대표적 색상/ 미묘한 그라데이션으로 정리된 배색을 사용
재료	무게감 있고 자연소재의 마감재를 사용.
패브릭	부드러운 실크, 약간의 광택이 있으며 품위있고 고급스러우며 섬세한 질감이 있는 패브릭을 사용.
가구	클래식한 스타일로 디자인된 가구들을 사용하여 우아하면서 화려한 이미지를 표현함.
소품	세련된 소품의 배치로 장식적인 요소를 가미해 고급스러운면서도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

컨트리 스타일	
배경	미국동부의 트레이디셔널 감각과는 반대로 서부 카우보이들의 생활과 기질이 표현. 아메리칸 컨트리 양식은 지난 20년간 그 스타일이 진화되었으며 이 양식은 개척정신과 청교도 정신에 근본이 있음.

스타일 분류	남성적, 고전적, 복잡한, 동적
형용사 표현 어휘	고풍스러운, 자연스러운, 전원적인, 토속적인, 이국적인, 편안한, 포근한, 따뜻한, 독특한, 복잡한, 답답한, 무거운, 어두운
이미지 요인	편안성 > 목가성 > 고정성 > 유희성 > 단순성 > *편안성은 역척도
이미지요인과 실내구성요소와의 상관성	단순성 : 재료 (부정적 영향) 편안성 : 소품 (긍정적 영향) 목가성 : 재료, 패브릭 (긍정적 영향)
표현 기법	자연스러운 질감과 무늬의 표현이 많음. 남성다운 채취와 하드한 감각으로 서민적인 낙천성이 믹스되며 야성미가 느껴짐.
벽	원목의 느낌을 나타내는 목재와 회벽, 연한 아이보리나 베이지 톤의 벽지를 주로 사용
바닥	자연색을 살린 원목 마루, 러그(rug)카펫을 깔아 따뜻한 느낌을 줌.
패브릭	고아목이나 면, 레이스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광목의 촉감과 면의 부드러운 감촉으로 자연의 느낌을 표현.
가구	원목가구나 등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품위있고 곡선 장식이 있는 가구 사용
재료	오크(oak), 목재 위 도장 마감, 소나무송, 자연스러운 메이플 (natural maple)등과 함께 타일, 테라코타, 돌, 플라스터 등이 사용
색채	햇간의 붉은색, 밀밭의 녹색, 곡물의 황금색, 하늘의 푸른색 등의 색채가 주로 사용

모던 스타일	
배경	모던 스타일은 모더니즘에서 비롯되었으며 모더니즘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출현해 급진적인 미학적 경향과 이념적 색채를 띤 사조, 실내디자인에서 모던은 컨템포러리 모던 개념에 가까우며 다자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됨. 현대적, 기능적, 합리적 의미로 단순한 디자인 속에서 개성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 순수한 기능과 자연재료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표현, 스칸디나비아 모던과 이탈리아 쿨 모던으로 나뉨.
스타일 분류	현대적, 단순한, 정적
형용사 표현 어휘	간결한, 깔끔한, 깨끗한, 단순한, 미니멀한, 심플한, 시원한, 차분한, 고급스러운, 밝은, 세련된, 여유있는, 도시적인, 직선적인, 편안한, 하얀
이미지 요인	단순성 > 유희성 > 편안성 > 목가성 > 고전성 *편안성은 역척도
이미지요인과 실내구성요소와의 상관성	유희성 : 조명, 색채 (긍정적 영향)
표현 기법	과다한 장식과 색채를 피하며 간결하고 단순한 디자인을 추구. 직선적이고 단순한 공간구성과 요소디자인의 강조가 명확하며 섬세하고 부드러우며 감각적인 표현이 많음, 현대적인 기능미가 돋보임.

재료	스틸, 유리, 가죽, 금속, 인공재, 광택이 나는 자연석, 수지의 질감을 갖는 소재 사용
색채	백색이나 흑색, 다크그레이 등 무채색이 기본으로 사용. 차가운 느낌이나 액센트 칼라로 분위기를 연출.
벽	심플한 패턴과 질감의 벽지와 페인트 사용. 벽지의 패턴은 무지나 스트라이프 기하학적 무늬가 많음.
바닥	대리석의 석재나 은은하고 밝은 색감의 원목나무 사용. 기하학적인 무늬와 루프(loop)타입의 카펫 사용.
창	선을 강조한 버티컬 브라인드가 적합. 침실 등에는 로만 셰이드나 롤 브라인드 등의 심플한 장식이 어울림.
가구	심플한 스타일의 절제된 디자인의 가구사용
패브릭	선이나 형태를 돋보이게 하기위해 무지를 주로 사용.
소품	스틸제품을 사용.

미니멀 스타일	
배경	미니멀한 스타일은 미니멀리즘에서 비롯되었으며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 후반 미국화단의 추상표현주의의 반동으로 탄생됨. 미니멀리즘에서 자기표현은 예술이라는 기존개념을 거부하며 비개성적이며 엄격함, 극단적 간결성과 기계적인 정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하학적인 예술형태를 구성하고자 노력. 특징은 환원성과 확장성으로서 이는 단순성과 반복성 및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공간에 표현
스타일 분류	현대적, 단순한, 정적
형용사 표현 어휘	심플한, 간결한, 단순한, 깔끔한, 깨끗한, 직선적인, 시원한, 차가운, 도시적인, 차분한, 모던한, 밝은, 세련된, 여유있는, 하얀, 명상적인, 심심한, 적막한
이미지 요인	단순성 > 유희성 > 목가성 > 고전성 > 편안성 *편안성은 역척도
이미지요인과 실내구성요소와의 상관성	고전성 : 바닥 (긍정적 영향) 유희성 : 색채, 바닥, 벽 (긍정적 영향), 천장 (부정적 영향)
표현 기법	단순하고 절제된 표현, 곡선보다는 직선을, 장식보다는 실용성을 인공소재보다는 자연소재를 사용. 화려하고 따뜻함 보다는 극도의 절제미를 표현한 단순의 미학, 직선의 미학을 중요시 여김.
재료	금속, 돌, 유리 등의 차갑고 딱딱한 느낌의 소재를 사용.
색채	차갑고 하드한 이미지의 색상들의 대비감이나 강한 명암대비 효과를 이용. 다양한 컬러보다는 단색이나 흰색 등의 모노톤을 사용하나 그린, 베이지, 브라운, 그레이 칼라 등을 화이트와 번색시켜 사용하기도 함.
가구	재료가 혼용된 가구와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나 배치, 모양 변화가 가능한 붙박이 가구 등이 사용. 차가운 질감의 금속과 유리를 혼합한 가구 등도 많이 사용됨.
벽	화이트나 그레이, 베이지 등의 톤다운 된 컬러의 페인트를 주로 사용.
바닥	연한 색상을 바둑판 패턴 등이 이용됨.
패브릭	깔끔한 단색의 무지가 주로 사용되며 질감의 변화로 고급스러움을 추구.

내츄럴 스타일	
배경	내츄럴스타일은 내츄럴리즘에서 비롯되었으며 내츄럴리즘은 문학이나 예술에서 시작한 자연주의적 경향을 말함. 1990년대 후반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자연성과 환경친화성이 중시되는 사회 경향과 각박한 사회에 편한함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자연으로의 회귀 욕구에 의해 탄생됨.
스타일 분류	여성적, 현대적, 정적
형용사 표현 어휘	자연적인, 전원적인, 토속적인, 편안한, 포근한, 부드러운, 따뜻한, 깨끗한, 깔끔한, 여유있는, 고급스러운
이미지 요인	목가성 > 유희성 > 고전성 > 단순성 > 편안성 *편안성은 역척도
이미지요인과 실내구성요소의 상관성	단순성 : 재료 (긍정적 영향) 편안성 : 소품 (긍정적 영향) 유희성 : 조명 (긍정적 영향)
표현 기법	자연에 가까운 멋을 표현하며 언제나 친근하게 느껴지는 자연소재를 주로 사용하며 자연친화성을 강조함. 특히 환경친화적인 재활용(recycle)재료의 활용이 특징. 따뜻하면서 세련된 형태를 추구하며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줌.
벽	숯, 황토 성분의 벽지나 자연색의 갈포벽지를 사용하거나 회벽을 사용.
바닥	자연그대로의 색상과 질감이 드러나는 목재마루와 착색되지 않은 자연색조의 마루가 주로 사용, 수공예 직조의 카펫을 사용하기도하며 컷파일 타입의 카펫이나 격자무늬의 러그(rug)를 사용.
가구	투박하고 거친,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수공예적 감각이 내재된 가구가 사용.
소품	바구니, 스텐실, 패치워크 등의 소품과 실제식물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됨.
색채	밝은 자연색의 아이보리나 베이지, 녹색이나 청색, 흰색 등이 사용되나 주로 재료자체의 자연색을 가본으로 사용.
재료	흙, 돌, 등나무 등의 목재, 삼베, 벽돌 등 자연소재의 따뜻함이 있는 재료 사용.
패브릭	편안하고 따뜻한 이미지의 꽃이나 잎, 문양 등 사실적 도안의 잔잔한 무늬의 패브릭 사용, 체크무늬 패턴의 패브릭을 사용하기도 함.

캐주얼 스타일	
배경	기능적이며 가벼운 감각의 디자인 요서가 중심. 자유롭고 편한 이미지와 젊고 운동감 넘치는 개성있고 경쾌한 디자인 추구
스타일 분류	현대적, 동적, 복잡한
형용사 표현 어휘	귀여운, 독특한, 재미있는, 장식적인, 컬러풀한, 화려한, 깨끗한, 깔끔한, 도시적인, 모던한, 세련된 밝은, 어지러운, 혼란한
이미지 요인	유희성 > 편안성 > 단순성 > 목가성 > 고전성 *편안성은 역척도
이미지요인과 실내구성요소의 상관성	단순성 : 창 (긍정적 영향) 편안성 : 벽 (긍정적 영향), 창 (부정적 영향) 목가성 : 색채 (부정적 영향) 고전성 : 색채 (부정적 영향)

성	
표현 기법	생동감 나는 재질감, 강한 색채의 대비로 리듬감을 부여, 격식을 차리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 즐거움이 느껴지는 분위기를 연출.
벽	밝은 색의 벽지나 회벽, 스트라이프나 기하학적 패턴의 벽지를 사용.
바닥	하드한 질감의 비닐재나 밝은 내추럴 톤이나 파스텔 칼러를 입힌 마루를 사용. 루프(loop)타입의 강한 패턴과 색채를 지닌 카펫을 사용하기도 함.
가구	원목가구나 밝은 흰색톤의 가구, 원색의 철제가구 등을 주로 사용. 이태리스타일의 현대적이며 기능적인 디자인의 원색소파나 의자 등을 사용.
소품	액자, 쿠션, 스탠드 등 원색의 소품으로 이미지 효과를 냄.
색채	흰색과 회색 등의 기본색상에 빨강, 오렌지, 분홍, 옐로우, 파랑 등을 포인트 칼라로 사용, 밝고 화려하고 산뜻한 색채의 대비가 강한 배색이나 흑백의 대비가 주로 사용되기도 함.
재료	밝은 색조의 나무와 금속, 유리, 플라스틱 등이 사용되며 스틸과 천, 나무와 스틸, 플라스틱과 나무 등 자연재와 인공재의 혼용재가 많이 사용됨.
패브릭	체크와 가로형 스트라이프, 물방울 무늬가 대표적 패턴으로 사용되며 기하학적 무늬나 추상적 무늬가 있는 패브릭이 사용되기도 함.

제6절 기타의 검토 문제

1. 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의 번역

(1) 사전상의 의미

사전상 get-up 의 의미로는, “옷차림, 차림새, 외관”⁶³⁷ 이나, “복장[옷차림]”⁶³⁸이라 할 수 있다.

(2) 로카르노 분류 영한 대역본 상의 번역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영한대역본⁶³⁹에서는 get-up 을 “표면 문양”으로 번역하고 있고, “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을 “표면 문양[실내 인테리어 배치]”로 번역하고 있다.

(3) 유럽에서의 설명⁶⁴⁰

OHIM 디자인부서 책임자⁶⁴¹의 설명에 따르면, 유럽 실무에서 get-up 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⁶⁴². 첫째로는 미국식 표현인 trade-dress 를 유럽식으로 표현한 것이 get-up 이라는 것이다. 즉, 건물의 인테리어, 버스나 비행기의 좌석 배치나 인테리어, 영업점의 내·외부 인테리어 등이 get-up 에 해당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비닐 포장(plastic wrapping)⁶⁴³으로 덮인 제품의 전체적인 외관(appearance)⁶⁴⁴을 말하는 것이다⁶⁴⁵.

⁶³⁷ Daum 영어사전

⁶³⁸ Naver 영어사전

⁶³⁹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분류] 제9판 영한 대역본; 2010.6 특허청 발간등록 번호 11-1430000-000917-01

⁶⁴⁰ “get-up”이라는 표현은, 유럽의 공동체디자인법(CDR) 제3조(b)에서 유래되어 로카르노 분류에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get-up의 정확한 의미는 유럽에서의 실무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다.

⁶⁴¹ Christophe GIMENEZ, Legal adviser, Examination coordination; OHIM Designs department

⁶⁴² 유럽 디자인실무자 전체에서 통일적으로 정의를 규정하기는 힘들다고 한다.

⁶⁴³ 제품을 담은 용이 등이 주로 비닐 커버가 코팅된 것에 비유하는 것으로, 반드시 비닐로 된 포장재에 담겨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⁶⁴⁴ 형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나 색채가 결합된 것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⁶⁴⁵ 즉, 아이스크림 용기의 외관, 우유팩의 외관 등이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4) 이 연구보고서에서의 번역

그런데,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 등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넓게는 “get-up”에 포함되고 구체적으로 “[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의 범주에 포섭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get-up”은 사전적인 의미 중에서 “복장”이나 “옷차림”으로 번역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한편, 인테리어 디자인은 “표면 문양”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get-up”을 표면문양으로 번역하는 것도 인테리어 디자인을 그 범주에 포섭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보고서에서는 “get-up”을 “차림새”로 번역하였다.

한편 “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에 관하여는, “실내 인테리어 배치”라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영한대역본의 번역이 원칙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실내”와 “인테리어”에서 “내부”의 의미가 중복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실내배치”로 줄여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의 범위

(1) 문언상의 의미

로카르노 분류 제 32.00 류에 기재된 “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의 용어에 의하여 그 분류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범주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반드시 room 즉 “방”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가⁶⁴⁶, interior 즉 내부에 해당하여야 하는가 등의 의문이 있다.

(2) 기원에 따른 해석

로카르노 분류 상에는 출원되어 등록된 예가 발견되지 않으나, 그 분류의 기초가 된 공동체디자인 상에는 다수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

이를 기초로 판단하면, “room”은 넓게 보아 다양한 공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⁶⁴⁶ 따라서, room이 아닌 다른 공간, 예를 들면 응접실이나 연회장, 복도 등과 같이 room으로 통상적으로 지칭되지 않거나 다른 고유한 이름으로 지칭되는 공간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유럽 공동체디자인의 경우, 대형마켓의 전시대⁶⁴⁷, 건물의 대형 홀⁶⁴⁸ 등 좁은 의미의 “room”이라 할 수 없는 디자인들이 제 32.00 류로 등록되고 있다.

또한, “interior”라고는 하나 이에 지나치게 구속되어 건물의 “내부”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유럽 공동체디자인의 경우, 점포의 내외부⁶⁴⁹, 카페의 내외부⁶⁵⁰등이 제 32.00 류로 등록⁶⁵¹되고 있다.

3. 비고정물의 배치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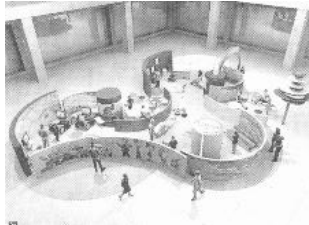
(1) 우리 실무의 규정

디자인심사기준⁶⁵²에는 손수건 또는 타월을 접어서 이루어진 꽃모양과 같이

⁶⁴⁷ 000451299-0001



⁶⁴⁸ 000935309-0001



⁶⁴⁹ 000813340-0015



⁶⁵⁰ 001251342-0001



(이 디자인에서 유리를 통해 내부가 관찰되고는 있으나, 유리를 통한 내부만이 보호대상이고 카페의 외부요소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힘들다

⁶⁵¹ 제25.03류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제32.00류로 등록된 것으로서 로카르노 분류상의 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에 적확하게 일치되는 분류이다.

⁶⁵² 디자인심사기준 제2조제2항1.바.

“물품 자체의 형태가 아닌 것”은 디자인의 물품성이 결여되어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소파나 탁자의 배열 등, 인테리어 디자인으로서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것도 이에 해당하는지의 의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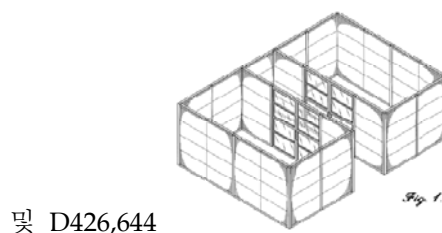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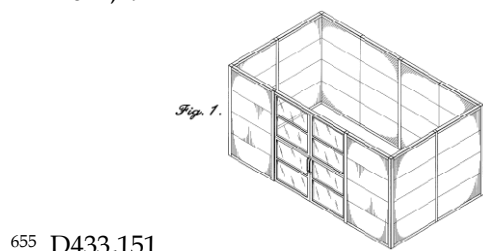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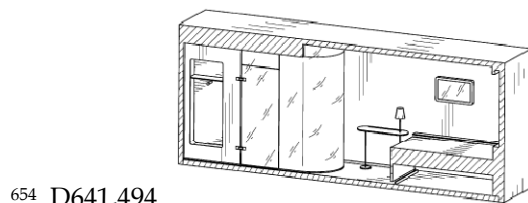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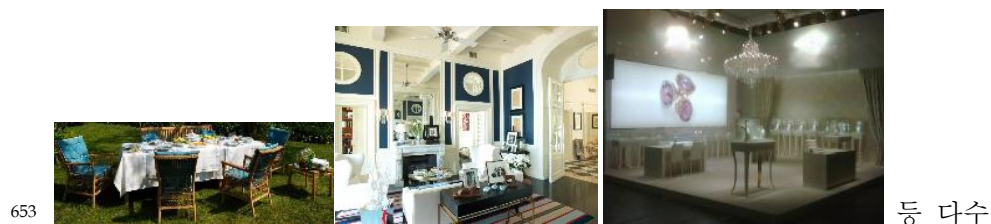
(2) 외국의 사례

유럽의 경우 다양한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이러한 비고정물의 배치를 포함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권리화하고 있다⁶⁵³. 오히려, 유럽에서 대부분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이러한 비고정물의 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정도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인테리어 디자인에 탁자가 포함된 예⁶⁵⁴가 있으며, 비교적 쉽게 이동설치하거나 변형될 수 있는 사무공간이 특허된 예⁶⁵⁵가 있다.

(3) 검토

물품 자체의 형태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이러한 비고정물의 배치가 보호대상이 되는가의 여부가 나뉠 수 있다. 물품 자체로서 변형이 불가능한 형태이어야 한다면, 이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품 자체의 형태로서 고정되는 것이 변형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정이 아니라 사용상 기본적인 형태를 이룰 정도로 고정된 것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비고정물의 배치도 현행의 심사기준상의 물품



자체의 형태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므로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여차피 인테리어 디자인은 그 구성물품의 배치가 완전히 고정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임시적인 배열상태 또한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소파의 배치 등 비고정물의 배치는, 통상 자유롭게 배치하는 경험칙상 독특한 배치가 아니라면 용이창작으로 걸러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등록디자인에 도시된 배열과 달리 배열된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 등록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벗어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조명에 의하여 달라지는 인테리어 디자인

(1) 문제되는 경우

앞서 검토한 비고정물의 배치도 “인테리어 디자인 자체의 형태”로서 보호될 것인가와 유사한 문제로서, 조명에 의하여 달라지는 인테리어 디자인도 보호될 수 있는가의 의문이 생긴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 조명을 어떻게 설치하고 발광하는가에 따라 인상이 확연히 차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래의 두 사진은 같은 곳을 주간과 야간에 찍은 것이지만, 조명으로 인하여 풍기는 인상에 차이가 생긴다.



(2) 검토

조명에 의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한다면, 인테리어 디자인으로서 보호될 수 있는 디자인은 더욱 다양해지고⁶⁵⁶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에서 생각하는 디자인의 창작개념과도 부합될 것이 예상된다.

⁶⁵⁶ 선도(line drawing)으로 출원되는 미국 디자인 실무에서는 조명에 의한 효과를 표현하는 디자인출원이 이루어지기는 극히 힘들 것이다.

생각건대, 조명에 의하여든 다른 방법에 의하여든 최소한 일시적으로도 디자인으로서 표현되는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하여는 등록을 허여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명에 의한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는 조명이 가해지기 전의 형상과 모양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디자인의 형태성이 이미 충족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등록을 허여하여도 문제될 것이 아닐 것이다. 한편, 조명이 가해져서 얻어지는 디자인은 조명이 가해지기 전의 디자인보다는 좁은 것에 해당할 것이므로 그러한 인테리어 디자인으로는 단지 형상과 모양만 동일한 실시디자인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5. 투명한 요소의 처리

(1) 투명한 구성물품을 통해 비쳐지는 부분의 해석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 유리나 같이 투명한 요소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통해 비쳐지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부분이 유리를 통해 보여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⁶⁵⁷이다. 그러나, 보호대상이 아닌 환경적인 디자인이 투명한 부분을 통해 보여지는 경우⁶⁵⁸에는 해석의 문제가 발생된다. 또한, 디자인의 설명에 카운터 데스크의 디자인이라는 등으로 디자인의 범위를 한정하고

⁶⁵⁷ 예를 들어,



와 같은 표현

⁶⁵⁸ 예를 들어,



와 같이 창을 통해 외부가 보이는 경우

있지만 도면의 도시에서는 복도의 창을 통해 실내가 비쳐 보이는 경우⁶⁵⁹도 어디까지를 디자인의 권리로 주장하는지 혼돈이 생길 수 있다.

(2) 해석의 원칙

등록디자인의 도면에 표현된 사항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해당하고, 이를 엄격히 해석하면 거실의 유리를 통해 비쳐보이는 외부의 형태(예를 들어, 산, 바다, 하늘 등)도 디자인의 요소로 청구하게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게 된다면, 산을 향하여 창이 트인 거실의 디자인은 바다를 향하여 설치된 거실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⁶⁶⁰.

(3) 실무상 가능한 조치

현행 실무상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는, 유리를 통해 보이는 부분을 지우고 출원하거나⁶⁶¹, 칼라 사진의 경우 유리를 통해 보이는 부분을 흑백 처리하거나, 흐리게 처리하는 등 권리제외(disclaim)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⁶⁶².

6. 예상 출원 빈도

(1) 미국의 사례

미국의 전체디자인특허는 2011.08.15 현재 약 404,168 건⁶⁶³으로서, 건물 등에



⁶⁵⁹ 예를 들어,

⁶⁶⁰ 물론, 창을 통해 보이는 외부 환경적 요소들이 전체 인테리어 디자인에 영향이 적다고 해석될 경우에는 등록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⁶⁶¹ 이 경우 유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유리인지 혹은 막힌 벽인지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것이다.

⁶⁶² 여하한 방식으로 disclaim 하든 사진의 조작에 따른 노고와 비용이 수반될 것이다.

⁶⁶³ 해당 디자인특허리스트는 아래에서 검색가능:

<http://patft.uspto.gov/netacgi/nph->

관한 D25 류에 등록된 디자인특허는 9,528 건⁶⁶⁴이다. 이들 중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련된 디자인특허는 약 45 건으로 추산된다. 미국에서 인테리어에 관한 디자인특허는 건물과 그 부속품 디자인특허 중 0.5%를 차지하고, 전체 디자인특허중 약 0.01%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2) 유럽의 사례

한편, 유럽의 RCD⁶⁶⁵는 2011.06.30. 현재 공고건수가 472,355 건이다⁶⁶⁶. 이 중 제 32 류나 제 99 류에 포함된 RCD 는 27,519 건으로 이 중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련된 RCD 는 100 건(0.36%)이 발견된다. 한편, 건물 등에 관한 제 25 류에 포함된 RCD 는 26,327 건으로 이 중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련된 RCD 는 총 50 건(0.19%)가 발견된다.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RCD 는 합계 150 건이 발견되는데, 이는 해당 류구분 합계 53,846 건 중 약 0.3%를 차지하고, RCD 전체 472,355 건 중에서는 약 0.03%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유럽이 미국보다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등록하여 보호하는 비율이 크지만, 이는 본질적인 차이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유럽과 미국의 통계를 참고할 때, 누적등록디자인 건수에 대비하여 약 0.01~0.03% 정도이면 인테리어 디자인 등록의 평균적인 점유율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우리 실무상 예상

한편, 2010 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디자인누적등록건수는 621,256 건으로서, 매년 약 3 만건~4 만건 정도의 디자인이 등록되고 있다. 이를 외국의 통계에 비추어보면, 우리 디자인보호법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하였다면 약 6 백건

[Parser?Sect1=PTO2&Sect2=HITOFF&u=%2Fnetacgi%2FPTO%2Fsearch-adv.htm&r=0&f=S&l=50&d=PTXT&RS=APT%2F4+AND+ISD%2F11%2F1%2F1997-%3E5%2F12%2F1998&Refine=Refine+Search&Query=APT%2F4+AND+ISD%2F11%2F1%2F1900-%3E8%2F15%2F2011](http://patft.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2&Sect2=HITOFF&u=%2Fnetacgi%2FPTO%2Fsearch-adv.htm&r=0&f=S&l=50&d=PTXT&RS=APT%2F4+AND+ISD%2F11%2F1%2F1997-%3E5%2F12%2F1998&Refine=Refine+Search&Query=APT%2F4+AND+ISD%2F11%2F1%2F1900-%3E8%2F15%2F2011)

⁶⁶⁴ 해당 디자인특허리스트는 아래에서 검색가능:

<http://patft.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2&Sect2=HITOFF&u=%2Fnetacgi%2FPTO%2Fsearch-adv.htm&r=0&f=S&l=50&d=PTXT&RS=APT%2F4+AND+CCL%2F25%2F%24&Refine=Refine+Search&Refine=Refine+Search&Query=APT%2F4+AND+CCL%2F25%2F%24+AND+ISD%2F11%2F1%2F1900-%3E8%2F15%2F2011>

⁶⁶⁵ 출처:

http://oami.europa.eu/ows/rw/resource/documents/OHIM/statistics/ssc007-statistics_of_community_designs_2011.pdf

⁶⁶⁶ 총 출원된 568,720건 중에서 취하나 거절 등이 된 건을 제외하면, 공고연기중인 건을 포함하여 558,291으로 집계되나, RCD의 조사에서 공고된 것들만 조사할 수 있으므로 공고건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내지 2 천건 정도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등록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하기 시작한다면, 연간 약 3~4 만건이 출원되는 것을 고려하면, 인테리어 디자인은 연간 약 30 건 내지 100 건 정도가 등록될 것⁶⁶⁷으로 보인다.

⁶⁶⁷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개시하는 초기에는 출원이 폭주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수십건 정도가 적당한 규모에서 폭주한다고 하여도 수백건 정도가 아닐까 예상되므로, 이러한 정도는 특허청의 심사실무나 등록실무에서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제7장 맺는 말

제7장 맺는 말

(1) 연구의 목적

이번 연구는,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을 로카르노 분류상의 물품으로 확대함으로써 이에 포함된 건물/인테리어 디자인을 우리 실무상 보호대상으로 포섭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건물/인테리어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포섭하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한 영향과 우리 실무에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2) 외국의 제도 연구

인테리어 디자인을 이미 정규의 디자인으로서 보호하는 예는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에서 발견되고 있고,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들 국가나 제도상에서는 건물/인테리어 디자인을 물품의 분류에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에서의 디자인 제도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이들 나라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은 단지 하나의 디자인으로서 규율되고 있을 뿐,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하여 특칙을 둘 만큼 특이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았다.

(3) 외국의 등록 사례 조사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건물/인테리어 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를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다른 나라들의 등록사례들을 조사하여 참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디자인국제등록에 등록된 디자인등록 및 디자인특허를 조사하여, 그 분류, 명칭, 도면 실무 등을 조사하였다. 미국의 경우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물품의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건물 등의 일부로서 다수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등록되었고, 유럽의 경우 건물 등의 분류로서 등록된 예와 인테리어 디자인으로서 등록된 예가 모두 발견되고 있다. 국제디자인등록에 있어서는 비록 분류에는 인테리어 디자인이 물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물품을 분류에 포함한 것이 불과 수년 전인 이유에서인지 아직 인테리어 디자인 자체를 물품으로 하여 등록된 예는 발견되지 않았고, 다만 건물에 대한 분류에 일부 인테리어 디자인이 등록된 예가 발견되었다.

(4) 저작권법과의 관계 연구

건물/인테리어 디자인은 저작권으로서도 보호대상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저작권으로서의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업계의 등록실태와 법률적 보호상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우리법의 실무에서는 건물/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 대다수가 창작자의 이름으로보다는 발주회사나 시행/시공사의 명의로 등록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상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창작자는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그 법률상 보호실태에 관하여, 건축저작물 등에 관해 저작물로 성립하려면 건축법상의 설계도면에 이를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등으로 외관디자인만의 창작으로는 건축저작물로 인정되지 않고, 설계의뢰인에게 사용권이 있다거나 하는 등으로 권리의 행사에서도 실질적으로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하여는,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되기 보다는 단순히 미술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로서만 인정될 수 있고, 그것도 가능성에 불과하여 실질상 저작권으로 보호된다고 보기는 힘든 지경이다.

이는 건물/인테리어를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저작권으로도 다소 강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법제하의 실무에서는 건물/인테리어의 창작에 관하여는 여하한 법으로도 충실한 보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았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 법제하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으로 보호하는 것은 “외관”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독립한 보호법익에 따라 보호하는 것으로서 현행 저작권법과의 충돌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외국의 법제와의 형평을 이루고, 저작권으로서의 미흡한 보호를 보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5)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

먼저 어떠한 입법방식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입법론을 살펴보고,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가 실무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건물 등 부동산을 디자인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현행 실무로부터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선회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기본개념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물품의 동산성, 독립성, 등에 대한 변경이 요구된다.

로카르노 협정의 가입 및 로카르노 분류의 채택은 그 자체로 그 분류상의 물품에 대한 디자인을 보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 실무의 경우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할 것인지의 여부, 보호한다면 제 25-03 류로서 건물의 일부로서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제 32-00 류의 인테리어 디자인 자체로서 보호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여하한 방식으로 보호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심사주의와의 관계, 새로이 보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분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제 25-03 류로서 건물과 함께 무심사로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인테리어 디자인의 도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살펴보고, 유사판단 등 다른 실무적 조치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소 생소한 용어로 기술된 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 다른 특유한 검토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6) 소결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하게 되는 경우, 이로써 등록되는 디자인의 수는 미국과 유럽의 선례를 참고할 때 전체 디자인등록 대비 약 0.1% 미만으로 예상되므로 그리 많은 수가 등록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를 시작하면서, 우리 실무상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출원/등록이 과열되고 있는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한편, 비록 많은 수는 아닐 것이 예상되지만, 이의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그 동안 소외되었던 건물/인테리어 디자인 업계에는 희소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인테리어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이 보다 안정되고 효과적인 보호수단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1. 우리 법과 실무 관련

(1) 법령/판례 자료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 한국 법원 판례

(2) 실무자료

- 디자인보호법; 노태정/김병진 공저;
- 무심사등록디자인의 신뢰성 제고방안 연구; 김창현; 특허청 2008
- 디자인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특허청 2010
- Korean Design Protection System; Chang-Hyeon KIM;
- 특허청 사이트: <http://www.kipo.go.kr>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시스템: <http://www.cros.or.kr/>
-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http://www.kicc.or.kr/>
- 한국실내건축가협회: <http://www.kosid.or.kr/>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http://www.kiid.or.kr/>
- 2009 저작권 연감; 한국저작권위원회
- 건축디자인분야에서의 저작권문제에 관한 연구; 문화경; 계간저작권 2006 년 겨울호
- 건축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이호홍/고영수 공저;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년
- 건축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육소영; 계간저작권 2007 년 겨울호
- 미국에 있어서 저작권에 의한 디자인의 보호; 이상정; 계간저작권 1994 년 여름호
-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기준에 대한 소고; 조원희; 계간저작권 2005 년 여름호
-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의 교차영역에 관한 연구; 이호홍; 한국저작권위원회 2007 년
- 건축저작물과저작권; 오승중; 저스티스 제 58 호 2000 년

- 실내디자인스타일 유형화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김정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년

2. 유럽 공동체 법과 실무 관련

(1) 법령 자료

- 유럽 공동체디자인규정(CDR) / 공동체디자인 시행규칙(CDIR)
- OHIM 디자인 심사기준(Examination Guidelines)
- Green Paper on the Legal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 Brussels, June 1991
- Directive 98/71/EC on the legal protection of designs,
- Guidelines for the examination of Community designs
- Guidelines for the Proceedings relating to a declaration of invalidity of a registered Community design
- Registered Community Design Renewal Guidelines
- Designs Department Examination Practice Note 1/2005 (2005.02.01)
- Designs Department Examination Practice Note 2/2005 (2005.05.02)

(2) 판례 자료

- OHIM 무효심판부(Invalidity Division)의 결정
- OHIM 항고심판부(Board of Appeal)의 결정
- 제 1 심으로서의 공동체디자인법원의 판결
- 유럽연합 대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의 동향
- 입수 가능한 한도에서 공동체 국내법원의 디자인 관련 판결

(3) 실무자료

- Manual on Community Designs; Maier/Schlötterburg; Heymanns Intellectual Property
- Community Designs Handbook; October 2005;
- The Design Directive; David C. Musker;
- Design Features, Summer 2007, Jenkins Community Design Newsletter
- Design Features, Autumn 2009, Jenkins Community Design Newsletter
- Design Features, Autumn 2008, Jenkins Community Design Newsletter
- 유럽공동체 사이트: http://ec.europa.eu/index_en.htm

- OHIM 사이트: <http://oami.europa.eu>

3. 미국 디자인특허 관련 법과 실무

(1) 법령 자료

- 35 U.S.C.
- 37 C.F.R.
- MPEP ver. 8

(2) 실무 자료

- 미국특허청 사이트: <http://www.uspto.gov/>

4. 국제디자인등록시스템

국제디자인등록 검색: <http://www.wipo.int/ipdl/en/hague/search-struct.jsp>

5. 분류

- Locarno Classification
- Eurolocarno Classification
- USPC (United States Patent Classification)
- 한국 물품분류
-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영한대역본
- USPTO Design Search Code Manual
- 미국특허청 특허분류에 관한 심사관 핸드북;